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901-01

정책보고서 2016-60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최현수 · 여유진 · 김태완 · 임완섭 · 오미애 · 황남희 · 고제이 · 정해식
김재호 · 손병돈 · 이상붕 · 최옥금 · 진재현 · 천미경 · 김솔휘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공동연구진】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호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손병돈 평택대학교 교수
이상붕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솔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6.2)한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4부 노후소득보장 정책 효과성 및 노인빈곤 변화 추정

표 목차

그림 목차

제 1 장 서론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국정기조인 “국민행복”과 추진전략인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하여 국정과제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추진 중임

○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내용은 기초연금 전환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노후설계 교육 및 고령자 사회공헌 활성화로,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의 완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기초연금 확대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가 반영된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발표된 OECD 자료(Pensions at a glance 2015, 201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2.6%)의 약 4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3년 발표결과(Pensions at a glance 2013, 2010년 기준 47.2%)에 비해 2.4%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OECD 평균은 12.8%에서 12.6%로 다소 감소함

□ 노인의 상대빈곤율(중위 균등조정 가처분소득 50% 미만 노인인구 비율)은 소득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빈곤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등과 더불어 기존 연구에 활용된 소득 중심의 빈곤지표는,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재산 보유와 지출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빈곤 실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

○ 이것은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뿐만 아니라 OECD 보고서에도 언급된 내용으로, 현금 소득만으로는 전반적인 상

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노인의 빈곤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Pensions at a glance 2013)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노인빈곤 통계 위주의 분석을 넘어 우리나라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인빈곤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현재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효과와 향후 예상되는 노인빈곤의 변화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재구성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노인빈곤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함

○ 우선, 그 동안 노인빈곤 지표 산출 기반으로 활용된 다양한 조사데이터 및 패널자료의 속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노인빈곤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인빈곤 실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노인빈곤 지표 산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재산 보유 및 지출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인빈곤 실태 및 고령사회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노후소득보장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연구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노후소득보장 방안 연구를 수행함

○ (연구과제 1) 다양한 조사데이터 및 패널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를 기반으로 분석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실태를 심층 분석함

○ (연구과제 2) 노인의 소득재산 보유 등 노후소득보장 관련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다양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노인빈곤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연구과제 3) 노인의 유형별 생활여건 및 욕구를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노후소득보장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노인빈곤의 변화를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목차 구성

□ 본 연구는 노인빈곤 실태 심층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한 연구내용을 기초로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제목을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에서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수정하고, 앞서 제시한 연구과제 1~3을 중심으로 연구내용 및 목차를 구성함

○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전략이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 보다는 연구과제 1~2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인빈곤 실태의 심층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구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내용 및 목차

○ 제1부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 및 동향 분석

- (2장) 우리나라 노인 빈곤지표 변화 추이 분석 및 시각화
- (3장) 연령집단 및 가구유형별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 심층 분석
- (4장) 노인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에 따른 노인빈곤 구성 심층 분석

○ 제2부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특수성을 고려한 노인빈곤실태 분석

- (5장)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의 통합적 분석
- (6장)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및 자산 보유를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 (7장) 소득인정액 방식 적용을 통해 노인의 소득·자산을 반영한 노인빈곤 분석

○ 제3부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를 반영한 다양한 빈곤지표 분석

- (8장) 자녀에 대한 증여, 자녀의 부모 부양 등 사적이전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 (9장) 귀속임대료 및 지출을 반영한 노인빈곤 분석
- (10장) 소득, 자산, 주거, 건강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 제4부 노후소득보장 정책 효과성 및 노인빈곤 변화 추정

- (11장) 노인 유형별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 (12장) 미시모의실험 기반 노인빈곤 중장기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

○ 부록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분석데이터 특성 및 주요 변수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LWS(Luxembourg Wealth Study) Database
- 노인의 소득·자산 항목별 상대적 영향도 및 소득·자산 분포 비교 분석
-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구성 및 지출 수준과 노인빈곤 비교 분석

3. 분석방법 ☞ 노인의 상대빈곤율 산출

□ 빈곤 분석의 이슈

○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경우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빈곤 개념정의(절대 vs. 상대), 빈곤 분석단위(가구 vs. 개인), 가구 또는 개인의 후생 측정 기준(소득 vs. 자산 vs. 지출)의 문제임(Barr, 1998)

- 이에 따라, 빈곤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일지라도 빈곤 및 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 분석대상 및 단위 등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빈곤 분석단위

- 빈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소득 또는 자산의 측정은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빈곤하다고 판단된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되고, 특정 집단의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됨

- 노인 빈곤율의 경우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개인을 구분하므로 전체 노인 가운데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는 노인의 비율을 통해 산출함
- 특히, 개인단위 빈곤율과 가구단위 빈곤율은 상대빈곤율 산출 시,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인 또는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분석한다는 차이가 있음

○ 가구 또는 개인의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

- 여기서는 개별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을 사용함
  -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인빈곤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2부에서는 소득과 더불어 자산을, 3부에서는 지출을 활용함
- 특히, 빈곤 분석에 있어 소득 개념과 이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은 빈곤 수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음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Mitchell(1991)이 분류한 사회보장 이전과 조세 이전의 소득이전 유형과 단계에 따라 시장소득(market income, MI), 총 소득(gross income, GI),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DI)의 3가지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단계적으로 산출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 소득 개념 이외에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을 추가하여 5가지 소득 개념으로 다양한 빈곤율을 분석함
  - 근로사업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요소소득(근로사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요소소득+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경상소득-조세-사회보험료)

○ 가구균등화 지수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
- 대부분의 빈곤 연구에서는 OECD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ε=0.5 ☞ SQRT(가구원수))를 사용하여 균등조정 소득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빈곤선과 비교하여 개별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함

ADI = DI / $S^{\epsilon}(S:\text{가구원수}, \epsilon:\text{가구균등화지수})$ = DI / Sqrt(가구원수)

○ 빈곤에 대한 개념정의

- 빈곤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 및 개인의 빈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빈곤 개념으로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개념을 사용함
- 절대적 빈곤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동안 대부분의 경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절대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해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절대빈곤율의 경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전까지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절대빈곤 지표를 분석함
-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한 경우 이를 빈곤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상대 빈곤선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OECD나 EU 등에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의 40%, 50%, 60% 수준임
- OECD 노인의 상대빈곤율(중위 균등조정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인 66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소득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빈곤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개인단위 빈곤율과 가구단위 빈곤율을 분석함

- 기본적으로 ‘빈곤율’은 개인단위 빈곤율을 의미하므로 ‘노인빈곤율’로 표기하며, 가구단위 빈곤율의 경우 ‘노인가구빈곤율’로 표기함
- 개인단위 빈곤율은 분석대상인 65세 또는 66세 이상 노인 집단의 빈곤규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가구빈곤율의 경우 노인이 속한 가구의 빈곤율과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통해 노인빈곤 구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정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함

4. 분석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OECD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산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 검토하여 노인빈곤 분석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공통적으로 활용함

○ 우선적으로, 연구과제 1~3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상황을 반영한 노인빈곤 심층 분석을 위하여, 유일하게 자산항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가장 최근 공개되어 활용 가능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소득 2014년 기준, 자산 2015년 3월 기준)”을 각 장에서 공통적인 분석데이터로 활용함

○ 한편, OECD에 제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의 산출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지표 변화 추이 분석 및 시각화(2장)에 한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함께 분석데이터로 동시에 활용함

○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10장)을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노인가구 유형별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11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관련 상세 소득항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 본 연구에서 활용된 4가지 분석데이터의 조사 개요 및 표본규모, 소득·자산 관련 조사항목 구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1〉 분석데이터 비교

구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연혁	-2010년: 제1회 가계금융조사 실시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 통합 -2012년: 제1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횡단 및 패널로 표본 재설계	-1962년: 통계작성 승인 -2003년: 도시가계에서 전국가계로 확대 -2006년: 1인 가구 조사, 전자가계부 조사방식 도입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 조사 자료 결합 -1990년~현재: 가구 자료 -2006년~현재: 가구 및 가구원 자료 작성	-2006년: 통계승인 및 최초작성 -2016년: 11차 조사 실시
조사주체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및 공표 주기	1년/1년	분기/분기	1년/1년	1년/1년
조사단위	가구	가구	가구	가구/개인
표본규모	전국 약 20,000가구	약 9,000가구	약 12,000가구	약 7,000가구
조사방법	면접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조사내용	-금융부문: 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운용 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 161개 항목 -복지부문: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경제활동, 건강 등 142여개 항목	-가구실태: 가구일반사항,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거처구분, 자동차보유, 주거에 관한 사항, 사용면적, 주택소유여부 등 -가계수지: 가구주소득, 배우자 또는 기타가구원소득, 주거비/방송/교통/통신, 적금/보험/신용카드, 육아 및 교육비, 아파트관리비	-가구: 농가여부, 도시여부, 근로자가구 여부, 가구원수, 주요 소득 -가구주: 연령, 성별, 취업여부, 교육정도	-가구: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가입, 주거, 생활비 등 -만15세 이상 가구원: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사회적 자본, 생활습관 등 -만9세 이상 아동: 나의 학교생활, 나의 생각과 행동, 우리 부모님은, 나의 친구는, 나와 나의 가족 등

구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 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 기타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기타이전소득) -비경상소득(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기타수입(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근로소득, 균등화 사업소득, 균등화 재산소득,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소득: 연간 급여 총액(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기타 정부보조금, 기타소득, 환급금,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민간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채: 부채액, 부채로 인한 이자
	자산	-주택, 주택 이외의 부동산,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자동차,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형태의 저축·펀드,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예치식 저축·펀드, 주식·채권, 권리금, 기타(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곗돈), 공적연금 보험료, 연금형 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재 잔액 또는 곗돈 내야할 돈 -부채상환능력	-	-	-소유 부동산, 점유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 재산
	지출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보육비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비, 기타 -세금: 소득세·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및 비영리단체 이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이전	-균등화 공적비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사이트 참조(http://meta.narastat.kr/)
소득분배지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메타정보(http://kosis.kr/)와 조사 설계서(MDIS포털 제공) 참조

제 1 부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 및 동향 분석

제 2 장

우리나라 노인 빈곤지표 변화 추이 분석 및 시각화

2 우리나라 노인 빈곤지표 변화 추이 분석 및 시각화

제1절 분석목적 및 내용

□ 분석목적

○ 우리나라 노인 상대빈곤율을 다양한 기준(개인 단위 노인빈곤율 & 가구 단위 노인 가구빈곤율)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 분포 변화 시각화를 통해 상대빈곤 변화 양상을 파악함

○ 노인가구 유형별로 상대빈곤 기준에 따른 가구분포를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함

□ 분석내용

○ 여기서는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하고 있는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 개념과 빈곤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시각화하여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소득분배지표조사 2010~2015'를 활용하여 2010~2015년 노인빈곤 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다양하게 시각화하여 제시함

○ 다음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를 활용한 노인가구 유형별 상대빈곤 지표를 심층 분석하고, 소득·재산 보유와 빈곤노인 분포를 시각화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분석데이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 기준시점 : 소득 2014년, 재산 2015년 3월말
- 조사규모 : 18,031가구, 51,127명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조사(가계농어가) 2010~2015

- 조사규모 : 12,212가구, 31,146명

□ 분석방법

○ 분석지표: 상대빈곤율

○ 중위소득 30%, 40%, 50%, 60%의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분석

○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분석

○ 소득 개념

- 근로사업소득(WI)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균등조정 근로사업소득(AWI)
- 요소소득(FI) = WI + 재산소득 ☞ 균등조정 요소소득(AFI)
- 시장소득(MI) = FI + 사적이전소득 ☞ 균등조정 시장소득(AMI)
- 경상소득(GI) = MI + 공적이전소득 ☞ 균등조정 경상소득(AGI)
- 가처분소득(DI) = GI-세금-사회보험료 ☞ 균등조정 가처분소득(ADI)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된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전체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생성하였으며, 소득분배지표조사(가계농어가)의 경우는 이와 상이함

○ 노인가구 유형 분석 주요 변수

- 노인가구 여부
- 노인가구주 여부
- 노인가구 유형

○ 노인가구 유형 분석변수별 개념 및 분포

구 분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전 체		18,031	100.0	18,642,651	100.0
노인가구 여부	노인이 1명도 없는 가구	12,079	67.0	13,298,972	71.3
	노인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	5,952	33.0	5,343,679	28.7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가 비노인인 가구	13,448	74.6	14,725,399	79.0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	4,583	25.4	3,917,252	21.0
노인가구 유형	비노인가구	12,079	67.0	13,298,972	71.3
	노인단독가구	1,696	9.4	1,386,657	7.4
	노인부부가구	1,450	8.0	1,217,493	6.5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547	3.0	500,376	2.7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865	4.8	799,709	4.3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1,297	7.2	1,359,327	7.3
	기타	97	0.5	80,118	0.4

□ 상대빈곤율 산출방법

○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경우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빈곤 개념정의(절대 vs. 상대), 빈곤 분석단위(가구 vs. 개인), 가구 또는 개인의 후생 측정 기준(소득 vs. 자산 vs. 지출)의 문제임 (Barr, 1998)

- 이에 따라, 빈곤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일지라도 빈곤 및 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 분석대상 및 단위 등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빈곤 분석단위

- 빈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소득 또는 자산의 측정은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빈곤하다고 판단된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되고, 특정 집단의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됨
- 노인 빈곤율의 경우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개인을 구분하므로 전체 노인 가운데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는 노인의 비율을 통해 산출함

- 특히, 개인단위 빈곤율과 가구단위 빈곤율은 상대빈곤율 산출 시,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인 또는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분석한다는 차이가 있음

○ 가구 또는 개인의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

- 여기서는 개별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을 사용함
- 특히, 소득 개념과 이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은 빈곤율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Mitchell(1991)이 분류한 사회보장 이전과 조세 이전의 소득이전 유형과 단계에 따라 시장소득(market income, MI), 총 소득(gross income, GI),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DI)의 3가지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단계적으로 산출함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을 추가하여 5가지 소득 개념으로 다양한 빈곤율을 분석함
  - 근로사업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요소소득(근로사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요소소득+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경상소득-조세-사회보험료)

○ 가구균등화 지수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빈곤 연구에서는 OECD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ε=0.5 ☞ SQRT(가구원수))를 사용하여 균등조정 소득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빈곤선(Poverty Line)과 비교하여 개별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함

$$ADI = DI / S^{\epsilon}(S: \text{가구원수}, \epsilon: \text{가구균등화지수}) = DI / Sqrt(\text{가구원수})$$

○ 빈곤에 대한 개념정의

- 빈곤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 및 개인의 빈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빈곤 개념으로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개념을 사용함

- 절대적 빈곤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동안 대부분의 경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절대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해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절대빈곤율의 경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전까지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절대빈곤 지표를 분석함
-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한 경우 이를 빈곤으로 판단하는데, 이 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상대 빈곤선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OECD나 EU 등에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의 40%, 50%, 60% 수준임
- 노인의 상대빈곤율(중위 균등조정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 노인인구 비율)은 소득 중심으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빈곤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개인단위 빈곤율과 가구단위 빈곤율을 분석함

- 기본적으로 ‘빈곤율’은 개인단위 빈곤율을 의미하여 가구단위 빈곤율의 경우 ‘노인가구빈곤율’로 표기함
- 개인단위 빈곤율은 분석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빈곤규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가구빈곤율의 경우 노인이 속한 가구의 빈곤율과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통해 노인빈곤 구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정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함

제2절 분석결과

1. 소득분배지표조사(2010~2015)를 활용한 노인빈곤 지표 변화 추이 분석

□ 먼저, '소득분배지표조사 2010~2015'를 활용하여 2010~2015년 노인빈곤 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다양하게 시각화하여 제시함

□ 노인가구 비율 변화

구분	전체가구수	65세 이상 노인가구수	65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66세 이상 노인가구수	66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2010	16,939,220	4,381,538	25.87%	4,070,351	24.03%
2011	17,373,727	4,789,791	27.57%	4,500,664	25.90%
2012	17,392,465	5,007,363	28.79%	4,673,104	26.87%
2013	17,941,588	5,408,106	30.14%	5,071,119	28.26%
2014	18,182,300	5,520,315	30.36%	5,272,225	29.00%
2015	18,428,645	5,804,620	31.50%	5,529,599	30.01%

□ 노인빈곤율 산출방식 구분 및 방법

○ (A) 인구가중치 반영 중위소득 적용 노인인구 기준 상대 노인빈곤율

- 인구 기준 빈곤율 산출 시 다수의 연구자가 최근 활용하는 방식이며, 통계청 & OECD 빈곤율 산출방식에 해당함

○ (B) 가구가중치 반영 중위소득 적용 노인인구 기준 상대 노인빈곤율

- 일부 연구자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구 단위 정책대상 규모추정 시 활용방식임

○ (C) 노인가구빈곤율

- 가구가중치 반영 방식과 동일하게 중위소득을 산출하여 이를 빈곤 기준으로 노인가구 단위 빈곤율을 산출하는 방식임

□ (A) 인구가중치 반영 중위소득 적용 노인인구 기준 노인빈곤율

중위 3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2010	52.23%	53.70%	50.63%	52.06%	40.82%	41.83%	25.38%	26.10%	24.12%	24.70%
2011	53.27%	54.49%	51.77%	52.97%	42.81%	43.73%	28.47%	29.19%	27.23%	27.92%
2012	53.04%	54.61%	51.60%	53.17%	42.84%	44.20%	29.20%	30.20%	27.57%	28.49%
2013	53.99%	55.73%	51.91%	53.60%	43.58%	44.89%	30.19%	31.56%	27.73%	28.97%
2014	54.07%	55.71%	52.50%	54.18%	45.56%	46.87%	28.01%	28.92%	25.68%	26.51%
2015	54.92%	56.01%	53.09%	54.13%	46.02%	46.88%	24.80%	25.51%	21.72%	22.30%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2010	58.97%	60.18%	57.68%	58.87%	50.89%	51.81%	38.00%	39.03%	36.73%	37.73%
2011	59.29%	60.46%	58.20%	59.36%	52.06%	53.08%	39.28%	40.21%	37.94%	38.86%
2012	58.53%	60.11%	57.36%	58.84%	51.91%	53.26%	40.31%	41.76%	38.73%	39.99%
2013	60.34%	62.06%	58.77%	60.51%	54.23%	55.86%	41.09%	42.64%	39.33%	40.93%
2014	62.07%	63.62%	60.31%	61.86%	55.25%	56.59%	39.81%	40.93%	37.82%	38.83%
2015	62.19%	63.33%	60.23%	61.34%	56.19%	57.11%	37.29%	38.23%	34.94%	35.74%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에 제시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66세 가처분소득 기준 2010년 47.22%이며, 가장 높았던 ‘Pension at a Glance 2015’의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2013년 49.60%임

-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을 정점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한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가 완전히 반영된 2015년의 경우 45.66%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 노인 연령기준인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역시 2013년 48.08%로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2015년에는 44.76%로 45% 아래로 낮아짐

중위 5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2010	64.93%	65.91%	64.18%	65.19%	59.11%	59.96%	47.91%	48.97%	46.32%	47.22%
2011	65.53%	66.61%	64.47%	65.54%	60.18%	61.11%	49.09%	50.13%	47.64%	48.62%
2012	65.16%	66.36%	63.96%	65.23%	60.32%	61.56%	49.59%	51.01%	47.24%	48.53%
2013	65.90%	67.39%	64.64%	66.15%	61.28%	62.77%	50.65%	52.15%	48.08%	49.60%
2014	67.74%	69.16%	66.29%	67.79%	62.51%	63.82%	49.95%	51.36%	47.38%	48.76%
2015	68.31%	69.37%	66.84%	67.89%	63.18%	64.02%	47.70%	48.66%	44.76%	45.66%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2010	69.99%	70.82%	69.27%	70.16%	65.82%	66.61%	56.88%	57.70%	54.64%	55.43%
2011	70.73%	71.81%	69.70%	70.76%	67.15%	68.18%	58.32%	59.35%	56.22%	57.25%
2012	70.35%	71.40%	69.41%	70.54%	66.75%	67.87%	58.06%	59.35%	55.72%	57.03%
2013	71.43%	72.87%	70.58%	72.11%	67.95%	69.53%	58.73%	60.42%	57.03%	58.50%
2014	73.21%	74.54%	71.89%	73.28%	68.78%	70.01%	57.66%	59.05%	56.19%	57.58%
2015	73.72%	74.66%	72.89%	73.76%	70.58%	71.36%	56.93%	57.93%	54.09%	55.13%

□ (B) 가구가중치 반영 중위소득 적용 노인인구 기준 노인빈곤율

중위 3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2010	50.04%	51.50%	48.17%	49.55%	38.05%	39.01%	22.84%	23.71%	21.34%	22.05%
2011	51.02%	52.19%	49.40%	50.54%	40.18%	41.02%	25.98%	26.62%	24.02%	24.71%
2012	51.18%	52.99%	49.37%	51.14%	40.37%	41.63%	26.14%	27.10%	25.08%	25.89%
2013	51.16%	52.82%	48.88%	50.48%	40.23%	41.66%	26.22%	27.42%	24.53%	25.67%
2014	51.47%	53.10%	49.80%	51.44%	42.27%	43.52%	24.49%	25.30%	22.58%	23.33%
2015	51.47%	52.56%	49.64%	50.72%	42.14%	43.00%	20.81%	21.39%	18.49%	18.95%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2010	56.41%	57.75%	55.00%	56.33%	48.16%	49.05%	35.31%	36.49%	33.76%	34.83%
2011	56.83%	58.05%	55.46%	56.74%	48.79%	49.90%	36.75%	37.72%	35.40%	36.20%
2012	56.20%	57.90%	55.24%	56.75%	49.20%	50.58%	37.39%	38.69%	35.95%	37.14%
2013	57.57%	59.31%	55.33%	57.10%	50.38%	51.89%	37.43%	38.99%	36.23%	37.74%
2014	57.61%	59.27%	56.13%	57.78%	50.78%	52.05%	36.39%	37.33%	34.27%	35.18%
2015	57.11%	58.17%	55.68%	56.68%	51.34%	52.18%	33.49%	34.40%	31.18%	32.01%

- 가구가중치를 반영한 2013년 노인빈곤율(중위 50%)은 46.36%로, 동일한 66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Pension at a Glance 2015'의 2013년 49.60%에 비해 2.24%p 낮게 나타남
- 가구가중치를 반영할 경우, 기초연금 도입 이후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4년 45.31%, 2015년에 42.27%로 가장 높았던 2013년에 비해 약 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기준으로는 2015년 41.35%까지 낮아짐

중위 5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2010	62.02%	63.15%	61.03%	62.16%	56.37%	57.32%	45.25%	46.23%	42.63%	43.47%
2011	62.13%	63.20%	61.03%	62.02%	57.10%	58.09%	46.10%	47.01%	44.41%	45.33%
2012	61.43%	62.79%	60.47%	61.93%	56.94%	58.12%	45.81%	47.06%	44.87%	46.11%
2013	62.57%	64.22%	61.02%	62.66%	57.93%	59.39%	46.39%	47.87%	44.67%	46.36%
2014	64.00%	65.53%	62.43%	63.98%	59.01%	60.45%	45.93%	47.28%	43.97%	45.31%
2015	64.26%	65.35%	62.64%	63.72%	58.74%	59.64%	43.44%	44.33%	41.35%	42.27%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65세 이상	66세 이상
2010	67.40%	68.36%	66.58%	67.54%	63.39%	64.19%	53.25%	54.26%	51.54%	52.38%
2011	67.27%	68.34%	66.30%	67.38%	63.88%	64.86%	54.88%	55.98%	53.26%	54.31%
2012	66.85%	68.13%	65.81%	67.17%	63.60%	64.77%	53.82%	55.27%	52.27%	53.66%
2013	67.56%	69.06%	66.36%	67.89%	63.87%	65.41%	54.54%	56.00%	53.39%	54.88%
2014	69.19%	70.61%	67.87%	69.37%	65.13%	66.51%	54.22%	55.65%	52.59%	54.04%
2015	68.96%	70.02%	67.56%	68.59%	65.97%	66.77%	52.00%	53.01%	50.55%	51.52%

□ (C) 노인가구빈곤율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위 30%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0	48.58%	47.06%	37.14%	22.89%	21.42%	54.35%	53.16%	46.68%	34.89%	33.53%
2011	49.45%	48.06%	38.80%	25.90%	23.99%	54.60%	53.50%	46.90%	36.14%	35.06%
2012	50.12%	48.56%	39.32%	26.40%	25.41%	54.77%	54.02%	47.71%	37.17%	35.89%
2013	50.66%	48.64%	40.09%	26.73%	24.79%	56.61%	54.65%	49.44%	37.42%	36.29%
2014	52.13%	50.71%	42.42%	25.39%	23.50%	57.78%	56.49%	50.79%	37.29%	35.20%
2015	52.47%	50.92%	43.00%	22.41%	19.72%	57.90%	56.71%	51.99%	35.06%	32.82%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위 50%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0	59.54%	58.75%	54.12%	44.25%	41.94%	64.77%	64.01%	60.83%	51.75%	50.21%
2011	59.86%	58.94%	54.75%	45.00%	43.57%	65.00%	64.16%	61.49%	53.42%	51.96%
2012	59.85%	58.95%	55.08%	45.31%	44.47%	65.00%	63.99%	61.73%	52.81%	51.39%
2013	61.22%	59.92%	56.53%	45.95%	44.31%	66.30%	65.21%	62.55%	53.90%	52.75%
2014	63.63%	62.30%	58.56%	46.47%	44.53%	68.42%	67.33%	64.41%	54.41%	52.88%
2015	64.06%	62.85%	58.90%	45.09%	42.84%	68.83%	67.63%	66.10%	53.39%	51.81%

-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가구빈곤율은 2012년(44.47%)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2015년에는 42.84%로 감소하였으나,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14년에 46.47%로 가장 높았다가 2015년 45.09%로 낮아졌음

66세 이상 노인가구	중위 30%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0	49.94%	48.35%	38.02%	23.78%	22.12%	55.56%	54.35%	47.30%	36.01%	34.57%
2011	50.46%	48.99%	39.47%	26.40%	24.53%	55.77%	54.65%	47.89%	36.93%	35.70%
2012	51.49%	49.90%	40.23%	27.13%	26.05%	56.05%	55.09%	48.61%	38.19%	36.82%
2013	52.25%	50.12%	41.42%	27.98%	25.97%	58.29%	56.30%	50.87%	38.92%	37.80%
2014	53.43%	52.03%	43.53%	26.12%	24.12%	59.15%	57.89%	51.88%	38.09%	35.98%
2015	53.47%	51.90%	43.83%	22.86%	20.06%	58.86%	57.61%	52.76%	35.75%	33.40%

66세 이상 노인가구	중위 50%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0	60.57%	59.77%	54.87%	45.04%	42.61%	65.59%	64.81%	61.41%	52.57%	50.85%
2011	60.81%	59.81%	55.58%	45.74%	44.37%	66.05%	65.18%	62.43%	54.31%	52.79%
2012	60.96%	60.14%	55.92%	46.11%	45.32%	66.05%	65.08%	62.60%	53.72%	52.26%
2013	62.82%	61.39%	57.89%	47.33%	45.90%	67.69%	66.55%	63.98%	55.20%	54.08%
2014	64.96%	63.62%	59.81%	47.54%	45.61%	69.72%	68.67%	65.65%	55.56%	54.02%
2015	65.05%	63.80%	59.73%	45.73%	43.53%	69.84%	68.54%	66.85%	54.11%	52.48%

□ 노인가구 유형별 공적이전소득과 경상소득 분포에 따른 노인 상대빈곤 변화 추이 시각화

○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연금제도 성숙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우측으로 분포 이동)로 인하여 노인가구 경상소득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노인가구 및 노인가구 유형별로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빈곤선(실선) 기준으로 빈곤가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상향 이동하였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2010
2015
3e+06
2e+06
1e+06
0e+00
균등조정 경상소득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WEIGHT
5000
10000
2500
7500
as.factor(type1)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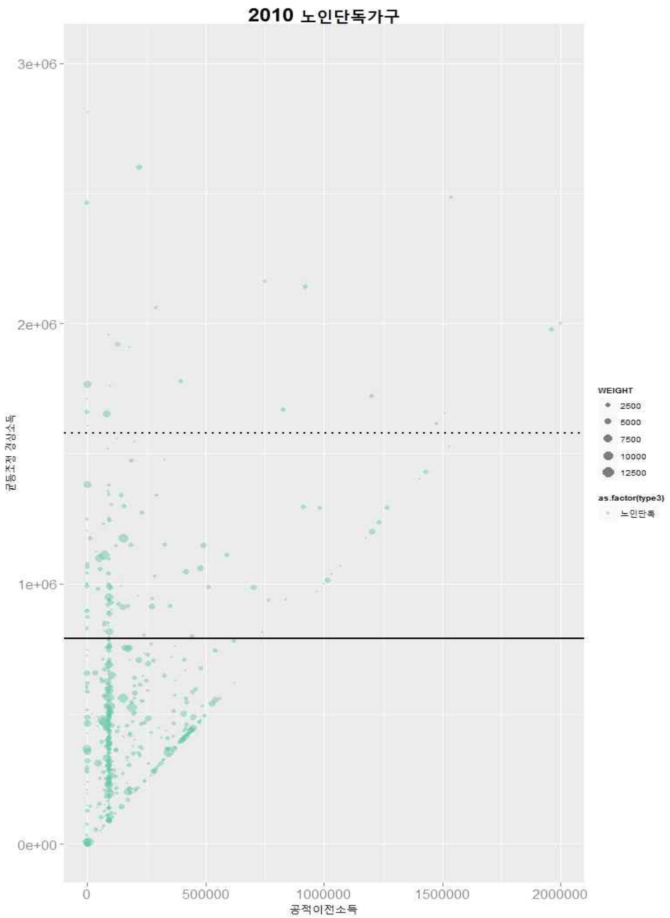
2010 노인단독가구
3e+06
2e+06
1e+06
0e+00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WEIGHT
2500
5000
7500
10000
12500
as.factor(type3)
노인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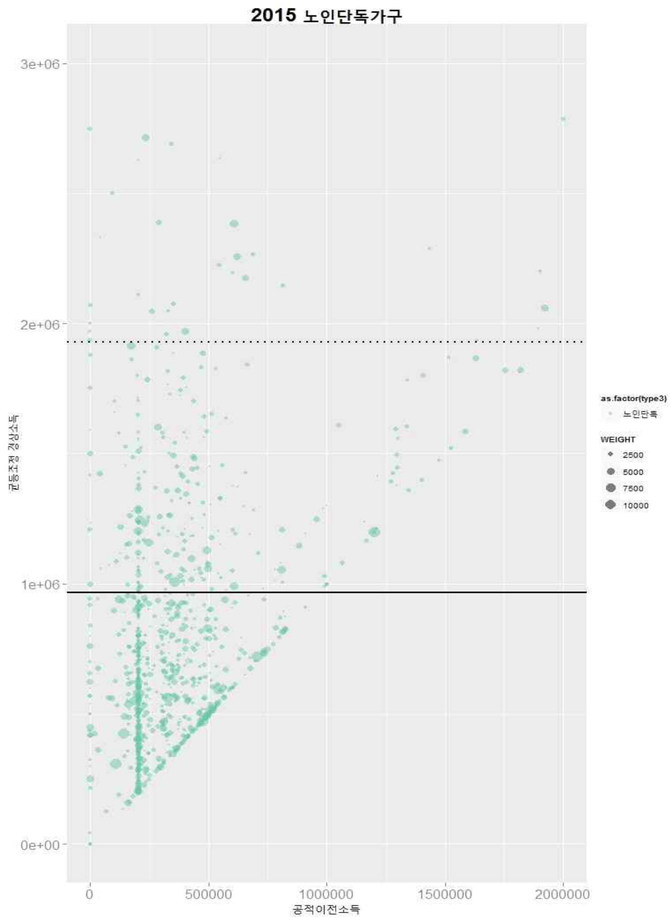
2015 노인단독가구
3e+06
2e+06
1e+06
0e+00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as.factor(type3)
노인단독
WEIGHT
2500
5000
75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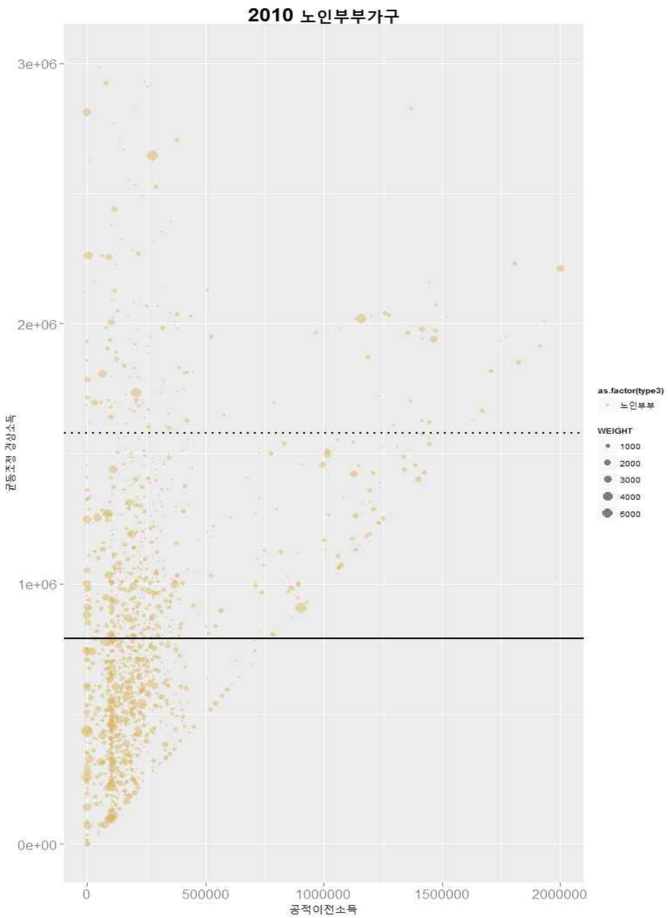
2010 노인부부가구
3e+06
2e+06
1e+06
0e+00
균등조정 경상소득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as.factor(type3)
노인부부
WEIGHT
1000
2000
3000
40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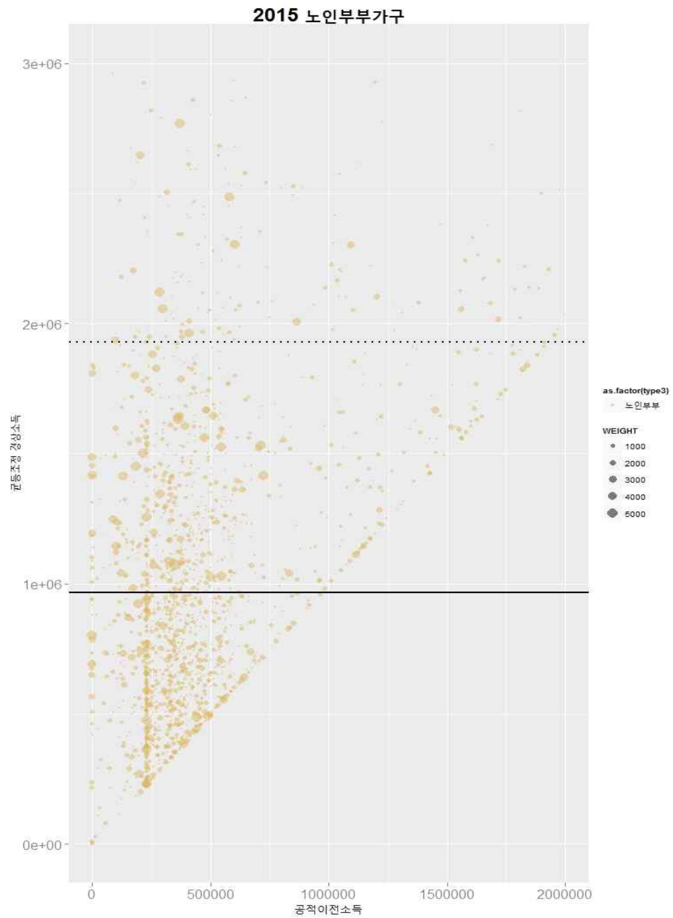
2015 노인부부가구
3e+06
2e+06
1e+06
0e+00
균등조정 경상소득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as.factor(type3)
노인부부
WEIGHT
1000
2000
3000
40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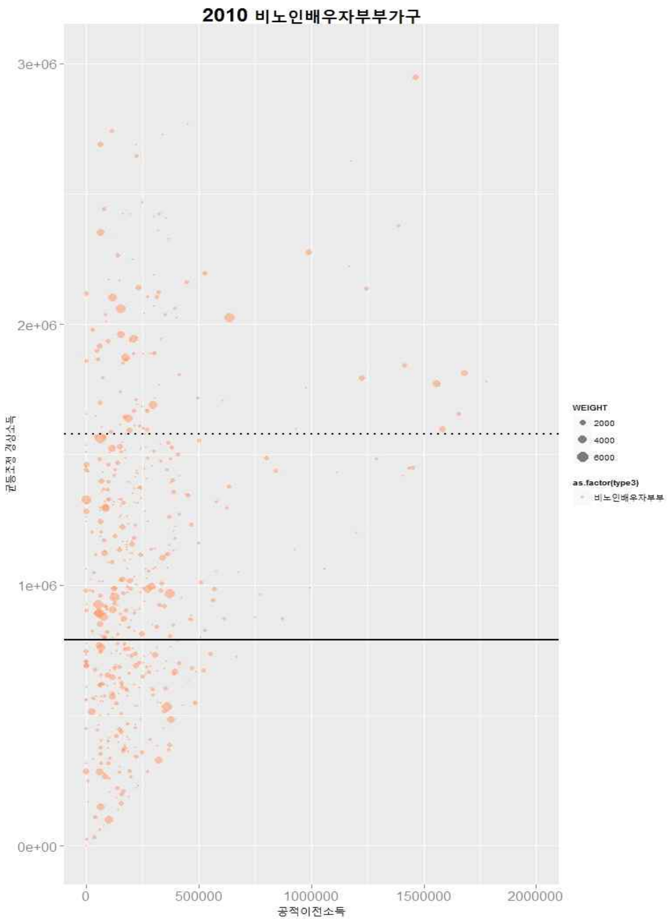
2010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3e+06
2e+06
1e+06
0e+00
균등조정 경상소득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WEIGHT
2000
4000
6000
as.factor(type3)
비노인배우자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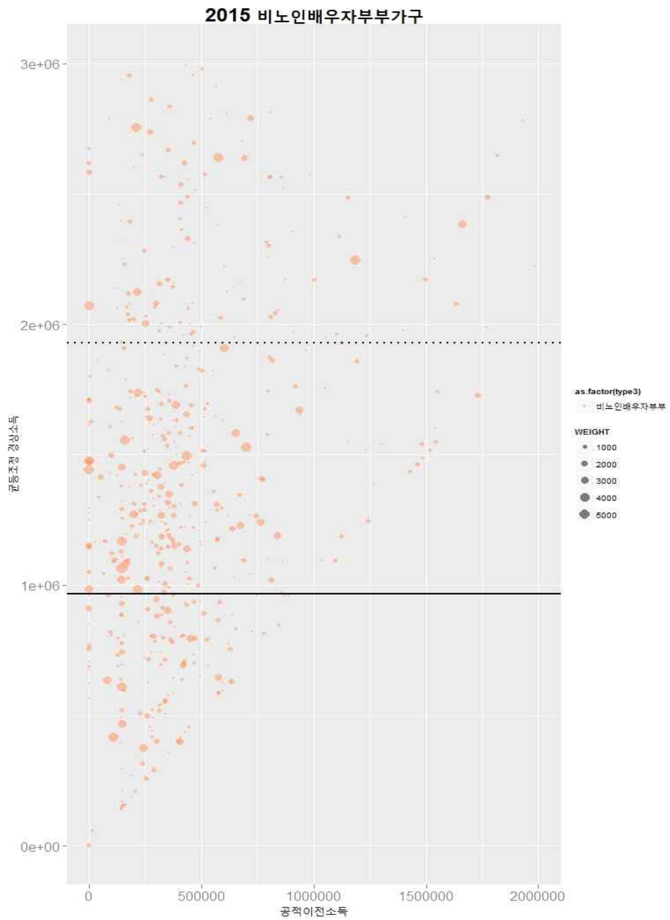
2015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3e+06
2e+06
1e+06
0e+00
균등조정 경상소득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as.factor(type3)
비노인배우자부부
WEIGHT
1000
2000
3000
40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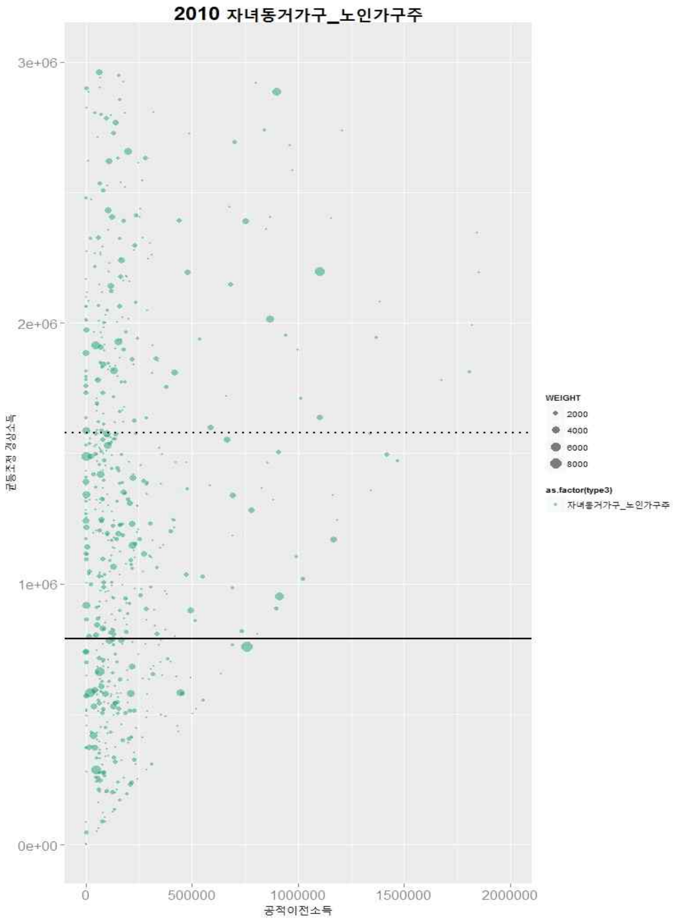

2010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3e+06
2e+06
1e+06
0e+00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균등조정 경상소득
WEIGHT
2000
4000
6000
8000
as.factor(type3)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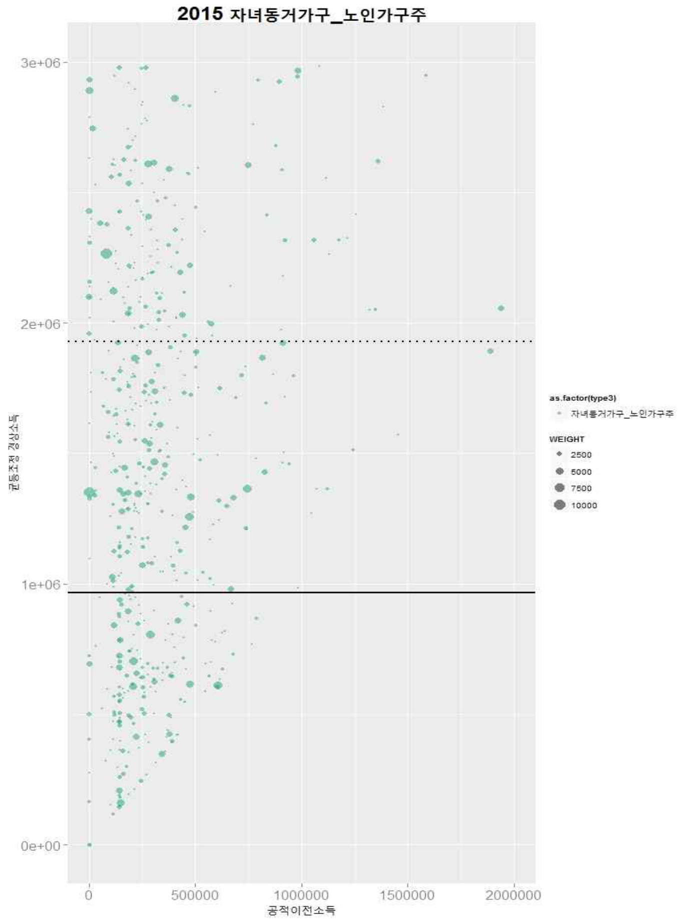

2015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3e+06
2e+06
1e+06
0e+00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균등조정 경상소득
as.factor(type3)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WEIGHT
2500
5000
75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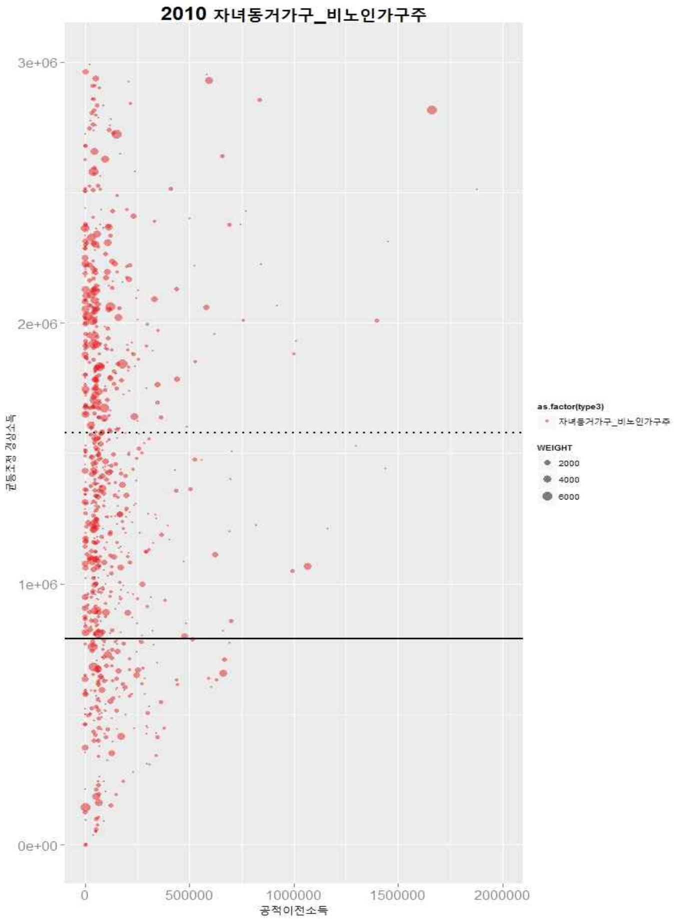
2010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3e+06
2e+06
1e+06
0e+00
균등조정 경상소득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as.factor(type3)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WEIGHT
2000
4000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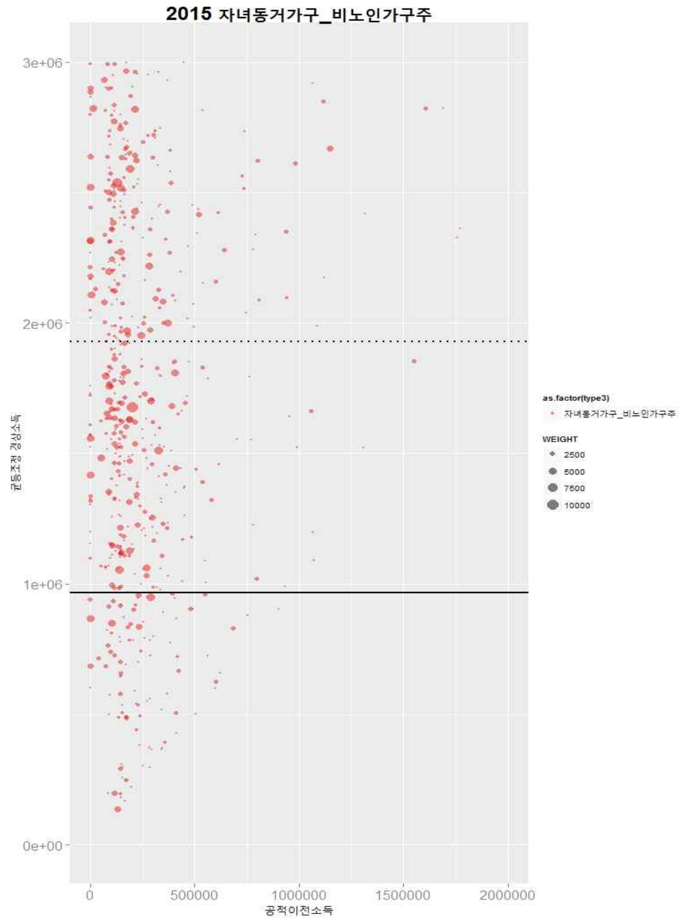
2015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3e+06
2e+06
1e+06
0e+00
균등조정 경상소득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공적이전소득
as.factor(type3)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WEIGHT
2500
5000
7500
10000

2.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기준 노인가구 유형별 상대빈곤 지표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를 활용한 노인가구 유형별 상대빈곤 지표를 심층 분석하고, 소득·자산 보유와 빈곤노인 분포를 시각화하여 제시함

□ 다양한 상대빈곤 기준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노인가구빈곤율 Heatmap

○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2014년 65세 이상 노인가구빈곤율은 44.05%임

○ 시장소득 기준과 경상소득 기준의 노인가구빈곤율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정책 효과임

○ 노인가구 여부

중위 3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6.75	6.26	5.32	3.77	3.55
노인가구	52.29	48.18	42.49	27.60	25.45
전체	19.80	18.28	15.98	10.60	9.83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8.86	8.91	8.03	7.04	6.67
노인가구	56.41	54.20	50.23	38.57	36.51
전체	22.49	21.89	20.12	16.08	15.22

중위 5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12.39	12.42	11.81	11.06	10.94
노인가구	62.01	59.08	56.44	45.42	44.05
전체	26.61	25.80	24.61	20.91	20.43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16.74	17.01	16.32	16.20	16.20
노인가구	65.66	63.53	61.71	53.46	51.58
전체	30.76	30.35	29.33	26.88	26.34

○ 노인가구 유형

- 노인단독가구의 가구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약 90%이며, 공적이전소득 반영 이후에도 경상소득 기준 약 82%, 가처분소득 기준 약 80%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중위 3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6.75	6.26	5.32	3.77	3.55
노인단독가구	91.59	87.75	79.37	61.32	55.13
노인부부가구	74.03	65.01	54.69	30.01	28.70
비노인배우자가구	41.38	36.04	30.34	10.97	10.02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27.50	24.62	23.07	12.85	12.38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9.68	9.53	8.18	5.22	5.03
기타	80.19	74.52	70.81	38.46	35.44
전체	19.80	18.28	15.98	10.60	9.83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8.86	8.91	8.03	7.04	6.67
노인단독가구	92.92	91.23	85.21	75.16	72.74
노인부부가구	79.08	73.47	67.65	46.29	41.78
비노인배우자가구	49.30	46.56	42.55	22.06	19.84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33.58	31.13	28.68	21.05	20.52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13.35	14.11	12.89	9.63	9.54
기타	83.26	78.51	76.45	57.28	50.74
전체	22.49	21.89	20.12	16.08	15.22

중위 5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12.39	12.42	11.81	11.06	10.94
노인단독가구	95.14	93.29	89.66	82.18	80.15
노인부부가구	84.20	79.20	74.95	55.99	54.75
비노인배우자가구	60.85	53.21	51.19	31.51	29.00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40.58	38.22	35.97	24.84	23.89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20.04	19.30	18.64	14.91	14.21
기타	84.39	80.92	78.55	58.31	58.31
전체	26.61	25.80	24.61	20.91	20.43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16.74	17.01	16.32	16.20	16.20
노인단독가구	96.83	95.68	93.48	88.30	85.62
노인부부가구	87.22	81.71	79.19	65.42	62.37
비노인배우자가구	64.86	62.03	59.33	43.06	40.31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46.30	44.10	42.29	33.28	32.30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24.91	25.01	24.54	21.98	21.71
기타	87.92	87.19	85.40	69.28	67.84
전체	30.76	30.35	29.33	26.88	26.34

○ 노인가구주 여부

중위 3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주 가구	7.14	6.68	5.67	3.91	3.70
노인가구주 가구	67.39	61.88	54.71	35.77	32.87
전체	19.80	18.28	15.98	10.60	9.83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주 가구	9.44	9.57	8.63	7.33	6.98
노인가구주 가구	71.57	68.20	63.34	48.96	46.19
전체	22.49	21.89	20.12	16.08	15.22

중위 5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주 가구	13.32	13.26	12.63	11.49	11.30
노인가구주 가구	76.56	72.91	69.61	56.32	54.77
전체	26.61	25.80	24.61	20.91	20.43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주 가구	17.70	17.95	17.28	16.87	16.81
노인가구주 가구	79.84	76.94	74.65	64.51	62.17
전체	30.76	30.35	29.33	26.88	26.34

○ 가구주 연령

중위 3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세미만	6.94	6.94	4.86	4.29	3.55
30~39세	3.46	3.46	2.68	2.14	2.11
40~49세	4.81	4.66	3.96	3.03	2.95
50~59세	7.64	7.23	6.52	4.88	4.60
60세 이상	53.38	48.73	42.82	27.29	25.09
전체	19.80	18.28	15.98	10.60	9.83

중위 4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세미만	9.67	9.67	7.88	7.21	7.09
30~39세	5.11	5.32	4.79	4.58	4.32
40~49세	6.96	7.21	6.52	6.12	5.72
50~59세	9.77	10.41	9.70	8.65	8.53
60세 이상	57.59	54.69	50.40	38.21	35.93
전체	22.49	21.89	20.12	16.08	15.22

중위 5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세미만	12.64	13.24	11.54	10.69	10.44
30~39세	7.40	7.71	7.47	7.52	7.57
40~49세	10.59	10.95	10.41	10.12	9.82
50~59세	14.43	14.43	14.03	13.21	13.22
60세 이상	62.79	59.52	56.59	45.16	43.80
전체	26.61	25.80	24.61	20.91	20.43

중위 60%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세미만	15.64	16.28	15.03	15.44	15.53
30~39세	10.76	11.43	10.93	11.38	11.50
40~49세	14.68	15.56	15.00	15.53	15.63
50~59세	19.38	19.24	18.77	18.97	19.11
60세 이상	66.82	64.37	62.23	53.07	50.98
전체	30.76	30.35	29.33	26.88	26.34

□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노인 상대빈곤 분포 시각화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고려하여 소득 기준 상대빈곤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실선에 해당하는 빈곤선(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왼쪽으로 노인가구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어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노인빈곤 가구의 일부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자산보유 분포(Y축)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광범위하고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자산보유 수준이 비노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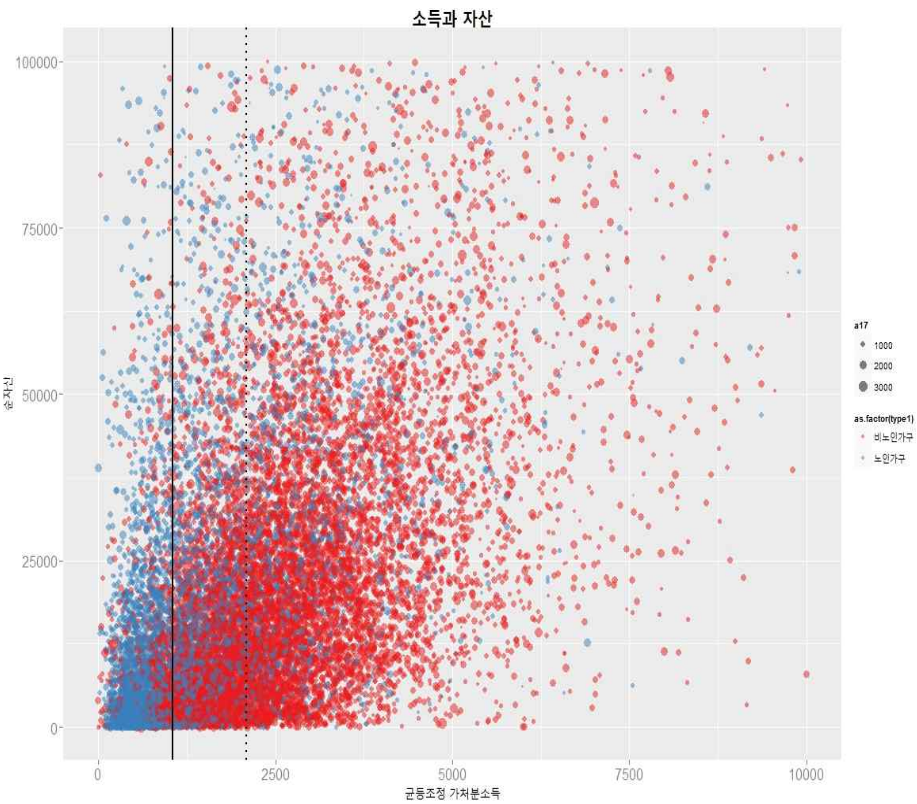

제 3 장

연령집단 및 가구유형별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 심층 분석

3 연령집단 및 가구유형별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 심층 분석

제1절 분석목적 및 내용

□ OECD의 『2015 Pension at a Glance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49.6%)은 OECD 평균(1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과거 선진국들의 경우도 우리처럼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냈지만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점차 완화 됨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공적연금사각지대가 넓고(2014.12 기준 가입대상의 49.4%)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들이 아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 39%까지 10%p를 낮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확대와 기초연금도입을 들고 있음

○ 이를 증명하듯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증가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48.1%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44.8%로 크게 감소

- 이는 1999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된 이후 가입자가 10년의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후부터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2014년 7월부터 20만원으로 확대된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공적연금의 실질적 노인빈곤완화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표 3-1〉 연간 상대적 노인빈곤율

(단위 : %)

연도	상대적빈곤율		
	전 체	근로연령인구 (18~65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2006	14.3	11.1	42.8
2007	14.8	11.1	43.6
2008	15.2	11.5	44.1
2009	15.3	11.5	45.9
2010	14.9	11.3	46.3
2011	15.2	10.8	47.6
2012	14.6	10.0	47.2
2013	14.6	9.6	48.1
2014	14.4	9.3	47.4
2015	13.8	8.5	44.8

자료: 통계청(KOSIS), 2016.9.14.일 추출

□ 본 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노인들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빈곤율의 양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 2015)를 사용하였으며 소득을 시장소득,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으로 각각 구분하고, 기준선을 30%, 40%, 50%, 그리고 60%로 각각 나누어 분석

○ 분석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을 성별, 연령대, 가구주여부, 가구유형, 공적연금수급여부, 그리고 거주지에 따른 집단별 빈곤율을 측정분석 함

○ 또한 집단별 인구비율이 노인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상대적 기여도를 함께 살펴봄1)

- 상대적 기여율은 특성별 빈곤율(A)에 특성별 집단의 점유비율(B)을 곱해 도출한 절대적 기여수준(A×B)을 전체 빈곤율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도출함

-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빈곤율 이더라도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전체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며 이는 빈곤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집단을 파악할 수 있음

1) 절대적 기여도=특성별 빈곤율×특성별 집단의 전체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대적 기여도=절대적 기여도/전체 빈곤율

□ 2절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준선에 해당하는 가구균등화한 소득액과 노인특성별 구성비율을 살펴보고 성별, 연령대별, 가구주여부별, 가구유형별, 공적연금수급여부별, 그리고 거주지별로 노인빈곤율과 상대적 기여율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

제2절 분석결과

1. 기준선 및 구성 비율

□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은 동일한 중위소득비율을 적용할 경우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보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경상소득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보험료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냄[2)]

○ 시장소득의 중위소득 30%, 40%, 50% 그리고 60%에 해당하는 상대빈곤 기준선은 720만원, 960만원, 1,200만원 그리고 1,440만원임

○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30%, 40%, 50% 그리고 60%에 해당하는 상대빈곤 기준선은 750만원, 1,000만원, 1,250만원 그리고 1,550만원임

○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30%, 40%, 50% 그리고 60%에 해당하는 상대빈곤 기준선은 684.9만원, 913.1만원, 1,141.1만원 그리고 1,369.7만원임

2)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수당 등이 해당되고 비소비지출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이 해당됨

〈표 3-2〉 상대빈곤 기준선

(단위: %, 만원)

소득종류	비율	기준선
시장소득	30%	720.0
	40%	960.0
	50%	1,200.0
	60%	1,440.0
경상소득	30%	750.0
	40%	1,000.0
	50%	1,250.0
	60%	1,550.0
가처분소득	30%	684.9
	40%	913.1
	50%	1,141.4
	60%	1,369.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성 58%, 남성 42%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기노인은 57.8%이며,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의 비율은 42.2로 전기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노인이 비가구주인 비율은 19.4%이며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80.6%로 노인 비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음

○ 노인 단독가구는 21.1%, 노인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은 36.0%, 비노인가구주와 함께 사는 노인은 6.8%, 자녀와 동거하지만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15.2%, 자녀동거하면서 노인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18.5%, 그리고 기타는 2.4%임

○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노인비율은 47.1% 수준이며, 비수급 가구의 비율은 52.9%로 비수급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3)

○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29.2%이고 비수도권 거주비율은 70.8%로 비수도권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남

3)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부부가구에는 비수급자노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자에 비해 수급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3〉 노인 특성별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성		42.1
	여성		58.0
전후기 노인	전기		57.8
	후기		42.2
가구주여부	노인비가구주		19.4
	노인가구주		80.6
가구유형	노인 단독 가구		21.1
	부부 가구	노인 배우자	36.0
		비노인 배우자	6.8
	자녀 동거	노인 가구주	15.2
		비노인가구주	18.5
	기타		2.4
공적연금수급여부	수급		47.1
	비수급		52.9
거주지	수도권		29.2
	비수도권		70.8
전체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2. 성별 노인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기여율

□ 전체 노인의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의 노인빈곤율이 낮게 나타나며, 가처분소득에서는 더 낮은 빈곤율을 나타냄

○ 중위소득의 30%, 40%, 50% 그리고 60%를 기준선으로 할 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45.7%, 54.1%, 60.1%, 66.4%수준이며, 경상소득의 경우 29.7%, 41.3%, 49.1%, 58.6%로 감소했고, 가처분소득에서는 27.8%, 39.8%, 47.1%, 55.7%로 더 감소하여 가장 낮은 수준임

□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여성빈곤율이 남성빈곤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에서 빈곤율은 감소하지만 성별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 시장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30%, 40%, 50% 그리고 60% 적용시 남성은 41.8%, 51.1%, 57.5%, 64.8%이며, 여성은 48.5%, 56.4%, 62.1%, 67.6% 수준으로 여성의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경상소득의 경우에도 남성 24.1%, 35.7%, 43.8%, 54.5%, 여성은 33.8%, 45.5%, 53.0%, 61.6%로 여성의 빈곤율이 여전히 높지만 시장소득에 비해 빈곤율은 감소하면서 남녀차이는 확대됨

○ 가처분소득에서는 남성은 22.4%, 34.2%, 41.9%, 51.1%, 여성은 31.8%, 43.9%, 50.9%, 59.1%로 여성의 빈곤율이 여전히 높지만 시장소득 보다도 빈곤율은 감소하면서 남녀차이는 더욱 확대됨

〈표 3-4〉 성별 노인빈곤율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	40%	50%	60%	30%	40%	50%	60%	30%	40%	50%	60%
전체	45.7	54.1	60.1	66.4	29.7	41.3	49.1	58.6	27.8	39.8	47.1	55.7
남성	41.8	51.1	57.5	64.8	24.1	35.7	43.8	54.5	22.4	34.2	41.9	51.1
여성	48.5	56.4	62.1	67.6	33.8	45.5	53.0	61.6	31.8	43.9	50.9	59.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 노인 전체 빈곤율에 대한 성별에 따른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동일한 중위소득 수준에서는 여성의 상대적 기여도가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에서 남성의 상대적 기여도를 앞서고 있지만 기준선이 30%에서 60%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상대적 기여도는 낮아짐

○ 시장소득에서 여성의 상대적 기여도는 61.2%, 60.0%, 59.5%, 58.6%로 기준선이 3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 경상소득에서는 여성의 상대적 기여도가 65.6%, 63.4%, 62.2%, 60.5%로 경상소득 보다 다소 더 높아짐

○ 가처분소득에서 여성의 상대적기여도는 65.8%, 63.5%, 62.3%, 61.1%로 가장 높은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며 역시 기준선이 높아질수록 상대적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

○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의 빈곤율(8%p)과 점유율(5.2%p)이 모두 남성보다 높아 상대적 기여도(22.2%p)가 더 높게 나타남

〈표 3-5〉 성별 상대적 빈곤기여율

(단위: %)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빈곤기여율	상대빈곤기여율
시장소득	30%	남성	41.8	42.4	17.7	38.8
		여성	48.5	57.6	28.0	61.2
	40%	남성	51.1	42.4	21.6	40.0
		여성	56.4	57.6	32.5	60.0
	50%	남성	57.5	42.4	24.4	40.5
		여성	62.1	57.6	35.8	59.5
	60%	남성	64.8	42.4	27.5	41.4
		여성	67.6	57.6	38.9	58.6
경상소득	30%	남성	24.1	42.4	10.2	34.4
		여성	33.8	57.6	19.5	65.6
	40%	남성	35.7	42.4	15.1	36.6
		여성	45.5	57.6	26.2	63.4
	50%	남성	43.8	42.4	18.6	37.8
		여성	53.0	57.6	30.5	62.2
	60%	남성	54.5	42.4	23.1	39.5
		여성	61.6	57.6	35.5	60.5
가처분 소득	30%	남성	22.4	42.4	9.5	34.2
		여성	31.8	57.6	18.3	65.8
	40%	남성	34.2	42.4	14.5	36.5
		여성	43.9	57.6	25.3	63.5
	50%	남성	41.9	42.4	17.8	37.7
		여성	50.9	57.6	29.3	62.3
	60%	남성	51.1	42.4	21.7	38.9
		여성	59.1	57.6	34.1	61.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3. 연령대별 노인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기여율

□ 노인을 75세를 기준으로 전기노인(65세~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OECD의 관례를 따른 분류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전기노인들은 후기노인에 비해 경제활동능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음

○ 전기노인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국민연금가입이 이루어져 후기노인에 비해 공적연금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전기노인보다 후기 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고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에서 빈곤율은 줄어들지만 전후기노인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 시장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30%, 40%, 50% 적용시 전기노인 39.7%, 48.5%, 55.9%, 후기노인 54.2%, 62.0%, 66.2%로 후기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경상소득의 경우에도 전기노인 22.7%, 34.5%, 42.6%, 후기노인 39.5%, 51.0%, 58.2%로 후기노인의 빈곤율이 여전히 높지만 시장소득에 비해 빈곤율이 낮아졌으며 연령대별 차이는 확대됨

○ 가처분소득은 중위소득 30%, 40%, 50% 적용시 전기노인 21.1%, 33.0%, 40.5%, 후기노인 37.3%, 49.4%, 56.4%로 후기노인의 빈곤율이 여전히 높고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에 비해 빈곤율이 낮아졌으며 연령대별 차이가 확대됨

〈표 3-6〉 연령대별 노인빈곤율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	40%	50%	60%	30%	40%	50%	60%	30%	40%	50%	60%
전체	45.7	54.1	60.1	66.4	29.7	41.3	49.1	58.6	27.8	39.8	47.1	55.7
전기노인	39.7	48.5	55.9	63.0	22.7	34.5	42.6	53.6	21.1	33.0	40.5	50.3
후기노인	54.2	62.0	66.2	71.2	39.5	51.0	58.2	65.7	37.3	49.4	56.4	63.0

주: 전기노인:65세~74세, 후기노인: 75세 이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 연령대별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가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에서 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앞서고 있지만 기준선이 30%에서 60%로 올라갈수록 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높아짐

○ 시장소득에서 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50.8%, 52.4%, 54.3%, 55.5%로 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높고 기준선이 3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커지고 있음

○ 경상소득에서는 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가 44.7%, 45.7%, 50.8%, 55.5%로 시장소득에서 보다 다소 더 낮아졌으며 30%, 40%의 기준선에서는 후기노인

보다 상대적기여도가 낮아지지만 50%, 60%에서는 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높아짐

○ 가처분소득에서도 경상소득에서처럼 전기노인의 상대적기여도는 44.3%, 48.4%, 50.3%, 52.8%%로 경상소득에서보다도 더 낮은 상대적기여도를 나타냈으며 기준선이 3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

○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노인의 빈곤율이 후기노인보다 13.1%p 낮았지만 점유율이 17.0%p 더 높아 전기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5.6%p 더 높게 나타남

〈표 3-7〉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기여율

(단위: %)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빈곤기여율	상대빈곤기여율
시장소득	30%	전기노인	39.7	58.5	23.2	50.8
		후기노인	54.2	41.5	22.5	49.2
	40%	전기노인	48.5	58.5	28.4	52.4
		후기노인	62.0	41.5	25.7	47.6
	50%	전기노인	55.9	58.5	32.7	54.3
		후기노인	66.2	41.5	27.5	45.7
	60%	전기노인	63.0	58.5	36.8	55.5
		후기노인	71.2	41.5	29.6	44.5
경상소득	30%	전기노인	22.7	58.5	13.3	44.7
		후기노인	39.5	41.5	16.4	55.3
	40%	전기노인	34.5	58.5	20.2	48.7
		후기노인	51.0	41.5	21.2	51.3
	50%	전기노인	42.6	58.5	24.9	50.8
		후기노인	58.2	41.5	24.2	49.2
	60%	전기노인	53.6	58.5	31.3	53.5
		후기노인	65.7	41.5	27.3	46.5
가처분 소득	30%	전기노인	21.1	58.5	12.3	44.3
		후기노인	37.3	41.5	15.5	55.7
	40%	전기노인	33.0	58.5	19.3	48.4
		후기노인	49.4	41.5	20.5	51.6
	50%	전기노인	40.5	58.5	23.7	50.3
		후기노인	56.4	41.5	23.4	49.7
	60%	전기노인	50.3	58.5	29.4	52.8
		후기노인	63.4	41.5	26.3	47.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4. 가구주여부별 노인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기여율

□ 노인가구주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중에 가구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비노인가구주는 함께 사는 가구원중에서 가구주를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주가구 그리고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일부가 노인가구주에 해당함

□ 노인의 가구주여부별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빈곤율이 비노인 가구주의 빈곤율보다 월등히 더 높지만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에서 빈곤율은 감소하면서 차이가 감소

○ 시장소득의 경우 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은 55.9%, 65.0%, 71.0%, 76.7%이며, 비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은 11.0%, 17.1%, 23.1%, 31.3%로 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경상소득의 경우에는 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이 36.6%, 49.9%, 57.9%, 67.3%로 비노인가구주 6.3%, 12.2%, 18.9%, 28.9%로 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이 여전히 높지만 시장소득에 비해 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이 감소하고 비노인가구주 빈곤율과의 차이도 감소함

○ 가처분소득의 경우에서도 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이 34.2%, 48.0%, 55.7%, 64.3%로 비노인가구주의 빈곤율 6.2%, 11.9%, 18.0%, 26.6%보다 역시 더 높지만, 두 집단 모두 경상소득보다도 빈곤율이 줄어들고 노인의 가구주여부별 빈곤율 차이가 감소함

〈표 3-8〉 가구주여부별 노인빈곤율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	40%	50%	60%	30%	40%	50%	60%	30%	40%	50%	60%
전체	45.7	54.1	60.1	66.4	29.7	41.3	49.1	58.6	27.8	39.8	47.1	55.7
가구주	55.9	65.0	71.0	76.7	36.6	49.9	57.9	67.3	34.2	48.0	55.7	64.3
비가구주	11.0	17.1	23.1	31.3	6.3	12.2	18.9	28.9	6.2	11.9	18.0	26.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 가구주여부별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주의 상대적 기여도가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에서 비가구주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월등히 앞서고 있음

○ 시장소득에서 노인가구주의 상대적 기여도는 94.6%, 92.8%, 91.3%, 89.3%로 비가구주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상소득에서도 노인가구주의 상대적 기여도는 95.2%, 93.3%, 91.3%, 88.8%로 비가구주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처분소득에서도 노인가구주의 상대적 기여도는 95.0%, 93.2%, 91.3%, 89.2%로 비가구주노인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표 3-9〉 가구주여부별 상대적 빈곤기여율

(단위: %)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빈곤 기여율	상대빈곤 기여율
시장소득	30%	가구주	55.9	77.3	43.2	94.6
		비가구주	11.0	22.7	2.5	5.4
	40%	가구주	65.0	77.3	50.2	92.8
		비가구주	17.1	22.7	3.9	7.2
	50%	가구주	71.0	77.3	54.9	91.3
		비가구주	23.1	22.7	5.2	8.7
	60%	가구주	76.7	77.3	59.3	89.3
		비가구주	31.3	22.7	7.1	10.7
경상소득	30%	가구주	36.6	77.3	28.3	95.2
		비가구주	6.3	22.7	1.4	4.8
	40%	가구주	49.9	77.3	38.6	93.3
		비가구주	12.2	22.7	2.8	6.7
	50%	가구주	57.9	77.3	44.8	91.3
		비가구주	18.9	22.7	4.3	8.7
	60%	가구주	67.3	77.3	52.0	88.8
		비가구주	28.9	22.7	6.6	11.2
가처분 소득	30%	가구주	34.2	77.3	26.4	95.0
		비가구주	6.2	22.7	1.4	5.0
	40%	가구주	48.0	77.3	37.1	93.2
		비가구주	11.9	22.7	2.7	6.8
	50%	가구주	55.7	77.3	43.0	91.3
		비가구주	18.0	22.7	4.1	8.7
	60%	가구주	64.3	77.3	49.7	89.2
		비가구주	26.6	22.7	6.0	10.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5. 가구유형별 노인빈곤율

□ 가구유형별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배우자부부, 비노인 배우자부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순으로 빈곤율이 나타남

○ 시장소득의 경우 노인단독가구는 81.0%, 86.8%, 90.9%, 94.8%로 가장 높고 노인배우자 부부가구는 59.1%, 70.6%, 77.1%, 81.8% 그리고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에서는 33.6%, 46.6%, 54.8%, 64.9% 수준을 나타남

- 자녀동거 노인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24.3%, 31.8%, 38.7%, 47.0%이며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10.3%, 15.8%, 21.6%, 29.8% 수준이고 기타가구의 빈곤율은 69.7%, 73.7%, 77.7%, 82.9%를 나타냄

○ 경상소득의 경우 노인단독가구는 65.3%, 78.2%, 84.6%, 90.7%를 나타내고 노인배우자 부부가구는 34.4%, 50.8%, 60.3%, 70.9% 그리고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에서는 13.4%, 25.1%, 36.7%, 49.1% 수준을 나타냄

- 자녀동거 노인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14.6%, 22.2%, 28.0%, 37.7%이며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6.2%, 11.9%, 18.3%, 27.9% 수준이고 기타가구의 빈곤율은 36.5%, 50.2%, 57.0%, 69.6%를 나타냄

○ 가처분소득의 경우에서도 노인단독가구는 61.9%, 76.1%, 82.9%, 88.8%로 가장 높고 노인배우자 부부가구는 31.4%, 48.3%, 57.4%, 67.2% 그리고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에서는 12.6%, 23.8%, 35.0%, 45.0% 수준을 나타냄

- 자녀동거 노인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13.9%, 21.3%, 26.3%, 35.6%이며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6.1%, 11.5%, 17.4%, 25.5% 수준이고 기타가구의 빈곤율은 35.4%, 50.2%, 53.4%, 64.9%를 나타냄

〈표 3-10〉 가구유형별 노인빈곤율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	40%	50%	60%	30%	40%	50%	60%	30%	40%	50%	60%
전체		45.7	54.1	60.1	66.4	29.7	41.3	49.1	58.6	27.8	39.8	47.1	55.7
노인단독		81.0	86.8	90.9	94.8	65.3	78.2	84.6	90.7	61.9	76.1	82.9	88.8
부부 가구	노인 배우자	59.1	70.6	77.1	81.8	34.4	50.8	60.3	70.9	31.4	48.3	57.4	67.2
	비노인 배우자	33.6	46.6	54.8	64.9	13.4	25.1	36.7	49.1	12.6	23.8	35.0	45.0
자녀 동거	노인 가구주	24.3	31.8	38.7	47.0	14.6	22.2	28.0	37.7	13.9	21.3	26.3	35.6
	비노인 가구주	10.3	15.8	21.6	29.8	6.2	11.9	18.3	27.9	6.1	11.5	17.4	25.5
기타		69.4	73.7	77.7	82.9	36.5	50.2	57.0	69.6	35.4	50.2	53.4	64.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 가구유형별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배우자부부의 상대적 기여도가 월등히 높으며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에서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음

○ 시장소득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34.3%, 31.1%, 29.3%, 27.7%, 노인배우자부부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44.0%, 44.3%, 43.6%, 41.9%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경상소득에서도 노인단독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42.6%, 36.6%, 33.4%, 30.0%, 노인배우자부부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39.3%, 41.8%, 41.8%, 41.1%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가처분소득에서도 노인단독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43.1%, 37.0%, 34.1%, 30.8%, 노인배우자부부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38.4%, 41.3%, 41.5%, 41.0%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표 3-11〉 가구유형별 상대적 빈곤기여율

(단위: %)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기여율	상대기여율
시장소득	30%	노인단독	81.0	19.4	15.7	34.3
		노인배우자부부	59.1	34.0	20.1	44.0
		비노인배우자부부	33.6	7.0	2.3	5.1
		자녀동거노인가구주	24.3	15.7	3.8	8.3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10.3	21.7	2.2	4.9
		기타	69.4	2.2	1.5	3.3
	40%	노인단독	86.8	19.4	16.8	31.1
		노인배우자부부	70.6	34.0	24.0	44.3
		비노인배우자부부	46.6	7.0	3.3	6.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31.8	15.7	5.0	9.2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15.8	21.7	3.4	6.3
		기타	73.7	2.2	1.6	3.0
	50%	노인단독	90.9	19.4	17.6	29.3
		노인배우자부부	77.1	34.0	26.2	43.6
		비노인배우자부부	54.8	7.0	3.8	6.4
		자녀동거노인가구주	38.7	15.7	6.1	10.1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21.6	21.7	4.7	7.8
		기타	77.7	2.2	1.7	2.8
	60%	노인단독	94.8	19.4	18.4	27.7
		노인배우자부부	81.8	34.0	27.8	41.9
		비노인배우자부부	64.9	7.0	4.5	6.8
		자녀동거노인가구주	47.0	15.7	7.4	11.1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29.8	21.7	6.5	9.8
		기타	82.9	2.2	1.8	2.7
경상소득	30%	노인단독	65.3	19.4	12.6	42.6
		노인배우자부부	34.4	34.0	11.7	39.3
		비노인배우자부부	13.4	7.0	0.9	3.2
		자녀동거노인가구주	14.6	15.7	2.3	7.7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6.2	21.7	1.3	4.5
		기타	36.5	2.2	0.8	2.7
	40%	노인단독	78.2	19.4	15.1	36.6
		노인배우자부부	50.8	34.0	17.3	41.8
		비노인배우자부부	25.1	7.0	1.8	4.2
		자녀동거노인가구주	22.2	15.7	3.5	8.4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11.9	21.7	2.6	6.3
		기타	50.2	2.2	1.1	2.7
	50%	노인단독	84.6	19.4	16.4	33.4
		노인배우자부부	60.3	34.0	20.5	41.8
		비노인배우자부부	36.7	7.0	2.6	5.2
		자녀동거노인가구주	28.0	15.7	4.4	9.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18.3	21.7	4.0	8.1
		기타	57.0	2.2	1.2	2.5
	60%	노인단독	90.7	19.4	17.6	30.0
		노인배우자부부	70.9	34.0	24.1	41.1
		비노인배우자부부	49.1	7.0	3.4	5.9
		자녀동거노인가구주	37.7	15.7	5.9	10.1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기여율	상대기여율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27.9	21.7	6.1	10.3
		기타	69.6	2.2	1.5	2.6
가처분 소득	30%	노인단독	61.9	19.4	12.0	43.1
		노인배우자부부	31.4	34.0	10.7	38.4
		비노인배우자부부	12.6	7.0	0.9	3.2
		자녀동거노인가구주	13.9	15.7	2.2	7.9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6.1	21.7	1.3	4.7
		기타	35.4	2.2	0.8	2.8
	40%	노인단독	76.1	19.4	14.7	37.0
		노인배우자부부	48.3	34.0	16.4	41.3
		비노인배우자부부	23.8	7.0	1.7	4.2
		자녀동거노인가구주	21.3	15.7	3.3	8.4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11.5	21.7	2.5	6.3
		기타	50.2	2.2	1.1	2.8
	50%	노인단독	82.9	19.4	16.0	34.1
		노인배우자부부	57.4	34.0	19.5	41.5
		비노인배우자부부	35.0	7.0	2.4	5.2
		자녀동거노인가구주	26.3	15.7	4.1	8.8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17.4	21.7	3.8	8.1
		기타	53.4	2.2	1.2	2.5
	60%	노인단독	88.8	19.4	17.2	30.8
		노인배우자부부	67.2	34.0	22.8	41.0
		비노인배우자부부	45.0	7.0	3.1	5.6
		자녀동거노인가구주	35.6	15.7	5.6	1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25.5	21.7	5.5	10.0
		기타	64.9	2.2	1.4	2.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6. 공적연금수급별 노인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기여율

□ 공적연금[4] 수급별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수급가구보다 비수급가구의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소득에 비해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에서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시장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자는 42.5%, 51.6%, 58.9%, 65.9%였지만, 공적연금 비수급자는 48.4%, 56.3%, 61.2%, 66.8% 수준을 나타냄

○ 경상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자는 18.8%, 29.8%, 38.2%, 50.3%였지만, 공적연금 비수급자는 39.0%, 51.2%, 58.4%, 65.7% 수준을 나타냄

4)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을 포함

○ 가처분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자는 16.9%, 27.9%, 36.1%, 46.0%였지만, 공적연금 비수급자는 37.2%, 49.9%, 56.5%, 64.0% 수준을 나타냄

〈표 3-12〉 공적연금수급별 노인빈곤율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	40%	50%	60%	30%	40%	50%	60%	30%	40%	50%	60%
전체	45.7	54.1	60.1	66.4	29.7	41.3	49.1	58.6	27.8	39.8	47.1	55.7
수급	42.5	51.6	58.9	65.9	18.8	29.8	38.2	50.3	16.9	27.9	36.1	46.0
비수급	48.4	56.3	61.2	66.8	39.0	51.2	58.4	65.7	37.2	49.9	56.5	64.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 공적연금수급별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도가 비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보다 낮았지만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에서 그 격차가 점차 확대 됨

○ 시장소득에서 공적연금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42.8%, 43.9%, 45.1%, 45.7%로 비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상소득에서는 공적연금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29.2%, 33.2%, 35.8%, 39.5%로 시장소득보다 더 낮게 나타나 비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기여율의 격차가 확대됨

○ 가처분소득에서도 공적연금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29.2%, 33.2%, 35.8%, 39.5%로 시장소득보다 더 낮게 나타나 비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기여율의 격차가 확대됨

〈표 3-13〉 공적연금수급별 상대적 빈곤기여율

(단위: %)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빈곤기여율	상대빈곤기여율
시장소득	30%	수급	42.5	46.1	19.6	42.8
		비수급	48.4	53.9	26.1	57.2
	40%	수급	51.6	46.1	23.7	43.9
		비수급	56.3	53.9	30.4	56.1
	50%	수급	58.9	46.1	27.1	45.1
		비수급	61.2	53.9	33.0	54.9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빈곤기여율	상대빈곤기여율
	60%	수급	65.9	46.1	30.4	45.7
		비수급	66.8	53.9	36.0	54.3
경상소득	30%	수급	18.8	46.1	8.7	29.2
		비수급	39.0	53.9	21.0	70.8
	40%	수급	29.8	46.1	13.7	33.2
		비수급	51.2	53.9	27.6	66.8
	50%	수급	38.2	46.1	17.6	35.8
		비수급	58.4	53.9	31.5	64.2
	60%	수급	50.3	46.1	23.2	39.5
		비수급	65.7	53.9	35.4	60.5
가처분소득	30%	수급	16.9	46.1	7.8	28.0
		비수급	37.2	53.9	20.0	72.0
	40%	수급	27.9	46.1	12.9	32.3
		비수급	49.9	53.9	26.9	67.7
	50%	수급	36.1	46.1	16.6	35.3
		비수급	56.5	53.9	30.5	64.7
	60%	수급	46.0	46.1	21.2	38.0
		비수급	64.0	53.9	34.5	62.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7. 거주지역별 노인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기여율

□ 거주지역별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에서 노인빈곤율이 감소했으며, 거주지별 격차도 점차 줄어듦

○ 시장소득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37.5%, 45.4%, 50.5%, 57.1%였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51.5%, 60.3%, 67.0%, 73.0%로 비수도권 거주자의 노인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경상소득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24.4%, 35.0%, 41.5%, 50.4%였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33.5%, 45.8%, 54.5%, 64.4%로 비수도권 거주자의 노인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소득에 비해 빈곤율의 차이가 다소 줄어듦

○ 가처분소득의 수도권 거주자는 23.8%, 34.1%, 40.5%, 49.0%였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30.7%, 43.8%, 51.8%, 60.6%로 비수도권 거주자의 노인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별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남

〈표 3-14〉 거주지별 노인빈곤율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30%	40%	50%	60%	30%	40%	50%	60%	30%	40%	50%	60%
전체	45.7	54.1	60.1	66.4	29.7	41.3	49.1	58.6	27.8	39.8	47.1	55.7
수도권	37.5	45.4	50.5	57.1	24.4	35.0	41.5	50.4	23.8	34.1	40.5	49.0
비수도권	51.5	60.3	67.0	73.0	33.5	45.8	54.5	64.4	30.7	43.8	51.8	60.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 거주지별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가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에서 비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 보다 낮은 수준임

○ 시장소득에서 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34.1%, 34.8%, 34.9%, 35.7%로 비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상소득에서도 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34.1%, 35.2%, 35.1%, 35.7%로 비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가처분소득에서도 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35.5%, 35.6%, 35.7%, 36.5%로 비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5〉 공적연금수급별 상대적 빈곤기여율

(단위: %)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빈곤기여율	상대빈곤기여율
시장소득	30%	수도권	37.5	41.5	15.6	34.1
		비수도권	51.5	58.5	30.1	65.9
	40%	수도권	45.4	41.5	18.9	34.8
		비수도권	60.3	58.5	35.3	65.2
	50%	수도권	50.5	41.5	21.0	34.9
		비수도권	67.0	58.5	39.2	65.1
	60%	수도권	57.1	41.5	23.7	35.7
		비수도권	73.0	58.5	42.7	64.3
경상소득	30%	수도권	24.4	41.5	10.1	34.1
		비수도권	33.5	58.5	19.6	65.9
	40%	수도권	35.0	41.5	14.5	35.2
		비수도권	45.8	58.5	26.8	64.8
	50%	수도권	41.5	41.5	17.2	35.1
		비수도권	54.5	58.5	31.9	64.9
	60%	수도권	50.4	41.5	20.9	35.7
		비수도권	64.4	58.5	37.7	64.3

소득	기준선	유형	빈곤율	비율	절대빈곤기여율	상대빈곤기여율
가처분 소득	30%	수도권	23.8	41.5	9.9	35.5
		비수도권	30.7	58.5	17.9	64.5
	40%	수도권	34.1	41.5	14.2	35.6
		비수도권	43.8	58.5	25.6	64.4
	50%	수도권	40.5	41.5	16.8	35.7
		비수도권	51.8	58.5	30.3	64.3
	60%	수도권	49.0	41.5	20.3	36.5
		비수도권	60.6	58.5	35.4	63.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5

제3절 정책적 함의

□ 초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는 기존의 정책들이 노인을 동질한 인구집단으로 간주하고 노인들 간의 이질성을 간과한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노인의 성별, 연령, 가구주여부, 가구유형, 공적연금수급여부, 그리고 거주지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

□ 본 장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특성별 빈곤율과 함께 점유율을 고려한 빈곤에 대한 상대적기여도를 함께 살펴봄

○ 분석결과를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의 60%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점유율이 남성보다 높아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전기노인은 후기노인보다 빈곤율은 낮지만 점유율이 높아 상대적 기여도가 높았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음

○ 노인가구주는 비노인가구주보다 빈곤율과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 상대적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구유형별로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빈곤율과 점유율이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월등히 높아 상대적기여도도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공적연금비수급자의 빈곤율은 수급자보다 높고 점유율은 다소 높지만 비수급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수급자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거주자의 빈곤율과 점유율이 높아 비수도권거주자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효과적인 노인빈곤정책의 대상으로 여성, 후기노인, 노인가구주, 노인단독가구, 노인배우자부부가구, 공적연금 비수급자,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자에 해당하는 노인을 빈곤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제 4 장

노인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에 따른 노인빈곤 구성 심층 분석

4 노인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에 따른 노인빈곤 구성 심층 분석

제1절 분석목적 및 내용

1. 분석목적

□ 노인의 경제활동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은 노인의 빈곤을 결정하는 매주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최현수 외 2003)

○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는 빈곤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동시에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여부와 급여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소득 재분배 정책의 결과로 대상 가구에게 발생하는 공적이전소득 역시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시장소득)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 형태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이렇게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수준 그리고 빈곤은 상호인과성에 의한 내생성 문제에 도출되게 되고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방법론적 접근을 요구하게 함

□ 본장에서는 복잡한 방법론적 접근보다는 노인과 노인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함을 통해 그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함

○ 노인과 비노인 그리고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비교하여 노인빈곤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맥락의 고찰을 통해 노인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수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노인빈곤 구성의 차이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가 빈곤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

- 공적이전수준과 노인 빈곤층의 소득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적이전 수준의 중요도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의 특성 파악을 통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는 물론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둠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방법

□ 빈곤 측정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개인단위의 빈곤율과 가구단위의 빈곤율을 통해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에 따른 노인빈곤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빈곤율은 개인단위의 ‘빈곤율’을 의미하여 가구단위의 빈곤율의 경우 ‘가구 빈곤율’로 표기하였음

○ 개인단위의 빈곤율은 분석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빈곤규모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반면, 가구 빈곤율의 경우 노인의 속한 가구의 빈곤율과 노인가구의 유형별 빈곤율을 통해 노인빈곤 구성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게 함

○ 빈곤의 규모는 상대적 빈곤율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절대적 빈곤율을 활용할 예정임

- 상대적 빈곤율은 분석 자료의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의 중위값 50%를 기준으로(필요시 중위 40%와 60% 적용) 각각의 소득이 각각의 기준선 이하인 경우를 빈곤층으로 파악함
-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경우는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들을 동일한 비교선상에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적용한 가구균등화 지수를 활용하였음

- 절대적 빈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가구원수와 소득을 이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측정

□ 분석 자료

○ 통계청에서 매년 작성하는 마이크로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가구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가구원수 및 가구구성원 특성 등 가구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수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2014년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음

- 한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활용하였음

○ 빈곤율 도출에 있어 기준선 설정과 함께 기준선과 비교해야 할 가구소득의 구성 작업이 필요함

- 이는 정의되는 소득의 하위 소득 구성에 따라 빈곤율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구성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소득과 경상소득과 그리고 경상소득에서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파악하였음

- 가구 소득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표 4-1〉 가구 소득 구성 정의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요소소득(일차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양육수당+장애수당+기초생활보장급여+기타정부보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보훈연금, 체육연금 등)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 경상조세 - 사회보험료

나. 연구내용

□ 노인가구 분석

○ 노인빈곤은 노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문제이기도 함

- 경제활동은 개인단위로 조사되며 개인에 대한 특성 파악이 중요한 반면, 소득의 경우 대부분 가구 단위로 조사되었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경제활동은 개인단위로 분석하였고,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은 가구단위로 분석하였지만, 맥락과 필요에 따라 개인단위 분석을 실시하였음

○ 노인이 속한 가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노인이 속하는 가구의 가구원 구성형태에 따른 유형화 작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노인단독가구[5], 노인부부가구,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노인가구주가구), 비노인가구주가구(기타포함)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함

〈표 4-2〉 노인가구 유형별 집단구분

구분	노인가구 유형
1. 노인단독가구	가구원수 1인 & 가구원 연령이 65세 이상
2. 노인부부가구	가구원수 2인 & 부부 & 가구원 모두 노인
3: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가구원수 2인 & 부부 & 가구원중 한명만 노인
4: 자녀동거가구(노인가구주)	노인가구주 & 경제활동연령가구원 존재
5: 자녀동거가구(비노인가구주)	비노인가구주 & 노인 & 경제활동연령가구원 존재
6: 기타	0~5가 아닌 가구(본 분석에서는 4와 통합)
0: 비노인가구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없는 가구

□ 경제활동유형별 분석

○ 경제활동 특성은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종사상 지위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 유무로 구

5) 노인단독가구는 노인 1인으로 구성된 노인독거가구를 의미함

분),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방문교사등), 무직자 · 가사 · 학생 등, 15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별도로 실업자를 조사하지 않고 무직자 · 가사 · 학생 등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제활동비참가자(비취업자)로 파악하고 분석

제2절 분석결과

1.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노인빈곤

□ 종사상지위 및 경제활동상태 분포

○ 전체 집단에서 무직 · 가사 · 학생 등 비경제활동 집단의 비중이 3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용근로자의 비중(24.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 다음으로 임시일용근로자(9.4%)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7.6%)의 경우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집단에서 취업자의 비중은 47.8%, 비취업자의 비중은 52.2%인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 15세 미만 인구를 제외하면 취업자의 비중은 약 56.8%인 것으로, 비취업자는 약 43.2%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취업 비율은 29.4%로 비노인의 50.6%보다 약 2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세 미만을 제외한 경우 그 차이가 더 확대됨을 알 수 있음

〔그림 4-1〕 종사상 지위 현황(15세 미만 포함): 전체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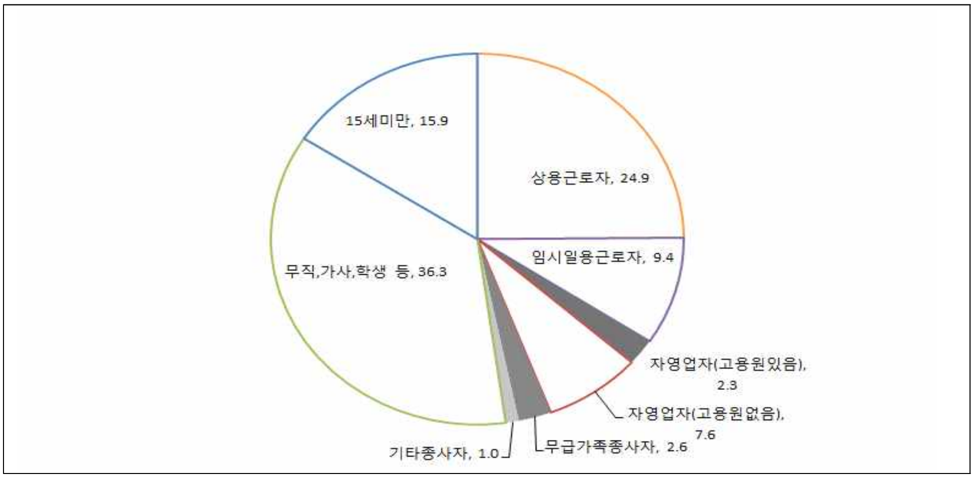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표 4-3〉 취업자 및 비취업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15세미만 제외		
	취업	비취업	계	취업	비취업	계
비노인	50.6	49.4	100.0	61.9	38.1	100.0
노인	29.4	70.6	100.0	29.4	70.6	100.0
계	47.8	52.2	100.0	56.8	43.2	100.0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빈곤율(가처분 소득 적용) 분포

○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빈곤율은 16.3%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47.1%로 비노인 빈곤율(11.7%)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대적 빈곤율은 노인이 비노인에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남

○ 노인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38.3%이지만, 노인 비취업자의 경우 이보다 약 12.5%p 더 높은 50.8%로 나타났으며 절대적 빈곤율의 경우 노인이 비노인에 비해 취업자의 빈곤율이 약 5.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노인 취업자에 비해 노인 취업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29.8%p, 비취업자간의 빈곤율은 노인이 약 33.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취업 여부에 따른 빈곤율: 가처분 소득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상대적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		
	비노인	노인	전체	비노인	노인	전체
취업자	8.5	38.3	10.9	4.5	25.0	6.2
비취업자	17.4	50.8	26.0	12.3	41.6	19.8
15세미만	10.7	-	10.7	7.2		7.2
전체 (15세 미만제외)	11.7 (11.9)	47.1	16.3 (17.4)	7.4 (7.5)	36.7	11.3 (12.1)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노인의 종사상 지위 현황

○ 위의 노인 빈곤율에서 취업자의 빈곤율이 비취업자의 빈곤율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비노인 취업자 빈곤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나는데, 이는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음

○ 노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종사상 지위 분포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노인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1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시일용근로자(8.4%)와 무급가족종사자(4.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노인 집단과는 매우 다른 구성이며,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형태가 대부분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5〉 종사상 지위 현황: 비노인, 노인, 전체

(단위: %)

구분	비노인	노인	전체		비노인	노인	전체
1. 상용근로자	28.1	3.8	24.9	취업자	55.5	12.8	52.0
2. 임시일용근로자	9.5	8.4	9.4		18.9	28.6	19.7
3. 자영업자(고용원 있음)	2.5	0.9	2.3		4.9	3.0	4.8
4.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7.0	11.7	7.6		13.9	39.9	16.0
5. 무급가족종사자	2.3	4.4	2.6		4.5	15.1	5.4
6. 기타종사자	1.2	0.2	1.0		2.3	0.6	2.1
7. 무직, 가사, 학생 등	31.1	70.6	36.3	전체	100.0	100.0	100.0
8. 15세미만	18.3	-	15.9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 노인과 비노인 모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용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노인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50.8%로 가장 높으며, 노인 전체 상대적 빈곤율 보다도 약 3.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절대적 빈곤율의 경우 노인과 비노인 모두에서 비취업 집단,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순으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순서는 유사했지만 집단 간 빈곤율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노인 종사상 지위 분포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다음으로 경제활동참여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임시일용직 노인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4-6〉 종사상 지위별 빈곤율(15세 미만제외): 가처분 소득적용

(단위: %)

구분		상대적 빈곤(중위 50%)			절대적 빈곤		
		비노인	노인	전체	비노인	노인	전체
취업	상용근로자	4.3	11.4	4.4	2.0	4.2	2.1
	임시일용근로자	20.9	50.8	24.4	12.2	34.1	14.8
	자영업자(고용원 있음)	3.7	5.7	3.8	1.8	4.7	2.0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9.7	39.6	15.7	5.1	25.4	9.2
	무급가족종사자	9.4	41.3	16.7	4.8	29.2	10.4
	기타종사자	8.2	18.3	8.4	4.6	10.1	4.7
비취업	무직, 가사, 학생 등	17.4	50.8	26.0	12.3	41.6	19.8
전체		11.9	47.1	17.4	7.5	36.7	12.1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노인의 종사상 지위별 빈곤감소 효과비교

○ 경제활동참여 상태에 따라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비교하여 빈곤감소효과를 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서 노인 상용근로자의 빈곤감소율이 각각 42%와

57.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소분을 파악할 경우 각각 8.2%p와 5.7%p로 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보다 그 감소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의 시장소득 빈곤율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적이전과 조세를 적용한 이후에는 빈곤율의 감소폭은 다른 종사상 지위 보다 크나 감소율은 적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노인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모두에서 비취업 집단보다 빈곤감소율과 빈곤감소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집단임을 확인 할 수 있음

- 한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역시 빈곤감소 효과를 볼 때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집단임을 알 수 있음

〈표 4-7〉 노인의 종사상 지위별 빈곤감소 효과

(단위: %, %p)

구분		상대적 빈곤(중위 50%)	절대적 빈곤
취업	상용근로자	42.0	57.8
		(8.2)	(5.7)
	임시일용근로자	23.8	32.2
		(15.8)	(16.2)
	자영업자(고용원 있음)	0.0	18.5
		(0.0)	(1.1)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23.8	36.4
		(12.4)	(14.5)
	무급가족종사자	28.3	33.0
		(16.3)	(14.4)
	기타종사자	15.0	30.4
		(3.2)	(4.4)
비취업	무직, 가사, 학생 등	20.4	27.7
		(13.0)	(15.9)
전체		21.7	29.2
		(13.0)	(15.2)

* 빈곤감소율 % : (시장소득빈곤율-가처분소득빈곤율)/시장소득빈곤율
** 빈곤감소분 (%p) : 시장소득빈곤율-가처분소득빈곤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 빈곤층의 종사상 지위 분포

○ 노인 빈곤층 중에서 취업자 비중은 약 23.9%이며, 비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1%임

- 노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처럼, 빈곤 노인층에서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노인 빈곤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취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노인 비빈곤층은 노인 빈곤층보다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노인 빈곤층과 노인 비빈곤층 취업자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인 노인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

〈표 4-8〉 빈곤여부에 따른 경제활동 및 종사상 지위 분포(15세 미만제외): 가처분 소득 50% 기준

(단위: %)

구분		비노인 빈곤층	노인 빈곤층	노인 비빈곤층
취업	상용근로자	12.4	0.9	6.3
	임시일용근로자	20.5	9.1	7.8
	자영업자(고용원 있음)	1.0	0.1	1.6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7.0	9.9	13.4
	무급가족종사자	2.2	3.9	4.9
	기타종사자	1.0	0.1	0.3
	소계	44.1	23.9	34.3
비취업	무직, 가사, 학생 등	55.9	76.1	65.7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공적이전 수준에 따른 노인빈곤

□ 균등화에 따른 소득 수준 비교

○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은 앞서 살펴본 개인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종사상지위와 달리 가구원간 공유 개념이 강한 소득에 대한 분석이므로 가구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함

○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 시킨 후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위소득을 산출하였음

- 균등화 이전과 이후의 소득 수준은 아래와 같음

〔그림 4-2〕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 수준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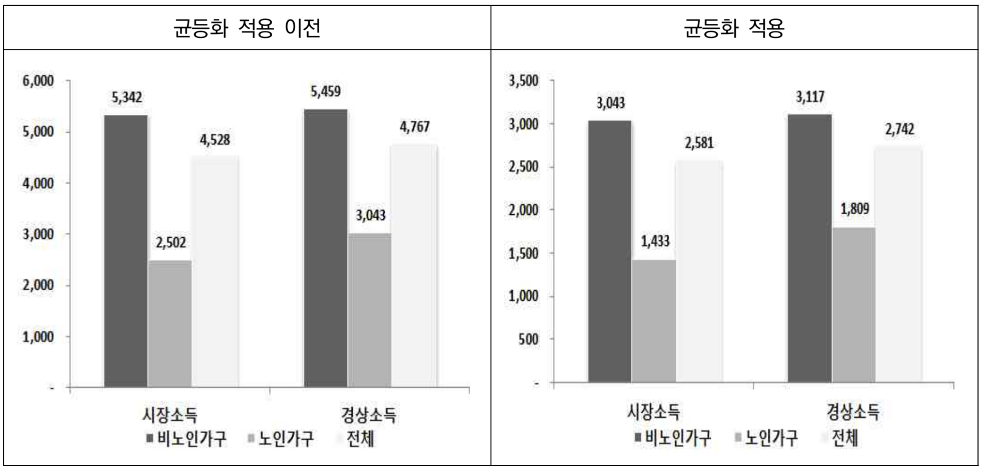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 유형별 경상소득과 균등화 경상소득의 평균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균등화 이전의 평균 경상소득은 비노인가구주 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비노인배우자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차이가 약 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균등화 적용 이후 경상소득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비노인가구주 보다 비노인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비노인배우자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균등화 적용 여부에 따른 가구유형별 소득 수준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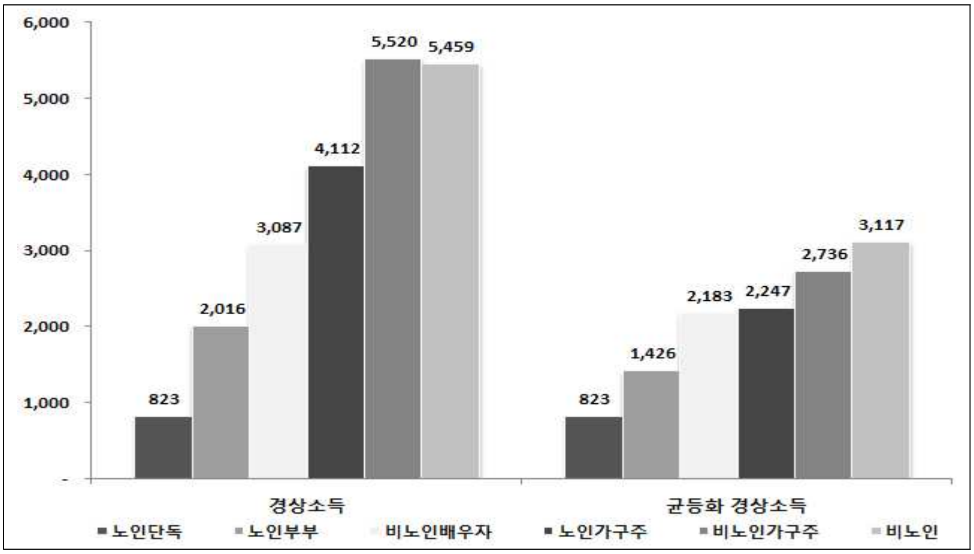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의 비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근로소득의 비중은 비노인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가구를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빈곤 상태인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인 15.6%에 불구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그 비중인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 상태인 비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체 소득(경상소득)의 60%가 넘어 낮은 수준의 근로소득이 주요한 문제점임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노인가구의 경우 낮은 근로소득의 비중과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의 수준이 핵심적인 문제임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비빈곤 상태의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의 합이 전체 소득의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여부는 노인들의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4-9〉 소득 구성 항목별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비빈곤		빈곤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근로소득	70.0	40.8	70.3	45.5	60.6	15.6
사업소득	23.8	22.6	24.1	25.0	13.8	9.7
재산소득	3.0	9.5	3.0	9.8	1.8	7.7
공적이전소득	2.4	20.8	2.0	16.4	17.6	44.0
사적이전소득	0.8	6.3	0.7	3.2	6.2	2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구성 현황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4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부부의 경우 역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노인배우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수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비노인가구원이 존재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의 큰 것으로, 이전소득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0〉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구성

(단위: %)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주	비노인가구주
근로소득	12.2	13.2	27.0	47.5	62.9
사업소득	10.0	22.4	27.4	22.5	25.3
재산소득	10.9	19.3	14.8	7.8	3.8
공적이전소득	43.3	33.9	26.7	18.8	7.0
사적이전소득	23.6	11.2	4.1	3.4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가구 유형별 상대적 가구빈곤율

○ 먼저, 전체 가구빈곤율은 20.9%로 개인단위의 빈곤율(16.3%)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구원수별 빈곤에서 1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에서 기인함

○ 한편, 비노인 빈곤율은 11.0%이며, 노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의 비곤율은 45.4%로 나타남

-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노인가구주의 경우 빈곤율이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 유형별 가구 빈곤율: 가처분 소득 적용 상대적 빈곤율(기준 중위소득의 50% 기준)

(단위: %)

전체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주	비노인가구주
20.9	11.0	45.4	82.1	56.0	31.5	27.9	14.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 유형별 및 빈곤여부(상대적 비곤)별 소득구성 현황

○ 빈곤상태인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의 비중이 두 번째로 비중인 높음

- 노인부부가구와 노인가구주가구의 경우도 빈곤상태인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비빈곤 상태인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그 비중이 빈곤상태인 노인단독가구보다는 낮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사적이전소득 역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빈곤인 경우 공적이전 다음으로 사적이전의 비중이 높으나 비빈곤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 빈곤 여부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구성 현황

(단위: %)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주		비노인가구주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근로소득	8.5	16.6	8.1	15.0	24.4	27.3	24.4	49.6	49.9	63.5
사업소득	4.9	16.1	12.5	25.8	12.3	29.3	9.8	23.6	19.0	25.5
재산소득	6.9	15.9	10.9	22.3	7.5	15.7	8.3	7.8	1.0	3.9
공적이전소득	50.8	34.2	43.5	30.6	38.5	25.3	42.7	16.7	23.9	6.2
사적이전소득	28.9	17.2	25.1	6.4	17.3	2.4	14.8	2.4	6.2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수준

○ 균등화가 적용된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을 빈곤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평균이 약 217만원인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약 93만원 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양육수당, 기타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 기타보조금의 경우 노인가구가 약 66만원, 비노인가구가 약 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기타보조금의 주요 항목 중 장애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살펴보면, 장애수당은 비노인가구가 평균 11만원을 노인가구가 평균 약 21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노인가구가 약 21만원, 비노인가구가 약 11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공적이전이 발생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들 모두 포괄하여 계산

〔그림 4-4〕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균등화 적용)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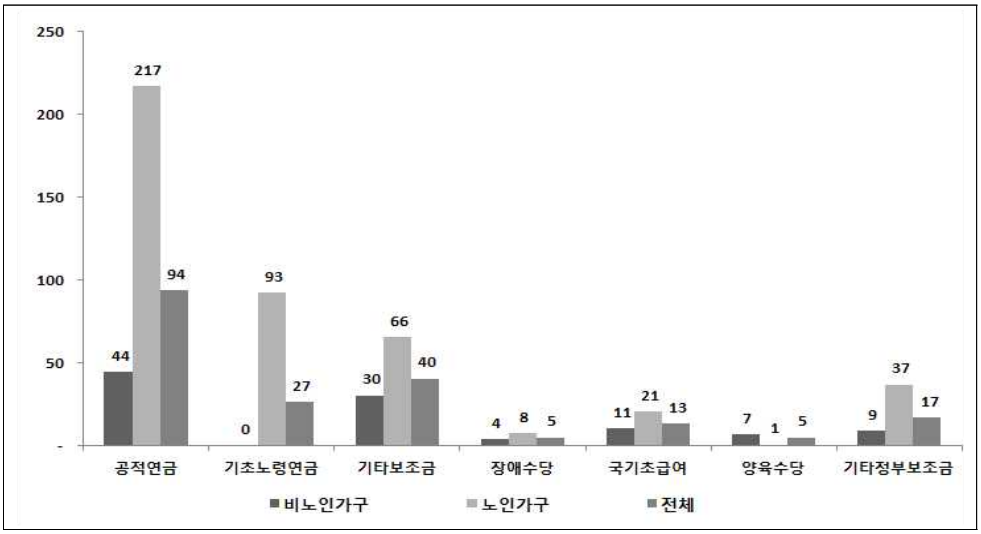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구성

○ 빈곤 노인가구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이 4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 비노인가구의 경우 기타 보조금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58%)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앞에서 소득구성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4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이전소득의 구성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빈곤 노인가구에서 공적연금이 25.8%로 그 비중이 기초노령연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그 비중이 약 74%로 공적이전소득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비빈곤 노인가구의 전체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이전소득의 세부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와 관련 깊은 공적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3〉 공적이전 구성 현황

(단위: %)

구분		빈곤		비빈곤		전체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공적연금		20.9	25.8	69.0	73.8	59.4	57.8
기초(노령)연금		0.2	48.9	0.0	12.6	0.0	24.7
기타보조금		78.9	25.3	31.0	13.6	40.6	17.5
	장애수당	8.9	3.3	4.5	1.4	5.3	2.0
	기초생활보장	58.0	14.9	3.0	0.8	14.1	5.5
	양육수당	2.6	0.1	10.8	0.2	9.1	0.2
	기타정부보조금	9.4	7.0	12.7	11.2	12.0	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 유형별 공적이전소득 비중

○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빈곤상태인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이 50%가 넘으며, 비빈곤 상태의 노인단독가구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구성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다가, 공적연금의 비중이 기초노령연금 비중에 약 2.7배에 달할 정도로 공적연금이 공적이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노인 부부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연금소득임을 알 수 있음

- 반면, 빈곤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노인단독가구과 유사하게 공적이전소득의 절반이상을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빈곤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이 공적이전소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비중이 전체공적이전의 3.9%에 불과한데 이는 빈곤상태인 노인 단독가구의 20.6%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임
  - 노인부부가구는 (상대적)빈곤상태의 가구라도 공적연금 수급 비중이 높으며, 부부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음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는 노인부부가구와 비노인배우자 가구 등 가구 구성이 가구원이 2인이 부부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14〉 노인가구 유형별 공적이전소득 현황

(단위: %)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주	비노인가구주
공적연금		37.4	63.3	81.6	68.0	42.8
기초(노령)연금		37.9	23.1	7.8	14.6	36.3
기타보조금		24.7	13.5	10.6	17.3	20.9
	장애수당	1.5	1.6	0.7	3.0	4.2
	기초생활보장	13.5	1.4	1.0	5.7	4.6
	양육수당	0.0	0.1	0.0	0.2	0.8
	기타정부보조금	9.7	10.5	9.0	8.4	1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노인 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등에 양육수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구원정보가 2015년3월 1일기준이지만 소득 등의 정보는 2014년 1년간의 정보이기 때문임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표 4-15〉 노인빈곤층과 노인비빈곤층의 가구유형별 공적이전 구성 현황

(단위: %)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주		비노인가구주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공적연금		20.1	69.0	30.4	79.7	57.4	86.2	23.7	78.1	15.3	47.4
기초노령연금		53.3	9.9	51.6	9.0	25.0	4.5	36.0	9.8	50.7	33.8
기타보조금		26.6	21.1	18.0	11.3	17.6	9.3	40.3	12.1	34.0	18.8
	장애수당	1.9	0.8	2.9	0.9	2.3	0.4	9.9	1.5	7.2	3.7
	기초생활보장	20.6	0.4	3.9	0.1	4.5	0.3	24.1	1.6	19.6	2.1
	양육수당	0.0	0.1	0.2	0.0	0.0	0.0	0.1	0.2	0.3	0.9
	기타정부보조금	4.1	19.8	11.0	10.3	10.8	8.6	6.2	8.9	6.8	12.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노인 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등에 양육수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구원정보가 2015년3월 1일기준이지만 소득 등의 정보는 2014년 1년간의 정보이기 때문임
자료: 가계금융복지 조사 원자료

□ 공적이전소득별 수급자의 빈곤율 분포

○ 아래 그림은 공적이전 종류별 급여 수급자들의 빈곤상태를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적용하여 그 규모를 나타냄

- 좌측의 그림은 각 급여의 수급자중 시장소득 적용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해당 급여의 수급자중 얼마만큼이 공적이전소득 수급이 이루어지기 전 취약계층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우측의 경우 경상소득 즉, 공적이전 이후의 급여 수급자중 빈곤층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경상소득적용 중위 50%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별 수급자 중

잔존하는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공적이전소득이 각 급여별 수급자 빈곤완화에 미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음

〔그림 4-5〕 공적이전수급자의 빈곤율 현황(균등화 적용): 주요 공적이전 항목별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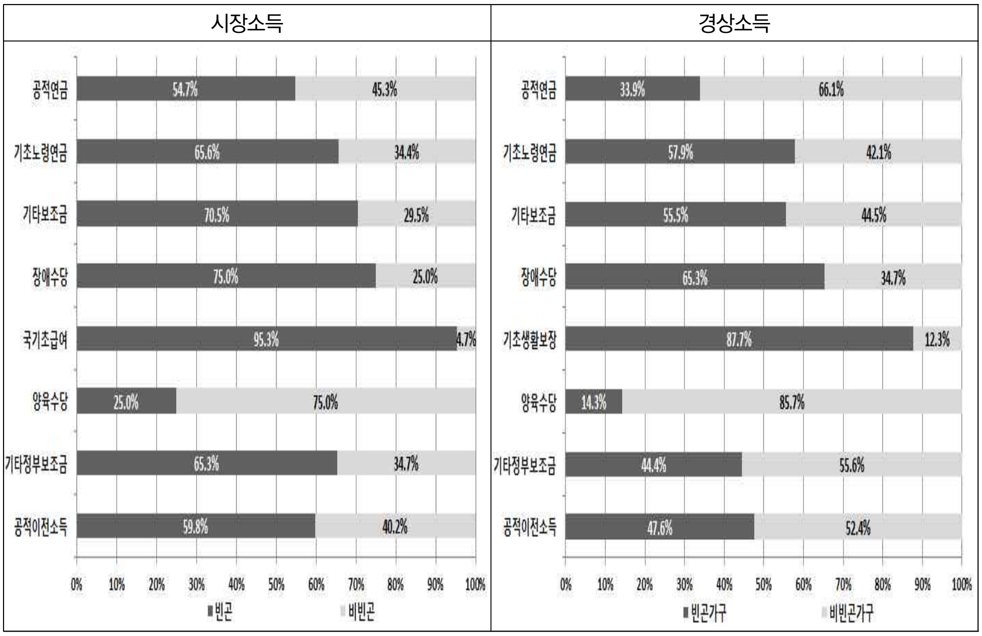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공적이전소득의 노인 (가구)빈곤율 감소 효과

○ 노인 가구빈곤율 감소효과(상대적 빈곤)

- 시장소득 적용 중위 40% 기준 빈곤율은 50.2%로 나타난 반면, 경상소득 적용 중위 40% 기준 빈곤율은 38.6%로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 빈곤율을 약 23.2%(11.7%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중위 50% 기준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약 19.4%(10.9%p) 감소 시킨 것으로, 중위 60% 기준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13.5%(8.3%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표 4-16〉 노인 가구빈곤율 감소 효과: 상대적 빈곤 2014년

(단위: %, %p)

구분	노인 가구빈곤율		노인 가구빈곤율 감소효과	
	시장소득(A)	경상소득(B)	감소율: (A-B)/A	감소분: A-B
중위 40%	50.2	38.6	23.2	11.7%p
중위 50%	56.3	45.4	19.4	10.9%p
중위 60%	61.7	53.4	13.5	8.3%p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 빈곤율 감소효과(개인단위, 상대적 빈곤)

- 경상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공적이전소득)는 중위 40% 기준 약 2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공적이전소득과 조세·사회보험료)는 이보다 약 2.9%p 높은 26.5%로 나타남
- 중위 50% 기준의 경우 경상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18.4%,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이보다 약 3.3%p높은 21.7%로 나타남
- 본 연구의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이 아닌 상대적 빈곤율이기 때문에 조세와 사회보험료 지출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경상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것으로 파악됨

〈표 4-17〉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 상대적 빈곤 2014년

(단위: %, %p)

구분	빈곤율			빈곤율 감소효과	
	시장소득(A)	경상소득(B_	가처분소득(C)	(A-B)/A (A-B%p)	(A-C)/A (A-C%p)
중위 40%	54.1	41.3	39.8	23.6 (12.8%p)	26.5 (14.3%p)
중위 50%	60.1	49.1	47.1	18.4 (11.0%p)	21.7 (13.0%p)
중위 60%	66.4	57.2	55.7	13.9 (9.2%p)	16.0 (10.7%p)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아래 그림은 독거노인(노인단독가구)과 가구원이 2인 이상인 비독거 노인의 절대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독거노인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은 상승하는 추이를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독거 노인의 경우 2015년에는 빈곤율이 하락하였지만 다소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두 소득간 비곤율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그림 4-6〕 노인빈곤율 추이(절대적 빈곤) :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18〉 노인 빈곤율 감소효과 추이: 절대적 빈곤

(단위: %, %p)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단독(독거노인)	26.3	22.3	20.0	23.9	29.6	37.4
	(19.0)	(15.5)	(13.5)	(16.5)	(21.6)	(27.7)
비독거 노인	32.0	29.0	30.3	30.9	36.1	44.6
	(13.8)	(12.7)	(12.7)	(13.4)	(16.3)	(19.7)
전체노인	30.4	27.1	27.2	28.5	33.9	41.9
	(14.8)	(13.2)	(12.9)	(14.1)	(17.6)	(21.8)

주: 2011년 비노인배우자 변수 값 없음
자료: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원자료

○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0년 독거노인의 빈곤감소효과가 26.3%에서 2015년 37.4%로 증가하였고 비독거 노인의 경우도 2010년 32%에서 2015년 44.6%로 증가하였음

- 비독거 노인의 빈곤감소효과(빈곤감소율)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빈곤감소분(시장소득빈곤율-가처분소득빈곤율)은 독거노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유형별 가구빈곤율 감소 효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빈곤감소효과가 2013년부터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2014년 7월부터 6개월간 지급)과 기초연금이 1년간 온전히 지급된 2015년에 감소효과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집단의 경우도 2015년 빈곤감소효과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한 기초연금의 효과와 2015년 7월에 도입된 맞춤형 급여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노인단독가구의 빈곤감소 효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유형의 가구들 보다 빈곤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에 들어서는 노인가구주가구나 비노인가구주가구 보다 빈곤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9〉 노인 가구빈곤율 감소효과 추이: 절대적 빈곤

(단위: %, %p)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가구	29.7	25.8	25.3	28.0	33.3	40.6
	(13.8)	(11.9)	(11.5)	(13.4)	(17.1)	(21.1)
1.노인단독	26.3	22.3	20.0	23.9	29.6	37.4
	(19.0)	(15.5)	(13.5)	(16.5)	(21.6)	(27.7)
2.노인부부	31.9	31.8	31.8	30.2	35.3	45.0
	(20.2	(20.5)	(20.5)	(19.3)	(22.3)	(27.8)
3.비노인배우자	41.5	-	31.5	45.7	45.9	56.6
	(14.9)	-	(10.2)	(16.6)	(18.0)	(19.0)
4.노인가구주	34.1	24.5	27.3	32.3	32.9	36.4
	(12.8)	(7.8)	(8.3)	(10.9)	(11.7)	(13.4)
5.비노인가구주	19.3	19.6	15.3	16.1	38.2	37.0
	(3.0)	(3.2)	(1.8)	(1.9)	(5.5)	(4.8)
비노인가구	14.0	14.7	13.5	16.0	16.4	20.7
	(1.3)	(1.3)	(0.9)	(1.1)	(1.2)	(1.4)
전체가구	24.0	22.1	22.1	24.9	29.1	36.1
	(4.5)	(4.2)	(4.0)	(4.8)	(6.0)	(7.6)

주: 2011년 비노인배우자 변수 값 없음

자료: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원자료

제3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본 장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노인빈곤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취업 및 종사상 지위 관련

○ 먼저, 노인 중 취업자 비중은 29.4%로 노인을 제외한 비노인 집단의 취업자 비중인 50.6%보다 약 21.2%p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종사상 지위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의 경우 취업자의 약 40%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비노인의 약 56%가 상용근로자인 것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13.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노인과 비노인의 종사상 지위의 구성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노인빈곤율은 47.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여부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빈곤율은 38.3%, 비취업자는 50.8%로 나타나 비취업자의 빈곤율이 취업자의 빈곤율보다 약 12.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노인을 제외한 비노인 집단의 취업자 빈곤율보다는 약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취업자의 빈곤율이 비노인 취업자 빈곤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에 있어 노인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12.8%에 불과한데 비해 비노인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55.5%에 달함
- 반면, 노인의 경우 상용직근로자보다 근로여건이 불안정한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비노인에 비해 약 1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없는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의 비중과 돈을 받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사상 지위별 빈곤율을 살펴보더라도 노인 임시일용근로자의 빈곤율 50%를 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빈곤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공적이전 관련

○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의 비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은 비노인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노인 비빈곤 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45.5%로 가장 높지만 빈곤가구는 이전소득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빈곤여부는 이전소득과 함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중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가구유형별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지만,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비노인인 경우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빈곤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빈곤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17.2%), 노인단독가구에 속하는 비빈곤 노인은 근로능력 감퇴로 인한 소득감소를 주로 사적이전소득과 중 공공부조성 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적이전의 감소는 이들의 소득안정성에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빈곤여부에 따른 공적이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의 구성은 물론 전체 소득구성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의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가구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의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부부의 경우 공적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비노인배우자와 노인가구주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남
-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수급이 다른 가구유형들 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데, 빈곤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중 빈곤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약 20.6%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곤 노인부부의 경우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빈곤상태인 노인부부의 경우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음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수급가구의 구성을 살펴보아도 전체수급가주중 부부가구(노인, 비노인 모두 포함)의 비중은 약 6.3%에 불과함(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p.27.)

○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적용 절대적 빈곤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은 상승하는, 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빈곤의 주된 요인으로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의 증가를 꼽을 수 있는데, 최근 기초연금의 도입 등으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독거노인의 빈곤감소효과가 기초연금 도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때(특히, 빈곤 감소분),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면서(또는 매우 낮은 수준이면서), 근로능력을 보유한 가구원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사적이전과 공공부조성 급여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현금급여 적용범위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인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제 2 부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특수성을 고려한 노인빈곤실태 분석

제 5 장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의 통합적 분석

5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의 통합적 분석

제1절 분석 목적 및 내용

□ 분석목적 및 필요성

○ 소득(income)은 가구 복지(well-being)의 대리변수(proxy)로 가장 흔히 활용되지만, 자산(wealth) 또한 가구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중요한 만큼, 가구 복지의 포괄적 측정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인은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특히, 주택)은 상당한(income-poor, asset-rich)"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만큼, 이 부분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노인빈곤 경감대책 수립에 중요(여유진 외 2015a)
- 우리나라와 같이, 세대 간 사적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의 경우, 소득-자산의 분포가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 이와 같이,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노인의 복지수준과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접근 필요

○ 현대 복지국가의 가장 큰 기능은 계층별·생애주기별 소득의 재분배(분산)를 통해 개인과 가구가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생활을 보증하는 한편, 근로활동기에 누렸던 생활수준이 노령기에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

-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수명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복지국가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복지국가는 노후소득보장의 '다주화(multi-pilla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여유진 외 2015b)
- 일찍부터 노후소득보장의 다주화 혹은 다층화를 주장해 왔던 세계은행(World Bank)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기여급여, 소득연계기여 급여, 개

인 저축계좌 형태의 강제적 급여, 개인-고용주 연계 기여이면서 확정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띠는 급여, 건강·주택과 관련해서 소득의 가족 간·세대 간 완충의 형태를 띠는 급여 등 크게 5가지 범주의 다주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제시한 바 있음(Holzmann and Hinz 2005; Doling and Elsinga 2013, p.9 재인용)

- 최근 유럽연합의 「연금청서」(EU Green Papers on pensions)에서도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노인은 자가소유 주택에 거주한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주택을 보유할 자본을 소유함을 의미한다. 장관들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그들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EU Housing Ministers 1999: para 9; Doling and Elsinga 2013, p.9 재인용)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상대적 미성숙으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공적 연금이 성숙한다 하더라도 낮은 소득대체율과 높은 사각지대로 인해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높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사적 부양의식과 실제 부양률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노후 빈곤 예방과 생활 안정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소득과 더불어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대안 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인(가구)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가구의 소득과 자산 실태와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요컨대, 이 장에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가구주의 연령별) 소득과 자산 분포, 빈곤위험, 부채 현황, 소득과 자산 간의 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분석 자료 및 방법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 원자료

○ 생애주기의 구분6)

-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가용성 등을 감안하여 “가구주의 연령별”로 생애주기를 구분(OECD 연령구분 범주 사용), 25세 미만, 26~40세, 41~50세, 51세~65세, 66~75세, 76세 이상의 6개 범주로 구분하였음(별도의 언급의 없는 경우, 이하에서는 “가구주 연령별”을 “생애주기별”로 칭하고자 함)

○ 분석 단위 및 소득·자산 개념

- 소득 중심의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인구(개인) 단위 계측치를 주로 활용하나, 본 연구의 목적(생애주기별 소득·자산 분석)에는 가구 단위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가구 단위 계측치를 주로 산출함(단, 연령별 빈곤율의 경우 인구 빈곤율을 별도로 산출하였음)
- 소득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두 가지 범주가 활용되었으며,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가구균등화지수(가구규모의 제곱근)를 활용하여 1인 균등화된 소득도 함께 제시하였음
- 자산의 경우, 총소득과 여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소득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1인 균등화된 자산을 동시에 제시하였음

□ 주요 분석 내용

○ 생애주기별 소득-자산 분포 분석

- 상대 배율(전체 가구(인구) 평균을 100으로 할 때, 가구주 연령별 상대적인 소득·자산 배율)
- 5분위 분포(소득-자산의 교차표)
- 소득-자산 빈곤 실태 등

6) 필자의「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보고서에서는 생애주기를 가구 유형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가구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준거 가구유형을 설정할 경우 누락되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될 경우 각 가구유형이 생애주기를 대표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함.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유형 대신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를 구분하였음

○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의 통합 분석
- 소득 5분위별 자산 수준
- 과부채가구 비율
  • 부채가 총자산의 75%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
  • 부채가 연가처분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
- 소득과 자산의 순위상관계수 등

제2절 분석결과

1. 기초분석 결과

□ 노인인구의 분포

○ 먼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 중 28.7%는 노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구임
- 노인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노인 4명 중 약 3명 이상(77.3%)은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는 전체 노인 중 19.4%는 독거노인이며, 노인 인구의 40%는 노인부부가구(2인 모두 노인이거나 1인만 노인인 가구 포함)를 형성하고 있음. 즉, 노인 10명 중 약 6명은 1세대가구에 거주하고 있음
- 가구주의 연령별로 볼 때, 노인 인구의 86.9%는 가구주가 51세 이상인 가구에 속해 있음. 특히 73%의 노인이 66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에 속해 있어, 사실상 가구주가 66세 이상인 가구를 노인가구의 전형이라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생애주기별 가구규모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41~50세에 3.55명으로 가장 가구규모가 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6세~75에에는 2.07명, 75세 이후에는 1.63명으로 줄어듦

〈표 5-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의 비율 및 노인의 분포

(단위: %)

노인유무	비율	가구 유형		노인인구의 분포
노인 없음	71.3			
노인 있음	28.7	노인가구주 여부	노인 비가구주	22.7
			노인 가구주	77.3
			계	100.0
		가구유형	노인단독가구	19.4
			노인부부가구	34.0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7.0
			자녀동거_노인가구주가구	15.7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가구	21.7
			기타	2.2
			계	100.0
		가구주의 연령	~25세	0.1
			26~40세	3.6
			41~50세	9.4
			51~65세	13.9
			66~75세	45.0
			76세~	28.0
			계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1〕 생애주기별 가구 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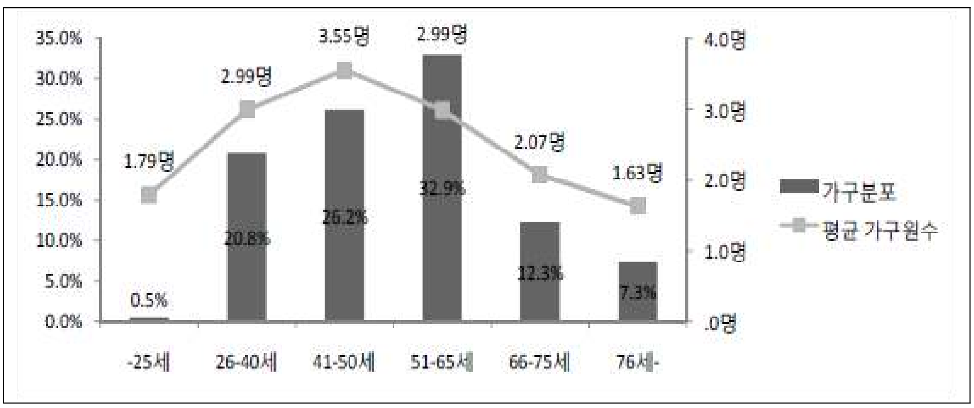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상태

○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연령 이후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급격한 퇴거가 발생한다는 것. 즉, 농경사회에서와는 달리 급격한 소득의 단절 구간이 발생. 이를 대체 내지 완충하고자 하는 것이 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보장 장치임

○ 실제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50세 가구주의 4.6%만이 비경활자이거나 무직자이지만, 51~65세 가구주의 14.4%, 66~75세 가구주의 50.9%, 76세 이상 가구주의 79.4%가 비경활 상태임

- 또한, 66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경우 일자리를 가지더라도 대부분 자영자이거나 임시직으로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평균
상용직	65.3	73.1	55.1	35.5	8.0	0.7	42.7
임시직	19.0	7.7	13.5	17.9	15.0	5.6	13.4
자영자 등	2.6	15.1	26.9	32.2	26.2	14.2	25.1
무직자, 가사, 학생 등	13.2	4.1	4.6	14.4	50.9	79.4	1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2〕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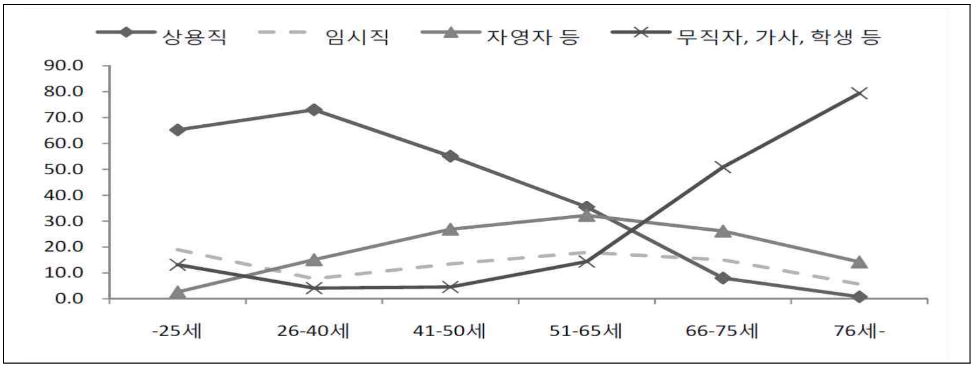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생애주기별 주거 점유 형태

○ 주택은 그 자체로 대부분 가구에서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며, 동시에 내구 소비재이기도 함

- 따라서 소득 기준으로 동일하게 빈곤 상태라 할지라도, 주거점유형태가 자가냐 임대냐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의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또한, 역모기지와 같이 자가 주택을 유동화(연금화)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여지가 있는 만큼, 특히 노후의 주거점유형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의 비율이 높아짐

- 청년 초기(25세 이하)에 자가의 비율은 12.5%에 불과하지만 이후 자가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가구주 연령이 41~50세에 이르면 자가 비율이 56.4%로 상승함
- 초기 노령기인 66~75세 가구주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71.6%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61.6%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76세 이상 후기 노령기의 자가 점유율 감소의 대다수는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 혹은 증여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기타’로의 전환이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76세 이상 노인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이전에 비해 10%p 감소하는 대신 기타 점유 형태가 7.0%에서 15.4%로 8.4%p 증가한 데서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함

〈표 5-3〉 생애주기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구분	~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평균
자가	12.5	41.8	56.4	67.1	71.6	61.6	58.9
전세	26.2	33.2	23.1	14.9	10.4	13.4	20.2
보증부월세	45.8	17.4	15.2	13.2	9.3	7.8	13.9
월세	3.8	1.1	1.3	1.6	1.8	1.8	1.4
기타	11.7	6.6	4.0	3.3	7.0	15.4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3〕 생애주기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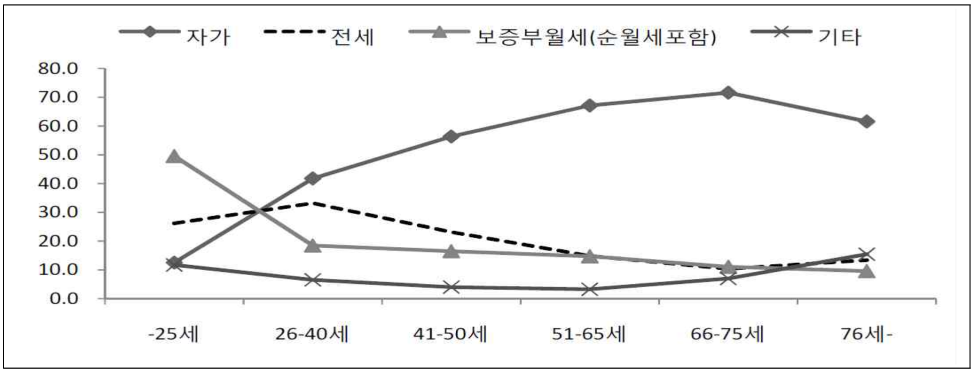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률

○ 주지한 바와 같이, 산업사회에서는 노후에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급격한 퇴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장치가 발달하여 왔음

-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사회수당적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 그리고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나, 수급률이나 급여의 수준이 선진 복지국가에 미치지 못함7)

7) OECD에서 발간되는 「Pension at a Glance」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소득 대비 60.1%로 OECD 32개국 평균인 86.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OECD 2015, p.169)

〈표 5-4〉 생애주기별 각종 소득보장 수급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단위: %)

구분	~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평균
공적연금	1.7	2.9	3.5	21.1	62.6	26.0	18.1
기초연금	4.7	3.8	8.2	8.6	59.2	75.3	18.6
기초보장	7.8	1.2	2.8	3.4	7.0	10.6	3.8
장애수당	0.0	1.4	2.7	4.1	5.7	7.9	3.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5〉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원/년간)

구분	~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평균
공적연금	216.9	526.2	395.9	892.6	735.0	826.6	780.7
기초연금	179.0	183.4	185.1	175.5	200.9	209.7	197.0
기초보장	631.4	538.9	552.4	560.5	362.4	359.2	471.9
장애수당	-	165.8	233.3	281.0	177.0	156.3	222.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 소득보장의 가장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의 수급률은 66~75세 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62.6%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26.0%에 불과

- 이는 공적 연금이 2008년에야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최근 노인 인구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임
- 하지만, 연금을 받는 가구의 평균 연금액은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가 월 68.9만원으로 66~75세 가구주 가구의 61.2만원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76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수급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기초연금 수령 가구의 비율은 66~75세 가구주 가구의 59.2%,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75.3%로 나타나 준보편적 급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며, 가구당 월평균 수령액은 16.4만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는 25세 이하 청년가구와 66세 이상 노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기초보장급여 수급가구임

- 이들 노인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30만원 내외로 청장년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2.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의 통합적 분석

가. 생애주기별 소득 및 자산의 빈곤 실태

□ 소득과 자산의 상대 배율

○ 생애주기별로 볼 때,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은 경제활동 시기인 26~65세 시기 동안 100 이상을 유지하지만, 66세 이후 급격히 하락함

- 66~75세 시기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의 평균 가구의 약 2/3 수준(65.4%)으로 감소하고, 76세 이상 시기에는 약 1/3 수준(36.5%)에 불과함

○ 하지만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인 축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자산의 경우 소득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여줌

- 균등화된 순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자산의 상대배율은 66~75세 시기에 124.6으로 최정점을 찍고, 76세 이상이 되면 90.5로 감소하지만 그 감소의 폭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즉, 노동시장으로부터 퇴거가 일어난 노후시기에 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주택을 비롯한 축적된 자산은 노인 후기 시기까지 ―약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비교적 온전히 유지됨을 알 수 있음

〔그림 5-4〕 생애주기별 소득과 자산의 상대 배율(가구 단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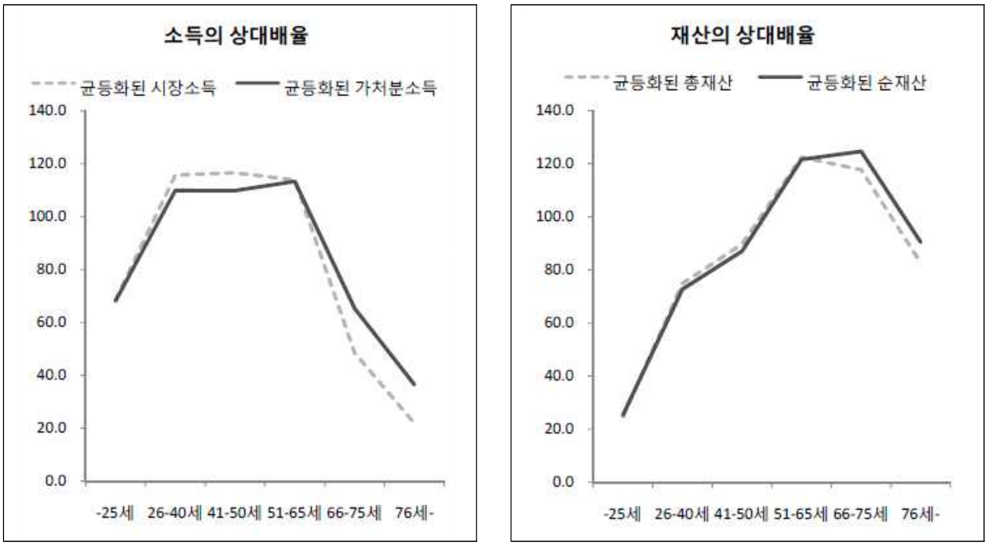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6〉 생애주기별 소득의 상대 배율(평균소득=100.0)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균등화된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25세	49.2	68.5	49.7	68.1
26~40세	109.4	115.7	105.2	109.9
41~50세	124.3	116.6	118.3	109.9
51~65세	115.3	113.9	115.0	113.4
66~75세	42.7	48.5	56.7	65.4
76세~	17.0	21.9	28.0	36.5
평균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7〉 생애주기별 자산의 상대 배율(평균소득=100.0, 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총자산	균등화된 총자산	순자산	균등화된 순자산
~25세	18.5	24.7	19.1	25.4
26~40세	75.5	74.9	73.0	72.8
41~50세	99.2	89.7	96.8	87.0
51~65세	124.8	122.4	124.5	121.6
66~75세	101.0	117.7	107.4	124.6
76세~	64.6	82.7	71.2	90.5
평균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소득과 자산 빈곤 수준

○ 그 결과, 생애주기상 노인기에 소득 빈곤율은 급격히 높아지지만, 자산 빈곤율은 완만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국가 간 비교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으로 볼 때, 66~75세 노인가구주 가구의 약 절반에 이르는 49.5%가 빈곤한 상태이며, 76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의 2/3 이상인 76.8%가 빈곤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전체 평균은 22.9%(가구 단위)로 인구 단위 빈곤율 16.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1인 균등화된 순자산 빈곤율의 경우 66세~75세 가구의 30.5%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 30.0%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 76세 이상 고령 노인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43.8%로 상당폭 상승하지만 소득 빈곤율의 증가만큼 극적이지는 않음

〈표 5-8〉 생애주기별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빈곤율(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중위 3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5세	12.5	21.3	25.3	35.0
26~40세	2.5	5.2	8.7	14.2
41~50세	3.8	7.6	13.1	19.4
51~65세	6.5	11.5	17.7	24.2
66~75세	27.6	41.3	49.5	59.0
76세~	57.3	70.7	76.8	82.8
전체	11.3	17.2	22.9	29.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9〉 생애주기별 균등화된 순자산 빈곤율(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중위 3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5세	64.2	73.5	78.8	80.9
26~40세	19.3	24.5	30.2	35.6
41~50세	19.7	25.0	30.2	34.8
51~65세	16.8	21.2	25.7	30.0
66~75세	21.0	25.6	30.5	34.8
76세~	32.5	37.5	43.8	48.3
전체	20.0	24.9	30.0	34.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5〕 생애주기별 소득과 자산 빈곤율(가구 단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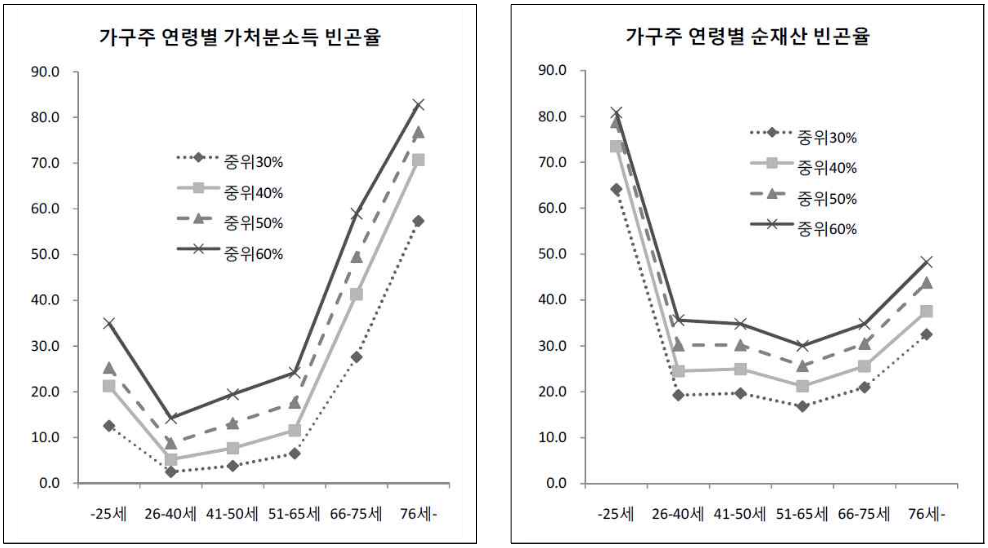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인구 단위의 연령별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 소득의 경우 26~40세 인구의 빈곤율이 8.1%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어서 18세 미만의 아동 빈곤율이 11.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이에 비해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43.7%, 76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55.9%로 노인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 평균(16.3%)의 각각 2.7배와 3.4배에 이름

〈표 5-10〉 연령별 빈곤율(인구 단위)

(단위: %)

구분	균등화된 중위가처분소득 50% 미만	균등화된 중위순자산 50% 미만
0~17세	11.4	27.9
18~25세	12.9	30.8
26~40세	8.1	25.4
41~50세	11.0	27.1
51~65세	16.2	23.6
66~75세	43.7	27.9
76세~	55.9	36.1
전체인구	16.3	27.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6〕 연령별 빈곤율(인구 단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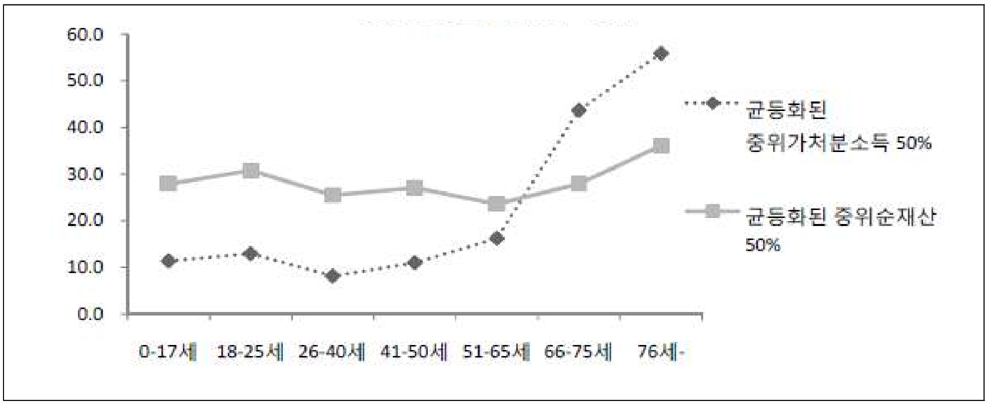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이에 비해, 자산 빈곤율의 연령 간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빈곤 수준을 보이는 51~65세의 빈곤율(23.6%)과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 수준을 보이는 75세 이상의 빈곤율(36.1%) 간의 편차는 12.5%로, 소득 빈곤율의 최소-최대 편차 47.8%p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나. 생애주기별 소득과 자산의 관계

□ 5분위 점유율

○ 연령대별 빈곤율 편차의 경우 소득 빈곤이 자산 빈곤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음. 이와 대조적으로, 분위별 5분위 점유율은 자산이 소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 하위 20% 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점유율은 5.1%이고 상위 20% 가구의 점유율은 42.7%임
- 이에 비해, 하위 20% 가구가 점유하는 자산의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상위 20%가 점유하는 자산의 비중은 59%에 이름
- 계층별로는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5-7〕 5분위 점유율(가구 단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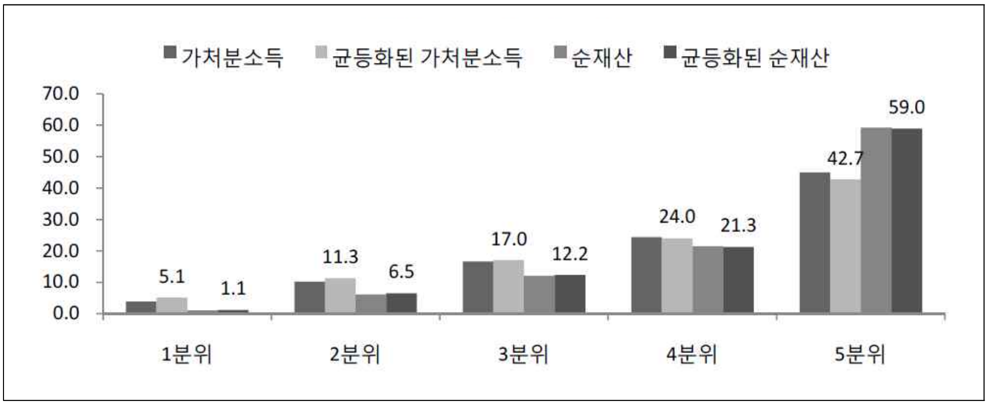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소득과 자산의 5분위 교차표

○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산 또한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상당하거나, 자산은 적지만 소득은 상당한 경우도 적지 않음. 특히, 전자는 노인에게서, 후자는 청년에게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5-8〕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5분위별 순소득 5분위 분포(가구 단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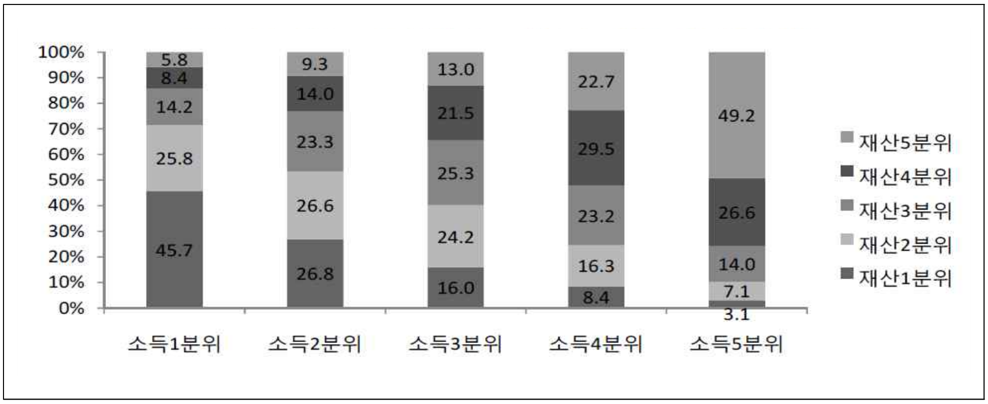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11〉 생애주기별 균등화된 소득 5분위와 순자산 5분위 간 교차표(가구 단위)

(단위: %)

가구주 연령	순자산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가구	1분위	9.2	5.4	3.2	1.7	0.6	20.0
	2분위	5.2	5.3	4.8	3.3	1.4	20.0
	3분위	2.8	4.7	5.1	4.6	2.8	20.0
	4분위	1.7	2.8	4.3	5.9	5.3	20.0
	5분위	1.2	1.9	2.6	4.5	9.8	20.0
	전체	20.0	20.0	20.0	20.0	20.0	100.0
25세 이하 가구주 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9.5	22.9	14.7	7.6	1.9	66.5
	2분위	2.6	11.4	2.6	3.1	0.0	19.7
	3분위	0.0	2.8	2.7	3.5	0.0	9.0
	4분위	0.8	0.4	2.2	0.0	1.4	4.9
	5분위	0.0	0.0	0.0	0.0	0.0	0.0
	전체	22.9	37.5	22.2	14.2	3.2	100.0
26-40세 가구주 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3.4	5.9	5.2	3.3	1.4	19.2
	2분위	2.0	5.3	6.7	5.4	2.8	22.2
	3분위	1.1	5.1	7.0	7.7	4.7	25.5
	4분위	0.3	2.2	5.1	6.4	7.2	21.2
	5분위	0.3	0.6	1.9	3.1	6.1	11.9
	전체	7.0	19.2	25.8	25.8	22.2	100.0
41-50세 가구주 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5.2	6.3	3.7	1.8	0.5	17.5
	2분위	2.5	5.7	6.0	4.0	1.4	19.6
	3분위	1.4	4.4	6.1	5.4	2.9	20.2
	4분위	0.6	2.4	5.1	8.0	6.5	22.4
	5분위	0.5	1.4	2.2	5.2	10.9	20.3
	전체	10.1	20.1	23.2	24.4	22.1	100.0
51-65세 가구주 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6.8	5.2	2.8	1.3	0.5	16.5
	2분위	3.7	5.2	4.5	2.8	1.4	17.5
	3분위	1.9	4.4	4.8	4.3	3.0	18.4
	4분위	1.3	2.9	4.3	6.4	5.9	20.8
	5분위	0.8	2.1	3.1	5.7	15.0	26.8
	전체	14.5	19.9	19.5	20.5	25.7	100.0
66-75세 가구주 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8.3	3.5	1.1	0.4	0.2	23.6
	2분위	11.7	5.9	2.5	1.1	0.3	21.4
	3분위	7.4	5.9	2.7	1.6	0.5	17.9
	4분위	4.4	4.7	3.3	2.6	1.4	16.5
	5분위	3.7	4.0	3.7	3.9	5.5	20.7
	전체	45.4	24.0	13.2	9.6	7.9	100.0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34.4	3.0	0.3	0.1	0.1	37.9
	2분위	20.0	2.9	1.0	0.2	0.0	24.1
	3분위	9.7	3.7	1.0	0.2	0.1	14.7
	4분위	6.8	2.7	1.4	0.4	0.3	11.5
	5분위	3.5	2.1	2.2	2.6	1.3	11.7
	전체	74.5	14.5	5.8	3.4	1.8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전체 가구를 통해 볼 때, 소득은 하위 20%에 속하지만 자산은 상위 40%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2.9%에 불과함

- 하지만 66세~75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은 하위 20%에 속하지만 자산은 상위 40%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8.1%에 이르며, 76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소득은 하위 20%에 속하지만 자산은 상위 40%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10.3%에 달함
- 즉, 생애 초기와 후기에는 중장년 시기에 비해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가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

□ 소득과 자산 간 상관관계

○ 실제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장년층 가구 즉 41~50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간 순위상관관계는 0.637로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 25세 이하 청년가구의 소득과 자산 간의 순위 상관관계는 0.4, 66~75세 가구 0.564, 76세 이상 가구 0.508로 중장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둘 간의 관계가 느슨함을 알 수 있음

〔그림 5-9〕 생애주기별 소득과 자산 간 순위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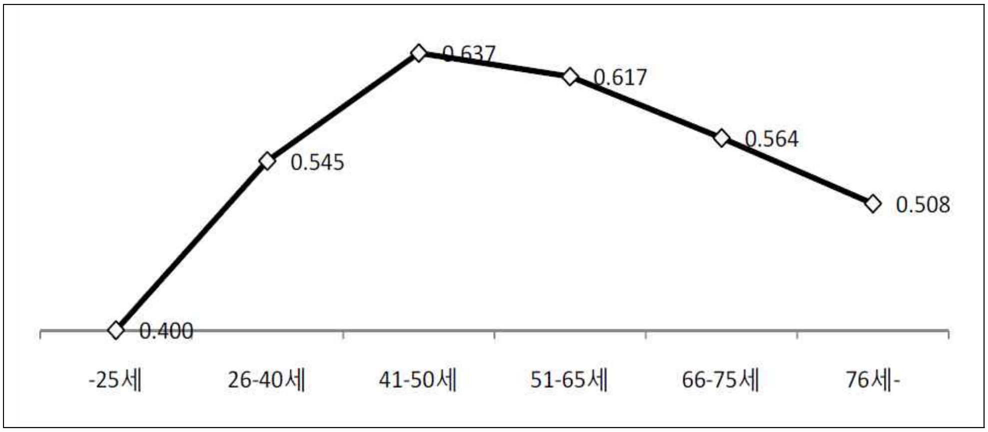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소득 대비 자산의 배율

○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순자산의 배율은 고령노인 가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 25세 미만 청년가구의 경우 순재산은 가처분소득의 2.9배에 불과하지만, 이후 점차 증가하여 51~65세 가구주 가구에 이르면 평균 배율은 8.9배까지 상승함
- 또, 고령 노인은 평균 소득이 매우 낮은 대신 평균 자산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아 가처분소득 대비 순재산의 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둘 간의 배율은 66~75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17.3배,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47.2배에 이름

〔그림 5-10〕 생애주기별 가처분소득 대비 순자산의 배율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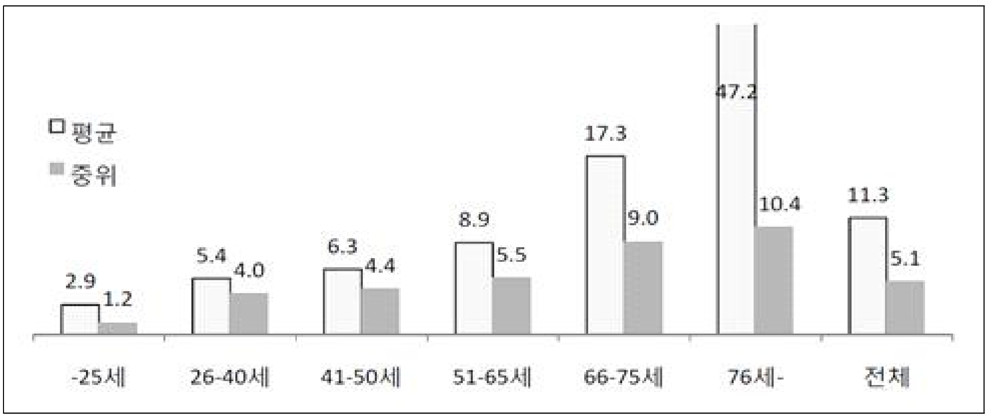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부채

○ 마지막으로, 생애주기상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내 집 마련 등으로 부채를 져야할 필요성 또한 높은 중장년 시기에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평균 70% 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신용도도 낮고 자산의 축적보다는 활용 단계에 접어든 노년기의 부채 가구 비율은 크게 감소하여 66~75세 가구주 가구의 42.2%,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24.4%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부채 가구의 비율도 이와 유사함

-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5세 미만 청년 가구의 경우 부채가 총재산의 75%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66~75세 노인 가구의 2.0%, 75세 이상 고령가구의 1.3%가 재산 기준 과부채가구임
- 하지만 부채가 연가처분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과부채가구는 노령기 접어들기 직전 시기인 51~65세 가구주 가구에서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66~75세 노인가구도 13.8%, 76세 이상 고령가구는 9.1%임
  - 소득 수준이 낮고 유동자산 또한 평균적으로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 기준 과부채가구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표 5-12〉 생애주기별 부채가 있는 가구와 과부채가구의 비율(가구 단위)

(단위: %)

구분	~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전체
부채있는 가구의 비율	39.1	69.8	73.8	69.3	46.2	24.4	64.3
부채가 총자산의 75%를 초과하는 가구	6.5	3.4	4.7	3.5	2.0	1.3	3.5
부채가 연가처분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가구	2.3	11.1	14.5	16.2	13.8	9.1	13.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3절 정책적 함의

□ 지금까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애주기별 소득과 재산의 수준, 빈곤실태, 5분위별 분포, 부채 상태 등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음

○ 노후 소득은 급격히 하락하지만 재산은 소득만큼 급격한 하락을 보이지는 않음. 이는 이 시기 노동시장에서의 급격한 퇴거와는 달리, 기존에 축적된 자산, 특히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노후 주택의 보유는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양 방향성의 함의 도출이 가능

○ 하나는 소득보장의 제공, 특히 기초보장의 수급과 관련하여 노인의 주택에 대한 재산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거주 주택은 자산의 의미도 있지만 내구소비재의 성격도 있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데 따른 복지의 저하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재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하나는 거주주택의 유동화를 통한 소득보장방안, 즉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주택을 유동화할 경우 7.4% 정도의 빈곤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여유진 외 2015b, p.150)
- 하지만 이는 매우 이념형적 가정에 바탕으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정서상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택연금이 급격히 확대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 경우 아직 노후소득보장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적 이전의 축소라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노후소득보장의 부수적 수단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주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소득과 재산의 '동행화', 즉 소득과 재산의 높은 상관관계는 중장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노년기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특히 선행 연구(여유진 외 2015a)에 의하면, 둘 간의 순위상관관계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소득과 재산의 빈곤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임
-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빈곤하다는 것은 생활에서 좀 더 다차원적 박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러한 복잡한 빈곤의 다이나믹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예컨대,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 (at risk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지표가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음
- 또 다양한 박탈의 영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함

제 6 장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및 자산 보유를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6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및 자산 보유를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제1절 분석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 자산(asset)은 소득(income)과 더불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변수임

○ 자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최저노후소득보장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임

-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부채 정도 등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함

○ 자산은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로 구성됨. 이중에서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비금융자산 중에서는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본 장은 자산을 중심으로 빈곤율을 산출하여 노인과 전체집단과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노인빈곤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소득의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으로 제시함

○ 분석대상이 되는 자산은 총자산, 순자산, 비금융자산(가계금융조사의 실물자산에 해당)[8], 부채, 주택가격이며, 비금융자산 중에서 비중이 높은 주택가격도 함께 분석함

- 총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합인 자산총액, 순자산은 자산액에서 부채액을 값이고,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의 변수는 각각의 변수명인

8)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액은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액으로 구분되며, 순자산은 자산액에서 부채액을 뺀 값임

금융자산, 실물자산, 거주주택가격임. 순자산은 음수 값이 존재함

○ 빈곤지표는 빈곤율을 제시함. 소득의 경우 상대빈곤율을 제시하며, 자산빈곤율은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모두 분석함

○ 연구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과 자산의 상대빈곤율은 개별 변수들의 중위값 50% 수준에서 결정함. 단, 자산 절대빈곤율의 기준선은 최저생계비 3개월분과 6개월분을 기준으로 함

- 자산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최저생계비와 같은 소득 빈곤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의 소득빈곤선을 곱하는 방법(이태진 외, 2005; 남상호, 2009, 이상은 외, 2011, 임병인, 2012)과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방법(Havenman&Woll, 2001,남상호, 2008; 남상호, 2010)이 있음. 전자는 자산절대빈곤율, 후자는 자산상대빈곤율로 볼 수 있음
  - 남상호(2009)는 6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여 6개월로 하고 최저생계비 6개월 미만 가구로 함. 이상은(2011)은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자산액을 이용함
  - 상대빈곤율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남상호(2008), 여유진(2016)은 총자산 혹은 순자산 등의 중위자산 50%를 기준으로 함
- 인구사회적 변수는 노인가구여부, 노인가구형태에 따라 차이점을 분석함
- 일반적으로 소득은 개인단위로 측정되고, 자산은 가구단위로 조사됨. 이 때 자산빈곤 산출을 위해 가구균등화지수 적용함
- 자료에서 소득은 유량의 속성을 가지므로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기준이고, 자산은 저량(stock)이므로 2015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소득은 연간 만단위이고 자산은 만원 단위임
- 개인빈곤율 산출을 위해 개인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함

제2절 분석 결과

1. 소득빈곤율

□ 분석 방법

○ 상대빈곤율 산출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수준에서 측정

○ 소득빈곤선 산출을 위한 중간값은 연평균 기준으로 평균값은 2,656.3만원이고 중위값은 2282.8만원임

○ 전체빈곤율은 16.3%, 노인빈곤율은 47.1%임

○ 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율은 '노인단독〉노인부부〉비노인배우자부부〉자녀동거'의 모습을 보임

- 노인단독와 노인부부의 빈곤율이 82.9%, 57.4%로 매우 높고, 비노인배우자부부 및 자녀동거노인은 낮은 모습을 보임
- 즉,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일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표 6-1〉 가처분소득 기준 가구유형별 노인의 상대빈곤율

(단위: %)

구분		상대빈곤율
가구유형별	노인단독	82.9
	노인부부	57.4
	비노인배우자부부	35.0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26.3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17.4
	기타	53.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자산빈곤율

가. 자산절대빈곤율

□ 분석 방법

○ 가구단위로 조사된 데이터임

○ 총자산, 순자산(음수 존재함),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주택가격을 분석함

○ 자산의 절대빈곤선은 최저생계비 3개월분 미만과 6개월분 미만으로 함

- 자료의 자산은 2015년 조사시점 기준임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617,281원)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3개월분과 6개월분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자산절대빈곤선은 각각 1,851,843원, 3,703,686원임

○ 균등조정 자산으로 변환함. 개인가중치 적용함

□ 3개월분 기준 자산절대빈곤율

○ 자산 종류에 따른 최저생계비 3개월분 기준의 빈곤율은 대체로 '주택가격〉비금융자산〉금융자산〉순자산〉총자산'의 모습을 보임

- 전체빈곤율은 주택가격과 비금융자산에서 높게 형성됨
- 반면에 노인빈곤율은 '주택가격〉금융자산≒비금융자산〉순자산〉총자산'의 모습을 보임. 즉, 노인의 3개월 기준 자산절대빈곤율은 총자산과 순자산은 낮게 형성되는 반면에,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은 높게 나타남
- 금융자산에서 두 집단의 빈곤율 차이(13.1%p)가 가장 크며, 주택가격의 경우 전체 빈곤율이 노인빈곤율에 비해 9%p 정도 높음

〈표 6-2〉 자산유형별 절대빈곤율: 최저생계비 3개월 기준

(단위: %, %p)

자산유형	전체빈곤율(A)	노인빈곤율(B)	격차(B)-(A)
총자산	1.6	4.7	3.1
순자산	4.4	6.0	1.6
금융자산	7.0	20.1	13.1
비금융자산	15.2	19.9	4.7
주택가격	37.3	28.3	-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주를 중심으로 자산 유형별 절대빈곤율을 살펴보면, '주택가격〉금융자산〉비금융자산〉순자산〉총자산'의 모습을 보임. 즉, 위에서 제시한 노인빈곤율과 유사한 모습을 보임

〈표 6-3〉 자산 유형별 노인가구주: 최저생계비 3개월 기준

(단위: %)

구분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
노인가구주	5.7	6.8	23.2	21.6	28.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의 가구유형별 자산의 절대빈곤율은 노인단독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소득빈곤율과 유사한 모습임

○ 대체적으로 소득빈곤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즉, 노인단독의 경우에도 소득빈곤율이 82.9%인데 반하여 총자산 기준의 최저생계비 3개월 기준의 자산절대빈곤율은 13.9%로 약 69%p 차이를 보임

○ 그리고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주택가격의 빈곤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다만,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빈곤율이 다른 자산유형에 비해 빈곤율이 높음

〈표 6-4〉 노인가구유형별 자산절대빈곤율: 최저생계비 3개월 기준

(단위: %)

노인가구유형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
노인단독	13.9	15.2	35.3	45.6	51.7
노인부부	3.7	4.3	22.4	13.7	20.4
비노인배우자부부	1.0	2.0	14.6	9.3	17.3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2.1	4.0	14.2	13.4	21.2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1.3	3.5	8.9	14.1	28.5
기타	3.2	3.8	18.0	25.8	28.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6개월분 기준 자산절대빈곤율

○ 자산 종류에 따른 6개월분 기준 빈곤율은 앞의 3개월분 기준 빈곤율 경향과 유사하며, 그 절대값만 증가함

○ 대체로 ‘주택가격〉비금융자산〉금융자산〉순자산〉총자산’의 모습을 보임

○ 3개월 기준과 유사하게 금융자산에서 두 집단의 빈곤율 차이(17.6%p)가 가장 크며, 주택가격의 경우에도 전체 빈곤율이 노인빈곤율에 비해 8.7%p 정도 높게 나타남

〈표 6-5〉 자산유형별 절대빈곤율: 최저생계비 6개월 기준

(단위: %, %p)

자산유형	전체빈곤율(A)	노인빈곤율(B)	격차(B)-(A)
총자산	2.9	6.9	4.0
순자산	5.7	8.3	2.6
금융자산	11.1	28.7	17.6
비금융자산	18.2	21.2	3
주택가격	37.4	28.7	-8.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주를 중심으로 자산 유형별 절대 빈곤율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주택가격〉비금융자산〉순자산〉총자산’의 모습을 보임

○ 최저생계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변동할 경우, 다른 자산은 큰 변화가 없으나, 금융자산의 빈곤율이 9.7%p 증가하여 가장 큰 빈곤율을 보임

〈표 6-6〉 자산 유형별 노인가구주: 최저생계비 6개월 기준

(단위: %)

구분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
노인가구주	8.2	9.2	32.9	22.7	28.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6개월 기준 자산절대빈곤율은 대체로 '노인단독〉노인부부'의 모습을 보임. 앞에서 제시한 소득빈곤율 및 3개월 기준 자산절대빈곤율과 유사한 모습임

○ 대체로 소득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3개월 기준 자산절대빈곤율보다는 빈곤율이 상승함. 특히, (기타가구 유형을 제외하고) 노인단독의 빈곤율 상승폭(평균 4.9%p)이 다른 가구유형 상승폭(평균 1.7-2.8%p)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

○ 자산 종류에서는 금융자산과 주택가격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노인단독 및 자녀동거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빈곤율이, 노인부부와 비노인배우자부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빈곤율이 높음. 즉, 자산의 절대빈곤선이 상승함에 따라 자산절대빈곤율은 주택가격과 더불어 금융자산에서도 높게 형성됨

〈표 6-7〉 노인가구유형별 자산절대빈곤율: 최저생계비 6개월 기준

(단위: %)

노인가구유형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
노인단독	19.5	20.6	47.8	46.6	51.7
노인부부	5.0	5.7	32.4	14.6	21.1
비노인배우자부부	1.4	2.2	21.2	10.8	17.5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3.7	5.5	20.7	15.2	21.8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2.6	5.2	13.7	16.3	28.7
기타	8.5	8.5	30.2	26.8	3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나. 자산상대빈곤율

□ 분석 방법

○ 가구단위로 조사된 데이터임

○ 총자산, 순자산(음수 존재함),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주택가격을 분석함

○ 자산 종류별 중위자산의 50% 값을 기준으로 함. 균등조정 자산으로 변환함. 개인가중치 적용함

○ 자산 유형별 중간값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8〉 자산 유형별 중간값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
자산 유형별 중간값 50%	6,626.0	5,242.5	1,520.3	4,548.8	2,598.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자산상대빈곤율

○ 자산 종류에 따른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율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전체빈곤율은 주택가격에서 41.1%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노인빈곤율은 금융자산(48.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주택가격과 비금융자산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전체빈곤율보다 낮은 반면에,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은 반대의 모습을 보임
- 금융자산의 경우 전체빈곤율(28.4%)과 노인빈곤율(48.4%)의 격차가 20%p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6-9〉 자산 유형별 자산상대빈곤율

(단위: %, %p)

자산유형	전체빈곤율(A)	노인빈곤율(B)	격차(B)-(A)
총자산	25.3	31.5	6.2
순자산	27.2	30.0	2.8
금융자산	28.4	48.4	20
비금융자산	32.9	32.0	-0.9
주택가격	41.1	38.1	-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주를 중심으로 상대빈곤율은 ‘금융자산〉주택가격〉총자산〉비금융자산〉순자산’의 모습을 보임

- 최저생계비 6개월분 기준의 자산절대빈곤율과 비교해보면, 비금융자산과 주택가격은 9.4~9.9%p 증가하는데 반하며,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은 20~24%p 정도 증가함
- 즉, 노인빈곤율은 자산절대빈곤보다 자산상대빈곤에서 크게 증가함

〈표 6-10〉 자산 유형별 노인가구주 상대빈곤율

(단위: %)

자산유형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
노인가구주	33.1	30.9	53.3	32.6	38.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의 가구유형별 자산의 상대빈곤율은 노인단독 가구가 월등히 높음. 앞에서 제시한 소득빈곤율 및 자산절대빈곤율과 유사한 모습임. 다만, 빈곤율의 절대값은 ‘소득빈곤율〉자산상대빈곤율〉자산절대빈곤율’의 모습을 보임

- (기타가구 유형을 제외하고) 노인단독의 빈곤율 상승폭(평균 25.8%p)이 다른 가구유형의 상승폭(평균 15~19.5%p)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

○ 자녀동거비노인가구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구유형에는 금융자산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것은 자산절대빈곤율에서 주택가격의 빈곤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성 있음. 즉,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금융자산의 자산상대빈곤율이 가장 높게 형성됨을 확인함

〈표 6-11〉 노인가구유형별 자산상대빈곤율

(단위: %)

노인가구유형	총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주택가격
노인단독	57.8	54.1	67.1	58.8	61.8
노인부부	25.0	22.1	53.1	23.9	32.6
비노인배우자부부	19.1	18.6	38.4	19.5	26.6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25.3	25.5	42.5	24.7	28.9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25.8	27.0	33.2	29.8	35.7
기타	37.4	38.3	54.0	36.3	39.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 소득자산 빈곤율 비교

□ 빈곤율 비교

○ 〔그림 6-1〕에 보이듯이 노인빈곤율은 ‘소득〉자산상대빈곤율〉자산절대빈곤율’의 모습을 보임

- 즉,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47.1%, 최저생계비 3개월 기준 자산절대빈곤율(총자산 기준)은 4.7%, 6개월 기준 자산절대빈곤율(총자산 기준)은 6.9%, 자산상대빈곤율(총자산 기준)은 31.5%임

〔그림 6-1〕 소득과 자산에 따른 노인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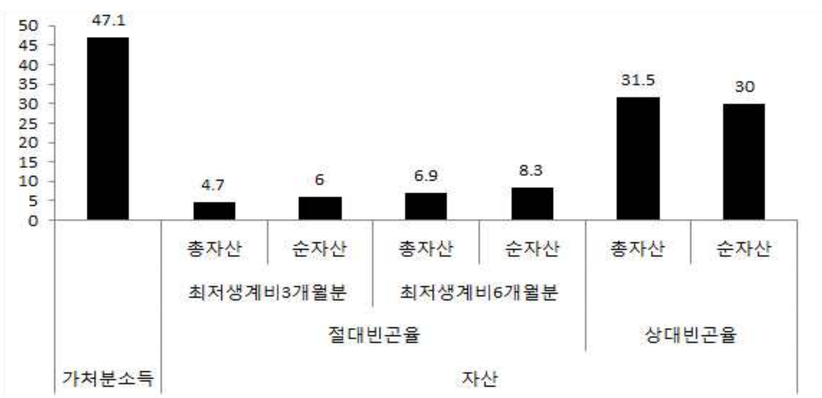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그림 6-2] 에서 보이듯이 노인빈곤율은 전체빈곤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양자의 격차는 '소득빈곤율>자산상대빈곤율>자산절대빈곤율'의 모습을 보임

- 즉, 소득빈곤율 격차는 30.8%p인데 반하여, 최저생계비 3개월 기준 자산절대빈곤율(총자산 기준) 격차는 3.1%p, 최저생계비 6개월 기준 자산절대빈곤율(총자산 기준) 격차는 4%p, 자산상대빈곤율 격차는 6.2%p 수준임

[그림 6-2] 소득과 자산에 따른 전체 및 노인빈곤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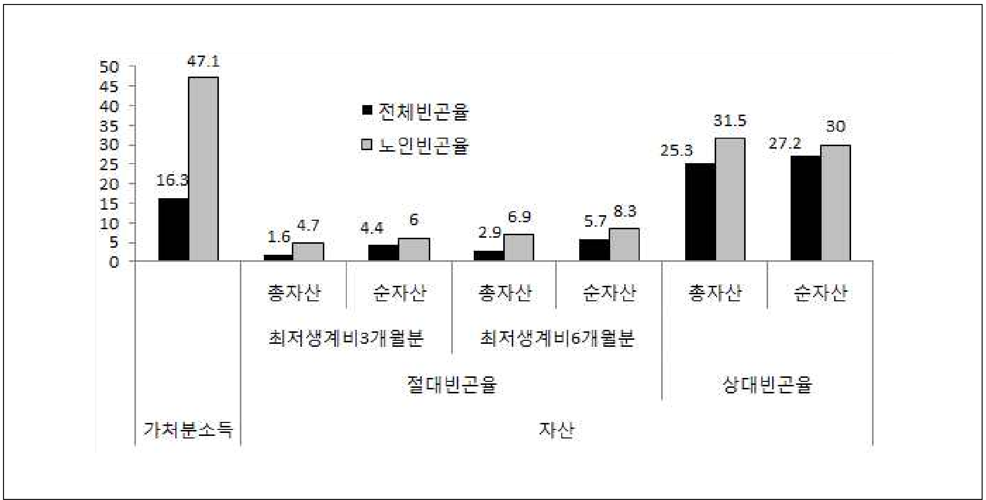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그림 6-3] 에서 보이듯이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모든 가구유형에서 소득빈곤율 보다는 자산빈곤율이 낮게 형성됨

○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 유형에서 소득 및 자산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빈곤율과 자산빈곤율의 격차(총자산 기준)는 노인부부 유형이 32.4%p로 가장 크고, 노인단독 유형은 25.1%p임. 자녀동거비노인가구 유형은 오히려 자산빈곤율이 소득빈곤율보다 8.4%p 높게 나타남

〔그림 6-3〕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의 상대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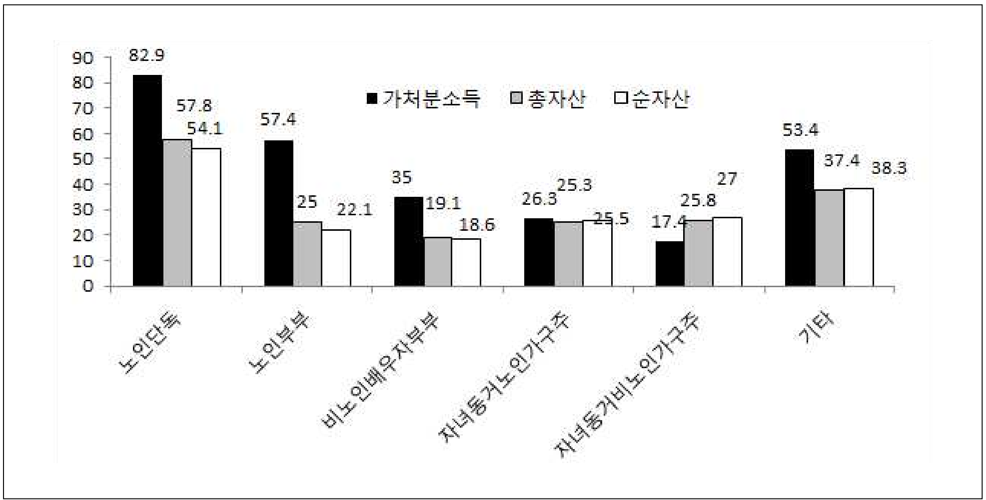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그림 6-4〕에서 보이듯이 자산유형에 따른 빈곤율은 상대빈곤율이 절대빈곤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산유형 중에서 주택가격의 상대빈곤율이 높음. 즉, 전체 및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각각 41.1%, 38.1%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전체빈곤율이 노인빈곤율보다 크게 나타남

○ 노인의 자산절대빈곤율에서는 금융자산(28.7%), 주택가격(28.7%), 비금융자산(21.2%)의 빈곤율이 높고, 총자산(6.9%)이나 순자산(8.3%)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노인 자산상대빈곤율 측면에서는 금융자산의 빈곤율(48.4%)이 가장 크고, 그 외의 자산은 비슷한 수준(30~38.1%)을 보임

〔그림 6-4〕 자산 유형에 따른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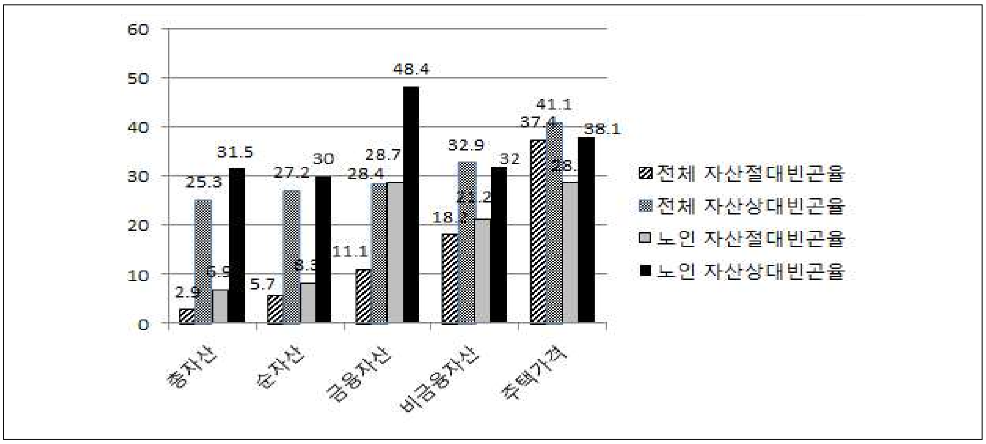

주: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6개월분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3절 정책적 함의

1. 노인빈곤율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함

□ 기존의 소득 중심의 노인빈곤율은 노인빈곤을 분석하는데 한계 있음

○ 총자산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노인의 자산빈곤율은 31.5%로써 전체대상의 자산빈곤율인 25.3%보다 6.2%p 높은 수준임. 즉 노인과 전체대상의 자산빈곤율 격차는 소득빈곤율 격차인 30.8%p에 비해 약 1/5 수준임

□ 향후 비물질요소를 포괄하는 빈곤 측정 필요함

○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빈곤 분석시, 소득과 더불어 자산을 포함하면 보다 폭넓은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 고려할 수 있는 노인빈곤 연구영역을 살펴보면, EU에서는 소득빈곤율과 더불어 물질적 궁핍 지수(material welling index)를 제공함

○ 그리고, 비소득요인 빈곤 수준을 다양한 방법(9-item, 13-item 등)으로 측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및 자산뿐만 아니라 비소득 요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빈곤연구가 추후 수행될 필요 있음

□ 일반적으로 노인빈곤율은 소득을 통해 산출되지만, 빈곤이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s)가 일정한 수준이나 상대적 위치에 미달하는 정도를 의미하다고 가정할 때, 빈곤율 산출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2. 범주화된 노인빈곤 정책의 필요성 제기됨

□ 노인 자산빈곤율은 소득빈곤율과 유사하게 자산의 유형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즉,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빈곤율 뿐만 아니라 자산빈곤율도 매우 높은 수준임.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일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경제적 가치 유형(소득, 자산)에 불문하고 경제적 취약성이 큰 집단으로 파악되며, 특화된 빈곤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됨

3. 가처분소득 확보 위해 자산 기반의 소득 환산 정책 확대 요구됨

□ 현 노인세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더불어 자산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소득빈곤율은 주로 공적연금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공적 이전소득의 부족에 기인한 필요 가처분소득의 미달에 기인함

- 노인의 소득원천 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30~40% 수준으로 선진국의 60~80%에 비해 낮음

□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구성 중 비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으며, 노인의 소득빈곤율보다 자산빈곤율이 낮음

○ 전체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의 격차 측면에서, 자산빈곤율 격차가 소득빈곤율 격차에 비해 1/5 수준임

○ 노인의 자산구성 중에서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은 약 80:20의 비율을 보임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노인의 자산구성 중에서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의 자산기반 소득 환산정책의 확대 가능성과 필요성 있음

○ 즉, 주택이나 농지와 같은 비금융자산만 소유하고 있는 노인 경우 주거보장(주택연금의 경우) 및 추가 소득 확보 가능하도록 함

○ 참고로, 노인의 금융자산 빈곤율이 다른 자산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것은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함

- 즉,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소득(유입단계), 금융자산(축적단계), 비금융자산(구축단계)으로 파악할 때, 비노인은 경제활동으로 획득한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축적하는 단계인데 반하여, 노인은 소득의 유입 보다는 마지막 단계인 비금융자산의 구축단계에 머문다고 볼 수 있음

제 7 장

소득인정액 방식 적용을 통해 노인의 소득·자산을 반영한 노인빈곤 분석

7

소득인정액 방식 적용을 통해 노인의 소득·자산을 반영한 노인빈곤 분석

제1절 분석목적 및 내용

1. 문제제기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분석적으로 알려져 있음

○ 높은 노인빈곤율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다른 OECD국가의 노인세대와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소득 창출 혹은 축적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음. 우리나라 현세대 노인은 저축보다는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자산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임

-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빈곤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자산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음(백화종, 강성호, 2011; 윤희숙, 권형준, 2013)

○ 여기서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한 빈곤율을 산출해 봄으로써 소득빈곤에 비해 자산을 고려한 빈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함

□ 자산을 고려한 빈곤율의 산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는 자산 그 자체를 고려한 분석임. 즉 현세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빈곤선을 구하고 자산금액 자체를 토대로 빈곤율을 산출하는 방식임(이주미, 김태완, 2014)

- 동 방식은 일명 Cut-off 방식으로 소득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같이 자산을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배열하고 이중 중위소득 혹은 평균소득의 일정 %를 빈곤선으로 간주하여 상대자산 빈곤율을 측정하게 됨
- 절대자산 빈곤율은 맞춤형 급여 도입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 수준으로 활용하였지만, 자산에는 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순자산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남상호, 2009), Brandolini, Magri and Smeeding (2010)는 자산빈곤을 ‘전기의 순자산이 예비적 저축률과 소득빈곤선 곱보다 작을 경우’로 규정하여 절대자산빈곤을 연소득빈곤선의 3개월분으로 하여 분석함(임병인, 2011)

○ 둘째는 자산이 큰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 자산 자체 보다는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환산율 개념을 적용하여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후 소득과 합산하여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의 공공부조제도와 다르게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정시 소득인정액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능력을 판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이 아닌 자산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는 개념임
- 소득인정액 개념 도입시 중요한 점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환산하느냐이며 이는 환산율 설정과 관련됨. Weisbrod and Hansen(1968)은 자산을 고려한 순자산의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소득-자산 환산의 방법을 제안한 바가 있음(정지운, 김주현, 2014; 600 재인용)[9]
- 자산을 환산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환산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며, 자산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지 등이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의 환산방식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함

2. 분석방법

□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자산빈곤 측정방식 중 첫째방식이 아닌 둘째 방식인 환산율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해 보고자 함[10]

○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첫째는 2000년 제도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9) 최근에는 Brandolini et al.(2010)과 정지운, 김주현(2014)의 연구에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함
10) 첫 번째 방식은 이미 다른 장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장에서는 환산율을 적용한 빈곤측정방식을 활용하고자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거주용 자산은 월 1.04%, 비거주용 자산은 월 4.17%, 금융자산은 월 6.26%, 자동차는 100%를 적용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6)
-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부채, 가구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급자를 선정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산별 종류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하되, 부채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방식은 이후의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두 번째 환산율은 현 세대 노인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인 기초연금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노인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 5%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세 번째는 귀속임대료(imputed rent) 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에 대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임

- 자가 혹은 전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 거주자에 비해 월세 부담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월세 거주자에 비해 적게 하게 됨. 귀속임대료는 자가 혹은 전세 거주자의 주거 비용을 주변 지역으로 시세로 환산하여 지출에 산입함으로써 전체 가구들에 대한 주거지출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임
- 자가 혹은 전세 거주자의 주거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환산율을 사용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 전환율을 활용하고자 함

□ 분석자료는 본 보고서의 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자 하며, 분석단위는 노인가구를 기준으로 이를 세분화(노인가구 유형별)된 기준에 의해 분석하고자함

제2절 분석결과

1.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율 적용시

□ 본 장의 분석 목적은 현 세대 노인은 비록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산을 고려하면, 빈곤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정이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환산율을 이용한 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을 보면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중위 40%는 40.8%, 중위 소득 50%는 47.1%, 중위소득 60%는 51.9%로 소득 기준 가구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비노인가구의 자산을 활용한 가구빈곤율은 각각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17.9%, 22.5%, 26.8%로 나타나 노인 가구빈곤율에 비해서는 약 두 배 정도 낮았음.

- 소득 기준만을 활용할 때에 비교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빈곤율 격차는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즉 소득기준으로 노인 및 비노인가구의 빈곤격차가 세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 비해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자산이 미친 영향으로 보임
- 즉 자산을 일정부문 고려시 자산이 노인 가구빈곤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됨

○ 전 가구 빈곤율은 중위 40%, 50%, 60%를 기준으로 24.4%, 29.5%, 34.1%를 보여주고 있음

〈표 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 여부)

(단위: %)

구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노인가구	40.8	47.1	51.9
	비노인가구	17.9	22.5	26.8
	전 가구	24.4	29.5	34.1
가처분소득	노인가구	40.6	46.9	51.6
	비노인가구	18.0	22.6	27.1
	전 가구	24.5	30.0	34.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분석 역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줌. 노인가구는 경상소득에 비해 가구빈곤율이 소폭 줄어든 반면에 비노인가구는 가구빈곤율이 소폭 증가하여 자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음

□ 노인유무별 구분이 아닌 노인이 가구주 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비해서는 가구빈곤율이 높아졌음

○ 경상소득 분석으로, 빈곤선을 기준(중위 40, 50, 60%)으로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가구빈곤율이 47.7%, 54.0%, 58.6%로 추정됨. 이는 노인이 있는 가구에 비해서는 약 7%포인트 내외로 증가한 것임

-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18.3%, 23.0%, 27.4%로 비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음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도 경상소득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의 가구빈곤율을 보여줌

〈표 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주 여부)

(단위: %)

구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	47.7	54.0	58.6
	가구주가 비노인인 가구	18.3	23.0	27.4
가처분소득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	47.4	53.6	58.3
	가구주가 비노인인 가구	18.4	23.2	27.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와 노인가구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자녀 동거 혹은 기타 가구원이 함께 거주시 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즉 노인가구는 노인이 가구주 일수도 있지만, 경제력에 따라 배우자, 자녀 혹은 기타 동거가구원이 가구주가 될 수 있지만, 노인가구주는 순수하게 가구생활의 책임을 노인이 진다는 점에서 노인가구에 비해서는 소득능력이 낮은 노인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가구빈곤율이 높음

□ 마지막으로 노인가구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가구유형별로 나타나는 자산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음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빈곤율을 통해 보면 노인가구 유형중 가장 심각한 빈곤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 유형은 노인단독가구 임을 볼 수 있음

- 가구빈곤율이 70~80%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단독가구가 가장 빈곤에 취약하다는 점을 볼 수 있음. 다음으로는 노인부부가구로 약 40~50%의 가구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
- 가장 낮은 가구빈곤율을 보여주는 가구 유형은 역시 비노인가구인 것으로 분석됨. 나머지 가구 유형중 기타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유형은 비슷한 수준의 가구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분석에서도 경상소득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노인단독가구가 가장 높은 빈곤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표 7-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유형)

(단위: %)

구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비노인가구	17.9	22.5	26.8
	노인단독가구	73.3	79.0	82.8
	노인부부가구	39.8	47.3	53.0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22.9	30.0	35.1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28.5	33.4	37.9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21.3	27.9	32.6
	기타	55.8	64.2	70.7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18.0	22.6	27.1
	노인단독가구	72.9	78.4	82.6
	노인부부가구	39.5	46.8	52.3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22.6	29.7	34.8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28.5	33.3	37.8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21.6	28.2	32.7
	기타	55.8	64.2	68.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기초연금제도 환산율 적용시

□ 두 번째로 기초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산율 연 5%를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을 적용한 가구빈곤율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기초연금제도에서는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음

□ 먼저 경상소득기준 각각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은 31.0%, 29.3%, 45.9%로 역시 낮지 않은 수준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산출한 가구빈곤율에 비해서는 약 크게는 10%p, 작게는 6%p가 낮은 수준임

- 비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도 7.8%, 12.5%, 17.7%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환산율을 적용한 것에 비해서는 낮았음.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타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비해서는 작게는 2배 이상 크게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관대한 환산율을 적용시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비노인가구와의 빈곤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냄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경상소득과 같이 높은 수준의 노인 가구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었음

〈표 7-4〉 기초연금제도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 여부)

(단위: %)

구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노인가구	31.0	39.3	45.9
	비노인가구	7.8	12.5	17.7
	전가구	14.5	20.2	25.8
가처분소득	노인가구	29.4	37.4	44.3
	비노인가구	7.5	12.2	17.3
	전가구	13.8	19.4	25.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두 번째로 가구주가 65세 이사 노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보면 빈곤선 기준 중위 40%, 50%, 60%를 볼 때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는(경상소득) 38.4%, 47.4%, 54.2%로 노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구빈곤율에 비해서는 높았음

○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경우를 가정시에는 각 빈곤선 기준별로 8.1%, 12.9%, 18.2%로 분석되어 비노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줌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환산율을 적용한 가구빈곤율에 비해서는 역시 크게 낮은 수준임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경상소득에 비해서는 낮은 가구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역시 소득기준 분석과 같이 높은 수준의 가구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7-5〉 기초연금제도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주 여부)

(단위: %)

구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	38.4	47.4	54.2
	가구주가 비노인인 가구	8.1	12.9	18.2
가처분소득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	36.6	45.2	52.2
	가구주가 비노인인 가구	7.7	12.6	17.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세 번째로 노인가구 유형별로 기초연금의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의 가구빈곤율 변화임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본 것과 같이 가구유형 중 노인단독가구의 가구빈곤율이 가장 높음. 빈곤선을 기준으로 65.0%, 74.0%, 79.3%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단독가구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언제든 빈곤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 다음으로는 기타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가구빈곤율이 높은 수준임. 기타가구에는 노인가구를 제외한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인가구 다음으로 빈곤에 취약한 가구구성으로 볼 수 있음

- 노인가구 유형에서 가장 낮은 가구빈곤율을 보여주는 가구 유형은 비슷한 수준에서 비노인 배우자 부부가구와 자녀가 동거하되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가 낮은 가구빈곤율을 보여줌

○ 이미 분석한 결과와 가구유형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는 거의 쉽지 않다는 점임

- 특히 노인이 혼자 살기 보다는 부부 혹은 동거인이 있을 때, 특히 그 동거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동거인이라면 노인빈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임
- 단순히 노인 가구빈곤율 완화를 위해 재산을 고려한다고 해서 빈곤율이 완화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 역시 경상소득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가장 높은 가구빈곤율은 노인단독가구이며,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순이었음. 가장 낮은 가구빈곤율은 비노인가구로 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가구빈곤율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았음

〈표 7-6〉 기초연금제도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유형)

(단위: %)

구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비노인가구	7.8	12.5	17.7
	노인단독가구	65.0	74.0	79.3
	노인부부가구	30.9	41.4	50.2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14.1	22.6	30.6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16.2	22.7	29.2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10.4	16.8	22.3
	기타	47.3	60.2	65.4
가처분소득	비노인가구	7.5	12.2	17.3
	노인단독가구	62.9	71.3	77.9
	노인부부가구	28.6	39.0	47.1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12.9	20.8	28.7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15.3	21.2	27.6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9.5	15.8	22.1
	기타	44.3	58.3	60.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3. 귀속임대료 방식을 적용시

□ 귀속임대료(imputed rent)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가를 가진 집주인이 마치 자신이 월세를 지불하는 주거에 거주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임대료 수준임

○ 귀속임대료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가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의 평균 월세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정확한 지역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주택 해당 지역의 월세임대료 대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하고자 함.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월세 비용 산출을 위해 적용되는 이자율임. 동 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연6.9%(2015년 12월: 한국감정원)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함

○ 귀속임대료를 활용한 추정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함. ①우선은 자가 및 전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과 ②부동산이 대출을 통해 구입되며, 월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대출에 사용된 월상환이자를 공제하여 빈곤율을 측정하는 것임

□ 먼저 월상환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귀속임대료 기준 환산율을 적용시 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은 30.2%, 37.9%, 44.7% 이었음

○ 이미 분석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의 환산율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줌. 반면 비노인가구는 노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인 8.4%, 13.1%, 18.4% 이었음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시 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이 경상소득 기준에 비해서는 낮아지고 있지만, 비노인가구 역시 동시에 낮아지고 있어 경상소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음

○ 월상환이자를 고려하여 빈곤율을 측정시 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하지만 상환이자를 고려하기 전과 비교시 그 감소폭은 크지 않음

- 상환이자를 고려해도 빈곤율 감소폭이 적은 이유는 빈곤가구는 낮은 소득과 저신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에 비해서는 월상환이자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자를 고려해도 빈곤율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임

〈표 7-7〉 귀속임대료 방식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 여부)

(단위: %)

구분		귀속임대료(월상환이자 미고려)			귀속임대료(월상환이자 제외)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노인가구	30.2	37.9	44.7	29.9	37.6	44.8
	비노인가구	8.4	13.1	18.4	8.5	13.2	18.6
	전가구	14.7	20.2	25.9	14.6	20.2	26.1
가처분소득	노인가구	28.7	36.5	43.5	28.1	35.9	43.3
	비노인가구	8.2	13.1	18.2	8.1	13.0	18.3
	전가구	14.1	19.8	25.4	13.8	19.6	25.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와 비노인경우를 구분해 보면, 월상환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가구빈곤율이 각각 37.3%, 45.4%, 52.3%로 가구주가 비노인인 경우에 비해 높았음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경상소득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지만, 역시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었음

○ 월상환이자를 고려하여 분석시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 경상소득 기준 중위 50% 빈곤율은 45.1%로 이자를 고려하기 전에 비해 0.3%p가 낮아짐. 빈곤선이 중위 60%일 때는 동일한 수준의 빈곤율을 보여줌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경상소득에 비해서는 빈곤율 감소폭이 다소 높아 중위 50%기준으로 노인이 가구주 인 경우 43.1%로 이자를 고려하기 이전에 비해 0.6%p가 감소함

-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면 50.5%로 고려전에 비해 0.3%p가 줄어듦

〈표 7-8〉 귀속임대료 방식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주 여부)

(단위: %)

구분		귀속임대료(월상환이자 미고려)			귀속임대료(월상환이자 제외)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	37.3	45.4	52.3	36.6	45.1	52.3
	가구주가 비노인인 가구	8.7	13.5	18.9	8.8	13.6	19.2
가처분소득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	35.5	43.7	50.8	34.7	43.1	50.5
	가구주가 비노인인 가구	8.4	13.5	18.7	8.3	13.4	18.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노인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앞의 두 분석과 동일하게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노인단독가구가 역시 심각한 빈곤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음

○ 월상환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경상소득 중위 빈곤선을 기준으로 63.9%, 71.5%, 77.3%로 매우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단독가구의 빈곤화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월상환이자를 고려해도 빈곤율이 63.4%, 70.7%, 77.2%로 월상환이자를 고려하기 전과 비교해도 빈곤감소폭이 크지 않음(0.5%p, 0.8%p, 0.1%p)

○ 노인단독가구에 비해 낮지만, 월상환이자를 고려하기 전과 고려한 이후에도 기타가구 역시 빈곤선을 기준으로 40~60%대의 높은 가구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음

○ 노인가구의 가구빈곤율이 가장 낮게 평가된 가구유형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이며 이중에서도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65세 이하의 가구원이 가구주인 경우가 낮은 빈곤율을 보여줌

-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유형을 제외한 다른 노인가구 유형은 노인이 가구주로서 노인이 직접 노동시장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지만,

- 65세 이하가 가구주인 경우는 노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거나 2명 이상의 가구원이 소득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빈곤화 가능성을 낮추게 됨

〈표 7-9〉 귀속임대료 방식 환산율을 이용한 가구빈곤율(노인가구유형)

(단위: %)

구분		귀속임대료(월상환이자 미고려)			귀속임대료(월상환이자 제외)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경상소득	비노인가구	8.4	13.1	18.4	8.5	13.2	18.6
	노인단독가구	63.9	71.5	77.3	63.4	70.7	77.2
	노인부부가구	28.8	38.9	47.2	27.9	38.8	47.1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14.0	21.0	28.8	13.8	21.3	29.5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16.2	22.4	29.2	15.7	22.1	29.1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10.8	16.8	23.1	11.1	16.7	23.4
	기타	42.7	56.3	63.5	41.3	56.3	63.5
가처분 소득	비노인가구	8.2	13.1	18.2	8.1	13.0	18.3
	노인단독가구	62.4	69.4	76.1	61.1	68.8	75.7
	노인부부가구	26.4	36.6	44.9	25.5	35.9	44.4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12.7	19.7	27.8	12.9	19.0	27.6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14.7	21.9	27.7	14.6	21.3	28.1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9.7	16.4	23.1	9.7	16.2	22.9
	기타	42.0	55.4	60.7	41.3	54.7	60.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3절 정책적 함의

□ 이 장에서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노인빈곤수준을 분석함

○ 동 방식을 적용한 이유는 서론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노인빈곤 수준이 OECD 최고 수준이며, 다른 국가의 노인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은 청장년 저축 혹은 연금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에 많이 투자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 바가 있음

○ 이 장에서는 현 세대 노인의 특징인 자산을 고려한 빈곤측정의 필요성을 감안

하여 (세 가지)환산율 방식을 적용하여 노인빈곤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음

□ 분석결과와 그 함의를 보면, 우리나라 현 세대 노인가구의 경우 자산을 고려해도 노인빈곤 수준이 크게 완화되지는 않았음

○ 노인가구,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 노인가구 유형별로 세분해 자산을 고려한 빈곤 수준을 분석해도 역시 비노인가구, 비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가구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점은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측정이 노인과 비노인 간에 나타나는 빈곤격차에 비해서는 자산을 고려한 빈곤격차가 다소 줄어든다는 점임

- 하지만 자산을 고려해도 여전히 노인빈곤수준이 높으며, 두 번째는 대부분의 노인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점에서 위기발생에 쉽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궁극적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자산을 고려한 측정방식의 적용보다는 근본적인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대응이 모색되어야 함

○ 향후 국민연금이 성숙단계를 가지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수급액이 함께 증가하면 일정수준에서 노인 가구빈곤율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롭게 시작된 기초연금 역시 노인빈곤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빈곤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현재는 노인빈곤을 낮추는 위와 같은 긍정적 요소이외에도 고령화, 베이비 부머 은퇴와 같은 위험 혹은 부정적 요소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 처방이 필요함

제 3 부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를 반영한 다양한 빈곤지표 분석

제 8 장

자녀에 대한 증여, 자녀의 부모 부양 등 사적이전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8 자녀에 대한 증여, 자녀의 부모 부양 등 사적이전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제1절 서론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삶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부양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음

○ 이러한 부모와 자녀간 상호의존적인 생활패턴은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처럼 노인의 삶에서 자녀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교류는 일반적인 생활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인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교류하는 주요한 형태는 증여, 사적 소득이전, 동거 등임

○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마련을 지원한다든지, 자녀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금 지원 등의 형태로 자녀에 대한 증여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손병돈, 1998).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증여는 늙은 부모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동거도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으로 교류하는 주요한 형태임. 동거는 부모가 가구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자녀들을 부양하는 형태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자녀가 빈곤한 늙은 부모들을 부양하는 방식도 있음. 노인 빈곤과 관련시켜 볼 때, 노인이 되면, 노동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들이 빈곤해지는 것을 완화해 주는 주요한 기제일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자녀와의 동거 노인가구가 크게 감소해 온 과정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노인빈곤과 동거와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노인 부모와 자녀간 경제적 교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은 사적 소득이전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효도의 주요한 한 방식이며, 그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은 늙은 노인 부모들에게 용돈이나 생활비의 형태로 사적 소득이전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노인빈곤을 완화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고 많은 연구들은 평가하고 있음(손병돈, 1999; 홍경준, 2002; 김교성, 2002)

○ 사적 소득이전은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적 소득이전을 제공하기도 함.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생활이 여유롭지 못함에 따라 늙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적 소득이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처럼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는 노인들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의 생활, 특히 노인 빈곤에서 이러한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 또는 사적 부양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물론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 빈곤을 사적 부양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왔지만,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사적 소득이전이라는 좁은 의미의 사적 부양의 맥락에서 노인 빈곤을 검토해 왔음

○ 본 연구는 노인 빈곤을 자녀와의 다양한 경제적 교류, 즉 동거, 사적 소득이전, 증여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서 사적 부양과 노인 빈곤간의 총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한 연구내용은 최근 노인 사적 부양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적 소득이전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아울러 노인의 사적이전 지출, 증여 그리고 동거가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임

제2절 연구방법

1. 분석자료

□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그리고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임

○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 실태,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주요한 분석은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할 것임

- 노인 소득 및 노인 빈곤 관련 분석은 2015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복지 데이터(18,031가구)를 이용하고, 노인의 이전소득 지출은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복지데이터(8974가구)를 이용할 것임
- 국민노후보장패널은 노인가구와 자녀가구간 증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패널자료이므로, 노인빈곤과 증여간 관계 분석에 활용할 것임
- LIS 데이터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사적 소득이전 및 빈곤 실태를 외국과 비교할 때 사용할 것임

2. 분석방법

□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은 소득원천에 따른 빈곤율 추정임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빈곤율은 상대빈곤선에 기초하여 산출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빈곤선은 다음과 같음

- 균등 조정 시장소득 중위값의 30%, 40%, 50%와 균등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30%, 40%, 50%을 기준선으로 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및 가구원 대상으로 산출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기준임
- 균등 조정 시장소득은 시장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산출함
- 빈곤율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노인 가구 빈곤율과 노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개인 단위 빈곤율을 각각 산출할 것임

-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이상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노인가구주 가구는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 증여가 노인 빈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증여한 증여액을 증여에 관한 분석에 이용한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소득 조사년도인 2012년의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단리로 계산하여 모든 증여액을 2012년 가치로 환산하였고, 그것에 2012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액으로 인한 2012년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증여 환산소득이라고 칭함)을 추정하였음
- 정기예금 이자율은 통계청에서 1996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므로, 1996~2012년간 매년도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사용함

제3절 노인가구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실태

1. 사적 소득이전의 규모

□ 〈표 8-1〉은 2014년 현재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을 살펴 본 것임

○ 노인가구의 경우, 평균 연 사적 이전소득은 약 146만원이고, 이는 평균 경상가구소득의 4.8% 수준임.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천별 경상소득 대비 비율의 크기 측면에서 보면, 사적 이전소득은 그 비율이 가장 작은 소득원천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 평균 사적이전소득은 약 181만 6천원이며, 가구경상소득 평균의 8.3% 수준임. 그 비율은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천 중 가장 작음. 이렇게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에서 가구 경상소득 대비 각 소득원천의 평균값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원천 중 그 비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8-1〉 노인가구 소득의 원천별 구성

(단위: %, 만원/년)

구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경상소득
노인가구	평균	1,375.6	717.8	261.6	541.5	146.4	3,043.1
	비율	45.2	23.6	8.6	17.8	4.8	100.0
노인가구주 가구	평균	653.6	472.0	280.8	603.0	181.6	2,191.3
	비율	29.8	21.5	12.8	27.5	8.3	100.0

주: 비율은 경상소득의 평균값으로 각 소득원천의 평균값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2〉는 노인가구 및 노인가구주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 및 크기를 살펴 본 것임. 노인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비율은 41.1%, 노인가구주 가구는 그 비율이 50.2%로 상당수의 노인가구들이 사적 이전소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의 31.3%, 경상소득의 17.0%, 가처분소득의 17.6%임. 사적 이전소득을 받는 노인가구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은 각각 62.2%, 33.9%, 35.1%로 사적 이전소득은 여전히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음

〈표 8-2〉 사적이전소득의 크기 및 비중

(단위: %; 만원/년)

구분	노인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	41.1	50.2
사적이전소득의 크기	146.38 (356.3)	181.55 (361.3)
사적 이전소득/시장소득	23.73 (57.8)	31.27 (62.2)
사적 이전소득/경상소득	13.1 (31.9)	17.04 (33.9)
사적 이전소득/가처분소득	13.57 (33.0)	17.63(35.1)

주: ( )는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만 대상으로 한 값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3〉은 노인 가구가 받은 사적 이전소득과 노인가구가 제공하는 사적 이전지출의 크기를 비교한 것임

○ 노인가구 중 사적 이전소득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41.1%인데,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10.1%로 , 사적 이전소득을 제공하는 비율보다 수혜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

○ 사적 이전소득 및 지출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아도 노인가구는 사적 소득이전을 제공하는 액수보다 받는 액수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평균 사적 이전소득은 연간 약 146만원이고, 평균 지출은 연간 약 35만원임

〈표 8-3〉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 지출 크기 비교

(단위: %, 만원/년)

구분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 지출	
	수혜가구의 비율	평균	지출가구의 비율	평균
노인가구	41.1	146.4	10.1	35.0
노인가구주 가구	50.2	181.6	7.7	24.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4〉는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크기를 비교한 것임

○ 수혜율이나 평균 수혜액 모두,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주 가구의 92.8%가 공적 이전소득을 수혜 하는데 반해, 사적 이전소득은 50.2%가 수혜하여,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40%p나 높음

○ 노인가구주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을 년 평균 603만원 받는데 반해, 사적 이전소득은 년 평균 약 182만원으로, 공적 이전소득 수혜 평균값이 사적 이전소득 평균 수혜액보다 약 420만원이나 많음

○ 이처럼 현재 노인 가구의 소득에 기여하는 바는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보다 훨씬 큰 상태임

○ 2000년대 중반까지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공적 이전소득보다 더 컸다는 점(이소정외, 2008)을 고려하면, 2014년 현재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노인 가구 소득 구성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표 8-4〉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 크기 비교

(단위: %, 만원/년)

구분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율	평균	수혜가구의 비율	평균
노인가구	41.1	146.4	90.3	541.5
노인가구주 가구	50.2	181.6	92.8	603.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5〉와 〈표 8-6〉은 노인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 및 비중을 가구주의 연령별 및 가구형태별로 살펴 본 것임

○ 〈표 8-5〉를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연령이 84세에 이를 때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 및 평균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구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80세 이상일 때, 사적 이전소득의 수혜율은 60%가 넘고, 시장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0%가 넘으며, 사적 이전소득은 가처분 소득 기준 가구소득의 약 30%에 이를 정도로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가구주 가구소득의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음

〈표 8-5〉 노인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사적이전소득의 크기 및 비중

(단위: %, 만원/년)

연령	사적이전소득 수혜율	사적이전소득의 크기	사적이전소득/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경상소득	사적이전소득/가처분소득
65~69세	35.1	114.6 (0.0)	14.9 (0.0)	7.7 (0.0)	8.0 (0.0)
70~74세	49.8	196.0 (0.0)	28.2 (0.0)	16.5 (0.0)	17.0 (0.0)
75~79세	62.9	222.2 (100.0)	43.3 (25.0)	23.8 (11.6)	24.5 (11.9)
80~84세	64.7	238.8 (120.0)	51.3 (50.0)	27.3 (18.4)	28.1 (19.9)
85세 이상	62.0	224.1 (100.0)	52.9 (66.0)	26.5 (17.0)	28.1 (17.0)

주: ( )는 중위값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9-6〉은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로 사적 이전소득의 크기 및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임

○ 거의 절반 가까운 노인 가구가 노인 단독가구나 노인 부부가구인데, 이러한 가구들은 생활의 상당 부분을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노인 단독가구의 62.2%가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고 있으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의 약 48%를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음. 경상소득 기준 가구소득에서도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약 27%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함.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도 사적 이전소득의 수혜율은 약 56%에 이르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의 약 32%, 가처분 소득 기준 가구소득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는 사적 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8-6〉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사적이전소득의 크기 및 비중

(단위: %, 만원/년)

노인가구 유형	가구 분포	사적이전소득 수혜율	사적이전소득의 크기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노인단독가구	25.9	62.2	194.5 (100.0)	48.3 (40.0)	26.3 (15.0)	26.9 (15.5)
노인부부가구	22.8	55.9	225.6 (60.0)	31.7 (6.3)	17.1 (3.7)	17.8 (3.8)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9.4	37.3	126.5 (0.0)	16.2 (0.0)	8.3 (0.0)	8.8 (0.0)
자녀동거가구_ 노인가구주	15.0	27.7	122.0 (0.0)	9.4 (0.0)	5.9 (0.0)	6.3 (0.0)
자녀동거가구_ 비노인가구주	25.4	14.9	45.1 (0.0)	2.3 (0.0)	2.0 (0.0)	2.1 (0.0)

주: ( )는 중위값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7〉은 빈곤여부별로 노인가구를 구분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크기 및 수혜율 등을 비교한 것임

○ 노인 가구의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중요성이 비빈곤 노인 가구보다 빈곤 노인 가구가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사적 이전소득의 수혜율, 크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빈곤 노인가구가 비빈곤 노인가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빈곤 노인가구는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약 55%, 연간 평균 수혜액은 약 171만원, 시장 소득 기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에 이름. 반면 비빈곤 노인가구의 수혜율은 약 23%, 연간 평균 수혜액은 114만원이고,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 이렇게 빈곤 노인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은 중요한 소득원이며, 노인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8-7〉 노인가구의 빈곤여부별 사적이전소득의 크기 및 비중

(단위: %, 만원/년)

노인가구 유형	가구 분포	사적이전소득 수혜율	사적이전소득의 크기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빈곤 노인가구	56.4	54.8	171.3 (50.0)	38.3 (10.9)	20.0 (5.2)	20.7 (5.3)
비빈곤 노인가구	43.6	23.3	114.1 (0.0)	4.8 (0.0)	4.2 (0.0)	4.4 (0.0)
빈곤 노인가구주 가구	69.6	57.8	179.8 (60.0)	41.3 (17.2)	21.3 (7.7)	22.1 (7.9)
비빈곤 노인가구주 가구	30.4	33.0	185.5 (0.0)	8.3 (0.0)	7.2 (0.0)	7.5 (0.0)

주1: 빈곤선은 전체가구대상 균등화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임
주2: ( )는 중위값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외국과의 비교

□ 앞에서 우리나라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적 이전소득의 크기, 수혜율 등 사적이전소득의 실태를 살펴보았음. 다음에서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사적 이전 소득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함

〈표 8-8〉 노인 가구 대상 가구소득의 종류별 대비 사적이전소득 비중, 국가 간 비교

(단위: %)

국가	연도	사적이전소득/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총소득	사적이전소득/가처분소득
대만	2013	32.34	22.43	24.85
한국	2014	23.73	13.10	13.57
콜롬비아	2013	16.95	13.27	16.51
페루	2013	19.99	16.16	16.21
파나마	2013	19.73	10.60	10.70
폴란드	2013	17.83	2.25	2.32
남아공	2012	5.47	1.68	1.72
이스라엘	2012	3.59	1.25	1.33
그리스	2010	3.82	0.83	0.93
스페인	2013	2.32	0.86	0.88
룩셈부르크	2013	2.16	0.77	0.83
에스토니아	2010	2.75	0.44	0.46
호주	2010	2.22	0.44	0.44
덴마크	2010	2.72	0.29	0.42
미국	2013	0.99	0.39	0.41
독일	2010	0.88	0.39	0.40
브라질	2013	0.62	0.25	0.25
네덜란드	2010	1.34	0.20	0.23
슬로바키아	2010	1.15	0.19	0.20
캐나다	2010	0.62	0.17	0.18
영국	2013	0.66	0.17	0.17
아일랜드	2010	1.44	0.13	0.13
아이슬란드	2010	0.39	0.10	0.11
일본	2008	0.11	0.05	0.06
핀란드	2013	0.96	0.04	0.04

자료: LIS 데이터 분석결과이며,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결과임

○ 〈표 8-8〉와 〈표 8-9〉은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가구 및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 간 비교하여 살펴 본 것임

-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가구 대상으로 하여 사적 이전소득 대비 시장 소득의 비중을 보면, 비교국가들 중 대만이 32.34%로 가장 높고, 한국,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폴란드 등의 국가들만 사적 이전소득이 시장 가구소득의 10%를 넘고 있음.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5%이하이며, 핀란드,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 국가들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가구소득의 0.5%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표 8-9〉은 노인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 간 비교한 것인데,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음
- 한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와 페루, 콜롬비아 등의 남미국가들에서만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나름대로 일정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머지 선진 국가들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함

〈표 8-9〉 노인가구주가구의 특정 가구소득별 대비 사적이전소득 비중 국가 간 비교

(단위: %)

국가	연도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 /총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대만	2013	57.36	38.37	42.18
한국	2014	31.27	17.04	17.63
페루	2013	22.55	18.19	18.23
콜롬비아	2013	18.99	14.84	16.49
파나마	2013	21.46	11.27	11.35
폴란드	2013	22.28	2.58	2.64
남아공	2012	6.19	1.89	1.90
이스라엘	2012	3.93	1.30	1.39
그리스	2010	4.20	0.92	1.04
스페인	2013	2.40	0.89	0.90
룩셈부르크	2013	2.27	0.81	0.87
에스토니아	2010	3.19	0.48	0.49
호주	2010	2.20	0.38	0.38
독일	2010	0.88	0.37	0.38
덴마크	2010	2.72	0.26	0.35
미국	2013	0.89	0.31	0.33
브라질	2013	0.67	0.27	0.27
네덜란드	2010	1.35	0.20	0.24
캐나다	2010	0.67	0.18	0.19
영국	2013	0.70	0.18	0.18
슬로바키아	2010	1.25	0.17	0.17
아이슬란드	2010	0.39	0.10	0.11
일본	2008	0.18	0.07	0.08
핀란드	2013	0.99	0.04	0.04
아일랜드	2010	1.05	0.04	0.04

자료: LIS 데이터 분석결과이며,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결과임

제4절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빈곤 감소효과

□ 여기서는 사적 소득이전이 노인 빈곤을 얼마나 감소시키며, 또한 어떤 노인 집단의 빈곤을 주로 감소시키는지를 분석할 것임. 아울러 그 효과를 외국과 비교 검토 하고자 함

1.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 여기서는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표 9-10〉과 〈표 9-11〉는 사적 소득이전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것임

- 사적 이전소득의 노인 빈곤 완화 효과는 빈곤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완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
-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빈곤선을 전국 균등 가구 중위시장소득의 30%, 40%, 50%로 설정할 때,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각각 5.7%p, 4.1%p, 2.9%p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노인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면, 그 효과는 7.2%p, 5%p, 3.6%p 수준으로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8-10〉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 효과(시장소득 기준)

(단위: %, %p)

구분	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A)			시장소득 빈곤율(B)			A-B(%p)		
	30%	40%	50%	30%	40%	50%	30%	40%	50%
노인가구	48.2	54.3	59.3	42.5	50.2	56.4	5.7	4.1	2.9
노인가구주 가구	61.9	68.3	73.2	54.7	63.3	69.6	7.2	5.0	3.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가구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유사하며, 단지 그 효과가 조

금 더 크게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음

- 노인가구 대상으로 전국 균등 가구 중위 가처분소득의 30%, 40%, 50%로 설정할 때,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는 빈곤율을 각각 9.5%p, 6.3%p, 4.4%p 정도 떨어뜨리고 있음
- 동일한 방법으로 노인가구주 대상으로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보면, 사적 소득이전은 빈곤율을 각각 12.4%p, 8.0%p, 5.5%p 정도 감소시키고 있음

〈표 8-11〉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p)

구분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A)			가처분소득 빈곤율(B)			A-B(%p)		
	30%	40%	50%	30%	40%	50%	30%	40%	50%
노인가구	34.9	42.8	48.5	25.4	36.5	44.1	9.5	6.3	4.4
노인가구주 가구	45.3	54.2	60.3	32.9	46.2	54.8	12.4	8.0	5.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10〉과 〈표 8-11〉를 통해,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빈곤선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증가하지만,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그것은 노인 가구들이 받는 사적 소득이전의 절대량이 대체로 작기 때문에, 빈곤선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빈곤 감소효과가 크지만, 빈곤선이 높은 경우에는 빈곤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 다음에서는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어떤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가구주의 연령별 및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 볼 것임

- 〈표 8-12〉과 〈표 8-13〉는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노인가구주의 연령별로 살펴 본 것임. 〈표 8-12〉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고, 〈표 8-13〉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표 8-12〉 가구주의 연령별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 효과(시장소득 기준)

(단위: %, %p)

가구주 연령	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A)			시장소득 빈곤율(B)			A-B(%p)		
	30%	40%	50%	30%	40%	50%	30%	40%	50%
65~69세	37.3	45.0	50.8	33.0	40.8	48.3	4.3	4.2	2.5
70~74세	61.2	68.9	76.0	52.7	63.3	71.3	8.5	5.6	4.7
75~79세	79.3	84.1	87.4	70.8	78.5	83.0	8.5	5.6	4.4
80~84세	86.7	90.8	92.4	76.7	85.6	89.6	10.0	5.2	2.8
85세 이상	89.5	93.4	94.3	82.2	89.1	91.5	7.3	4.3	2.8

주1: 빈곤선은 전국 균등 가구 시장 소득 중위값의 30%, 40%, 50%로 설정
주2: 빈곤율은 노인가구 단위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12〉을 보면, 노인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가구 빈곤율 완화 효과도 가구주의 연령과 일정정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시장소득의 중위값 30%를 빈곤선으로 할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65~69세일 때, 노인가구 빈곤율은 33%인데, 70~74세인 가구주의 노인가구 빈곤율은 52.7%로 증가하고, 75~79세일 때는 70.8%, 80~84세인 가구주의 가구 빈곤율은 76.5%, 가구주의 연령이 85세 일 경우, 가구 빈곤율은 무려 82.2%에 달함
-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효과는 가구주의 연령이 70~84세일 때, 주요하게 나타나며, 가구주의 연령이 85세 이상일 때는 다소 그 효과가 떨어지고, 65~69세일 때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감소 효과는 가구주의 연령별 사적 소득이전의 수급 정도와 빈곤의 심도와 관련되는데,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가구주의 연령이 70~74세일 때, 크게 증가하여 그 이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지만, 노인가구주의 연령이 85세 이상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8-5〉 참조). 동일한 빈곤수준이라도 빈곤의 심도가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표 8-13〉 가구주의 연령별 사적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 효과(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p)

가구주 연령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A)			가처분 소득 빈곤율(B)			A-B(%p)		
	30%	40%	50%	30%	40%	50%	30%	40%	50%
65~69세	20.7	29.6	36.8	15.5	24.6	32.8	5.2	5.0	4.0
70~74세	42.9	53.7	60.7	29.3	44.2	53.5	13.6	9.5	7.2
75~79세	63.5	71.8	76.7	45.2	62.2	70.7	18.3	9.6	6.0
80~84세	71.5	78.8	82.6	53.4	68.4	77.6	18.1	10.4	5.0
85세 이상	74.2	80.9	84.9	59.9	73.4	79.5	14.3	7.5	5.4

주1: 빈곤선은 전국 균등 가구 시장 소득 중위값의 30%, 40%, 50%로 설정
주2: 빈곤율은 노인가구 단위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13〉은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감소 효과를 가구주의 연령별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본 것임

- 그 결과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단지 빈곤 감소효과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

○ 〈표 8-14〉와 〈표 8-15〉는 가구유형별로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 본 것임

〈표 8-14〉 가구형태별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 효과(시장소득 기준)

(단위: %, %p)

가구형태	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A)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B)			A-B(%p)		
	30%	40%	50%	30%	40%	50%	30%	40%	50%
노인단독가구	87.8	91.3	93.8	79.4	85.2	89.7	8.4	6.1	4.1
노인부부가구	65.1	73.8	79.2	54.7	67.7	75.0	10.4	6.1	4.2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36.3	46.6	53.2	30.3	42.5	51.2	6.0	4.1	2.0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24.6	31.1	38.6	23.1	28.7	36.0	1.5	2.4	2.6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9.5	14.1	19.6	8.2	12.9	18.6	1.3	1.2	1.0

주1: 빈곤선은 전국 균등 가구 시장 소득 중위값의 30%, 40%, 50%로 설정
주2: 빈곤율은 노인가구 단위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가구유형에 따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이며, 또한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도 노인 가구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남
- 노인들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노인과 비노인 배우자만 사는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율도 시장소득 기준으로 50%가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임. 자녀들과 동거하는 동거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인이 가구주인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중위값 50% 기준 빈곤율이 36%에 이를 정도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임. 하지만 자녀가 가구주인 자녀 동거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시장 중위 소득 50% 기준 빈곤율이 18.6%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노인 단독 가구나 부부가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자녀들과 동거하는 가구에서는 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 노인 단독가구보다 노인 부부가구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조금 더 크다는 점도 특이한 점임.
- 자녀 동거가구 중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는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 감소효과가 작지만, 빈곤선이 높을수록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은 다른 가구유형과 상이한 점임. 이는 이 가구유형에서 빈곤한 가구들의 빈곤 심도가 깊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됨

○ 〈표 8-15〉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가구형태별로 비교 분석한 것임

- 분석결과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표 8-14〉와 유사하지만, 빈곤 완화 효과가 더 크다는 점과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완화 효과가 노인 부부가구보다 더 크다는 점이 다른 점임

〈표 8-15〉 가구형태별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 효과(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p)

가구형태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A)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 (B)			A-B(%p)		
	30%	40%	50%	30%	40%	50%	30%	40%	50%
노인단독가구	73.0	82.2	86.7	55.1	72.7	80.2	17.9	9.5	6.5
노인부부가구	43.5	52.4	61.2	28.7	41.8	54.7	14.8	10.6	6.5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16.2	27.2	34.7	10.0	19.8	29.0	6.2	7.4	5.7
자녀동거가구_노인가구주	15.2	22.6	26.7	12.4	20.5	23.9	2.8	2.1	2.8
자녀동거가구_비노인가구주	6.0	10.6	15.4	5.0	9.5	14.2	1.0	1.1	1.2

주1: 빈곤선은 전국 균등 가구 시장 소득 중위값의 30%, 40%, 50%로 설정
주2: 빈곤율은 노인가구 단위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외국과의 비교

□ 여기서는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빈곤 완화효과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표 8-16〉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표 8-17〉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한 것임

- 〈표 8-16〉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비교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임. 중위 시장소득 30%를 기준으로 할 때, 노인빈곤율은 대부분 50%를 넘으며,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복지국가들은 심지어 80%를 상회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중위 30% 기준 빈곤율 42.9%는 비교 26개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임
-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빈곤율 감소효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1%p가 안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남미의 몇몇 국가와 대만만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시장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빈곤율 완화효과는 대만이 10.1%p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콜롬비아 6.3%p, 파나마 5.2%p, 페루 4.0%p이며, 우리나라는 2.9%p로 5번째로 큰 것으로 분석됨

〈표 8-16〉 균등화 시장소득의 노인 빈곤율 국가 간 비교

(단위: %)

국가	연도	중위소득30% 상대빈곤율		중위소득40% 상대빈곤율		중위소득50% 상대빈곤율	
		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네덜란드	2010	87.9	87.7	90.3	90.2	92.0	91.9
덴마크	2010	83.2	82.9	85.3	85.1	86.8	86.6
핀란드	2013	81.3	81.2	83.9	83.8	86.1	86.0
체코	2010	78.4	78.0	80.1	79.8	82.8	82.3
독일	2010	77.0	76.7	79.6	79.3	82.3	82.0
영국	2013	75.3	75.2	78.8	78.7	82.0	81.9
아일랜드	2010	75.9	75.7	78.7	78.7	80.4	80.4
캐나다	2010	71.2	71.0	75.6	75.4	78.9	78.8
호주	2010	72.5	72.2	75.9	75.7	78.6	78.3
에스토니아	2010	73.5	73.2	75.9	75.7	78.3	78.0
룩셈부르크	2013	73.5	73.0	76.4	76.0	78.2	77.9
슬로바키아	2010	71.9	71.8	73.9	73.7	76.3	76.2
폴란드	2013	73.5	71.4	75.0	73.5	77.4	76.1
그리스	2010	71.1	70.2	73.7	73.3	75.8	75.5
스페인	2013	61.7	60.7	66.6	66.0	69.9	69.3
아이슬란드	2010	61.0	61.0	65.9	65.7	69.1	69.1
미국	2013	59.0	58.8	62.9	62.7	66.1	65.9
이스라엘	2012	58.9	57.4	62.5	61.5	66.1	65.2
브라질	2013	53.8	53.5	56.5	56.2	60.7	60.5
남아공	2012	54.9	53.4	57.9	56.9	59.2	58.6
한국	2014	49.1	42.9	54.3	50.2	59.3	56.4
파나마	2013	47.2	39.6	51.3	45.3	55.1	49.9
페루	2013	43.2	37.8	47.9	43.6	52.2	48.2
일본	2008	36.4	36.4	40.2	40.2	46.0	46.0
대만	2013	39.5	23.7	44.8	32.2	50.4	40.3
콜롬비아	2013	35.9	28.1	40.5	33.0	45.2	38.9

주: 빈곤율은 OECD 균등화 지수로 조정한 전국 균등 중위 시장소득을 가지고 개인 단위로 산출한 것임
자료: LIS 데이터 분석결과이며,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결과임

○ 〈표 8-17〉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국가 간 비교한 것임

-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과 달리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비교 26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가처분

중위 소득 50%기준 빈곤율이 10% 이하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1%로 이들 국가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도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한국, 대만과 남미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p이하로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함(중위소득 50%기준). 가처분 중위 소득 50% 기준으로 할 때,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는 대만 13.3%p로 가장 크고, 콜롬비아 6.6%p, 파나마 5.0%p, 한국 4.6%p, 페루 3.2%p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8-17〉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노인 빈곤율의 국가 간 비교

(단위: %)

국가	연도	중위소득30% 상대빈곤율		중위소득40% 상대빈곤율		중위소득50% 상대빈곤율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한국	2014	34.6	24.8	42.6	35.9	48.7	44.1
페루	2013	31.3	26.6	35.9	32.5	40.8	37.6
호주	2010	3.2	3.1	8.2	7.9	34.2	33.6
대만	2013	27.4	8.9	33.3	17.2	39.5	26.2
파나마	2013	16.1	10.3	42.7	17.6	29.9	24.9
콜롬비아	2013	21.5	15.1	26.3	19.6	31.3	24.7
미국	2013	5.9	5.8	12.0	11.9	19.8	19.6
이스라엘	2012	4.0	3.6	12.4	11.6	19.8	18.5
일본	2008	4.4	44.4	9.6	9.6	14.6	14.6
남아공	2012	2.5	2.2	8.1	7.7	13.7	13.0
그리스	2010	1.7	1.5	5.1	4.7	12.1	11.5
독일	2010	1.6	1.4	4.8	4.4	10.6	10.3
캐나다	2010	0.8	0.8	2.4	2.3	9.9	9.8
영국	2013	1.2	1.1	3.4	3.4	9.2	9.1
아일랜드	2010	4.1	4.1	5.5	5.5	8.5	8.4
핀란드	2013	0.1	0.1	1.0	1.0	7.1	7.1
덴마크	2010	0.5	0.4	0.9	0.8	6.8	6.6
폴란드	2013	1.4	1.2	2.9	2.5	7.4	6.2
에스토니아	2010	0.2	0.2	1.4	1.4	6.2	6.1
브라질	2013	1.1	1.0	2.3	2.2	6.1	6.0
스페인	2013	2.1	2.0	3.2	3.0	6.0	5.7
슬로바키아	2010	0.2	0.2	0.8	0.8	4.4	4.4
룩셈부르크	2013	1.4	1.2	2.6	1.8	4.3	4.0
아이슬란드	2010	1.1	1.1	2.1	2.1	3.3	3.3

국가	연도	중위소득30% 상대빈곤율		중위소득40% 상대빈곤율		중위소득50% 상대빈곤율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체코	2010	0.1	0.1	0.6	0.5	4.1	3.3
네덜란드	2010	0.9	0.9	1.8	1.8	2.3	2.2

주: 빈곤율은 OECD균등화 지수로 조정한 전국 균등 중위 시장소득을 가지고 개인 단위로 산출한 것임
자료: LIS 데이터 분석결과이며,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결과임

○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 빈곤완화 효과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사적 소득이전을 포함한 시장 소득 기준 노인빈곤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만,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 빈곤 수준은 10% 이하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는 점임. 이렇게 서구 국가들에서 노인빈곤율이 낮은 것은 연금 등 공공 사회복지의 효과이며, 우리 나라와 같은 사적 소득 이전의 효과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함

○ 우리나라와 같이 사적 소득이전이 노인빈곤율을 일정정도 낮추는 효과를 갖는 국가는 남미와 대만 등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남

제5절 사적 부양의 다양한 형태와 노인 빈곤: 사적 이전지출, 동거, 증여

□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의 자녀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자녀와의 동거, 자녀에 대한 증여 등 사적 부양의 여러 형태들과 노인 빈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1. 사적 이전 지출과 노인 빈곤

○ 앞에서 살펴 본 사적 소득이전은 주로 자녀가 제공하고, 노인이 받는 형태의 소득이전이었는데, 반대로 노인이 자녀에게 사적 소득이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사적 이전 지출(노인의 관점에서)은 노인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살펴보고자 함

- 〈표 8-18〉는 노인 가구 및 노인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사적 이전지출의 크기, 제공비율, 가구지출에서의 비중 등을 살펴 본 것임. 여기서 사적 이전

지출은 가구 간 사적 이전지출만을 포함하고, 경조사비, 단체회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 우선 사적 이전지출을 제공하는 노인 가구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노인가구의 10.1%, 노인가구주 가구의 7.7%만이 사적 이전지출이 있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 하는 비율이 각각 41.1%, 50.2%라는 점과 비교하면(<표 8-3> 참조) 매우 낮은 수준임
- 노인가구별 연간 평균 사적 이전지출액도 약 35만원, 약 25만원으로 크지 않으며,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1%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준임
- 하지만 사적 이전지출이 있는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연평균 이전지출액은 약 345만원, 320만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며,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내외 수준으로 적지 않음

〈표 8-18〉 사적 이전지출의 크기 및 비중

(단위: %, 만원/년)

구분	노인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사적 이전지출 비율	10.1	7.7
사적 이전지출의 크기	34.98 (345.45)	24.54 (320.30)
사적 이전지출/가구총지출	0.94 (9.3)	0.84 (10.94)

주1: 사적 이전지출은 가구 간 이전지출만 포함
주2: ( )는 사적 이전지출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값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19〉은 노인가구를 빈곤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사적 이전지출의 크기 및 제공율, 가구지출에서의 비중 등을 비교한 것임

〈표 8-19〉 노인가구의 빈곤여부별 사적 이전지출의 크기, 비중 비교

(단위: %, 만원/년)

구분	노인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사적 소득이전 제공율	2.7	15.6	2.5	13.4
사적 이전지출의 크기	3.45	58.27	2.98	48.71
사적 이전지출/가구총지출	0.28	1.4	0.28	1.47

주: 빈곤선은 전국 가구 균등 조정 시장소득 50%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표 8-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 노인가구들이 사적 이전지출을 제공하는 비율은 채 3%가 안 되며, 년 평균 제공액도 3만원 내외에 불과하고, 가구지출에서 사적 이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0.3%도 안되는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이런 점을 볼 때, 사적 이전지출이 빈곤 노인가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노인 빈곤율 추정은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그러므로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지출은 소득 기준 빈곤율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런 점에서 사적 이전지출은 노인빈곤과 무관하며, 단지 노인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크기 및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공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지출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산출할 경우, 노인 가구의 사적 이전지출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인가구, 특히 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그 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지출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산출해도 사적 이전 지출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동거와 노인 빈곤

○ 여기서는 동거와 노인 빈곤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임

- 〈표 8-20〉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빈곤율을 비교한 것인데,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노인들의 빈곤율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빈곤율보다 3~5배 이상 높음
- 시장소득 중위값 50%기준으로 산출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74.2%, 같은 기준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21.0%로 무려 53%p나 차이가 남
- 가처분 소득 중위값 50%기준으로 산출한 자녀와 비동거 노인 빈곤율은 56.7%,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14.6%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40.1%p나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8-20〉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 빈곤율 비교

(단위: %)

자녀 동거 여부	시장소득 빈곤율			가처분 소득 빈곤율		
	30%	40%	50%	30%	40%	50%
자녀와 비동거 노인	56.7	67.5	74.2	32.4	46.1	56.7
자녀와 동거 노인	11.1	15.2	21.0	6.0	10.9	14.6

주: 빈곤율은 노인 개인 단위로 산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아래의 표는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 빈곤율을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 본 것임. 자녀와 비 동거하는 노인 가구의 노인 빈곤율이 현저하게 높음.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특히 자녀가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다시 말해 가구주가 성인 자녀인 가구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크게 낮은 편임. 이처럼 자녀가 동거하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들은 노인 빈곤율이 크게 낮음

〈표 8-21〉 가구유형별 노인 빈곤율 비교

(단위: %)

구분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		
		30%	40%	50%	30%	40%	50%
자녀 비동거	노인 단독	79.4	85.2	89.7	55.1	72.7	80.2
	노인부부	54.7	67.7	75.0	28.7	41.8	54.7
	비노인배우자	30.3	42.5	51.2	10.0	19.8	29.0
자녀 동거	노인가구주	20.7	25.8	32.9	10.7	18.1	21.0
	비노인가구주	6.3	10.0	15.2	3.7	7.3	11.4

주: 빈곤율은 노인 개인 단위로 산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오늘날 노인 빈곤율이 심각해진 것은 이러한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가 크게 줄어든데 기인한 바가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줌
- 〈표 8-22〉은 1996년과 2014년간 노인 가구유형별 분포와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비교한 것임

〈표 8-22〉 1996~2014년 노인인구 일반적 특성 및 상대빈곤율 변화

(단위: %)

구분	일반적 특성		상대빈곤율	
	1996	2014	1996	2014
전체 노인	100.0	100.0	29.1	40.8
가구유형				
자녀세대 동거 (자녀가구주)	44.7	14.4	11.2	14.3
자녀세대 동거 (노인가구주)	24.4	23.9	22.9	20.4
노인세대 가구	30.9	61.7	59.8	54.9
노인단독가구	(11.7)	(24.7)	(76.5)	(69.7)
노인부부가구	(18.4)	(35.9)	(49.2)	(45.8)
기타노인가구	(0.8)	(1.1)	(60.8)	(16.5)

주: 모든 결과 값은 표본가중치 노인가구원 수가 적용되어, 개인단위의 전체 노인인구를 대표하고 있음
자료: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2014년 가계동향조사
출처: 구인회, 김창오, 2016

- 〈표 8-22〉를 보면, 1996년에서 201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녀가구주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반면 노인단독가구나 노인 부부 가구유형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가구유형별 빈곤율은 1996년과 2014년간 현격한 차이가 나지는 않음. 1996년 자녀가 가구주이며 노인 가구에 동거하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11.2%인데 동일 가구 유형의 2014년 노인빈곤율은 14.3%로 소폭 증가하였고, 노인가구주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1996년 노인 빈곤율은 22.9%인데, 2014년에는 20.4%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음.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가구의 1996년 빈곤율은 59.8%였는데, 2014년에는 54.9%로 약간 감소함
- 이렇게 1996년과 2014년간 가구유형별 빈곤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체 노인 빈곤율은 1996년 29.1%에서 2014년 40.8%로 크게 높아짐
- 그 이유는 노인 빈곤율이 낮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크게 줄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됨. 1996년 자녀 가구주와 동거하는 노인인구는 44.7%였는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14.4%로 무려 30.3%p나 감소하였고, 노인가구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1996년과 2014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노인세대 가구의 비율은 1996년 30.9%에서 2014년 61.7%로 30.8%p 증가하였음

○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빈곤을 크게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지난 20여 년간 자녀와의 동거 노인인구 특히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인 자녀가구주인 동거 노인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반면 노인들만 사는 가구의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 노인빈곤을 악화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됨

3. 증여와 노인 빈곤

○ 여기서는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자산이 노인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2015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증여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노인들의 증여 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표 8-23〉 노인 및 노인가구 빈곤율(2012년)

(단위: %)

구분	시장소득 50%	가처분소득 50%
노인가구	49.3	40.4
노인	47.9	39.0

주: 빈곤율 추정은 가구단위 빈곤율은 전체 모집단 대상 균등 조정 시장소득의 중위값 50%와 균등 조정 가처분 소득의 중위값 50%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개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것에 개인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3.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 〈표 8-23〉는 2012년 노인 및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산출한 것인데, 국민노후보장패널의 표본이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한 것이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것보다 조금 낮게 나옴
- 〈표 8-24〉는 빈곤 유무별로 노인들의 증여 제공 경험 비율과 제공한 증여액을 2012년 가치로 환산하여, 그것으로부터 2012년의 금융소득을 가상하여 추정한 것을 보여 줌.

〈표 8-24〉 빈곤 유무에 따른 노인들의 증여 제공 비율 및 환산평균소득

(단위: %, 년/만원)

구분		증여제공비율	증여액을 2012년 가치로 환산한 소득
시장소득 기준	빈곤노인	36.4	360.8
	비빈곤노인	36.3	476.1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노인	34.9	351.0
	비빈곤노인	37.3	464.5

주: 빈곤 여부 구분은 전국 균등 조정 가처분 소득의 중위값 50%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3.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 빈곤 여부에 따라 노인들의 증여 제공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두 집단 모두 35% 내외 수준의 높은 증여 제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제공한 증여액을 제공하지 않고 계속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거기로부터 발생할 금융소득을 빈곤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빈곤 노인은 연 351만원(가처분 소득 기준), 비빈곤 노인은 465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8-25〉 증여 환산소득 포함여부에 따른 노인 빈곤율

(단위: %, %p)

구분	중위 시장소득 50% 기준 빈곤율			중위 가처분 소득 50% 기준 빈곤율		
	시장소득 (A)	시장소득+증여환산소득(B)	A-B (%p)	가처분소득 (C)	가처분소득+증여 환산소득(D)	C-D (%p)
노인가구	49.3	43.0	6.3	40.4	35.0	5.4
노인	47.9	41.3	6.6	39.0	33.3	5.7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3.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 〈표 9-25〉는 증여 환산 소득으로 인한 노인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 본 것임
- 중위 시장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가구 대상 증여 환산소득의 빈곤 감소효과를 보면, 증여 환산 소득은 6.3%p 정도의 노인 가구 빈곤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위 가처분 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는 5.4%p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노인 개인단위로 빈곤율을 추정하면, 증여 환산소득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6.6%p, 가처분 소득기준으로는 노인빈곤율을 5.7%p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 등에게 보편적으로 증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노인 빈곤을 일정 정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됨

제6절 정책적 함의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사적 소득이전은 여전히 노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 중요성 정도는 예전보다 많이 하락하였으며,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보다 규모 및 중요도에서 더 큼

○ 둘째, 사적 소득이전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데 여전히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빈곤율을 4-5%p 정도 떨어뜨리는 정도임(가처분 소득 기준)

○ 셋째, 사적 부양의 맥락에서 노인 빈곤을 악화시킨 요인으로는 증여, 동거를 들 수 있음.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정 정도 노인 빈곤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자녀와의 동거가 급격히 감소한 점이 노인빈곤을 악화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 결과가 노인 빈곤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데 사적 소득이전과 같은 사적 부양의 역할이 점점 감소되고 있으므로, 공적 부양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그런 점에서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의 핵심은 국가에 의한 공적 복지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빈곤율이 크게 낮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높음. 또한 현재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자녀와의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임.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데 자녀와의 동거는 중요한 요인임. 그런 점에서 노인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가구에게 조세감면 혜택의 확대 등 노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구의 비중을 유지 내지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제 9 장

귀속임대료 및 지출을 반영한 노인빈곤 분석

9 귀속임대료 및 지출을 반영한 노인빈곤 분석

제1절 분석목적 및 내용

□ 분석목적

○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자산 보유와 더불어 생활실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거·의료, 이자상환액 등 필수적인 지출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노인빈곤 실태를 분석함

○ 주거비 지출 및 이자상환액에 상응하는 귀속임대료 개념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자산을 고려하여 빈곤지표를 분석함

□ 분석내용

○ 노인집단 유형별 주거비·의료비·이자상환액 등 필수적 지출을 고려하여 노인의 체감 빈곤지표 분석

- 지출 부담과 관련하여 가처분소득에 월세 등 실질적 주거비 부담과 주거로 인한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의료비 본인부담 등 필수적 지출을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노인빈곤 지표의 변화를 분석함

□ 분석데이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지출 조사 8,974가구)

□ 분석방법

- 귀속임대료 및 지출을 반영한 소득 개념별로 중위소득 50%를 상대적 빈곤 기준으로 활용하여 분석
-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귀속임대료를 산출하여 반영하고, 식료품비, 주거비 부담과 주거로 인한 원금 및 이자상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개념으로부터 빈곤지표의 변화를 노인가구 유형별로 분석함

○ 지출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개념

- 귀속임대료 반영 가처분소득(ADRI) =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료
  - 귀속임대료 산출방식 ☞ 시장가치 방법(Rental Equivalence), 사용자비용 방법(User Cost), 자기평가 방법(Self-estimation) 중 월세전환율을 활용한 시장가치 방법을 적용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에서 낮은 비율을 상한선으로 적용함

  - 자가 및 전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하여 전월세전환율 연 6%를 반영하여 귀속임대료를 산출함
  - 귀속임대료를 반영하여 빈곤율 산출 시,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선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귀속임대료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 귀속임대료 및 원리금상환액 반영 가처분소득(ADSI) =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료 - 거주주택 담보 관련 원리금상환액
- 식료품비 반영 가처분소득(ADFI) = 가처분소득 - 식료품비
- 주거비 반영 가처분소득(ADHI) = 가처분소득 - 주거비
- 교육비 반영 가처분소득(ADEI) = 가처분소득 - 교육비
- 의료비 반영 가처분소득(ADMI) = 가처분소득 - 의료비
- 원리금상환액 반영 가처분소득(ADII) = 가처분소득 - 원리금상환액
- 지출을 모두 반영한 가처분소득(ADII) = 가처분소득 - 식료품비 - 주거비 - 교육비 - 의료비 - 원리금상환액
- 귀속임대료 및 지출을 동시에 반영한 가처분소득(ADZI) =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료 - 식료품비 - 주거비 - 교육비 - 의료비 - 원리금상환액

제2절 분석결과

□ 가구주 연령별 귀속임대료 및 지출 분포 분석결과

○ 귀속임대료 ☞ 귀속임대료가 매우 높은 가구가 존재하지만 노인가구주 가구의 귀속임대료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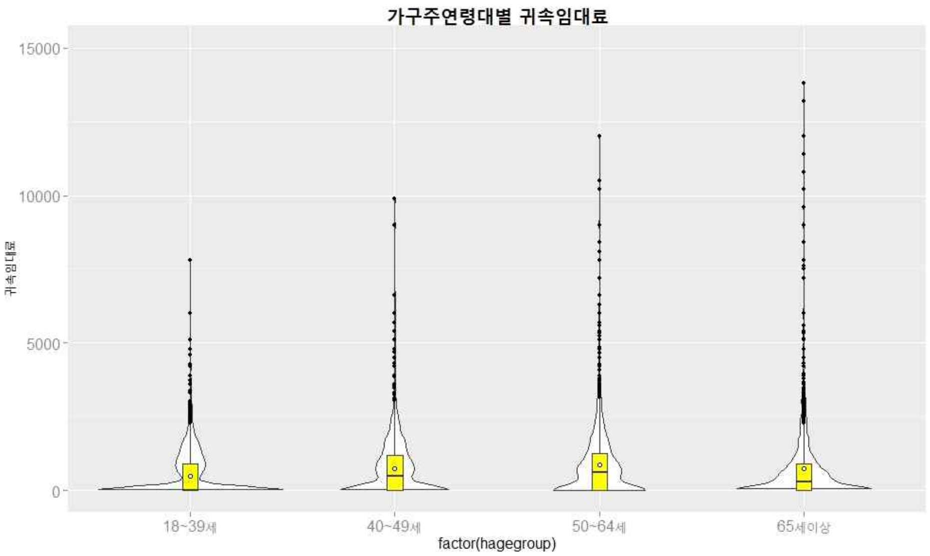

○ 거주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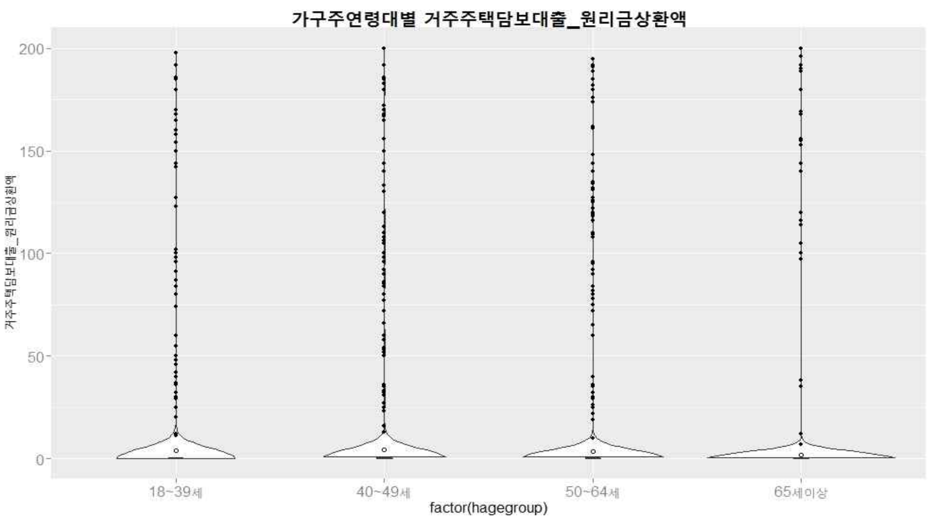

○ 식료품비 ☞ 노인가구주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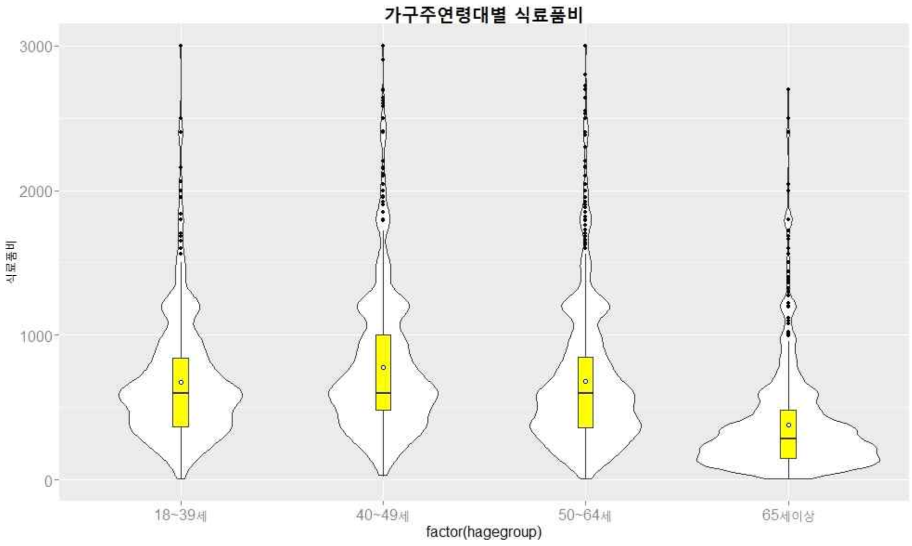

○ 주거비 ☞ 노인가구주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지만,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주거비 지출부담은 이보다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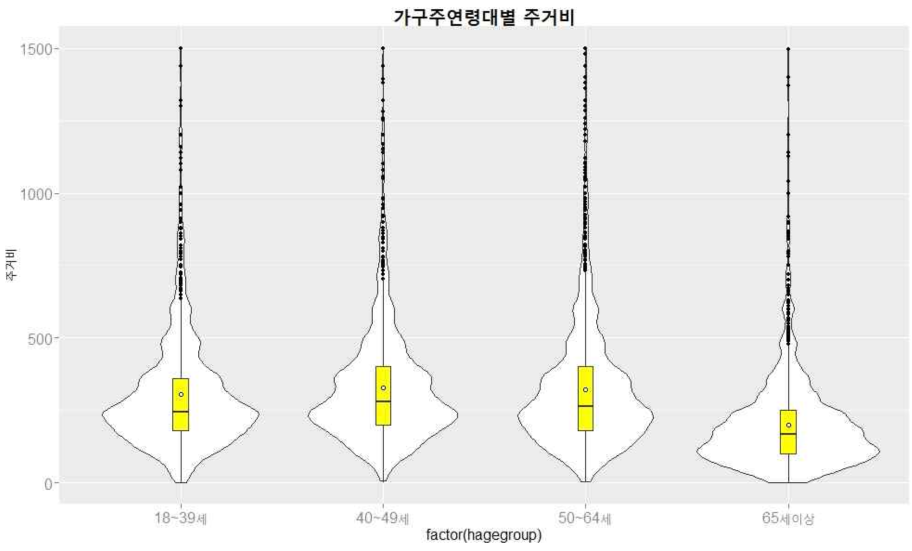

○ 교육비 ☞ 노인가구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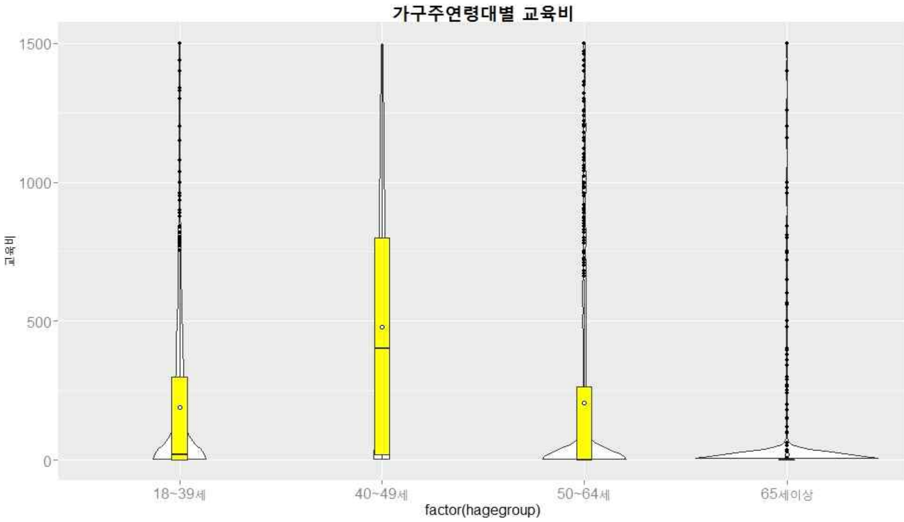

○ 의료비 ☞ 노인가구주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지만, 50~64세 중고령층 가구주 가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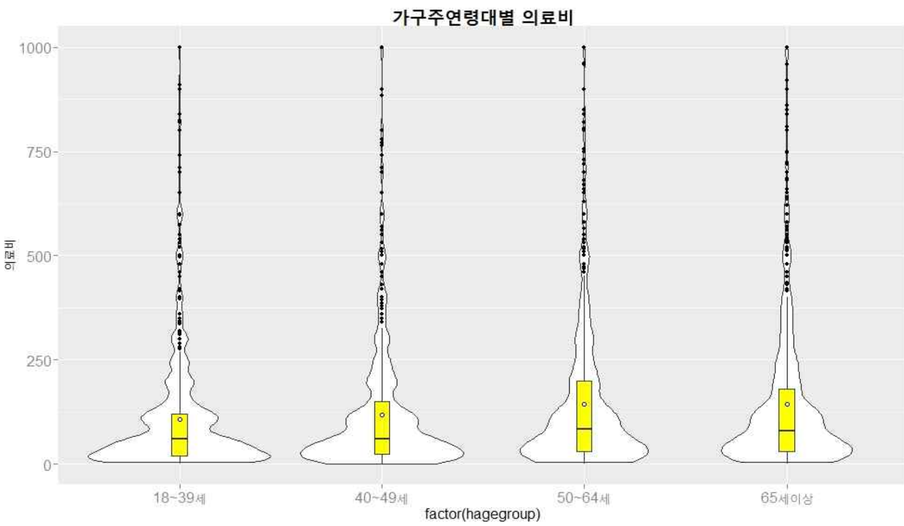

○ 원리금상환액 ☞ 노인가구주 가구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환능력이 낮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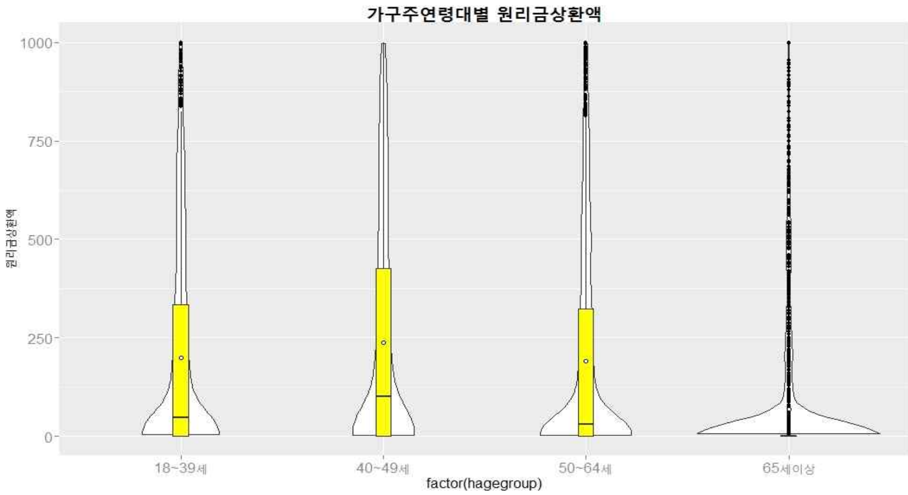

□ 노인가구 유형별 귀속임대료 및 지출 분포 분석결과

○ 귀속임대료 ☞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와 귀속임대료 수준이 거의 유사하지만,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귀속임대료 반영 시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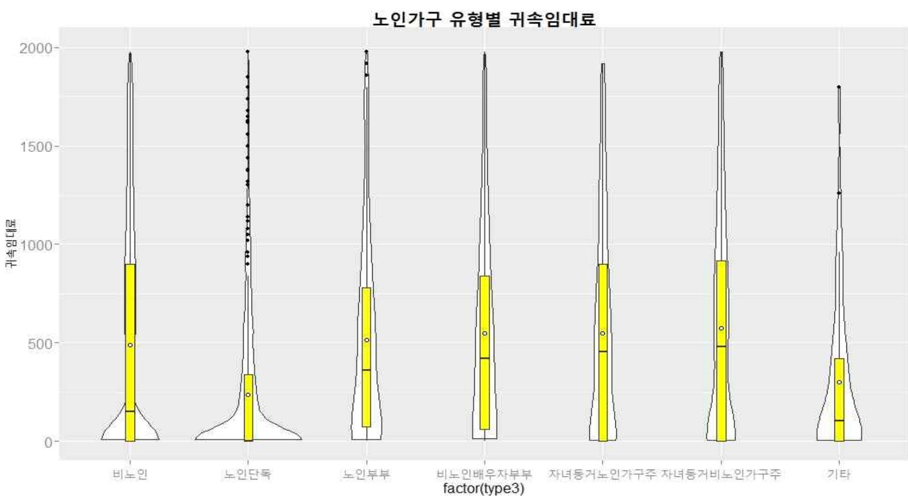

○ 거주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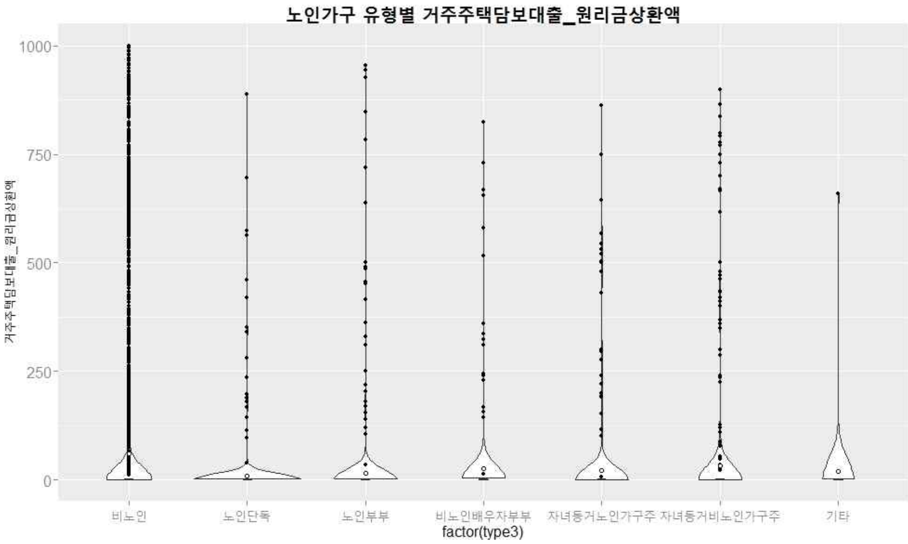

○ 식료품비 ☞ 노인가구 유형별 식료품비 지출을 비교하면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순서로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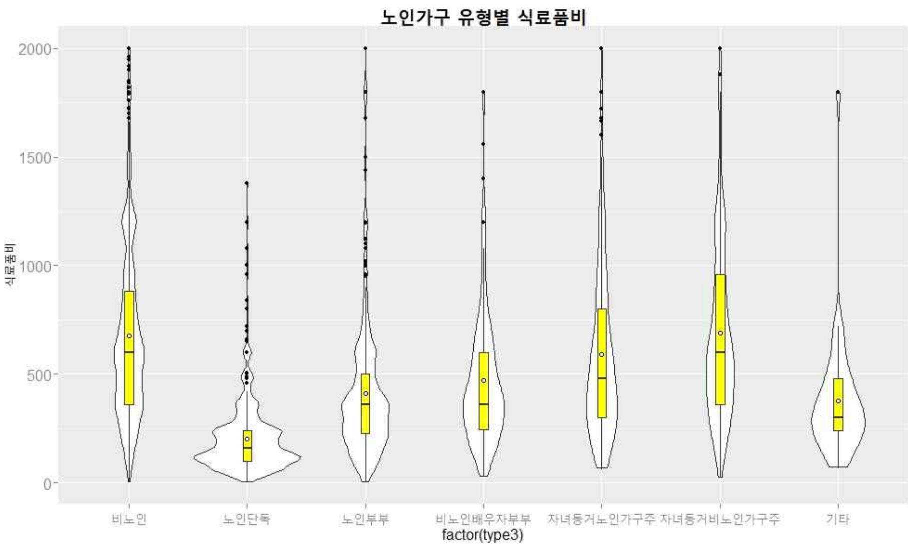

○ 주거비 ☞ 노인가구 유형별로 주거비 지출은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순서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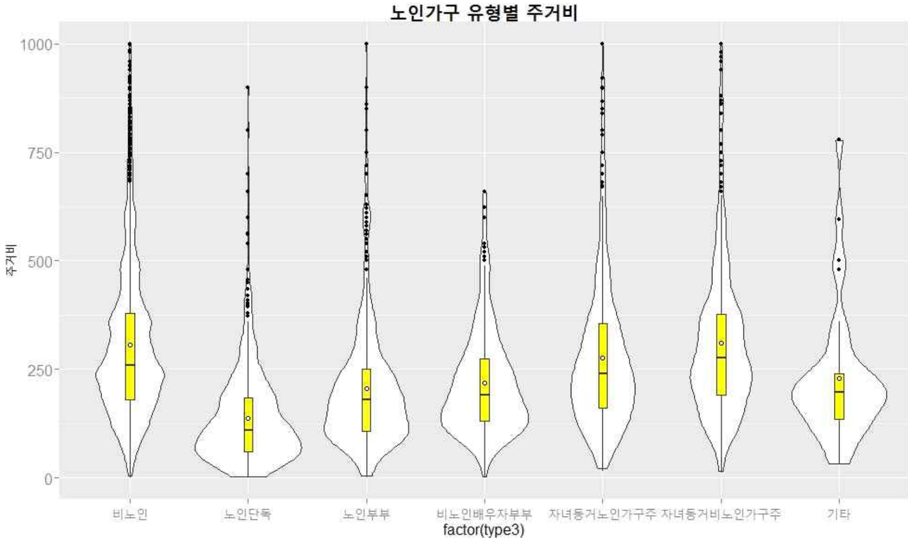

○ 교육비 ☞ 교육비 지출은 편차가 매우 크지만 비노인가구가 가장 높으며, 노인가구 유형 중 자녀동거가구에서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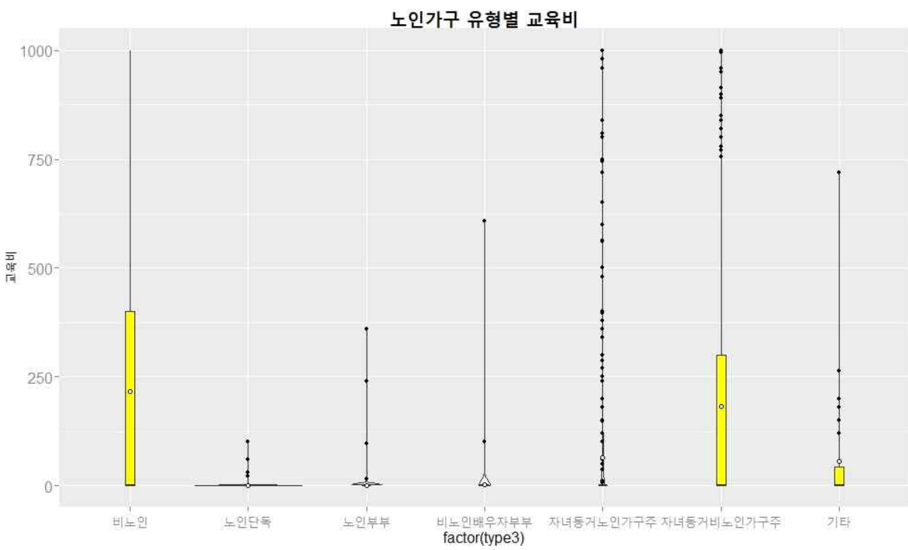

○ 의료비 ☞ 노인단독 가구의 의료비는 비노인가구보다는 낮지만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노인부부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에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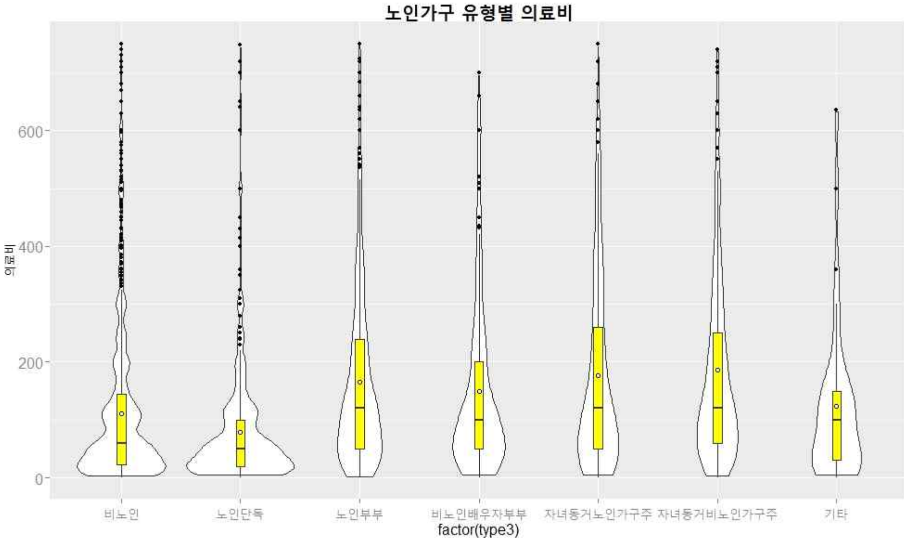

○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상환액은 상환 능력에 따라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순서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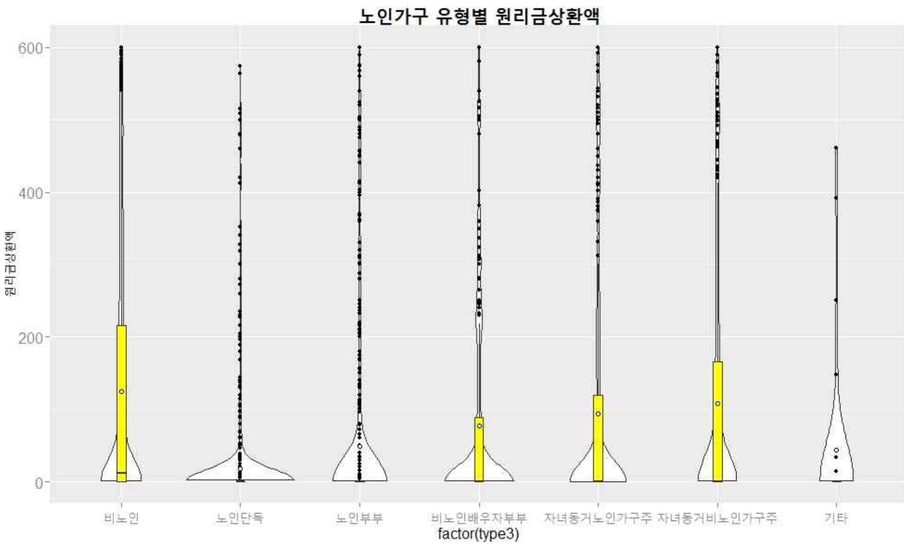

□ 귀속임대료 및 지출을 반영한 노인가구 유형별 상대빈곤 분석결과

○ 귀속임대료 반영 소득개념

- 귀속임대료 및 원리금상환액 반영 가처분소득(ADSI) =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료 - 거주주택 담보 관련 원리금상환액
  - 귀속임대료를 고려한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시, OECD 선행연구와 동일 방식으로 귀속임대료를 합산 반영하여 빈곤선을 조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함

○ 지출 반영 소득개념

- 식료품비 반영 가처분소득(ADFI) = 가처분소득 - 식료품비
- 주거비 반영 가처분소득(ADHI) = 가처분소득 - 주거비
- 교육비 반영 가처분소득(ADEI) = 가처분소득 - 교육비
- 의료비 반영 가처분소득(ADMI) = 가처분소득 - 의료비
- 원리금상환액 반영 가처분소득(ADII) = 가처분소득 - 원리금상환액
- 지출을 모두 반영한 가처분소득(ADTI) = 가처분소득 - 식료품비 - 주거비 - 교육비 - 의료비 - 원리금상환액

○ 귀속임대료 및 지출 반영 소득개념

- 귀속임대료 및 지출 동시 반영 가처분소득(ADZI) = 가처분소득 + 귀속임대료 - 식료품비 - 주거비 - 교육비 - 의료비 - 원리금상환액

○ 노인가구 여부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지출 조사 8,974가구)의 귀속임대료 및 지출 반영 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가구빈곤율 약 42.6%를 기초선(baseline)이라고 할 때, 귀속임대료를 반영하면서 빈곤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빈곤율은 약 30.6%로 12.0%p 감소함
  - 그러나, 빈곤선을 조정할 경우 노인가구빈곤율은 약 37.0%로 실질적으로 귀속임대료 반영 시 빈곤율 감소폭은 약 5.6%p(42.6% 대비 13.1% 감소) 수준으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노인세대의 부동산 등 자산보유 비율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귀속임대료를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매우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적절치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노인가구 여부	가처분 소득	귀속임대료 반영 (빈곤선 미조정)	귀속임대료 반영 (빈곤선 조정)	귀속임대료 & 원리금상환 반영	식료품비 반영	주거비 반영	교육비 반영	의료비 반영	부채 원리금상환 반영	지출 전체 반영	귀속임대료 및 지출 전체 반영
비노인가구	10.41	8.05	11.90	12.43	13.10	12.67	10.98	11.06	15.63	26.08	25.73
노인가구	42.62	30.59	36.97	35.56	45.38	44.60	40.99	45.69	42.05	49.07	40.32
전체	19.68	14.54	19.12	19.09	22.39	21.86	19.62	21.02	23.23	32.70	29.93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지출 분포에 따라 지출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등 절대적인 금액이 작을지라도 가처분소득 중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큰 항목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3%p 증가함
  - 반면, 노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교육비 또는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각각 약 1.6%p와 0.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경상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산출할 때 노인가구가 거의 부담하지 않는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를 반영함에 따라 노인빈곤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임

- 필수적인 지출 항목 전체를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약 49.1%까지 증가하며, 부동산 관련 보유자산을 귀속임대료로 반영하고 필수적인 지출을 반영할 경우 최종적으로 노인빈곤율은 약 40.3%로 2.3%p(42.6% 대비 5.4%) 감소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요컨대, 귀속임대료 등 빈곤율 산출 시 자산을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최근 OECD가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높지 않다고 이해하거나 빈곤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노인가구주 여부

-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노인가구빈곤율에 비해 약 10%p높은 수준인 약 53.0%이므로, 귀속임대료 반영 시(빈곤선 조정) 빈곤율의 절대적인 감소폭은 약 7.6%p로 상대적으로 크지만, 감소율은 53.0% 대비 14.4%로 거의 유사한 수준임

노인가구주 여부	가처분 소득	귀속임대료 반영 (빈곤선 미조정)	귀속임대료 반영 (빈곤선 조정)	귀속임대료 & 원리금상환 반영	식료품비 반영	주거비 반영	교육비 반영	의료비 반영	부채 원리금상환 반영	지출 전체 반영	귀속임대료 및 지출 전체 반영
비노인 가구주	10.74	8.21	12.08	12.63	13.33	12.92	11.41	11.58	15.98	26.25	25.72
노인 가구주	52.98	38.12	45.34	43.14	56.14	55.18	50.17	56.20	50.26	56.69	45.61
전체	19.68	14.54	19.12	19.09	22.39	21.86	19.62	21.02	23.23	32.70	29.93

○ 노인가구 유형

- 노인가구 유형별로도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른 귀속임대료 및 필수적인 지출 부담에 따라 노인빈곤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 항목의 부담이 큰 노인가구 유형에서는 빈곤율이 높아짐
- 빈곤율이 가장 높은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약 78.9%에서 귀속임대료 반영(빈곤선 조정) 시에 약 71.4%로 감소하며, 개별 지출 항목에서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반영 시 빈곤율이 상승하지만, 지출 전체 항목을 반영할 경우 다른 가구유형과 달리 빈곤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노인가구 유형	가처분 소득	귀속임대료 반영 (빈곤선 미조정)	귀속임대료 반영 (빈곤선 조정)	귀속임대료 & 원리금상환 반영	식료품비 반영	주거비 반영	교육비 반영	의료비 반영	부채 원리금상환 반영	지출 전체 반영	귀속임대료 및 지출 전체 반영
비노인가구	10.41	8.05	11.90	12.43	13.10	12.67	10.98	11.06	15.63	26.08	25.73
노인단독	78.87	65.50	71.37	70.00	80.01	81.26	75.81	81.01	73.94	78.39	68.76
노인부부	51.16	28.93	38.59	35.39	54.85	52.71	46.93	55.38	44.95	53.94	39.30
비노인배우자	26.71	12.25	20.03	18.92	34.53	30.96	22.84	34.14	30.81	40.17	24.89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23.80	17.51	22.15	20.75	26.86	25.44	23.94	26.15	27.06	32.67	25.82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13.59	9.45	13.38	14.19	15.09	15.02	15.29	15.58	18.86	26.77	25.15
기타	58.12	50.86	68.26	50.86	62.12	58.12	62.49	58.12	53.39	59.97	59.36
전체	19.68	14.54	19.12	19.09	22.39	21.86	19.62	21.02	23.23	32.70	29.93

제3절 정책적 함의

□ 가구주 연령집단별 귀속임대료와 지출 분포 분석결과에 의하면, 귀속임대료가 매우 높은 가구가 분포하고 있지만 노인가구주 가구 귀속임대료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음

○ 식료품비, 주거비의 경우, 절대적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득 수준을 고려한 부담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음

○ 노인가구주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지만, 50~64세 중고령층 가구주 가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노인가구 유형별 귀속임대료 및 지출 분포 분석결과,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와 귀속임대료 수준이 거의 유사하지만,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귀속임대률 반영 시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식료품비와 주거비 지출은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순서로 낮게 나타났음

○ 노인단독 가구의 의료비는 비노인가구보다는 낮지만 유사한 수준이었고, 노인부부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에서 가장 높았음

□ 부동산 자산 보유를 반영한 귀속임대료 및 필수적 지출 반영 시 빈곤율 변화

○ 귀속임대료와 지출 반영 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가구빈곤율 약 42.6%를 기초선(baseline)이라고 할 때, 귀속임대료를 반영하면서 빈곤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빈곤율은 약 30.6%로 12.0%p 감소함

- 그러나, 빈곤선을 조정할 경우 노인가구빈곤율은 약 37.0%로 실질적으로 귀속임대료 반영 시 빈곤율 감소폭은 약 5.6%p(42.6% 대비 13.1% 감소) 수준으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노인세대의 부동산 등 자산보유 비율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귀속임대료를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매우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적절치 않음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지출 분포에 따라 지출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등 절대적인 금액이 작을지라도 가처분소득 중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큰 항목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3%p 증가함
  - 반면, 노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교육비 또는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각각 약 1.6%p와 0.5%p 감소함
- 필수적인 지출 항목 전체를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약 49.1%까지 증가하며, 부동산 관련 보유자산을 귀속임대료로 반영하고 필수적인 지출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약 40.3%로 2.3%p(42.6% 대비 5.4%) 감소하는 수준임

○ 노인가구주 여부

-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노인가구빈곤율에 비해 약 10%p높은 수준인 약 53.0%이므로, 귀속임대료 반영 시(빈곤선 조정) 빈곤율의 절대적인 감소폭은 약 7.6%p로 상대적으로 크지만, 감소율은 53.0% 대비 14.4%로 거의 유사한 수준임

○ 노인가구 유형

- 노인가구 유형별로도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른 귀속임대료 및 필수적인 지출 부담에 따라 노인빈곤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 항목의 부담이 큰 노인가구 유형에서는 빈곤율이 높아짐
- 빈곤율이 가장 높은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약 78.9%에서 귀속임대료 반영(빈곤선 조정) 시에 약 71.4%로 감소하며, 개별 지출 항목에서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반영 시 빈곤율이 상승하지만, 지출 전체 항목을 반영할 경우 다른 가구유형과 달리 빈곤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요컨대, 귀속임대료 등을 통해 빈곤율 산출 시 보유 자산을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OECD가 발표하고 있는 빈곤지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그만큼 높지 않다고 이해하거나 빈곤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제 10 장

소득, 자산, 주거, 건강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10 소득, 자산, 주거, 건강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제1절 분석목적 및 내용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대부분의 노인빈곤 연구는 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빈곤은 소득이라는 단일 차원의 현상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인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상임

○ 따라서 노인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은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빈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며, 물질적인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건강수준, 사회참여수준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도 적용 가능한 개념임
- 빈곤 대응 정책은 소득보장 정책 이외에 사회·문화·심리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김경혜 외, 2013: 23)

□ 또한 개인 마다 기본생활에 필요한 소득규모와 삶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빈곤은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 동일한 소득이더라도 개인별로 느끼는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특히 노인가구의 빈곤 또는 복지수준을 설명"하는데 의미하는 바가 큼(김경혜 외, 2013: 3)

- 노인은 은퇴 이후 피복비와 교통비, 교육비 등이 감소하고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 할인,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비현금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혜하기 때문에, 노인은 동일한 가구소득이더라도 청장년층 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가능성이 있음

○ 노인의 소득빈곤은 다양한 생활영역의 결핍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짐(김경혜 외, 2013; 황남희, 2015)

□ 본 장에서는 소득을 포함하여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등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실태를 분석함

○ 소득빈곤과 다양한 생활영역의 결핍(빈곤)이 중복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를 파악함

○ 궁극적으로 다차원적인 노인빈곤실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2. 노인의 삶의 질과 다차원성[11)]

□ 노인의 삶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학계에서 이미 공유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노년기 삶의 질은 다면적인 측면에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노년학의 새로운 흐름이며, 최근 노년기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인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는 노년의 삶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을 바라봄(Hooyman and Kiyak, 2008)

- 성공적 노후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개인이 노년기 동안 질병 및 장애의 위험이 적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며, 본인의 삶에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Ng, Cheung, Chong, Woo, Kwan, and Lai., 2011; Walker, 2006)

○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을 다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인구사회학적 배경, 사회심리적 안정,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물리적 안전, 경제상태, 건강, 사회참여 등 7개 영역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한 정경희 외(2012)의 연구가 대표적임

---

11) 황남희 외(2015)에서 요약 발췌함

□ 최근에는 빈곤문제는 단순히 소득빈곤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기본적 욕구 충족 수준 및 삶 전반에 대한 상대적 결핍수준을 분석하면서 빈곤의 다차원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황남희, 2015)

○ 특히 Sen의 실현능력 접근(capability approach)은 빈곤의 다차원성을 이해하는 근간이 됨(김경혜, 윤민석, 2013)

- Sen(2009)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본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능력과 이를 실현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이 때 이를 실현함에 있어 불균등한 능력(inequality of capability)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와 질병을 비롯한 개인의 한계, 사회관계망, 또는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비롯됨
- 이를 노인 빈곤에 적용해보면,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소득수준과 중요한 삶의 가치,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다양하므로, 단순히 소득수준에만 의존하여 노인 빈곤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김경혜, 윤민석, 2013)

3. 분석자료 및 내용

□ 본 장의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2015년) 조사자료임

○ 다차원적 빈곤 분석을 위해 소득 이외의 건강, 사회관계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개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정보가 필요함

-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함

○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자료의 조사시점은 2014년임

- 소득과 만족도 등의 문항은 2014년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자산과 주거, 일반 가족사항 등의 문항은 2014년 말 기준임
- 연간 기준으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은 2,592만원이며, 소득빈곤선 기준인 중위소득의 50%는 1296만원임

○ 분석대상은 18세 이상 1만 280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4,618명임

- 한국복지패널 전체 응답자는 1만 6,664명이며, 이 중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의 결측치는 제외함
- 한국복지패널 응답가구는 6,914가구이며, 실제 분석에 활용된 가구는 분석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6,884가구임.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구는 3,596가구임

〈표 10-1〉 다차원적 빈곤지표 및 빈곤선

차원	지표	지표빈곤선
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가족수입만족도	5점 척도 중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인 경우
자산	순자산-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 차감) 최저생계비 6개월 미만
	순자산-주관적 최저생활비 기준	주관적 최저생활비 6개월 미만
주거	최저주거기준	정부발표 최소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이하
	주거환경만족도	5점 척도 중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인 경우
건강	우울증상유무	우울척도 CESD-11에서 16점 이상
	장애유무	등록 및 비등록 장애인인 경우
사회 참여	경제활동 참여상태	근로능력자 중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여가생활만족도	5점 척도 중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인 경우
사회 관계망	가족관계만족도	5점 척도 중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인 경우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5점 척도 중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인 경우

주: 각 차원에서 1개 이상 지표가 빈곤선 미만이면 차원빈곤임. 다만 사회참여 차원은 2개 지표 모두 빈곤선 미만인 경우 차원빈곤으로 봄

□ 다차원적 빈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빈곤을 구성하는 차원과 지표체계를 선정해야 함(표 10-1 참조)

○ 다차원 빈곤의 차원 및 지표체계, 빈곤선에 대한 합의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 마다 연구 목적에 맞춰 선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생애주기상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김경혜 외(2013)와 황남희(2015)를 참고하여 다차원 빈곤을 측정함

□ 본 연구에서 차원은 소득을 포함하여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의 6개이며, 각 차원은 2개의 지표로 구성하여 총 12개 지표임

○ 지표는 차원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1개씩 선정함

- 다차원적 빈곤연구의 결과는 지표 선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표 선정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객관적 지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관적 지표는 측정상의 불확실성이 크다거나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 마다 기본생활에 필요한 소득규모와 삶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가 개인 측면을 빈곤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주장도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차원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선정하고자 하였음

□ 소득과 주거, 사회참여 차원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만족도) 각 1개씩 선택함[12)]

○ 소득 차원은 균등화 가처분소득과 가족수입만족도, 주거 차원은 정부공시 최저주거기준와 주거환경만족도, 사회참여 차원은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여가생활 만족도임

- 소득 및 주거 차원의 객관적 지표는 관련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되는 소득 및 주거 만족도 관련 유일한 항목이므로 선정함
- 사회참여는 노인의 무위와 관련된 차원으로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으로 구분한 김경혜 외(2011)과 황남희(2015)의 선정기준을 따름

---

12) 전문가자문회의에서 노인의 경우 객관적 소득은 낮더라도 주관적인 소득인식은 높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간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소득 차원 지표 간 상관계수 0.2154, 주거 차원 지표 간 상관계수 0.2461, 사회참여 차원 지표 간 상관계수 -0.0319로 확인됨

- 노인은 경제활동과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65세 이상 노인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 우리나라의 실효은퇴연령은 72~73세로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노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노년기 삶에서 경제활동은 무위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자산 차원은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정부 기준의 최저생계비와 응답자의 주관적 최저생활비를 활용함

- 자산은 정태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경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노인은 생애주기상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 못지 않게 축적된 자산을 이용한 소득 유동화가 중요함

○ 건강 차원은 정신건강 관련 지표로 우울증상유무, 신체건강 관련 지표로 장애유무를 선정함

- 노인의 신체건강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등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복지패널은 전 국민을 조사하므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조사문항이 없음
- 또한 노인의 정신건강은 치매유무로도 판정 가능할 것이나 한국복지패널은 치매유무에 대한 조사문항이 없으며, 김경혜 외(2013)과 황남희(2015)에서도 치매유무가 아닌 우울증상을 건강차원의 지표로 선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건강 지표로 장애유무, 정신건강 지표로 우울증상유무를 활용함

○ 사회관계망은 차원 특성상 모두 주관적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임

- 사회관계망은 노후 삶에서 고독과 관련된 차원으로 단순한 관계망의 크기보다 관계망의 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김경혜 외(2013)와 황남희(2015)도 배우자와 자녀 유무와 만족도, 친지 혹은 이웃과의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고 있음

□ 지표빈곤선은 〈표 10-1〉에 제시되어 있으며, 차원별로 1개 이상 지표가 빈곤선 미만이라면 차원빈곤에 해당됨

○ 다만 사회참여는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여가생활만족도가 모두 지표빈곤선 미만인 경우 차원빈곤이 됨

- 일상생활의 시간배분상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은 대체가능하기 때문임
- 다시 말해 노년기 삶에서 사회참여는 무위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데, 활동종류에 구분 없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고 봄

제2절 분석결과

1. 연령별 다차원적 빈곤실태

□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18세 이상 전체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구분하여 다차원적 빈곤지표의 빈곤율을 비교함

○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지표빈곤율이 높지만, 전체 12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노인인구의 지표빈곤율이 전체 인구 보다 낮음

- 주거 차원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사회참여 차원의 여가생활만족도이며, 18세 이상은 각각 10.6%와 16.6%, 65세 이상은 각각 7.5%와 15.6%임

○ 이들은 모두 주관적 지표로,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주거환경과 여가생활에 대한 준거기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표 10-2〉 다차원적 빈곤지표 빈곤율

(단위: %)

차원	지표	빈곤율	
		18세 이상	65세 이상
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14.7	48.3
	가족수입만족도	33.3	38.3
자산	순자산-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	9.2	12.7
	순자산-주관적 최저생활비 기준	10.1	11.4
주거	최저주거기준	15.3	17.9
	주거환경만족도	10.6	7.5
건강	우울증상유무	9.7	21.6
	장애유무	7.0	16.4
사회참여	경제활동 참여상태	33.1	50.0
	여가생활만족도	16.6	15.6
사회관계망	가족관계만족도	3.4	5.7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3.5	5.3

주: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연령별로 빈곤율이 높은 지표를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소득 차원과 사회참여 차원이 높음

○ 그러나 18세 이상은 소득 차원의 지표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반면, 65세 이상은 사회참여 차원의 지표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음

- 18세 이상은 소득 차원의 균등화 가처분소득과 가족수입만족도가 각각 14.7%와 33.3%이며, 사회참여 차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여가생활만족도는 각각 33.1%와 16.6%임
- 65세 이상 노인은 사회참여 차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여가생활만족도는 50.0%와 15.6%이며, 소득 차원의 균등화 가처분소득과 가족수입만족도는 각각 48.3%와 38.3%임

○ 소득과 사회참여를 제외하고 연령별로 빈곤율이 높은 지표를 뽑는다면, 18세 이상 전체 인구는 주거 차원의 최저주거기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 차원의 우울증상유무임

- 18세 이상 중 15.3%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65세 이상 중 21.6%가 우울증상을 겪고 있음

□ 연령대를 청년(18~34세), 중장년(35~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원 빈곤율을 살펴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에 해당하는 차원수(빈곤차원수)가 증가하며, 노년층에서 빈곤차원수가 가장 많은 경향이 있음

- 평균 빈곤차원수가 청년 0.8개, 중장년 0.9개, 노인 1.5개임
- 주거 차원의 빈곤율은 중장년이 노인 보다 높지만, 중장년 21.6%와 노인 21.5%로 그 차이는 0.1% p에 불과함

○ 차원별로 살펴보면, 소득과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원빈곤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자산은 중장년의 빈곤율이 가장 낮음

- 각 차원에서 1개 이상의 지표가 빈곤선 미만이면 차원빈곤으로 측정함
- 자산 차원의 빈곤율은 노인 13.0%, 청년 11.7%, 중장년 9.5% 순임

〈표 10-3〉 연령대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구분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청년 (18~34세)	28.5	11.7	20.9	7.9	4.0	3.5	0.8
중장년 (35~64세)	38.3	9.5	21.6	13.4	4.7	6.3	0.9
노인 (65세 이상)	62.0	13.0	21.5	33.0	6.8	9.7	1.5
계	39.4	10.6	21.4	14.9	4.8	6.0	1.0

주1: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6개 차원 중에서 기준빈곤선 이하인 차원의 수를 평균한 것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연령대별로 빈곤율이 높은 차원을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과 주거 차원임

○ 우리나라 국민은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 차원과 주거 차원에서 정책적 욕구가 강하다 할 수 있음

- 소득 차원의 빈곤율은 노인이 62.0%로, 중장년(38.3%)과 청년(28.5%)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임

- 주거 차원의 빈곤율은 연령에 상관없이 약 21%대 수준임

○ 다만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건강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음

- 노인 33.0%, 중장년 13.4%, 청년 7.9%

○ 차원빈곤율이 가장 낮은 차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임

- 청년은 사회관계망 차원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3.5%(사회참여 4.0%)이며, 중장년과 노인은 사회참여가 가장 낮아 각각 4.7%와 6.8%(사회관계망 6.3%, 9.7%)임
- 즉 청년은 사회관계망 차원이 가장 양호하고, 중장년과 노인은 사회참여 차원이 가장 양호함

〔그림 10-1〕 연령대별 차원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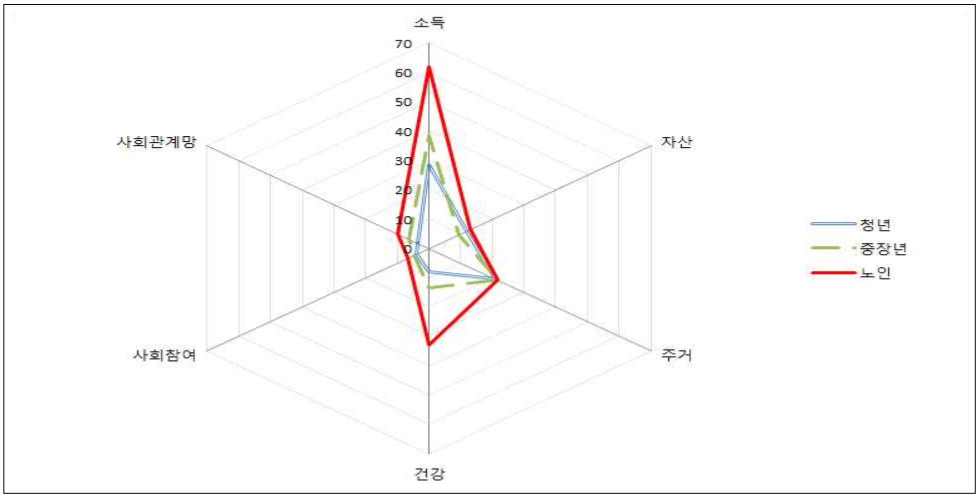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2.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 노인이 빈곤을 경험하는 차원 수를 살펴보면, 어떠한 차원에서도 빈곤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빈곤차원수 0개)이 24.9%에 불과함. 즉 노인의 75.1%는 1개 이상의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

○ 1개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3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개 차원 23.7%, 3개 차원 10.9%, 4개 차원 5.2%, 5개 이상 2.3%순임

○ 빈곤차원수가 1개인 경우 빈곤한 차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이 69.7%로 가장 높고, 건강 17.8%, 주거 8.7%, 자산 1.5%, 사회관계망 1.4%, 사회참여 0.9%순임

- 이러한 경향성은 빈곤차원수가 증가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됨

〈표 10-4〉 노인의 차원빈곤수

(단위: %)

구분		소득
없음		24.9
있음	1개	33.0
	2개	23.7
	3개	10.9
	4개	5.2
	5개 이상	2.3
계		100.0

주: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5〉 빈곤차원수 1개의 경우 빈곤한 차원 분포

(단위: %)

구분	비율
소득	69.7
자산	1.5
주거	8.7
건강	17.8
사회참여	0.9
사회관계망	1.4
계	100.0

주: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원빈곤율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후기 노인(75세 이상)이 전기노인(65~74세)에 비해 빈곤수준이 높음

○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차원빈곤율이 높지만,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차원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낮은(양호한) 경향이 있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회참여 차원빈곤율이 각각 7.6%와 2.2%이며, 사회관계망 차원빈곤율은 각각 10.4%와 6.0%임

〈표 10-6〉 노인의 성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구분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남성(A)	56.5	9.1	19.1	29.8	6.0	9.1	1.3
여성(B)	65.8	15.7	23.3	35.2	7.3	10.2	1.6
차이(A-B)	-9.3	-6.6	-4.2	-5.4	-1.3	-1.1	-0.3

주1: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6개 차원 중에서 기준빈곤선 이하인 차원의 수를 평균한 것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7〉 노인의 연령대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구분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전기노인 (65~74세, A)	55.8	9.4	19.0	28.3	6.4	8.0	1.3
후기노인 (75세 이상, B)	71.6	18.6	25.5	40.2	7.3	12.5	1.8
차이(A-B)	-15.8	-9.2	-6.5	-11.9	0.9	-4.5	-0.5

주1: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6개 차원 중에서 기준빈곤선 이하인 차원의 수를 평균한 것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8〉 거주지역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구분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도·농 기준	도시(A)	57.6	12.5	21.2	32.9	7.6	10.4	1.5
	농촌(B)	67.3	15.9	23.7	33.6	2.2	6.0	1.5
	차이(A-B)	-9.7	-3.4	-2.5	-0.7	-5.4	4.4	0.0

주1: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6개 차원 중에서 기준빈곤선 이하인 차원의 수를 평균한 것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노인가구유형별로 차원빈곤율을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상황이 가장 심각한 반면 자녀동거가구의 빈곤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단독가구의 평균 빈곤차원수는 2.0개임

- 소득의 차원빈곤율이 가장 높은 80.9%이며, 그 다음 건강 45.7%, 주거 31.5%, 자산 26.3%, 사회관계망 14.1%, 사회참여 6.8% 순임
- 다차원원적 빈곤실태 분석을 통해서도, 노인단독가구는 소득과 자산,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등의 삶의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목표정책대상으로 확인됨

〈표 10-9〉 노인가구유형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구분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노인 가구	노인단독		80.9	26.3	31.5	45.7	6.8	14.1	2.0
	부부	노인배우자	59.3	8.0	16.4	28.9	6.3	6.2	1.3
		비노인배우자	51.9	5.7	19.0	26.0	5.8	6.2	1.1
	자녀 동거	노인가구주	45.0	4.7	15.5	18.3	8.6	9.7	1.0
		비노인가구주	43.2	10.3	24.9	18.8	6.0	8.9	1.1
	기타		65.3	22.9	38.7	32.1	9.8	20.3	1.9
비노인가구			33.6	10.3	21.0	10.7	4.1	4.7	0.8

주1: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6개 차원 중에서 기준빈곤선 이하인 차원의 수를 평균한 것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자녀동거가구의 차원빈곤수는 1.0~1.1개이며, 소득 차원의 빈곤율이 가장 높음

-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노인이 가구주인지 여부에 따라 노인가구주가구와 비노인가구주가구로 나뉘는데, 노인가구주인 경우는 주거 차원과 자산 차원의 빈곤율, 비노인가구주인 경우는 소득 차원과 사회참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주가구는 소득 차원 빈곤율이 45.0%이며, 그 다음 건강 18.3%, 주거 15.5%, 사회관계망 9.7%, 사회참여 8.6%, 자산 4.7% 순임
- 자녀와 동거하는 비노인가구주가구는 소득 참여 빈곤율이 43.2%이며, 그 다음 주거 24.9%, 건강 18.8%, 자산 10.3%, 사회관계망 8.9%, 사회참여 6.0% 순임

□ 기초보장 및 공적연금 수급별로 차원빈곤율을 살펴봄

○ 공적부조인 기초보장을 수급하는 노인은 소득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기초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가장 큰 차원은 자산이며, 수급노인의 자산 차원빈곤율은 50.8%로 비수급노인의 자산 차원빈곤율 9.1%에 비해 41.7% p 높음
- 기초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가장 작은 차원은 사회참여임. 수급노인의 사회참여 차원빈곤율은 15.1%로 비수급노인의 5.9%에 비해 9.2%p 높음
- 기초보장을 수급하지 않더라도 각 차원별로 빈곤율이 최소 5.9%에서 최대 58.6%에 달함

○ 반면 사회보험인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모든 차원에서 낮음

-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가장 큰 차원은 소득이며, 수급노인의 소득빈곤율은 48.3%로 비수급노인의 소득빈곤율 70.7%에 비해 22.4%p 낮음
-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가장 작은 차원은 사회참여임. 수급노인의 사회참여는 4.2%로 비수급노인의 8.4%에 비해 4.2%p 낮음

〈표 10-10〉 기초보장 및 공적연금 수급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구분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기초보장	수급(A)	95.2	50.8	42.0	55.7	15.1	26.3	2.8
	비수급(B)	58.6	9.1	19.4	30.6	5.9	8.0	1.3
	차이(A-B)	36.6	41.7	22.6	25.1	9.2	18.3	1.5
공적연금	수급(A)	48.3	5.9	16.0	27.1	4.2	5.7	1.1
	비수급(B)	70.7	17.5	25.1	36.7	8.4	12.3	1.7
	차이(A-B)	-22.4	-11.6	-9.1	-9.6	-4.2	-6.6	-0.6

주1: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6개 차원 중에서 기준빈곤선 이하인 차원의 수를 평균한 것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3. 소득빈곤 여부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 일반적인 소득빈곤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빈곤 여부에 따른 차원빈곤율을 살펴봄

○ 소득빈곤 기준은 소득차원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지표와 동일한 중위소득 50% 미만임

○ 소득이 빈곤한 노인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 보다 평균 빈곤차원수가 더 많고 (0.5개), 자산과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의 모든 차원에서 빈곤율이 더 높음(4.1~17.7% p)

- 자산과 건강, 주거 차원에서 빈곤 격차가 큰 편이며(11.2~17.7% p),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은 빈곤 격차가 작은 편임(4.1~7.5% p)

〈표 10-11〉 소득빈곤 여부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소득빈곤여부 \ 차원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빈곤(A)	22.2	27.3	40.2	8.9	13.6	1.1
비빈곤(B)	4.5	16.1	26.2	4.8	6.1	0.6
차이(A-B)	17.7	11.2	14.0	4.1	7.5	0.5

주1: 빈곤기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미만이며, 차원빈곤수는 소득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의 평균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 노인의 소득빈곤은 다양한 생활영역의 결핍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지만 건강 차원에서 빈곤한 노인은 26.2%, 주거 차원 빈곤 노인 16.1%, 사회관계망 차원 빈곤 노인 6.1%, 사회참여 빈곤 노인 4.8%, 자산 차원 빈곤 노인 4.5%에 이름
- 소득 차원에서 빈곤하지만 자산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은 77.8%(100%-22.2%), 주거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72.7% (100%-27.3%), 건강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59.8% (100%-40.2%), 사회참여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91.1%(100%-8.9%), 사회관계망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86.4%(100%-13.6%)임

□ 소득빈곤 여부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함

○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노인은 전반적으로 차원빈곤율이 높은 편이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음

- 자산 차원은 소득이 빈곤하며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않는 후기노인임
- 주거 차원은 소득빈곤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노인가구에 속한 노인이지만, 전체 가구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지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음
- 건강 차원은 소득이 빈곤한 후기 여성노인임
- 사회참여 차원은 소득빈곤여부에 상관없이 도시지역 거주 노인, 기초보장 수급 노인임
- 사회관계망 차원은 소득이 빈곤한 도시지역 거주, 남성노인임

〈표 10-12〉 소득빈곤 여부별 및 성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소득빈곤여부 \ 차원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빈곤	남성(A)	16.7	24.8	35.1	9.0	16.2	1.0
	여성(B)	24.9	28.6	42.8	8.8	12.3	1.2
	차이(A-B)	-8.2	-3.8	-7.7	0.2	3.9	-0.2
비빈곤	남성(A)	4.1	15.3	26.3	4.0	4.5	0.5
	여성(B)	4.8	16.9	26.2	5.6	7.6	0.6
	차이(A-B)	-0.7	-1.6	0.1	-1.6	-3.1	-0.1

주1: 빈곤기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미만이며, 차원빈곤수는 소득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의 평균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13〉 소득빈곤 여부별 및 연령대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소득빈곤여부 \ 차원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빈곤	전기노인(A)	17.3	25.6	36.2	8.9	12.2	1.0
	후기노인(B)	27.1	29.1	44.2	8.8	15.0	1.2
	차이(A-B)	-9.8	-3.5	-8.0	0.1	-2.8	-0.2
비빈곤	전기노인(A)	4.1	14.6	23.0	4.8	5.1	0.5
	후기노인(B)	5.3	19.9	33.9	5.0	8.4	0.7
	차이(A-B)	-1.2	-5.3	-10.9	-0.2	-3.3	-0.2

주1: 빈곤기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미만이며, 차원빈곤수는 소득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의 평균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14〉 빈곤노인의 가구유형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가구유형 \ 차원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노인단독		32.3	34.6	50.1	7.8	15.9	1.4
부부	노인배우자	13.4	20.6	32.4	8.7	9.4	0.8
	비노인배우자	11.5	26.0	43.4	8.1	18.8	1.1
자녀 동거	노인가구주	17.2	21.5	31.9	11.6	15.0	1.0
	비노인가구주	26.8	25.5	24.8	13.5	10.4	1.0
기타		29.5	36.4	43.7	15.2	28.7	1.5

주1: 빈곤기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미만이며, 차원빈곤수는 소득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의 평균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15〉 비빈곤노인의 가구유형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가구유형 \ 차원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노인단독		6.2	20.8	30.7	3.3	7.8	0.7
부부	노인배우자	2.4	12.0	25.3	3.9	2.9	0.5
	비노인배우자	2.2	15.2	30.4	2.6	3.7	0.5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3.2	11.5	19.7	5.7	6.2	0.5
	비노인가구주	6.8	21.1	30.3	6.3	9.9	0.7
기타		16.8	39.1	28.3	11.5	17.4	1.1

주1: 빈곤기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미만이며, 차원빈곤수는 소득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의 평균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16〉 소득빈곤 여부별 및 지역별 차원빈곤율: 도·농기준

(단위: %, 개)

소득빈곤여부 \ 차원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빈곤	도시(A)	22.0	26.8	41.5	10.4	15.1	1.2
	농촌(B)	22.8	29.5	34.8	2.3	7.5	1.0
	차이(A-B)	-0.8	-2.7	6.7	8.1	7.6	0.2
비빈곤	도시(A)	4.4	16.3	25.5	5.2	6.4	0.6
	농촌(B)	5.0	14.7	31.7	2.0	3.7	0.6
	차이(A-B)	-0.6	1.6	-6.2	3.2	2.7	0.0

주1: 빈곤기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미만이며, 차원빈곤수는 소득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의 평균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17〉 소득빈곤 여부별 및 기초보장수급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소득빈곤여부 \ 차원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빈곤	수급(A)	52.3	43.2	58.4	12.4	26.3	1.9
	비수급(B)	16.3	24.2	36.6	8.2	11.1	1.0
	차이(A-B)	36.0	19.0	21.8	4.2	15.2	0.9
비빈곤	수급(A)	42.8	35.8	41.1	28.9	26.2	1.7
	비수급(B)	3.3	15.5	25.8	4.1	5.5	0.5
	차이(A-B)	39.5	20.3	15.3	24.8	20.7	1.2

주1: 빈곤기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미만이며, 차원빈곤수는 소득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의 평균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10-18〉 소득빈곤 여부별 및 공적연금 수급별 차원빈곤율

(단위: %, 개)

소득빈곤여부 \ 차원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평균 빈곤차원수[1]
빈곤	수급(A)	12.1	21.5	33.7	6.0	9.4	0.8
	비수급(B)	25.8	29.5	42.6	9.9	15.1	1.2
	차이(A-B)	-13.7	-8.0	-8.9	-3.9	-5.7	-0.4
비빈곤	수급(A)	2.8	13.2	23.8	3.3	3.9	0.5
	비수급(B)	6.1	19.0	28.7	6.4	8.3	0.7
	차이(A-B)	-3.3	-5.8	-4.9	-3.1	-4.4	-0.2

주1: 빈곤기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미만이며, 차원빈곤수는 소득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의 평균임
주2: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제3절 정책적 함의

1.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필요

□ 정부는 노인빈곤문제에 다차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관점에서 빈곤한 노인, 즉 소득빈곤 상태에 놓인 노인은 자산과 주거, 건강 등 다른 생활영역에서도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삶의 영역(6개 차원)에서 1개 차원 이상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비율은 약 75%이며, 2개 이상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은 42.1%임
- 소득 차원에서 빈곤율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62.0%), 그 다음 건강 차원(33.0%), 주거 차원(21.5%), 자산 차원(13.0%), 사회관계망(9.7%), 사회참여(6.8%) 순으로 빈곤율이 높음

○ 그러나 노인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소득빈곤은 다양한 생활영역의 결핍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함

- 비록 소득은 빈곤선 이하더라도 다른 생활영역에서는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소득은 양호하지만(빈곤하지 않지만), 다른 생활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음

- 소득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지만 건강 차원에서 빈곤한 노인은 26.2%, 주거 차원 빈곤 노인 16.1%, 사회관계망 차원 빈곤 노인 6.1%, 사회참여 빈곤 노인 4.8%, 자산 차원 빈곤 노인 4.5%에 이름
- 반대로 소득 차원에서 빈곤하더라도 자산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은 77.8% (100%-22.2%), 주거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72.7% (100%-27.3%), 건강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59.8% (100%-40.2%), 사회참여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91.1%(100%-8.9%), 사회관계망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86.4%(100%-13.6%)임

○ 따라서 노인의 빈곤문제를 소득지원으로만 한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다차원 노인빈곤정책의 정책우선 지원 대상 설정

□ 노인단독가구는 다차원적인 노인빈곤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이며, 소득보장 뿐 아니라 주거와 보건의료서비스, 사회관계망 형성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가구유형별로 노인단독가구의 다차원 빈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노인단독가구는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6개 차원 중 사회참여를 제외한 5개 차원에서 차원빈곤율이 가장 높음
  - 노인가구원이 없는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중 구성비가 작은 기타노인 가구를 제외한 결과임

□ 차원별로 차원빈곤율이 높은 노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차원별 정책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자산 차원은 소득이 빈곤하며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않는 후기노인이며, 건강 차원은 소득이 빈곤한 후기 여성노인임

○ 사회관계망 차원은 소득이 빈곤한 도시지역 거주, 남성노인임

○ 사회참여 차원은 다른 차원과 달리 소득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지역 거주 모든 노인임

- 또한 소득빈곤여부에 상관없이 기초보장을 수급하는 노인의 경우 사회참여에서 결핍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기초보장 수급이 사회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제 4 부

노후소득보장 정책 효과성 및 노인빈곤 변화 추정

제 11 장 노인 유형별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11 노인 유형별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제1절 분석목적 및 내용

□ 분석목적

○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2014년 7월 기존의 한시적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한 기초연금의 도입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제시되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이 노인 빈곤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통한 빈곤 감소라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 효과성을 노인빈곤 감소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

- 유사한 문제의식 및 분석방법을 통해 공적노후소득보장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강성호 · 최옥금, 2011; 강성호 · 최옥금, 2012 ; 여유진, 2013 등)이 있으나, 이 연구들에서는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의 효과를 살펴보지 못했음
  - 기초연금 도입 이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일부 있으나, 관련 연구인 국민연금연구원(2015)의 분석에서는 분기별 기초연금 도입 전 · 후의 빈곤율만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임완섭(2016)의 분석에서는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만을 분석하였음

○ 이에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또한 그 외의 공적노후소득보장(국기초 등)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여 각 노후소득보장에 따른 정책 효과성을 살펴보도록 함

- 특히 노인 가구유형별로 빈곤 실태 및 공적노후소득보장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함
- 기존 연구에서 기초연금 도입 전·후의 공적노후소득보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인 2013, 2014, 2015년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였음

□ 분석내용

○ 노인 집단을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2013~2015년의 가구소득 구성 현황을 비교하고자 함

- 특히 노인 가구 유형별로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수준 및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 노인집단에 따른 2013~2015년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30%, 40%, 50% 기준)과 절대빈곤율(정부 발표 최저생계비), 빈곤갭 비율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함

○ 노인집단에 따른 2013~2015년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함

- 공적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그 외 공적이전(기초생활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사적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도 포함하여 기초연금 도입 전·후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의 차이를 분석함
- 빈곤 감소 효과는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빈곤갭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음

□ 분석자료

○ 본 고에서는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13, 2014, 2015년의 연간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집단에 따른 소득 변화 및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였음

-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 · 후인 2013년~2015년의 차이 및 공적연금 항목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본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아닌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음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1인가구 포함)으로, 농(림)가, 어가,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약 9,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모든 비목에 대해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조사하여 소득이 가장 정확한 자료로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와 농어가조사를 결합하여 우리나라 빈곤율을 산출하고 OECD에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 다만 본 고에서 활용한 가계동향조사에는 농림업 가구가 제외되어 있어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기초연금이 2014년 7월에 시행되어 2014년 분석결과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석대상 분류

○ 가구유형을 우선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주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구분함

- 가구구분 1을 노인이 가구주인지의 여부로 구분하고 가구구분 2는 노인 가구원을 포함했는지의 여부로 가구를 구분하여 이후 분석에서 활용하였음

○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는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노인단독 가구,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배우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비노인배우자 부부 가구, 노인이 가구주이면서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자녀동거 1)와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녀가 가구주이면서 노인이 동거하는 가구(자녀동거 2)로 구분하였음. 그리고 상술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기타 가구로 분류함

- 분석결과 기타가구의 경우 대부분 노인의 부모가 가구원으로 포함된 경우와 손자녀와 거주하는 조손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분석방법

○ (가구유형별 소득실태 분석) 가구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상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소득 평균 및 구성비 변화를 분석함

- 여기에서는 특히 2013~2015년 간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

○ (가구유형별 노인의 빈곤실태 분석) 본 고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상대적 빈곤선인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을 활용하였으며, 빈곤율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처분소득 중위소득의 30%, 40%, 50% 빈곤선을 활용하여 개인단위의 빈곤율을 산출함

- 또한 본 고에서는 절대적 빈곤선인 정부가 발표하는 각 년도의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여 빈곤율을 산출함
- 마지막으로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빈곤갭 비율 현황을 산출하여 분석

○ (노후소득보장의 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후소득보장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원천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Ringen(1987)의 표준적 접근 방법[13]을 통해 분석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요소소득에 나머지 소득원을 하나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함

- 이렇게 소득원천을 하나씩 더해나가는 방식은 어떤 소득원을 먼저 더하느냐에 따라 빈곤감소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소소득에 해당 소득원을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산출함
- 이때 공적노후소득보장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류가 가능한 공적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과 기타 공적노후소득보장(국기초 등이 포함)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도 함께 고려함

---

13) 이러한 표준적 접근 방법은 소득원천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분배 지표의 변화를 통해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소득분배 지표의 일정 비율 감소를 통해 해당 소득원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공적연금의 이전 결과가 빈곤을 얼마나 완화했는지 평가할 수 있음

- 빈곤감소 효과 측정을 위한 소득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요소소득에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하나씩 합산한 빈곤감소 효과를 개별효과로, 전체 공적노후 소득보장을 고려한 빈곤감소 효과는 총 효과로 분류하였고, 요소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빈곤감소 효과는 사적이전 효과로 분류함

〈표 11-1〉 노인가구의 빈곤감소 효과 측정을 위한 소득 분류

구분			정의
요소소득(A)			근로소득(a1)+사업소득(a2)+재산소득(a3)
공적이전효과	개별효과	+공적연금(b1)	요소소득(A)+공적연금(b1)
		+기초(노령)연금(b2)	요소소득(A)+기초(노령)연금(b2)
		+기타 사회보장급여(b3)	요소소득(A)+기타 공적이전(b3)
	총효과: 공적이전소득(B)		요소소득(A)+공적연금(b1)+기초(노령)연금(b2)+기타사회보장급여(b3)
사적이전효과: 시장소득(C)			요소소득(A)+사적이전소득(c1)

제2절 분석결과

1.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현황

□ 노인가구 유형 별 소득 및 소득 구성비 현황

○ 노인가구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주 가구와 노인가구원 포함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비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원 포함 가구를 소득원천별로 2013~2015년의 각 소득원천별 평균액 및 구성비를 분석하였음

○ 노인가구주 가구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및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가구소득이 낮고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평균액 및 비중이 낮은 반면,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를 살펴볼 때, 2013~2015년에 따라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액은 429천원→490천원→572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36.5%(+4.2%p)→41.0%(+4.5%p)로 증가하였음

-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액 증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표 11-2〉 노인 가구유형별 소득 평균 및 구성비(가구구분 1)

(단위 : 가구, 천원, 괄호 안은 %)

소득원천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가구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소득	3,618 (100)	3,692 (100)	3,722 (100)	1,685 (100)	1,718 (100)	1,820 (100)	4,140 (100)	4,241 (100)	4,295 (100)
경상소득	3,488 (94.9)	3,556 (95.1)	3,582 (95.3)	1,553 (88.8)	1,592 (89.7)	1,682 (90.9)	4,010 (95.6)	4,102 (96.6)	4,155 (96.6)
근로소득	2,343 (55.6)	2,399 (55.4)	2,408 (55.1)	543 (20.8)	518 (20.1)	540 (20.8)	2,829 (65.0)	2,921 (65.3)	2,972 (65.6)
사업소득	736 (19.4)	733 (18.8)	712 (17.7)	309 (14.2)	325 (13.5)	332 (12.4)	851 (20.7)	847 (20.3)	826 (19.3)
재산소득	21 (0.7)	18 (0.6)	17 (0.6)	48 (2.0)	32 (1.6)	29 (1.3)	14 (0.4)	15 (0.4)	14 (0.4)
이전소득	388 (19.3)	406 (20.3)	445 (21.9)	655 (51.8)	717 (54.8)	780 (56.9)	316 (10.5)	319 (10.7)	343 (11.4)
공적이전소득	190 (10.5)	208 (11.7)	246 (13.6)	429 (32.3)	490 (36.5)	572 (41.0)	126 (4.6)	130 (4.8)	148 (5.3)
사적이전소득	198 (8.7)	198 (8.6)	198 (8.4)	226 (19.5)	227 (18.3)	208 (15.9)	190 (5.8)	189 (5.8)	195 (6.1)
비경상소득	130 (5.1)	136 (4.9)	140 (4.7)	131 (11.2)	127 (10.0)	138 (9.1)	130 (3.4)	138 (3.4)	140 (3.4)

주: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을 포함하며, 사적이전소득은 가구간이전과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 평균액은 126천원→130천원→148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4.8%(+0.2%p)→5.3%(+0.5%p)로 증가하였으나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교할 때 절대적인 금액 및 증가가 크지 않음
- 한편,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사적이전소득 평균액은 226천원→227천원→208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18.3%(-1.2%p)→15.9%(-2.4%p)로 감소하였음

〈표 11-3〉 노인 가구유형별 소득 평균 및 구성비(가구구분 2)

(단위 : 가구, 천원, 괄호 안은 %)

소득원천	전체			노인가구원 포함 가구			노인가구원 비포함 가구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소득	3,618 (100)	3,692 (100)	3,722 (100)	2,224 (100)	216,9 (100)	2,239 (100)	4,146 (100)	4,272 (100)	4,316 (100)
경상소득	3,488 (94.9)	3,556 (95.1)	3,582 (95.3)	2,094 (90.5)	203,6 (91.4)	2,102 (92.0)	4,016 (96.7)	4,136 (96.6)	4,175 (96.7)
근로소득	2,343 (55.6)	2,399 (55.4)	2,408 (55.1)	1,012 (30.0)	904 (28.2)	887 (27.4)	2,847 (65.3)	2,968 (65.8)	3,018 (66.2)
사업소득	736 (19.4)	733 (18.8)	712 (17.7)	420 (15.5)	427 (15.0)	444 (13.8)	855 (20.8)	850 (20.2)	820 (19.4)
재산소득	21 (0.7)	18 (0.6)	17 (0.6)	41 (1.6)	29 (1.3)	27 (1.2)	14 (0.4)	14 (0.4)	13 (0.4)
이전소득	388 (19.3)	406 (20.3)	445 (21.9)	620 (43.5)	675 (46.8)	744 (49.7)	300 (10.1)	303 (10.1)	324 (10.8)
공적이전소득	190 (10.5)	208 (11.7)	246 (13.6)	408 (27.3)	453 (31.1)	536 (35.8)	108 (4.2)	115 (4.3)	130 (4.6)
사적이전소득	198 (8.7)	198 (8.6)	198 (8.4)	213 (16.2)	222 (15.7)	209 (13.8)	192 (5.9)	188 (5.8)	194 (6.2)
비경상소득	130 (5.1)	136 (4.9)	140 (4.7)	130 (9.5)	136 (8.6)	137 (8.0)	130 (3.4)	137 (3.4)	141 (3.3)

주: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을 포함하며, 사적이전소득은 가구간이전과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 노인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도 앞선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가구 및 비노인가구원 포함 가구와 비교할 때 가구소득 수준이 낮고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평균액 및 비중이 낮은 반면,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2015년에 따라 노인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액은 408천원→453천원→536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3%→31.1%(+3.8%p)→35.8%(+4.7%p)로 증가하였음
- 노인가구원 비포함 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 평균액은 108천원→115천원→130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4.3%(+0.1%p)→4.6%(+0.3%p)로 증가하였으나 노인을 포함한 가구와 비교할 때 절대적 금액이나 증가폭이 크지 않음

- 노인가구원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평균액은 213천원→222천원→209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2%→15.7%(-0.5%p)→13.8%(-1.9%p)로 감소하였음
- 노인가구주 가구와 노인가구원 포함 가구로 정의할 때 모두 2013년에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부터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가구유형별 노인빈곤 실태 및 변화

□ 노인가구 유형 및 노인 개인별 상대빈곤율의 연도별 현황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40%, 50%를 빈곤선으로 상정하고 노인 개인을 단위로 노인 특성에 따른 상대빈곤율을 분석하였음. 빈곤선이 중위 30%~중위 50%로 높아질수록 빈곤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2015년에 따라 빈곤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노인 개인을 단위로 상대빈곤율을 분석한 〈표 11-4〉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가처분중위소득의 30%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은 27.6%→25.2%(-2.4%p)→21.5%(-3.7%p), 가처분중위소득의 40%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은 39.1%→37.2%(-1.9%p)→34.7%(-2.5%p),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은 47.5%→47.1%(-0.4%p)→44.7%(-2.4%p)로 감소하였으며,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빈곤감소폭이 더 증가함

〈표 11-4〉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노인의 상대빈곤율[14)]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중위 30%			중위 40%			중위 50%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33.3	29.9 (-3.4)	25.2 (-4.7)	46.4	43.8 (-2.6)	40.2 (-3.6)	55.7	54.1 (-1.6)	51.0 (-3.1)
	비노인 가구주 가구		3.9	4.3 (+0.4)	3.2 (-1.1)	8.9	7.8 (-11)	7.6 (-0.2)	13.9	15.8 (+1.9)	13.5 (-2.3)
가구구분2	노인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27.6	25.2 (-2.4)	21.5 (-3.7)	39.1	37.2 (-1.9)	34.7 (-2.5)	47.5	47.1 (-0.4)	44.7 (-2.4)
		노인단독	49.6	47.0 (-2.6)	40.7 (-6.3)	64.3	63.3 (-1)	60.1 (-3.2)	74.3	75.0 (+0.7)	72.9 (-2.1)
		노인부부	33.2	26.8 (-6.4)	21.4 (-5.4)	48.1	41.6 (-6.5)	35.4 (-6.2)	58.6	53.1 (-5.5)	47.2 (-5.9)
		비노인 배우자 부부	12.1	11.8 (-0.3)	6.3 (-5.5)	22.2	22.5 (+0.3)	15.0 (-7.5)	26.8	29.3 (+2.5)	23.7 (-5.6)
		자녀동거1	12.1	10.6 (-1.5)	9.5 (-1.1)	19.1	17.0 (-2.1)	17.1 (+0.1)	25.3	24.4 (-0.9)	21.9 (-2.5)
		자녀동거2	1.6	2.6 (+1)	0.1 (-2.5)	4.9	3.7(-1.2)	3.4 (-0.3)	9.7	9.1 (-0.6)	8.2 (-0.9)
		기타	12.1	10.9 (-1.2)	8.3 (-2.6)	20.6	20.1 (-0.5(	18.3 (-1.8)	27.3	29.2 (+1.9)	25.5 (-3.7)

주1: 월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 40%, 50%를 산출하였으며, 노인 가운데 각 빈곤의 개념에 따른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함(인구가중치 적용)
주2: 노인가구원 포함 가구의 전체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 노인 가구주에 속한 노인의 빈곤율은 가처분중위소득의 30% 기준으로 33.3%→29.9%(-3.4%p)→25.2%(-4.7%p), 가처분중위소득의 40% 기준으로 46.4%→43.8%(-2.6%p)→40.2%(-3.6%p),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55.7%→54.1%(-1.6%p)→51.0%(-3.1%p)로 감소하여, 이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빈곤감소폭이 더 증가함
-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가구에 속한 각 노인의 빈곤율은 빈곤기준에 상관없이 노인단독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에 속한 노인,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 노인이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 기타가구에 속한 노인, 자녀가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 순으로 빈곤율이 제시되고 있음

14)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노인빈곤율의 경우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이 수치는 농어가조사를 결합하여 산출한 결과인데 반해 본 고에서 분석한 가계동향조사는 농어가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통계청 발표 노인빈곤율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때에도 2013년 대비 2014년 빈곤율보다 2014년 대비 2015년 빈곤율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율 감소폭이 다른 노인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노인가구 유형 및 노인 개인별 절대빈곤율의 연도별 현황

○ 다음으로 2013~2015년의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율은 40.6%→38.6%(-2.0%p)→33.1%(-5.5%p)로 감소하였으며, 노인이 속한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율은 34.5%→33.2%(-1.3%p)→28.8%(-4.4%p)로 감소함, 앞서 상대빈곤율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빈곤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구의 특성에 따른 노인의 빈곤율은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 순으로 나타나며,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기타가구, 노인이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 자녀가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 특성별 분석을 통해 볼 때에도 2013년 대비 2014년 절대빈곤율보다 2014년 대비 2015년 절대빈곤율 감소가 더 큰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 감소폭이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1-5〉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노인의 절대빈곤율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2013	2014	2015
가구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40.6	38.6(-2.0)	33.1(-5.5)
	비노인 가구주 가구		9.4	8.8(-0.6)	7.4(-1.4)
가구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34.5	33.2(-1.3)	28.8(-4.4)
		노인단독	51.6	49.6(-2.0)	44.8(-4.8)
		노인부부	44.7	39.7(-5.0)	32.1(-7.6)
		비노인배우자 부부	20.2	20.5(+0.3)	11.7(-8.8)
		자녀동거1	17.9	18.9(+1.0)	16.5(-2.4)
		자녀동거2	7.1	6.0(-1.1)	4.1(-1.9)
		기타	20.1	20.0(-0.1)	17.0(-3.0)

주1: 2013~2015년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이때, 2015년의 경우 10월부터 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전환 이전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분석함
주2: 노인가구원 포함 가구의 전체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노인 빈곤갭 비율의 연도별 현황

○ 다음으로 빈곤선과 소득의 차이를 통해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빈곤갭 비율의 변화를 통해 2013~2015년 사이에 노인의 빈곤갭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음

○ 가처분중위소득의 30%, 40%, 50%를 빈곤선으로 상정하고 노인 개인을 단위로 노인 특성에 따른 빈곤갭 비율을 분석한 결과, 빈곤선이 중위 30%~중위 50%로 높아질수록 빈곤갭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처분중위소득의 30%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갭 비율은 39.7%→35.8%(-3.9%p)→32.1%(-3.7%p), 가처분중위소득의 40%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갭 비율은 42.5%→39.4%(-3.1%p)→35.4%(-4.0%p),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노인빈곤갭 비율은 46.4%→42.8%(-3.6%p)→39.8%(-3.0%p)로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만 노인 빈곤갭 비율의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1-6〉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연도별 빈곤갭 비율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중위 30%			중위 40%			중위 50%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40.1	36.4 (-3.7)	31.9 (-4.5)	43.3	39.9 (-3.4)	35.6 (-4.3)	47.3	44.0 (-3.3)	40.4 (-3.6)
	비노인 가구주 가구		25.6	19.4 (-6.2)	37.0 (+17.6)	27.0	26.6 (-0.4)	29.2 (+2.6)	30.6	24.3 (-6.3)	28.2 (+3.9)
가구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39.7	35.8 (-3.9)	32.1 (-3.7)	42.5	39.4 (-3.1)	35.4 (-4.0)	46.4	42.8 (-3.6)	39.8 (-3.0)
		노인단독	41.0	36.1 (-4.9)	30.8 (-5.3)	46.2	42.1 (-4.1)	37.1 (-5.0)	50.7	47.0 (-3.7)	42.8 (-4.2)
		노인부부	39.0	39.5 (+0.5)	33.3 (-6.2)	41.5	39.9 (-1.6)	35.0 (-4.9)	45.5	42.9 (-2.6)	38.5 (-4.4)
		비노인 배우자 부부	36.2	35.0 (-1.2)	32.4 (-2.6)	34.5	32.4 (-2.1)	26.1 (-6.3)	40.8	37.4 (-3.4)	28.7 (-8.7)
		자녀동거1	40.4	26.1 (-14.3)	36.7 (+10.6)	39.3	33.3 (-6.0)	35.7 (+2.4)	41.7	35.9 (-5.8)	40.4 (+4.5)
		자녀동거2	13.2	13.2 (-)	5.2 (-8.0)	19.5	27.3 (+7.8)	8.9 (-18.4)	24.0	21.7 (-2.3)	17.3 (-4.4)
		기타	37.1	24.4 (-12.7)	33.7 (+9.3)	36.4	28.9 (-7.5)	30.3 (+1.4)	39.5	32.1 (-7.4)	34.3 (+2.2)

주: 빈곤갭 비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각 빈곤선과 빈곤층의 평균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월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 40% 50%를 산출하고 가구 특성별 빈곤노인의 평균소득과 가처분중위소득의 차이를 가처분중위소득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것임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 노인 가구주에 속한 노인의 빈곤갭 비율은 가처분중위소득의 30% 기준으로 40.1%→36.4%(-3.7%p)→31.9%(-4.5%p), 가처분중위소득의 40% 기준으로 43.3%→39.9%(-3.4%p)→35.6%(-4.3%p),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47.3%→44.0%(-3.3%p)→40.4%(-3.6%p)로 감소하여,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빈곤갭 비율의 감소폭이 더 증가함
-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가구에 속한 각 노인의 빈곤갭 비율은 빈곤기준에 상관없이 노인단독가구에 속한 노인, 노인부부가구에 속한 노인, 노인이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 기타가구에 속한 노인,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 자녀가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 순으로 제시되고 있음
  - 가구 특성에 따라 빈곤갭 비율의 감소폭은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

3.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원천별 빈곤 감소 효과

□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원천별 빈곤 감소 효과: 상대빈곤율 기준

○ 노인 개인을 단위로 2013년~2015년의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원천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7〉~〈표 11-9〉와 같음, 이때 각 연도의 소득원천별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노인 가운데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함

- 이때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율은 가구주인 비노인가구주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음

○ 우선 가구구분 1의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을 대상으로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각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3~2015년에 걸친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빈곤율은 75.7%→75.6%→75.3%로 높게 나타남

- 여기에 공적연금이 추가되면 빈곤율은 67.6%→65.3%→64.4%로 낮아지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2013년~2015년에 걸쳐 8.1%p→10.3%p→

10.9%p로 증가하여 전체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의 많은 비중을 공적연금이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함

- 요소소득에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되면 빈곤율은 74.2%→73.8%→ 72.4%로 낮아져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1.5%p→1.8%p→2.9%p로 증가했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빈곤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국기초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1.7%p→1.3%p→1.9%p로 201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빈곤감소 효과 보다 컸으나,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이보다 커짐
- 이렇게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커짐에 따라, 전체 공적이전 빈곤 감소효과는 2013~2015년에 걸쳐 10.9%p→13.1%p→16.2%p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가구구분 2에서 노인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속한 노인(노인개인)을 대상으로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각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함

-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빈곤율은 2013~2015년에 걸쳐 65.0%→66.4%→ 66.9%로 제시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요소소득에 공적연금이 추가되면 빈곤율은 2013~2015년에 걸쳐 58.0%→57.5%→57.4%로 낮아지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2013년~2015년에 따라 7.0%p→8.9%p→9.5%p로 증가하였음
- 요소소득에 기초(노령)연금이 더해지면 빈곤율은 63.5%→64.6%→ 63.5%로 낮아져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1.5%p→1.8%p→3.4%p로 증가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빈곤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기초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1.6%p→1.2%p→1.8%p로 201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빈곤감소 효과 보다 컸으나,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보다 적어짐

- 이렇게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커짐에 따라, 전체 공적이전 빈곤 감소효과도 9.5%p→11.8%p→14.7%p로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빈곤감소 양상 및 각 제도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치에 약간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가구구분 1과 가구구분 2의 양상에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한편 가구구분 2에서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단독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부부, 기타가구, 노인이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 자녀가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순으로 나타남

- 각 가구 유형별로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앞선 분석결과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비노인배우자 부부와 노인부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기타가구와 노인부부에 속한 노인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남. 전체 공적이전효과에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적이전효과에서도 비노인배우자 부부의 빈곤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비노인배우자 부부에 속한 노인들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에 따라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13년~2015년에 따라 5.0%p→4.8%p→4.0%p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4.5%p→4.3%p→3.6%p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표 11-7〉 노인의 소득원천별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2013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B1)	A+기초(노령)연금(B2)	A+기타(B3)		
가구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75.7	67.6(-8.1)	74.2(-1.5)	74.0(-1.7)	64.8(-10.9)	70.7(-5.0)
	비노인 가구주 가구		21.3	18.8(-2.5)	19.2(-2.1)	20.0(-1.3)	17.0(-4.3)	19.0(-2.3)
가구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65.0	58.0(-7.0)	63.5(-1.5)	63.4(-1.6)	55.5(-9.5)	60.5(-4.5)
		노인단독	91.3	88.3(-3.0)	90.2(-1.1)	89.5(-1.8)	85.1(-6.2)	84.5(-6.8)
		노인부부	81.3	69.0(-12.3)	79.5(-1.8)	80.1(-1.2)	67.8(-13.5)	77.4(-3.9)
		비노인 배우자 부부	54.6	38.2(-16.4)	53.9(-0.7)	51.1(-3.5)	34.4(-20.2)	50.0(-4.6)
		자녀동거1	38.4	34.3(-4.1)	37.2(-1.2)	36.7(-1.7)	30.4(-8.0)	36.0(-2.4)
		자녀동거2	14.3	14.3(-0.0)	13.6(-0.7)	12.9(-1.4)	13.2(-1.1)	13.3(-1.0)
		기타	43.5	37.0(-6.5)	40.4(-3.1)	42.2(-1.3)	33.2(-10.3)	38.2(-5.3)

주1: 각 년도의 소득원천별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노인 가운데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

주2: 각 소득원천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된 소득임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표 11-8〉 노인의 소득원천별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2014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B1)	A+기초(노령)연금(B2)	A+기타(B3)		
가구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75.6	65.3(-10.3)	73.8(-1.8)	74.3(-1.3)	62.5(-13.1)	70.8(-4.8)
	비노인 가구주 가구		25.2	22.6(-2.6)	23.2(-2.0)	24.5(-0.7)	19.3(-5.9)	22.9(-2.3)
가구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66.4	57.5(-8.9)	64.6(-1.8)	65.2(-1.2)	54.6(-11.8)	62.1(-4.3)
		노인단독	93.1	89.9(-3.2)	91.8(-1.3)	91.5(-1.6)	86.8(-6.3)	87.7(-5.4)
		노인부부	79.0	63.5(-15.5)	76.7(-2.3)	78.6(-0.4)	61.6(-17.4)	73.4(-5.6)
		비노인 배우자 부부	57.7	38.7(-19.0)	56.2(-1.5)	54.1(-3.6)	33.5(-24.2)	53.1(-4.6)
		자녀동거1	34.4	28.6(-5.8)	33.0(-1.4)	33.0(-1.4)	26.9(-7.5)	33.8(-0.6)
		자녀동거2	18.9	17.7(-1.2)	17.4(-1.5)	17.8(-1.1)	13.3(-5.6)	15.1(-3.8)
		기타	46.2	37.6(-8.6)	43.3(-2.9)	44.9(-1.3)	33.7(-12.5)	43.1(-3.1)

주1: 각 년도의 소득원천별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노인 가운데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

주2: 각 소득원천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된 소득임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표 11-9〉 노인의 소득원천별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2015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 (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 (B1)	A+ 기초연금 (B2)	A+기타(B3)		
가구 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75.3	64.4(-10.9)	72.4(-2.9)	73.4(-1.9)	59.1(-16.2)	71.3(-4.0)
	비노인 가구주 가구		25.5	23.1(-2.4)	19.2(-6.3)	23.8(-1.7)	18.0(-7.5)	23.6(-1.9)
가구 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66.9	57.4(-9.5)	63.5(-3.4)	65.1(-1.8)	52.2(-14.7)	63.3(-3.6)
		노인단독	92.8	87.4(-5.4)	91.5(-1.3)	91.7(-1.1)	84.4(-8.4)	88.4(-4.4)
		노인부부	77.6	61.2(-16.4)	73.7(-3.9)	76.2(-1.4)	54.6(-23.0)	72.8(-4.8)
		비노인 배우자 부부	54.2	37.9(-16.3)	51.6(-2.6)	50.7(-3.5)	30.3(-23.9)	51.8(-2.4)
		자녀동거1	33.6	29.1(-4.5)	30.2(-3.4)	31.9(-1.7)	24.2(-9.4)	31.8(-1.8)
		자녀동거2	16.7	15.3(-1.4)	13.8(-2.9)	14.8(-1.9)	14.1(-2.6)	15.4(-1.3)
		기타	47.3	38.8(-8.5)	39.6(-7.7)	43.0(-4.3)	30.4(-16.9)	44.6(-2.7)

주1: 각 년도의 소득원천별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노인 가운데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

주2: 각 소득원천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된 소득임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원천별 빈곤 감소 효과: 절대빈곤율 기준

○ 다음으로 노인 개인을 단위로 2013년~2015년의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원천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10〉~〈표 11-12〉과 같음. 이때 각 년도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노인 가운데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함

○ 우선 가구구분 1의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을 대상으로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각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3~2015년에 걸친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빈곤율은 68.0%→68.6%→67.5%로 높게 나타남

- 여기에 공적연금이 추가되면 빈곤율은 59.1%→58.3%→56.3%로 낮아지며, 공적연금의 절대빈곤 감소 효과는 2013년~2015년에 걸쳐 8.9%p→10.3%p→11.2%p로 증가하여 앞서 상대빈곤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의 많은 비중을 공적연금이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요소소득에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되면 빈곤율은 65.6%→64.5%→ 61.7%로 낮아져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2.4%p→4.1%p→5.8%p로 증가했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빈곤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앞서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하면 기초(노령)연금의 절대빈곤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기초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3.4%p→3.1%p→3.2%p로 201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빈곤감소 효과 보다 컸으나,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이보다 커짐
- 이렇게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커짐에 따라, 전체 공적이전 빈곤 감소효과는 2013~2015년에 걸쳐 14.6%p→17.9%p→21.8%p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하면 기초(노령)연금의 절대빈곤 감소 효과가 더 컸으며, 이로 인해 공적이전의 절대빈곤 감소효과가 상대빈곤 감소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가구구분 2에서 노인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속한 노인(노인개인)을 대상으로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각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함

-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빈곤율은 2013~2015년에 걸쳐 57.4%→59.5%→ 58.8%로 제시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요소소득에 공적연금이 추가되면 빈곤율은 2013~2015년에 걸쳐49.9%→50.4%→49.2%로 나타나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2013년~2015년에 따라 7.5%p→9.1%p→9.6%p로 증가하였음
- 요소소득에 기초(노령)연금이 더해지면 빈곤율은 55.1%→55.7%→ 53.4%로 낮아져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2.3%p→3.8%p→5.4%p로 증가했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빈곤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앞서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하면 기초(노령)연금의 절대빈곤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기초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3.0%p →2.8%p→3.0%p로 201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빈곤감소 효과 보다 컸으나,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보다 적어짐
- 이렇게 공적연금,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커짐에 따라, 전체 공적이전 빈곤 감소효과도 12.5%p→15.9%p→19.4%p로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빈곤감소 양상 및 각 제도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치에 약간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가구구분 1과 가구구분 2의 양상에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한편 가구구분 2에서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단독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부부, 기타가구(연도에 따라 기타가구와 비노인배우자 부부의 순위는 달라짐), 노인이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 자녀가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순으로 나타남

- 각 가구 유형별로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앞선 분석결과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때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비노인배우자 부부와 노인부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기타가구와 노인부부에 속한 노인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남, 전체 공적이전효과에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적이전효과에서도 비노인배우자 부부의 빈곤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비노인배우자 부부에 속한 노인들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에 따라 급여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13년~2015년에 따라 9.8%p→9.3%p→8.6%p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8.3%p→8.3%p→7.7%p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앞서 분석한 상대빈곤율을 포함한 빈곤율 감소효과를 통해 볼 때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1-10〉 노인의 소득원천별 절대빈곤율 감소 효과(2013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 (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 (B1)	A+ 기초(노령)연금 (B2)	A+기타(B3)		
가구 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68.0	59.1(-8.9)	65.6(-2.4)	64.6(-3.4)	53.4(-14.6)	58.2(-9.8)
	비노인 가구주 가구		13.8	11.9(-1.9)	12.3(-1.5)	12.6(-1.2)	10.3(-3.5)	11.8(-2.0)
가구 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57.4	49.9(-7.5)	55.1(-2.3)	54.4(-3.0)	44.9(-12.5)	49.1(-8.3)
		노인단독	85.5	79.9(-5.6)	83.6(-2.0)	82.0(-3.5)	73.1(-12.4)	70.0(-15.5)
		노인부부	73.2	61.2(-12.0)	69.7(-3.5)	70.5(-2.7)	55.0(-18.2)	64.4(-8.8)
		비노인 배우자 부부	41.8	26.9(-14.9)	41.8(-0.0)	36.9(-4.9)	23.4(-18.4)	38.5(-3.3)
		자녀동거1	32.2	27.0(-5.2)	31.2(-1.0)	28.8(-3.4)	23.2(-9.0)	29.0(-3.2)
		자녀동거2	9.8	9.3(-0.5)	8.6(-1.2)	7.9(-1.9)	7.4(-2.4)	6.9(-2.9)
		기타	32.1	26.9(-5.2)	29.0(-3.1)	30.0(-2.1)	24.5(-7.6)	28.0(-4.1)

주: 각 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노인 가운데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표 11-11〉 노인의 소득원천별 절대빈곤율 감소 효과(2014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 (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 (B1)	A+ 기초(노령)연금 (B2)	A+기타(B3)		
가구 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68.6	58.3(-10.3)	64.5(-4.1)	65.5(-3.1)	50.7(-17.9)	59.3(-9.3)
	비노인 가구주 가구		19.0	14.9(-4.1)	16.0(-3.0)	16.9(-2.1)	11.3(-7.7)	14.9(-4.1)
가구 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59.5	50.4(-9.1)	55.7(-3.8)	56.7(-2.8)	43.6(-15.9)	51.2(-8.3)
		노인단독	86.3	81.4(-4.9)	84.5(-1.8)	83.3(-3.0)	72.8(-13.5)	73.3(-13.0)
		노인부부	71.4	58.1(-13.3)	65.2(-6.2)	68.0(-3.4)	48.9(-22.5)	62.3(-9.1)
		비노인 배우자 부부	47.9	29.1(-18.8)	45.3(-2.6)	40.8(-7.1)	23.6(-24.3)	42.7(-5.2)
		자녀동거1	31.3	23.0(-8.3)	28.1(-3.2)	30.3(-1.0)	20.1(-11.2)	28.4(-2.9)
		자녀동거2	13.2	13.2(-0.0)	11.7(-1.5)	9.9(-3.3)	8.2(-5.0)	9.7(-3.5)
		기타	37.6	27.1(-10.5)	32.7(-4.9)	36.4(-1.2)	23.8(-13.8)	31.4(-6.2)

주: 각 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노인 가운데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표 11-12〉 노인의 소득원천별 절대빈곤율 감소 효과(2015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 (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 (B1)	A+ 기초연금 (B2)	A+기타(B3)		
가구 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67.5	56.3(-11.2)	61.7(-5.8)	64.3(-3.2)	45.7(-21.8)	58.9(-8.6)
	비노인 가구주 가구		16.0	14.1(-1.9)	12.5(-3.5)	14.2(-1.8)	8.3(-7.7)	12.4(-3.6)
가구 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58.8	49.2(-9.6)	53.4(-5.4)	55.8(-3.0)	39.4(-19.4)	51.1(-7.7)
		노인단독	87.4	79.7(-7.7)	83.3(-4.1)	83.2(-4.2)	66.0(-21.4)	74.7(-12.7)
		노인부부	67.6	52.7(-14.9)	59.8(-7.8)	65.4(-2.2)	42.1(-25.5)	60.1(-7.5)
		비노인 배우자 부부	40.1	22.3(-17.8)	36.7(-3.4)	35.8(-4.3)	17.4(-22.7)	34.0(-6.1)
		자녀동거1	28.2	23.3(-4.9)	24.9(-3.3)	26.6(-1.6)	18.5(-9.7)	26.7(-1.5)
		자녀동거2	11.1	9.6(-1.5)	7.3(-3.8)	8.8(-2.3)	4.3(-6.8)	7.8(-3.3)
		기타	36.4	29.6(-6.8)	30.0(-6.4)	33.2(-3.2)	21.1(-15.3)	30.4(-6.0)

주: 각 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노인 가운데 빈곤층에 속한 노인이 속한 비율을 산출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원천별 빈곤 완화 효과: 빈곤갭 비율 기준

○ 다음으로 노인 개인을 단위로 2013년~2015년의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원천별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13〉~〈표 11-15〉와 같음. 이때 상대빈곤율 빈곤감소 효과와 같이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하고,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이를 산출함

-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앞서 살펴본 빈곤율 감소 효과와는 달리, 빈곤의 심도를 각 공적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얼마나 완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가구구분 1의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을 대상으로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각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3~2015년에 걸친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빈곤갭 비율은 89.8%→92.0%→93.2%로 높게 나타남

- 여기에 공적연금이 추가되면 빈곤갭 비율은 84.2%→86.1%→87.7%로 나타나며, 공적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2013년~2015년에 걸쳐 5.6%p→5.9%p→5.5%p로 나타남, 앞서 빈곤율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공적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요소소득에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되면 빈곤갭 비율은 81.3%→79.6%→75.8%으로 낮아져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8.6%p→12.4%p→17.4%p로 증가했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앞서 빈곤율 감소 효과와는 달리,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공적연금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함
- 국기초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3.7%p→3.3%p→4.3%p로 나타났음
- 전체 공적이전 빈곤갭 감소 효과는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커짐에 따라 2013~2015년에 걸쳐 17.2%p→21.0%p→26.1%p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가구구분 2에서 노인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속한 노인(노인개인)을 대상으로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각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를 분석함

-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빈곤갭 비율은 2013~2015년에 걸쳐 89.3%→91.3%→ 92.9%으로 제시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소소득에 공적연금이 추가되면 빈곤갭 비율은 2013~2015년에 걸쳐 83.6%→85.6%→87.5%로 나타나며, 공적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2013년~2015년에 따라 5.7%p→5.7p→5.4%p로 나타나 가구구분 1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음
- 요소소득에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될 경우의 빈곤갭 비율은 81.0%→79.0%→75.7%으로 낮아져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8.3%p→

12.3%p→17.2%p로 증가했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구구분 1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기초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3.6%p→3.3%p→4.2%p로 나타났음

- 전체 공적이전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커짐에 따라 2013~2015년에 걸쳐 17.1%p→20.8%p→25.8%p로 커졌음

•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가구구분 2에서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요소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단독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부부, 기타가구(연도에 따라 순위는 달라짐), 노인이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 자녀가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의 순으로 나타남

- 각 가구 유형별로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때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2015년 기초연금이 온전히 실시된 해를 기준으로 볼 때 노인부부 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13〉 노인의 소득원천별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2013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 (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 (B1)	A+ 기초(노령)연금 (B2)	A+기타(B3)		
가구 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89.8	84.2(-5.6)	81.3(-8.6)	86.1(-3.7)	72.6(-17.2)	81.3(-8.5)
	비노인 가구주 가구		74.4	62.5(-11.9)	68.9(-5.5)	73.6(-0.8)	56.7(-17.7)	68.0(-6.4)
가구 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89.3	83.6(-5.7)	81.0(-8.3)	85.7(-3.6)	72.2(-17.1)	81.0(-8.3)
		노인단독	92.4	87.6(-4.8)	83.9(-8.5)	88.0(-4.4)	75.2(-17.2)	82.4(-10.0)
		노인부부	87.2	81.6(-5.6)	77.9(-9.3)	84.7(-2.5)	70.4(-16.8)	80.2(-7.0)
		비노인 배우자 부부	89.4	72.0(-17.4)	85.6(-3.8)	85.4(-4.0)	64.7(-24.7)	84.6(-4.8)
		자녀동거1	84.3	78.6(-5.7)	79.4(-4.9)	80.6(-3.7)	70.4(-13.9)	76.5(-7.8)
		자녀동거2	73.3	34.3(-39.0)	71.4(-1.9)	73.6(+0.3)	33.7(-39.6)	73.5(+0.2)
		기타	84.8	78.9(-5.9)	78.1(-6.7)	80.3(-4.5)	68.4(-16.4)	78.1(-6.7)

주1: 월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를 산출하고 가구 특성별 빈곤노인의 평균소득과 가처분중위소득의 차이를 가처분중위소득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것임
주2: 각 소득원천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된 소득임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표 11-14〉 노인의 소득원천별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2014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 (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 (B1)	A+ 기초(노령)연금 (B2)	A+기타(B3)		
가구 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92.0	86.1(-5.9)	79.6(-12.4)	88.7(-3.3)	71.0(-21.0)	83.5(-8.5)
	비노인 가구주 가구		68.9	67.1(-1.8)	59.9(-9.0)	65.5(-3.4)	55.0(-13.9)	64.0(-4.9)
가구 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91.3	85.6(-5.7)	79.0(-12.3)	88.0(-3.3)	70.5(-20.8)	82.9(-8.4)
		노인단독	93.4	88.5(-4.9)	80.9(-12.4)	89.3(-4.1)	72.4(-21.0)	83.4(-10.0)
		노인부부	91.4	85.3(-6.1)	78.0(-13.4)	89.4(-2.0)	70.5(-20.9)	85.1(-6.3)
		비노인 배우자 부부	89.7	66.0(-23.7)	84.7(-5.0)	89.1(-0.4)	61.1(-28.6)	87.2(-2.5)
		자녀동거1	83.1	77.1(-6.0)	74.1(-9.0)	78.8(-4.3)	64.4(-18.7)	74.8(-8.3)
		자녀동거2	51.6	52.5(+0.9)	46.1(-5.5)	51.7(+0.1)	47.0(-4.6)	51.4(-0.2)
		기타	86.7	82.8(-3.9)	74.8(-11.9)	81.9(-4.8)	66.6(-20.1)	75.1(-11.6)

주1: 월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를 산출하고 가구 특성별 빈곤노인의 평균소득과 가처분중위소득의 차이를 가처분중위소득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것임
주2: 각 소득원천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된 소득임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표 11-15〉 노인의 소득원천별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2015년)

(단위 : 개인, %, 괄호 안은 %p)

구분			요소소득 (A)	공적이전효과				시장소득 A+C (사적이전 효과)
				개별효과			총 효과 A+B	
				A+공적연금 (B1)	A+ 기초(노령)연금 (B2)	A+기타(B3)		
가구 구분1	노인 가구주 가구		93.2	87.7(-5.5)	75.8(-17.4)	88.9(-4.3)	67.1(-26.1)	85.8(-7.4)
	비노인 가구주 가구		82.6	80.0(-2.6)	70.9(-11.7)	78.9(-3.7)	65.4(-17.2)	78.7(-3.9)
가구 구분2	노인 가구원 포함 가구	소계	92.9	87.5(-5.4)	75.7(-17.2)	88.7(-4.2)	67.1(-25.8)	85.6(-7.3)
		노인단독	94.2	89.7(-4.5)	77.2(-17.0)	88.9(-5.3)	68.3(-25.9)	85.3(-8.9)
		노인부부	93.2	85.6(-7.6)	73.5(-19.7)	90.8(-2.4)	64.7(-28.5)	88.7(-4.5)
		비노인 배우자 부부	90.1	78.2(-11.9)	79.7(-10.4)	88.5(-1.6)	67.1(-23.0)	83.3(-6.8)
		자녀동거1	86.6	83.9(-2.7)	73.3(-13.3)	82.8(-3.8)	67.6(-19.0)	80.5(-6.1)
		자녀동거2	55.2	56.1(+0.9)	51.1(-4.1)	55.2(0.0)	52.4(-2.8)	47.9(-7.3)
		기타	85.2	82.3(-2.9)	74.7(-10.5)	80.4(-4.8)	67.6(-17.6)	77.6(-7.6)

주1: 월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개인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를 산출하고 가구 특성별 빈곤노인의 평균소득과 가처분중위소득의 차이를 가처분중위소득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것임
주2: 각 소득원천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된 소득임
자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2013~2015

○ 사적이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13년~2015년에 따라 8.5%p→8.5%p→7.4%p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8.3%p→8.4%p→7.4%p로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공적이전의 빈곤갭 비율 효과가 사적이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제3절 정책적 함의

□ 분석결과 요약

○ 노인가구주 가구와 노인을 포함한 가구로 정의하고 가구유형별 소득 및 소득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액이 증가하였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음

-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폭보다 2014년 대비 2015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들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액 증가 및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적이전소득의 평균액 및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 개인을 단위로 가처분중위소득의 30%, 40%, 50%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 정부 발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빈곤갭비율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3~2015년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014년 빈곤율(갭) 감소폭보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빈곤율(갭) 감소폭이 높아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가구특성별 노인 및 노인가구 빈곤율은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부부, 노인이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자녀가 가구주인 자녀동거가구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 개인을 단위로 소득원천별 가처분중위소득의 50%,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소득원천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13~2015년에 따라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적이전 효과의 빈곤감소 효과의 많은 비중은 공적연금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
-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의 빈곤감소 효과보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커졌는데, 이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관련이 있으며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증가, 가입기간 증가로 인한 급여액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짐
- 가구 유형별 특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노인부부와 비노인배우자 부부의 공적이전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노인부부가 함께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노인 개인을 단위로 소득원천별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소득원천에 따른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13~2015년에 따라 공적이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앞선 빈곤율 감소 효과와 달리, 공적이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의 많은 비중은 공적연금이 아닌 기초(노령)연금이 담당하고 있음, 이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들의 소득이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2013년 대비 2014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보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더 커졌는데, 이는 기초연금의 도입을 통한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커졌음을 의미함
- 가구 유형별 특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노인부부와 비노인배우자 부부의 공적이전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적이전의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13~2015년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적이전의 빈곤율 및 빈곱갭 비율 감소 효과가 사적이전의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시사점

○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의 수급자 증가 및 가입기간 증가로 인한 급여액 상향으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큰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노인의 가구소득에서도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2014년 이후에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노인가구의 빈곤감소 및 생활안정에 공적이전의 역할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빈곤갭 비율도 2013~2015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에도 공적이전의 역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노인(가구)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적이전제도 가운데에서는 사회보험인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급자 확대 및 가입기간 증가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필요

-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급여액이 상향되긴 했지만 급여수준이 공적연금보다 낮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비교할 때에는 빈곤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음

○ 한편 빈곤갭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적이전제도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그 효과가 더 커졌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빈곤의 정도 완화에 현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제도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이미 노인의 빈곤율 감소 및 빈곤갭 비율 감소와 관련하여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공적이전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함

○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기초 등 각 제도의 독립적인 빈곤감소 효과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총 공적이전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각 제도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빈곤감소 효과는 커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간 정합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제12장 미시모의실험 기반 노인빈곤 중장기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

12 미시모의실험 기반 노인빈곤 중장기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

제1절 분석목적 및 배경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운영체계와 노후소득보장제도

□ 1960년대 이래 발전되어온 주요 사회보장제도와 운영체계를 국제기준의 범위와 운용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12-1〉과 같이 요약됨[15)]

○ 1차 안전망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인 공무원연금제도(1960)부터 사회보험의 완성으로 일컬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에 이르기까지 8종의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가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보험사업은 각 제도의 도입과 운영 등을 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주로 일반근로계층(또는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기여에 토대를 두고 재원을 조달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
-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실업에 따른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의 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부상 등에 대해 치료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또는 '건강보험'이라 한다), 그리고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활동제약이 있는 노인 등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에 해당함
- 국민연금을 위시한 공적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본 장은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로 발간예정인 고제이 외(2016) 발간예정인 「미시모의실험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평가 모형 개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15) 고제이, 박인화, 최영준 외(20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pp.98~101의 주요 내용을 요약·수정하여 정리한 것임

〈표 12-1〉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와 운영체계

제도/정책영역		급여형태	소관부처	전담(관련)기관/전달체계	재원조달
[1차 안전망: 8종 사회보험]					
4대 공적 연금	**국민연금**	**현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회보험방식(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사회보험방식(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적자국고보전**
	군인연금		**국방부**	**자체 운영**	
	사학연금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사회보험방식(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		현금/ 현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방식(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사회보험방식(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건강보험		현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방식(국가재정 외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3차 안전망: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현금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방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의료급여	현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현금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고(예산, 복권기금)+지방비
보육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현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방비
	보육(3~5세아 누리과정)		교육부	지방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성·가족		현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국고(예산,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지방비
노인: 기초연금		**현금**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고+지방비**
보훈		현금/ 현물	국가보훈처	지(방)청, 보훈병원	국고(예산,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일자리지원 등		현물	고용노동부 외	지방고용노동청	국고(예산, 고용보험기금 등)
주택		현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지방자치단체	국고(예산, 국민주택기금)
사회복지일반		현물	보건복지부 외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시설 등	국고(예산, 복권기금)+지방비
보건의료 등		현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국고(예산,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지방비

주: 급여형태, 부처, 전담기관 등은 주된 방식/기관 위주로 표기
자료: 소관부처 정책을 토대로 작성 ; 고제이 외(2015) p. 96 〈표 4-1〉

○ 부담능력이 없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빈곤층 등은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를 통해 사회보장을 도모하게 됨

-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데,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에 토대를 두고, 1962년 이래 운영되어 온 생활보호제도를 전면 개편 하여 2000년 새롭게 도입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7종 급여를 포괄하며, 2015년부터는 2000년 제도 도입 이래 적용되어온 ‘수급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모든 급여가 제공되거나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급여 종류별로 수급권을 달리하도록 개편
  - 수급자의 상당수가 노인이라는 점에서 생계급여 또한 노후소득지원 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과 같이 수급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파악할 수 있음

○ 근로여건이 취약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따른 수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급여지급이 배제되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긴급복지(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제공되며, 또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가 제공되는데, 이는 3차 안전망의 영역에 속함

○ ‘기초연금’은 1차 안전망 외부에서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당

- 2014년「기초연금법」제정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급여가 대폭 확대된 새로운 기초연금이 도입
  -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
- 2016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687만 8,536명 중 481만 4,975명이 수급권자이며, 월지급액 최대 20만 2,600원 수준에서 실제 454만 4,324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였고, 평균 국가분담 비율은 76.3%로 나머지는 지자체의 분담을 필요로 함

〈표 12-2〉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지출현황

(단위: 만명,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급현황	65세인구	570	598	625	652	677	687
	수급자수	382	393	406	435	448	454
	수급비율	67.0	65.8	65.0	66.8	66.2	66.1
지출규모	계	37,904	39,725	42,785	69,000	100,090	102,896
	국비	28,223	29,636	32,072	51,771	75,634	78,497
	지방비	9,681	10,089	10,713	17,229	24,456	24,399
	국가분담비율	74.5	74.6	75.0	75.0	75.6	76.3

주: 2015년 수급자 수는 소급지급분이 제외된 상태이며, 2016년 수급자 현황은 2016.6월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 경제·재정수첩. p. 174 수정이용

○ 공적연금과 기초연금과 같이 명시적으로 노후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이외 일을 통한 노후소득지원 제도로서 노인일자리 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이나 EITC(고령근로자인 경우)와 같은 조세지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2.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지출

□ OECD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0.4%로 검색일 현재(2016.10.20.) 현재 데이터가 공개된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우리나라의 지출수준은 OECD 국가 평균(21%)과 단순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3년을 기준으로 9개 정책영역으로 구분되는 공공사회지출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보건지출이 41.2%로 OECD평균 28.3%를 훨씬 상회, 반면에, 노령영역은 23.9%로 OECD평균 36.4%보다 크게 낮은 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취약성이 여실한 상태로 확인됨

□ 하지만 복지지출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면 국민들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받쳐주는 사회안전망의 적용률이나 급여 적정성,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인구구조, 국민부담, 국민소득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야 함

○ 예컨대, 우리나라는 대표적 공공사회지출인 연금지출(public expenditure on old-age and survivors cash benefits, in % GDP)이 2013년 GDP 대비 2.2%로, OECD 국가 평균 7.7%와 비교[16]하면 29%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은 OECD 평균 대비 78%(2013) 정도이고, 국민부담률과 국민 1인당 GDP도 각각 71% (2013)[17]와 85%(20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비중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늦은 제도도입과 현재 인구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앞으로 노인관련 사회보험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사회지출수준도 OECD 평균수준에 빠르게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핵심이 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신설된 기초연금제도의 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동 영역의 지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급여의 범위와 내용에 변화 없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 요인만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30년에는 17.9%, 그리고 2060년에는 29.0%로 추계되어,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신화연 외, 2013)

- 이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2013년 기준 GDP 대비 32%(OECD 평균의 약 70%)수준인 일반정부 총지출규모가 대략 20%p(62.5%)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18]

○ 이와 같은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지만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16)OECD Stat(http://stat.oecd.org. 검색일 2016.10.20)

17) 2013년 국민부담률 OECD 평균 34.2, 한국 24.3; 사회보험부담률 OECD 평균 8.4, 한국 6.4 (OECD stat revenue statistics, 검색일 2016.10.20.)

18) 2013년 OECD 평균 일반정부 지출규모 GDP 대비 45.25%, 한국 31.76%(OECD Government at a Glance-2015 edition. 검색일 2016.10.20.)

-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서, 1990년 이래 OECD 국가 평균 증가율의 5배 이상 속도로 나타남
  - 2000~ 2016년 OECD 평균 증가율은 0.98%인데 비해 동 기간 한국은 5.4%

〈표 12-3〉 고령화율 전망치(~2050)

(단위: %)

구분		2013	2014	2019	2020	2021	2026	2040
OECD 평균	65세 이상 인구/15-64세 경제활동인구	23.6	24.2	27.2	27.8	28.4	31.7	39.7
	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	15.6	16.0	17.6	17.9	18.2	20.0	23.9
한국	65세 이상 인구/15-64세 경제활동인구	16.7	17.3	20.0	22.2	23.4	31.4	57.2
	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	12.2	12.7	15.0	15.7	16.5	17.2	32.3

자료:OECD Stat.

〔그림 12-1〕 OECD 19개국 국가군별 노인부양비율: 195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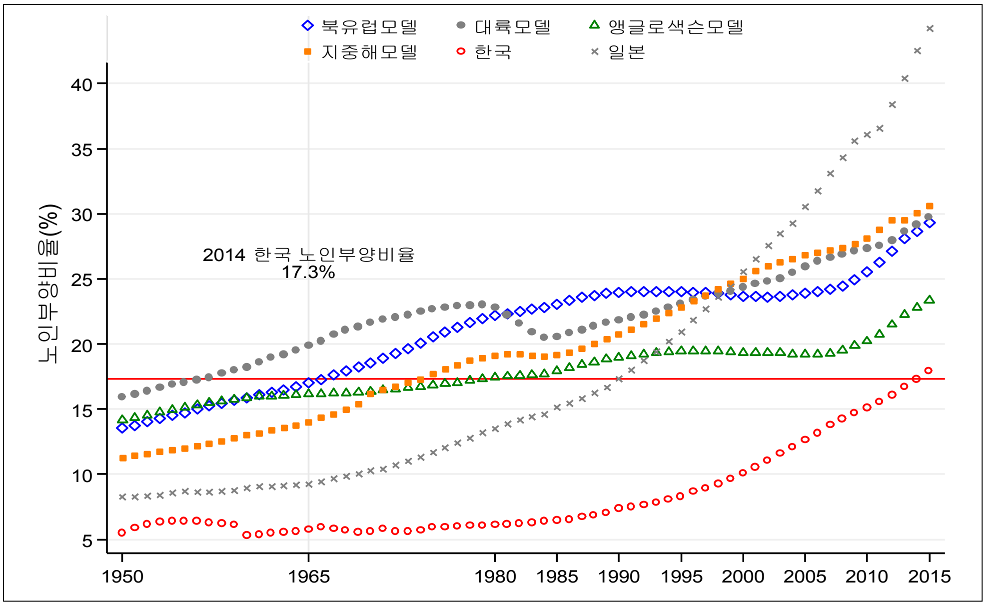

주: 국가군별 노인부양비율은 각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연도별 노인부양비율(15-64세 경활인구기준)의 산술평균값임
자료:OECD stat ; 고제이, 권혁진(2014). p.28.〔그림 4〕

□ 결과적으로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노령정책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보건정책은 각각 2013년 GDP 대비 2.3%, 4.2%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11.1%, 13.6%에 이를 것으로 전망(신화연 외 2013)

□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노후소득보장 관련 지출 규모와 정책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관련지출의 효율성과 정책성과를 도모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강조함

○ 고령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뒤늦게 도입된 연금제도의 성숙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사회보장지출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인바, 현행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 유지를 전제로 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 체계가 향후 고령사회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와 제도성숙의 효과가 모형 안에서 포착되는 동태미시모의실험 모형을 활용하여 노인빈곤율의 중장기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책적 합리성을 가늠해 보기로 함

제2절 분석 방법[19)]

1. 분석 모형

□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갖는 최대 강점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대하여 가구 또는 개인의 가처분소득 분포와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임

○ 특히, 3~40년에 걸친 개인의 생애 근로기간 동안의 가입이력과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수급액이 결정되는 연금제도의 경우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임

○ 다수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사회경제적 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동태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활용 중에 있음

□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분석 모형(이하 'DOSA':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은 유례없이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급격한 사회보장지출 증가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 성숙과정이 모형 안에서 반영되고, 정책대상자의 중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임

□ DOSA는 2005년을 초기 연도로 하여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추출 자료에 기반하여 〈표 12-4〉에 정리된 자료를 보완·활용하여, 각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교육, 혼인, 출산, 근로, 은퇴 등)을 시뮬레이션 함

19) 본 절은 고제이 외(2016)의 모형설명을 간략히 요약한 것임

〈표 12-4〉 DOSA_v.α 모의실험 생애사건과 활용 데이터

모듈	Event	alignment set	parameter 추정/계산
인구·출산	출산	2005~2014년 실적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년 이후는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연도별 출생아수 및 성비	노동패널(1~17차) 로짓모형(연령·연령제곱·취업여부·자녀수·출산대기기간과 그 제곱)
가구구성	결혼 (초•재혼)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자료의 인구 천명 당 결혼건수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Pereses(2002)의 MateMatching 알고리즘 참고(남자의 연령·부부의 연령차이 더미(6개)·학력차이 더미)
	이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자료의인구 천명 당 이혼건수 (2005~2015)	random
교육	상급학교 진학 (대학 제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자료 중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과 취업률(2005~2014)	random
	대학 진학		대학진학자 선정 시 노동패널 (3~17차) 다항로짓모형(가구소득·부모의 학력) 대학진학확률 추정값
	군대 입대/제대	2015년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자료의 신체검사 등급별 현황 (2006~2014)	random
노동시장	경제활동 상태 이행	경제활동인구조사(성·5세별 경제활동인구비율과 종사상지위별 인구비율(2001~2015) 2015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거시 기초변수	종사상 지위 이행확률 추정: 노동패널(8~17차) 다항로짓모형(연령·연령제곱·혼인상태더미·교육연수·5세미만 자녀수·전기 경활상태 5개 더미)
	근로소득	2015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거시 기초변수	소득방정식 추정: 노동패널(8~17차) 패널확률효과 모형 (AR(1)-GLS)(연령·성별·가구원수·가구주여부·배우자유무·학력·고용이력)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	2015년까지 국민연금 실적치 2016년 이후 2015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거시 기초변수	국민연금 가입 확률: 경제활동인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7~2015년) 로짓분석(성·연령·연령제곱·배우자유무·학력더미(4개)·종사상지위더미(3개))
소득세	근로·사업· 연금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법 적용 산출
자산	거주주택, 기타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	해당사항 없음	재정패널(3~7차:2010~2014) 자산행태방정식 추정(거주주택, 기타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1단계 각 자산별 보유확률: 패널 로짓 모형 2단계: 자산가치 추정
기초연금	신청/수급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선정 및 산정 기준 적용 계산
사망	사망	3차 연금재정 추계의 인구전망치(성·각세별 사망률)	random

□ [그림 12-2] 는 DOSA의 생애사건을 모사하는 모듈의 구성으로, 개인들은 시작 연도 T기의 베이스셋(약 44만 5천명)에서 출발하여 각 모듈들을 순서대로 통과하며, 생애사건들을 확률적으로 경험

[그림 12-2] DOSA의 전체 시뮬레이션 순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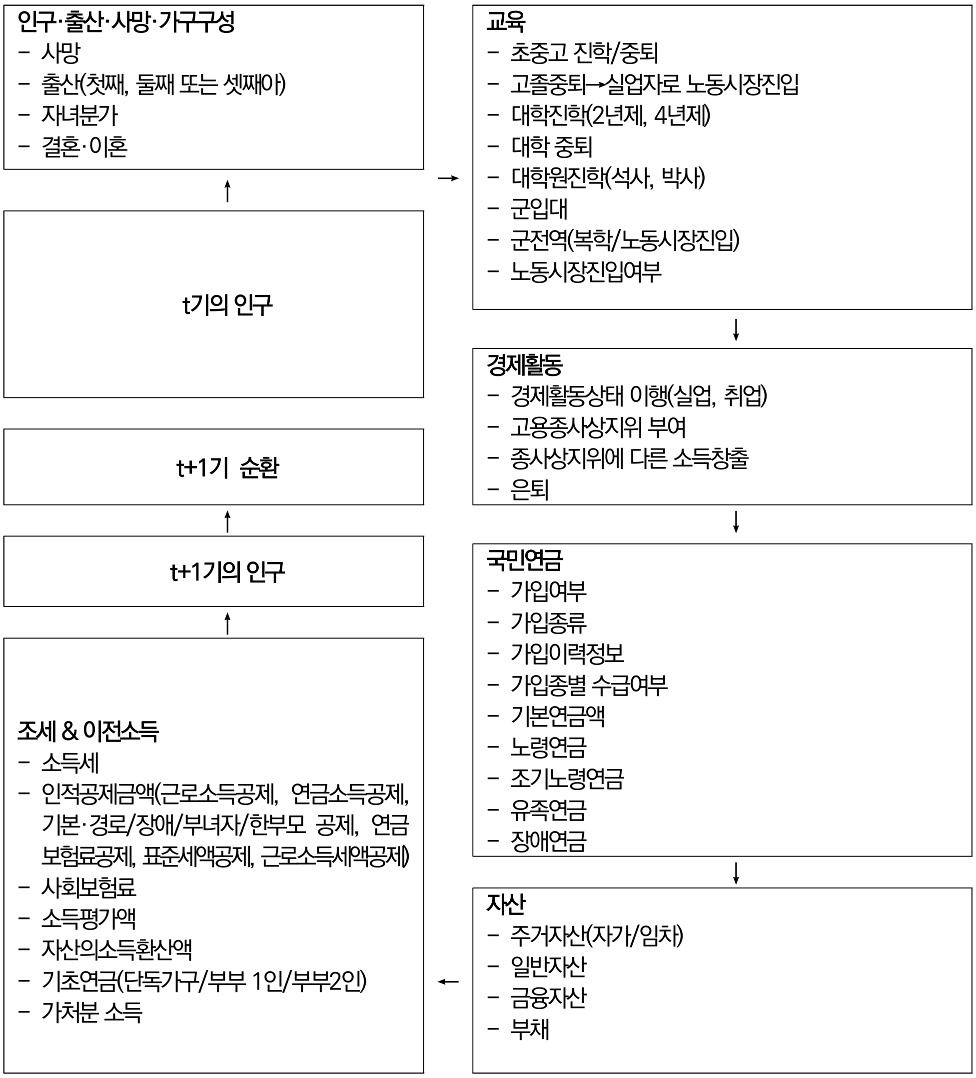

○ DOSA에서 각 개인은 우선 출산, 사망, 가구구성(결혼, 이혼)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모듈로 연결되어 종사상 지위와 은퇴 여부가 결정됨

- 인구·출산·가구 구성은 외부자료를 통해 확보된 연도별 신생아수와 성비를 기준으로 출산대상(20~49세 유배우자 여성)을 선별하여, 출산확률을 추정한 후 확률이 높은 부부 순으로 신생아를 할당하는 과정을 거쳐 가구정보가 갱신됨
- 인구동향조사 성·연령별 인구 천명당 결혼/이혼 건수의 천분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혼인건수를 결정하고 20~59세 인구 중 배우자가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결혼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별/사별 경험여부 변수에 기초하여 초혼과 재혼대상을 구분, mate matching 알고리즘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구정보를 갱신함
- 갱신된 가구정보에 기초하여 교육 모듈에서는 진학대상자를 선별하고, 진학확률을 추정 및 진학 결정, 군 입대·전역, 졸업과 노동시장 진입과정이 수행됨

○ DOSA의 노동과정은 교육 과정을 거친 각 개인은 상용·임시일용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자 비임금근로자, 실업 및 비경활 6가지의 종사상 지위를 부여받으며, 종사상 지위에 따라 노동패널자료에 기초한 자기상관 가정 확률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을 추정함

○ 상기의 정보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하여 추정된 국민연금가입확률에 따라 각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납부예외율과 징수율을 고려한 가입종류(사업장/지역), 소득수준별 보험료가 결정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누적된 개인의 연금이력과 기준시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통해 수급자가 선정되고, 수급액이 결정됨

- DOSA는 노령연금과 장애, 유족연금만을 시뮬레이션 하며, 일시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및 부양가족 연금 등은 미반영된 상태로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이처럼 근로, 사업, 국민연금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자산 및 주거에 관한 모듈이 실행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이 수행됨

- 자산 및 주거는 기본적으로 3~7차 재정패널을 활용하여 자산행태방정식을 가구 단위로 추정,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함
  - 자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복지제도들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해 조사하는 자산범주를 고려하여, 자가, 임차주택, 일반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5가지로 구분함
  - 각 자산별 가구주의 연령, 성별, 학력 종사상 지위, 배우자 유무 등 인적 속성과 가구 근로/연금소득 및 가구원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된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가구의 자산보유 여부를 결정하고, 자산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가치를 추정함

○ 다음으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에서는 해당 연도별 소득세 및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인별 근로·사업·국민연금 소득세, 사회보험료 및 기초연금 수급액이 산출됨

- 2016년부터는 동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을 통해 전망
- 명목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제의 경우 실질세부담률 고정을 전제로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명목소득금액을 2016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후 소득세를 산출한 후 다시 원래 연도의 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함
  - 세법상 적용되는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모두 반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지출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특별세액공제 대신 전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이상의 DOSA 모듈 시뮬레이션 정보에 기초하여 당해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개인별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순자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정, 감액기준에 따른 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을 산출
  -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모듈에서 추정된 A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개인별 산출된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법 제8조’에 명시된 감액요건(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고, 감액수준은 2016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이후 기간에 적용
  - 2015, 2016년 기준연금액은 실적치를 사용하며, 이후 기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고, 자산의 소득환산율을 5%로 가정

- 기본자산 공제액은 2016년 기준 지역별 공제액의 평균치인 9,750만원을 가정하고 이후 기간은 물가상승률에 연동, 금융자산공제액은 2016년 기준 2천만원으로 가정하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연동, 모형의 선정기준액 산출결과와 2015년 실적치와의 현실적합성을 고려하여 부채액의 20%만을 적용함

□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결정되며,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적용하여 각 소득개념별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계산

○ 〈표 12-5〉는 DOSA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한 시장소득의 노인빈곤율을 통계청자료와 비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시장소득 노인빈곤율의 경우 시장소득의 범주에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DOSA는 근로사업소득만을 고려하고 있어 통계청보다 7~9%p 높게 나타남

〈표 12-5〉 시장소득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비교(통계청 vs. DOSA 시뮬레이션)

(단위: %)

연도	통계청	DOSA
	시장소득: 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근로+사업소득
2012	60.7	68.9
2013	60.0	68.0
2014	59.8	67.7
2015	60.1	67.4

자료: 통계청(http://kosis.kr), DOSA 1.1

○ 세전소득에서도 이미 소득개념의 차이가 존재하며, 사적이전소득은 물론 장애수당이나, 생계급여, 양육수당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이 현재의 모형에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발표되는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수준과의 절대적 비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한편, 제10장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사적 소득이전의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15년 기준 4.6%p)를 고려했을 때, 〈표 12-5〉의 DOSA의 시장소득기준 빈곤율 측정값과 통계청 지표와의 편차는 빈곤율을 측정하는 자료자체의 질적 차이까지 생각해보면 사실상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

○ 여기서는 다만, DOSA를 활용하여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부담이 중장기적 노인빈곤율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한정하기로 함

2. 노인빈곤율의 장기추이

□ 기준선 전망의 기초거시변수는 2015년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중위/중립)을 적용

〔그림 12-3〕 거시변수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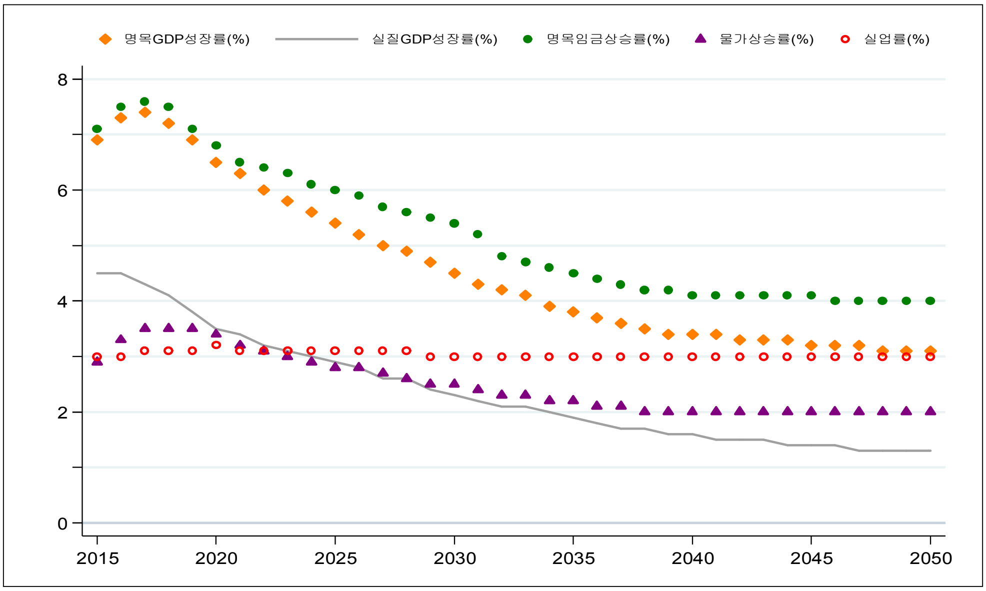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내부자료)

□ 가구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 추이를 보면, 그 자체로 2035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상대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시장소득의 중위값 하락이 빈곤 노인의 수 증가 영향을 압도한 것으로 파악됨

○ 1,2차 고령붐(1,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이 마무리되는 2035년 이후 다시 노인빈곤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DOSA에서 연령코호트별 학력수준의 차이로부터 평균임금수준의 격차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이 반영되고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거시전망이 함께 결합되어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12-4〕 노인 빈곤율 전망(2016년 기준,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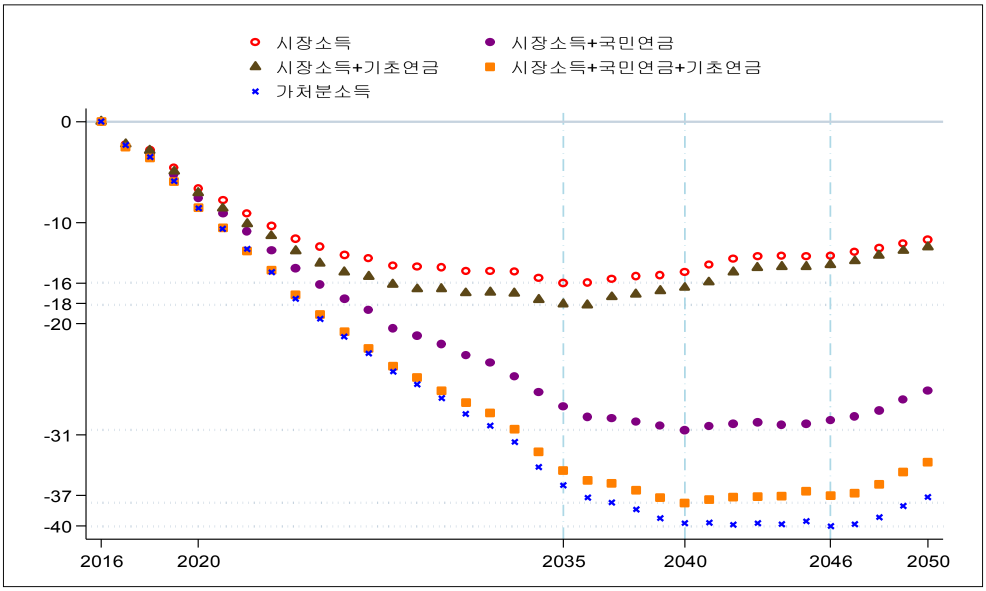

주: 빈곤선은 각 소득개념별(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의 1/2로 정의함.
자료: DOSA 1.1 모의실험 결과

□ 이러한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의 변화추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조세부담(소득세+사회보험료)의 영향을 검토해보면,

○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빈곤완화 효과가 가장 작고, 수급자 수와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이 진행되면서 노인세대의 소득구성이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달라짐에 따라 노인빈곤 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와 급여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되어 감액되도록 설계된 이유에서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는 국민연금제도가 완전 성숙기에 접어든 이후 급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제3절 정책적 함의

□ 동태 미시모의실험모형(DOSA1.1)을 활용하여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을 고려한 중장기 노인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음

○ 이상의 DOSA 모의실험 결과는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이나,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기타 조세부담 항목이 DOSA에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완벽한 가처분소득의 개념과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장소득을 기준했을 때의 노인빈곤율 추정결과와 DOSA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현실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소득 노인빈곤율에 대한 각 제도의 중장기적 영향 추이를 살펴보는 제한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2016년 현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노인빈곤율 수준은 기초연금제도의 완전 시행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6년에는 현재 수준보다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46년 최저점을 기록한 후 노인빈곤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시장소득기준 노인빈곤 심화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08년 제도 개혁에 따른 소득대체율 인하 등 절대적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자체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

○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제도 성숙 이후 자연 소멸되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급여액 수준 역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된 기초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한편, 이상의 결과는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미성숙이 원인으로 향후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노인빈곤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정 수준 뒷받침 하는 결과임

○ 분석결과와 같이 2046년에 노인빈곤율이 현재 수준대비 40% 정도 감소하여 최저수준(노인빈곤율 약 30% 전후)에 이른다면,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3년 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의 노인빈곤 수준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평균 약 10%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3배에 이르는 높은 빈곤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함

○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점차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관련하여 현재의 국민연금만으로는 향후 제도가 성숙되면 노인빈곤 수준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OECD 국가와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가처분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수준이 OECD 선진국과 상이한 상황 역시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더불어 상대빈곤 관점에서 노인빈곤 수준이 크게 감소할 수 없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임을 고려해야 함

제 13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기초연금 확대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가 반영된 결과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 발표된 OECD 자료(Pensions at a glance 2015, 2013년 기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2.6%)의 약 4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

○ 노인 상대빈곤율(중위 균등조정 가처분소득 50% 미만 노인인구 비율)은 소득중심으로 산출하는 대표적 빈곤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등과 더불어 기존 연구에 활용된 소득 중심 빈곤지표는,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실태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빈곤 실태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계청이 OECD에 제출하는 빈곤지표 산출 시와 동일한 소득분배지표조사 자료(2010~2015)를 활용하여 OECD가 발표한 'Pensions at a glance 2015(2013년 기준)'의 노인빈곤 지표를 최근 시점인 2015년까지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노인의 상대빈곤율 산출방법론과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변화 추이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보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 중심의 노인빈곤 통계 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현재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효과와 향후 예상되는 노인빈곤의 중장기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재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노인빈곤의 실태와 정책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연구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 3가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노인빈곤 실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음

○ (연구과제 1)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 및 패널자료에 대한 비교를 기초로 분석 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변화 추이 및 노인빈곤 구성을 심층 분석함 ☞ 제1부

○ (연구과제 2)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실태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다양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노인빈곤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제2부, 제3부

○ (연구과제 3) 노인의 유형별 생활여건 및 욕구를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노후소득보장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노인빈곤의 변화를 제시함 ☞ 제4부

□ (제1부)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 및 동향 분석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 및 동향분석

2장 우리나라 노인빈곤지표 변화 추이 분석 및 시각화
※ 분석데이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조사

3장 연령집단 및 가구유형별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 심층 분석
※ 분석데이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4장 노인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에 따른 노인빈곤 구성 심층 분석
※ 분석데이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다양하게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음

- 먼저, OECD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조사(2010~2015)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인빈곤율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노인빈곤 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음
- 인구가중치 반영 중위소득 적용 노인인구 기준 상대 노인빈곤율
  - 인구 기준 빈곤율 산출 시 다수의 연구자가 최근 활용하는 방식이며, 통계청 & OECD 빈곤율 산출방식에 해당함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에 제시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66세 가처분소득 기준 2010년 47.22%이며, 가장 높았던 ‘Pension at a Glance 2015’의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2013년 49.60%임
  - 그러나, 2013년을 정점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한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기초연금 도입 효과가 완전히 반영된 2015년의 경우 45.66%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 노인 연령기준인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역시 2013년 48.08%로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2015년에는 44.76%로 45% 아래로 낮아짐
- 가구가중치 반영 중위소득 적용 노인인구 기준 상대 노인빈곤율
  - 일부 연구자가 가구 단위의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구 단위 정책대상 규모추정 시 활용방식임
  - 가구가중치를 반영한 2013년 노인빈곤율(중위 50%)은 46.36%로, 동일한 66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Pension at a Glance 2015’의 2013년 49.60%에 비해 2.24%p 낮게 나타남
  - 가구가중치를 반영할 경우, 기초연금 도입 이후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4년 45.31%, 2015년에 42.27%로 가장 높았던 2013년에 비해 약 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기준으로는 2015년 41.35%까지 낮아짐

- 노인가구빈곤율
  - 가구가중치 반영 방식과 동일하게 중위소득을 산출하여 이를 빈곤 기준으로 노인가구 단위 빈곤율을 산출하는 방식임
  -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가구빈곤율은 2012년(44.47%)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2015년에는 42.84%로 감소하였음(66세 이상 43.53%)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기준 노인가구 유형별 상대빈곤 지표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2014년 65세 이상 2014년 노인빈곤율은 47.1%이며, 노인가구빈곤율은 44.1%임
  -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의 노인가구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정책 효과임
  - 노인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약 90%이며, 공적이전소득 반영 이후에도 경상소득 기준 약 82%, 가처분소득 기준 약 80%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노인가구 유형별 공적이전소득과 경상소득 분포에 따른 노인 상대빈곤 변화 추이 시각화(2010 vs. 2015)
  -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연금제도 성숙 등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가구 경상소득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노인가구 및 노인가구 유형별로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빈곤선(실선) 기준으로 빈곤가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상향 이동하였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노인 상대빈곤 분포 시각화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고려하여 소득 기준 상대빈곤 분포를 살펴보면, 실선에 해당하는 빈곤선 왼쪽으로 노인가구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어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노인빈곤 가구의 일부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자산보유 분포(Y축)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광범위하고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자산보유 수준이 비노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3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노인들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빈곤율의 양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

- 분석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연령집단, 가구주여부, 가구유형, 공적연금수급여부, 거주지역에 따른 집단별 빈곤율을 분석함
  - 노인빈곤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도입 이외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는 전체 노인을 동질한 인구집단으로 간주하고 노인 빈곤 구성의 이질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며, 노인의 성별, 연령집단, 가구주여부, 가구유형, 공적연금수급여부, 거주지역 구분에 따른 분석과 이러한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65세 이상 노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30~60%의 빈곤선을 적용하여 빈곤율과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점유율이 남성보다 높아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65~74세 전기노인은 75세 이상 후기노인보다 노인빈곤율은 낮지만 점유율이 높아 상대적 기여도가 높아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과 점유율이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월등히 높아 상대적 기여도 역시 높게 나타남
  - 공적연금 비수급자의 빈곤율은 수급자보다 높으며, 상대적 기여도는 수급자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
  - 수도권 거주노인보다 비수도권 거주노인의 빈곤율과 점유율이 높아 비수도권 거주노인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효과적인 노인빈곤정책 대상으로 여성, 후기노인, 노인가구주,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배우자부부가구, 공적연금 비수급자,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빈곤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4장에서는 복잡한 방법론적 접근보다는 노인과 노인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공적이전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노인의 경제활동여부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은 노인빈곤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되고 있음(최현수 외, 2003)
- 노인의 경제활동상태와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노인빈곤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음
  - 먼저, 노인 중 취업자 비중은 29.4%이며,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약 40%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노인의 약 56%가 상용근로자이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13.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노인의 종사상 지위의 구성이 매우 상이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2014년 노인빈곤율은 47.1%인데,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노인의 빈곤율은 38.3%, 비취업노인은 50.8%로 나타나 비취업노인의 빈곤율이 약 12.5%p 높았지만, 비노인 집단의 경우 취업자 빈곤율보다 약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취업노인의 빈곤율이 비노인에 비해 높은 이유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에 있어 노인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12.8%에 불과하고, 근로여건이 불안정한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비노인에 비해 약 10%p 가까이 높기 때문임
-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의 비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소득의 비중은 비노인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노인가구 소득구성에 있

어 빈곤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소득과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음

- 가구유형별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지만,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비노인인 경우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여부에 따른 공적이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부부와 비노인배우자부부의 경우 공적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빈곤율은 상승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빈곤의 주된 구성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최근 기초연금의 도입 등으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독거노인의 빈곤감소효과가 기초연금 도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때,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사적이전과 공공부조성 급여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적용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

□ (제2부)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특수성을 고려한 노인빈곤실태 분석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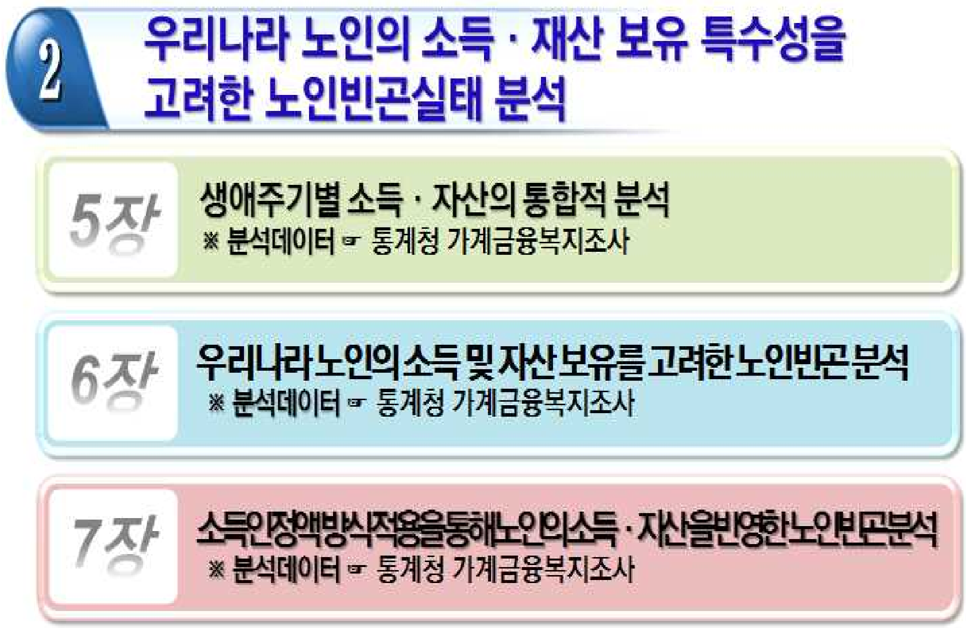

○ 5장에서는 생애주기별(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과 자산 분포, 빈곤위험, 부채 현황, 소득과 자산 간의 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

- 소득(income)은 가구 복지(well-being)의 대리변수(proxy)로 가장 흔히 활용되지만, 자산(wealth) 또한 가구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중요한 만큼, 가구 복지의 포괄적 측정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인의 경우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특히, 주택)은 상당한 (income-poor, asset-rich)" 경우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이 부분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노인빈곤 대책의 수립에 중요(여유진 외, 2015a)[20]

20) EU Green Papers on pensions에서도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노인은 자가소유 주택에 거주한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주택을 보유할 자본을 소유함을 의미한다. 장관들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그들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EU Housing Ministers 1999: para 9; Doling and Elsinga 2013, p.9 재인용)고 언급함

- 우리나라와 같이, 세대 간 사적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의 경우, 소득·자산의 분포가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상대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적연금이 성숙된다 하더라도 낮은 소득대체율과 높은 사각지대로 인해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높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사적 부양의식과 실제 부양률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노후 빈곤 예방과 생활 안정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소득과 더불어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대안 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가구의 소득과 자산 실태와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소득과 자산의 상대 배율(전체 평균을 100으로 간주할 때, 가구주 연령별 소득·자산 배율)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급격히 하락하지만 재산은 소득만큼 급격한 하락을 보이지는 않음
  -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급격한 퇴장과 달리, 기존에 축적된 자산, 특히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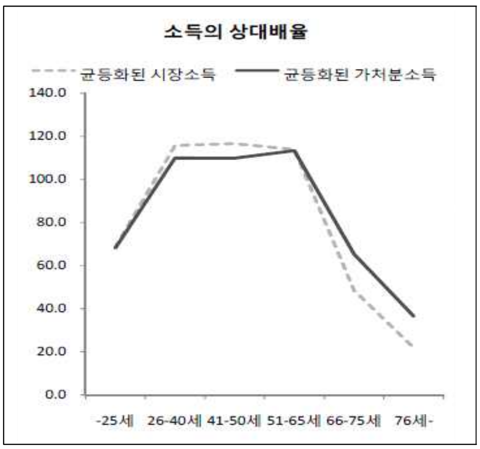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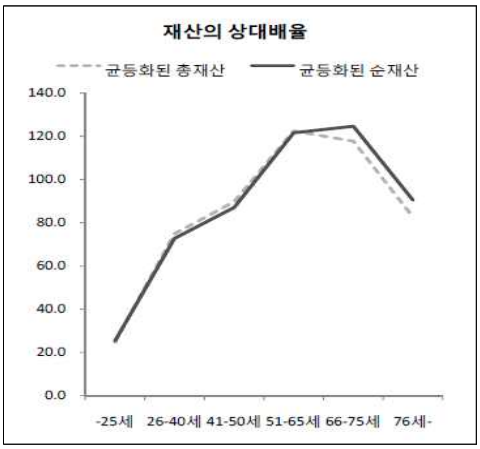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애주기별 소득과 재산의 수준, 빈곤실태, 5분위별 분포, 부채 상태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도출이 가능함
  - 소득보장의 제공, 특히 기초보장의 수급과 관련하여 노인의 주택에 대한 재산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주주택은 자산의 의미도 있지만 내구소비재의 성격도 있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환산함에 따른 복지 저하도 고려되어야 함
  - 거주주택의 유동화를 통한 소득보장(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정서상 주택은 상속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택연금이 급격히 확대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소득과 자산 보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소득과 재산의 동행화, 즉 소득과 자산의 높은 상관관계는 중장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노년기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특히, 선행연구(여유진 외 2015a)에 의하면, 소득과 자산 간의 순위상관관계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과 자산 빈곤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함
  - 소득과 자산이 동시에 빈곤하다는 것은 생활에서 다차원적 박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러한 복잡한 빈곤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 부록 4에서는 노인의 소득·자산 항목별 보유 분포 및 상대적 영향도를 비교 분석하였음

- 전체 가구, 가구주 연령별, 노인가구 유형별 집단의 소득·자산 분포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특수성을 살펴봄
  - 분포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 Violin plot (Density plot 및 Box Plot)을 활용하여 전체 가구, 세대별, 노인가구 유형별 하위 집단의 소득·자산항목별 분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특수성을 파악함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부채 분포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부동산, 총자산, 순자산 분포는 거의 유사함
- 노인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와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의 소득·자산항목별 분포가 거의 유사하고, 노인단독가구는 0에 집중됨
- 전반적으로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부부, 자녀동거노인가구주 유형 순으로 분포가 높은 값으로 shift 하는 경향을 보임

-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소득항목은 40대에서, 자산항목은 5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음
  -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과 자산항목 모두 다른 연령집단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인가구주 가구에 비해서는 소득은 다소 높지만, 자산은 현저히 낮음
- 소득·자산항목별 상대적 영향도 ☞ Relative Influence Plot
  - 경상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항목의 상대적 영향도는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함
  - 노인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노인단독가구에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사적이전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근로소득과 기초연금이 중요한 항목임
  - 그러나, 근로소득의 영향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으며, 현재 기초연금의 영향이 노인단독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사적이전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경상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노인부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영향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은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분포는 귀속임대료 또는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에 의해 자산을 반영한 노인빈곤율 변화에 영향을 미침
  - 부동산 자산, 순자산의 보유 분포에 있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자산을 반영한 노인빈곤율을 산출하더라도 현행 소득 중심 노인빈곤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부록 5〉의 노인보유 자산의 국제 비교(부표 5-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
  - 65~74세 가구주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전체 평균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부동산 중심의 비금융자산은 116이며 금융자산은 60임
  - 부동산 중심의 비금융자산의 경우도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중간 정도 수준이며, 룩셈부르크(168), 미국(144), 벨기에와 독일(136) 프랑스(12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 5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스트리아(64), 스페인(81), 독일(86)보다 다소 낮음

○ 6장에서는 자산을 중심으로 빈곤율을 산출하여 노인가구와 전체 집단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소득과 자산의 관점에서 노인빈곤실태를 파악함

- 소득과 자산 상대빈곤율은 개별 변수의 중위5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자산 절대빈곤율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3개월분과 6개월분을 기준으로 설정함
  - 자산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최저생계비와 같은 소득 빈곤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의 소득 빈곤선을 적용하는 방법과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자산 절대빈곤, 후자는 자산 상대빈곤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산 중심의 노인빈곤율 분석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 구성 중 비금융자산 비율이 높으며, 노인의 소득빈곤율보다 자산빈곤율이 낮음
  - 먼저 기존 소득 중심 노인빈곤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데, 총자산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노인의 자산빈곤율은 31.5%로 전체

자산빈곤율인 25.3%보다 6.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와 전체가구의 자산빈곤율 격차는 소득빈곤율 격차(30.8%p)의 약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자산빈곤율은 소득빈곤율과 유사하게 가구 유형별로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빈곤율 뿐만 아니라 자산빈곤율도 매우 높은 수준임
-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빈곤 분석시, 소득과 더불어 자산을 포함하면 보다 폭넓은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및 자산뿐만 아니라 비소득 요인까지 포괄하는 빈곤연구가 추후 수행될 필요 있음[21)]

○ 7장에서는 소득인정액 방식 적용을 통해 노인의 소득·자산을 반영한 노인빈곤율 변화를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다른 OECD국가의 노인세대와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소득 창출 혹은 축적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세대 노인은 저축보다는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자산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율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빈곤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자산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음(백화종, 강성호, 2011; 윤희숙, 권형준, 2013)
- 자산을 고려한 빈곤율의 산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첫째는 자산 그 자체를 고려한 분석임. 즉 현세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빈곤선을 구하고 자산금액 자체를 토대로 빈곤율을 산출하는 방식임
  - 둘째는 자산이 큰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 자산 자체 보다는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환산율 개념을 적용하여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소득과 합산하여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식임

21) 10장 다차원적 빈곤분석이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임

- 자산빈곤 측정방식 중 다양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노인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환산율을 이용한 노인가구빈곤율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으로 46.9%로 분석되어 소득 기준 가구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 중심의 노인가구빈곤율 44.1%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산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가구빈곤율은 37.4%로 약 9.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귀속임대료 방식 적용 시,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가구빈곤율은 원리금상환 미반영 시 36.5%, 제외 시 35.9%로 약 10%p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현 세대 노인가구의 경우 자산을 환산 방식으로 반영하여도 노인빈곤 수준이 크게 완화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그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점은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측정이 노인과 비노인 간에 나타나는 빈곤격차에 비해서는 자산을 고려한 빈곤격차가 다소 줄어들지만, 자산을 고려해도 여전히 노인빈곤 수준이 30% 중반 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제3부)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를 반영한 다차원적 빈곤지표 분석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8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증여, 자녀의 부모 부양 등 사적이전을 고려한 노인 빈곤실태를 분석하였음

- 사적이전에 대한 분석결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사적 소득이전은 여전히 노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중요성 정도는 예전보다 많이 하락하였으며,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보다 규모 및 중요도에서 더 크게 나타남
  - 둘째, 사적 소득이전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데 여전히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을 4~5%p 감소시키는 수준임
  - 셋째, 사적 부양의 맥락에서 노인 빈곤을 악화시킨 요인으로는 증여, 동거를 들 수 있음.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정 정도 노인 빈곤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자녀와의 동거가 급격히 감소한 점이 노인빈곤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 결과가 노인빈곤 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데 사적 소득이전과 같은 사적 부양의 역할이 점점 감소되고 있으므로, 공적 부양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점에서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의 핵심은 국가에 의한 공적 복지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빈곤율이 크게 낮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높음. 또한, 현재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자녀와의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임.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데 자녀와의 동거는 중요한 요인임. 그런 점에서 노인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구에게 조세감면 혜택의 확대 등 노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구의 비중을 유지 내지 높이기 위한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9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와 더불어 생활실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거·의료, 이자상환액 등 필수적인 지출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노인빈곤 실태를 분석함

- 노인집단 유형별 주거비·의료비·이자상환액 등 필수적 지출을 고려하여 노인의 체감 빈곤지표 분석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귀속임대료를 산출하여 반영하고, 식료품비, 주거비 부담과 주거로 인한 원금과 이자상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개념으로부터 빈곤지표의 변화를 노인가구 유형별로 분석함
- 가구주 연령집단별 귀속임대료와 지출 분포 분석결과에 의하면, 귀속임대료가 매우 높은 가구가 분포하고 있지만 노인가구주 가구 귀속임대료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음
  - 식료품비, 주거비의 경우, 절대적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득 수준을 고려한 부담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음

• 노인가구주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지만, 50~64세 중고령층 가구주 가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노인가구 유형별 귀속임대료 및 지출 분포 분석결과,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와 귀속임대료 수준이 거의 유사하지만,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귀속임대률 반영 시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식료품비와 주거비 지출은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순서로 낮게 나타났음

  • 노인단독 가구의 의료비는 비노인가구보다는 낮지만 유사한 수준이었고, 노인부부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에서 가장 높았음

- 부동산 자산 보유를 반영한 귀속임대료 및 필수적 지출 반영 시 빈곤율 변화 분석결과

  • 귀속임대료와 지출 반영 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가구빈곤율 약 42.6%를 기초선(baseline)이라고 할 때, 귀속임대료를 반영하면서 빈곤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빈곤율은 약 30.6%로 12.0%p 감소함

  • 그러나, 빈곤선을 조정할 경우 노인가구빈곤율은 약 37.0%로 실질적으로 귀속임대료 반영 시 빈곤율 감소폭은 약 5.6%p(42.6% 대비 13.1% 감소) 수준으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노인세대의 부동산 등 자산보유 비율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귀속임대료를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매우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적절치 않음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지출 분포에 따라 지출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등 절대적인 금액이 작을지라도 가처분소득 중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큰 항목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3%p 증가함

  • 반면, 노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교육비 또는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각각 약 1.6%p와 0.5%p 감소함

• 필수적인 지출 항목 전체를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약 49.1%까지 증가하며, 부동산 관련 보유자산을 귀속임대료로 반영하고 필수적인 지출을 반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약 40.3%로 2.3%p(42.6% 대비 5.4%) 감소하는 수준임

- 노인가구 유형별로도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른 귀속임대료 및 필수적인 지출 부담에 따라 노인빈곤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 항목의 부담이 큰 노인가구 유형에서는 빈곤율이 높아짐

• 빈곤율이 가장 높은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약 78.9%에서 귀속임대료 반영(빈곤선 조정) 시에 약 71.4%로 감소하며, 개별 지출 항목에서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반영 시 빈곤율이 상승하지만, 지출 전체 항목을 반영할 경우 다른 가구유형과 달리 빈곤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요컨대, 귀속임대료 등을 통해 빈곤율 산출 시 보유 자산을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OECD가 발표하고 있는 빈곤지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그만큼 높지 않다고 이해하거나 빈곤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10장에서는 소득, 자산, 주거, 건강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노인의 다차원 빈곤을 분석하였음

- 일반적 관점에서 빈곤한 노인, 즉 소득빈곤 상태에 놓인 노인은 자산, 주거, 건강 등 다른 생활영역에서도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 다양한 삶의 영역(6개 차원)에서 1개 차원 이상에서 빈곤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약 75%이며, 2개 이상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한 노인은 42.1%임

• 소득 차원에서 빈곤율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62.0%), 그 다음 건강 차원(33.0%), 주거 차원(21.5%), 자산 차원(13.0%), 사회관계망(9.7%), 사회참여(6.8%) 순으로 빈곤율이 높음

- 그러나 노인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소득빈곤은 다양한 생활영역의 결핍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함
  - 비록 소득은 빈곤선 이하더라도 다른 생활영역에서는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소득은 양호하지만(빈곤하지 않지만), 다른 생활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음
  - 소득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지만 건강 차원에서 빈곤한 노인은 26.2%, 주거 차원 빈곤 노인 16.1%, 사회관계망 차원 빈곤 노인 6.1%, 사회참여 빈곤 노인 4.8%, 자산 차원 빈곤 노인 4.5%에 이름
  - 반대로 소득 차원에서 빈곤하더라도 자산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은 77.8%), 주거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72.7%, 건강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59.8%, 사회참여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91.1%, 사회관계망 차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 86.4% 임
- 다차원 노인빈곤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 설정이 필요함
  - 노인단독가구는 다차원적인 노인빈곤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이며, 소득보장 뿐 아니라 주거와 보건의료서비스, 사회관계망 형성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
  - 노인단독가구는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6개 차원 중 사회참여를 제외한 5개 차원에서 차원빈곤율이 가장 높음
- 차원별로 차원빈곤율이 높은 노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차원별 정책우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자산 차원은 소득이 빈곤하며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않는 후기노인이며, 건강 차원은 소득이 빈곤한 후기 여성노인임
  - 사회관계망 차원은 소득이 빈곤한 도시지역 거주, 남성노인임

□ (제4부)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효과성 및 노인빈곤 변화 추정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4 노후소득보장 정책 효과성 및 노인빈곤 변화 추정

11장 노인 유형별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 분석데이터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2장 미시모의실험 기반 노인빈곤 중장기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
※ 분석데이터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으로 구축된 미시모의실험 데이터

○ 11장에서는 노인 유형별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함

-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의 수급자 증가 및 가입기간 증가로 인한 급여액 상향으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큰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노인의 가구소득에서도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2014년 이후에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노인가구의 빈곤감소 및 생활안정에 공적이전의 역할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빈곤갭 비율도 2013~2015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에도 공적이전의 역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노인(가구)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적이

전제도 가운데에서는 사회보험인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급자 확대 및 가입기간 증가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필요

•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급여액이 상향되긴 했지만 급여수준이 공적연금보다 낮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비교할 때에는 빈곤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음

- 한편 빈곤갭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적이전제도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그 효과가 더 커졌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빈곤의 정도 완화에 현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제도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이미 노인의 빈곤율 감소 및 빈곤갭 비율 감소와 관련하여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공적이전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함

-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기초 등 각 제도의 독립적인 빈곤감소 효과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총 공적이전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각 제도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빈곤감소 효과는 커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간 정합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12장에서는 미시모의실험 기반으로 노인빈곤율의 중장기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제시함

- 동태적 미시모의실험모형(DOSA1.1)을 활용하여 인구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을 고려한 중장기 노인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음

• 2016년 현재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노인빈곤율 수준은 기초연금제도의 완전 시행과 국민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6년에는 현재 수준보다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46년 최저점을 기록한 후 노인빈곤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 심화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이상의 결과는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미성숙이 원인으로 향후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노인빈곤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정 수준 뒷받침 하는 결과임
  - 분석결과와 같이 2046년에 노인빈곤율이 현재 수준대비 40% 정도 감소하여 최저수준(노인빈곤율 약 30% 전후)에 이른다면,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3년 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의 노인빈곤 수준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평균 약 10%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3배에 이르는 높은 빈곤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결과는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함
  -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노인빈곤 수준은 점차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관련하여 현재의 국민연금만으로는 향후 제도가 성숙되면 노인빈곤 수준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OECD 국가와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의 적절성 및 이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또한, 가처분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수준이 OECD 선진국과 상이한 상황 역시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더불어 상대빈곤 관점에서 노인빈곤 수준이 크게 감소할 수 없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임을 고려해야 함

부록

부록1.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분석데이터 특성 및 주요 변수

□ 본 절에서는 노인빈곤실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마이크로데이터의 특성과 주요 변수를 검토하고자 함.

[부도 1-1] 국내 노인빈곤실태 분석 활용 가능 마이크로데이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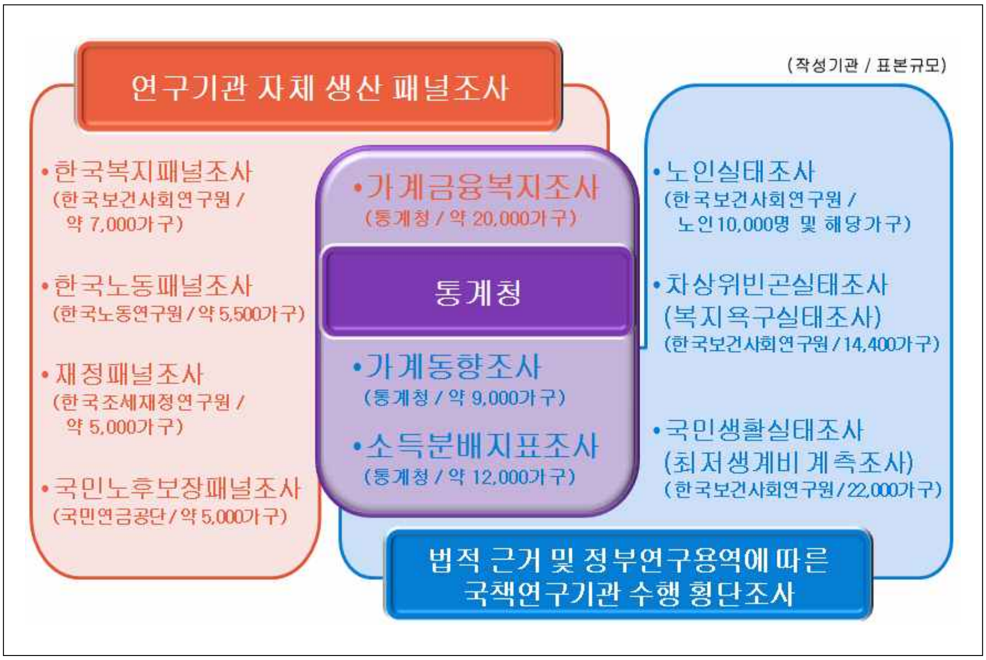

1. 메타데이터

가.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 소비자물가지수에 필요한 가중치 모집단 자료 등 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 표본규모: 999개 조사구에서 약 9,000가구(적격가구 기준)

○ 조사주기: 매월

□ 주요 조사항목

○ 가구실태: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산업, 직업,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거처구분, 자동차보유, 주거에 관한 사항, 사용면적, 주택소유여부 등

○ 가계수지: 가구주 소득, 배우자 또는 기타 가구원 소득, 주거비/방송/교통/통신, 적금/보험/신용카드, 육아 및 교육비, 아파트관리비 등

○ 개인연금을 재산소득으로 분류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 소득분배지표 조사 (통계청)

○ OECD는 ‘국제기준인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기준’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권고

○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를 포괄하기

위해 농가경제조사 데이터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결합 - 조사기간 차이(가계동향: 월평균, 농가경제: 연간)로 인해 가계 월 기준 소득과 농가 연간기준 소득을 일치시켜 줌 • 농가경제조사 경상소득 및 조세 등 비소비 지출(연간) ÷ 12 = 월평균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조사대상

-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
- 조사대상 제외가구
  -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자녀(학생, 학원생) 가구
  - 직장 때문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 가구
  - 15세 미만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고령·장애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
  - 단, 분가 가구원이 사회시설이나 비혈연으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더라도 계속 조사함

○ 표본규모: 전국 약 20,000가구(금융부문 1만가구, 복지부문 1만가구)

○ 조사주기: 1년

□ 주요 조사항목

○ 금융부문 160개 항목(자산, 부채, 소득, 가계비소비지출 등)

○ 복지부문 143개 항목(가계소비지출, 노후생활 등)

다.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전 국민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를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파악하여 종단적 자료를 통한 계층별 소득변화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조사대상: 전국을 모집단으로 추출한 400개 조사구(제주도 포함)

○ 표본규모: 약 7,000가구

○ 조사주기: 1년

□ 주요 조사항목

○ 가구조사표: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가입, 주거, 생활비 등

○ 만15세 이상 가구원용 조사표: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수급, 생활실태 및 만족 및 의식, 사회적 자본, 생활습관 등

라.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노동시장 관련 조사자료 미흡 및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분석적인 노동시장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기여

○ 조사대상

-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

○ 표본규모: 원표본 3,472가구 및 분가한 2,029가구를 합하여 총 5,501가구

○ 조사주기: 매년

□ 주요 조사항목

○ 가구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소비, 교육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

마.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조세와 재정의 분배 및 재분배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 원시 자료의 구축

○ 조사대상

- 전국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구성원(제주도 및 도서지역 제외)

○ 표본규모: 전국의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가구 5,014가구

○ 조사주기: 1년

□ 주요 조사항목

○ 가구: 가구 일반사항, 소득현황, 가계지출 현황,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복지급여 현황, 자산 및 부채현황, 근로장려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유가보조금, 출산, 가구 설문 종료

○ 가구원 : 가구원 일반 현황, 경제활동, 소득 및 지출 현황, 근로소득세 공제 현황, 종합소득세 공제 현황,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신뢰,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연구원)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고령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욕구 및 중요도를 파악하고, 연금 및 고령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 수집함

○ 조사대상

-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있는 가구와 이들 가구에 속한 만 50세 이상의 개인 조사대상자 및 그 배우자

○ 표본규모

-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 가구
- 기존 표본 외에 1,500가구 표본 추가(2012년)

○ 조사주기: 2년

□ 주요 조사항목

○ 가구: 가구원 인적사항, 주거 현황, 가구 지출, 가구 소득 및 저축, 가구 자산 및 부채

○ 개인: 취업현황 및 은퇴현황, 직업력, 노후생활, 공적연금, 소득 및 이전지출 현황, 증여 현황, 돌봄, 노동, 건강, 삶의 만족도 등

사.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노인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 생산을 위함

○ 조사대상

- 전국 표본 조사구 내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표본규모

- 866개 조사구 만 65세 이상 노인 약 10,000명 및 그 가구

○ 조사주기: 3년

□ 주요 조사항목

○ 가구 일반사항, 건강 상태, 건강 행태,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 경제 활동, 경제 상태,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생활환경, 노후 생활과 삶의 질, 인지기능, 가구 경제상태

아. 차상위빈곤실태조사(복지욕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조사 실시, 빈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도출
- 계층별, 욕구별 실태파악 및 빈곤층 범주화
- 우리나라 빈곤정책 추진방향 모색

○ 표본규모

- 1차 조사: 전국 900개 조사구 내 표본 추출된 약 14,400가구
- 2차 조사: 600개 조사구 내 1차 조사가 완료된 4,803가구

○ 조사주기: 비정기(2006, 2009, 2014)

□ 주요 조사항목

○ 1차 조사

- 가구일반특성, 생활여건(결핍), 주거, 생활비 지출, 소득, 부채(이자), 자산 등

○ 2차 조사

- 조사영역은 경제활동, 의료, 교육, 생활환경의 4개 범주로 구성
  - 경제활동 영역은 소득, 고용, 자산 등의 영역을 포괄하며, 소득 및 자산빈곤선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
  - 의료 영역은 만성질환, 의료비부담, 건강증진서비스 등 포함
  - 교육 영역은 보육/양육, 아동복지 분야를 포괄
  - 생활환경은 주거, 에너지, 문화 등의 영역을 조사

자. 국민생활실태조사(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

○ 조사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물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연구

○ 조사대상

- 2차 생활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기준소득 이하(경상소득 40%이하)가구
- 시장조사는 2차 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주요 시장 대상
- 가구유형별 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는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노인가구 등 표본추출 된 1,500가구 대상

○ 표본규모

- 전국 550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층화집락 추출하여 22,000가구

○ 조사주기: 3년(2004, 2007, 2010, 2013)

□ 주요 조사항목

○ 1차 기초조사

- 가구구성 및 가구원특성 등의 가구 일반현황, 비목별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생활실태

○ 2차 시장가격 조사 및 심층조사, 가구유형별 조사

- 시장가격조사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집의 자가, 전세, 월세 가격 등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가격파악을 위해 가격조사를 실시
- 가구유형별 조사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의 추가 지출 요인을 조사

2. 조사데이터별 소득·자산·지출 관련 주요 조사항목

가.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소득

○ 경상소득

- 근로소득: 가구주소득, 배우자소득, 기타가구원소득
- 사업소득: 가구주사업소득, 배우자사업소득, 기타가구원사업소득, 주택 등 임대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수입, 퇴직연금수입, 기타재산소득
-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기타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 기타수입: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 지출

○ 소비지출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 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 기타지출

-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이전

※ 소득분배지표 조사 (통계청)

○ 소득 및 지출 관련 변수

-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근로소득, 균등화 사업소득, 균등화 재산소득,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균등화 공적비소비지출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 수입 등),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 기타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

□ 자산

○ 실물자산

- 주택, 주택 이외의 부동산,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자동차, 기타

○ 금융자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형태의 저축·펀드,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예치식 저축·펀드, 주식·채권, 권리금, 기타(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곗돈), 공적연금 보험료, 연금형 부채

□ 부채

○ 금융부채

- 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재 잔액 또는 곗돈 내야할 돈

○ 부채상환능력

□ 지출

○ 소비지출

-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보육비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비, 기타

○ 비소비지출

- 세금: 소득세·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가구 간 이전지출 및 비영리단체 이전

다.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 및 부채

○ 소득: 연간 급여 총액(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기타 정부보조금, 기타 소득, 환급금,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민간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부채: 부채액, 부채로 인한 이자

□ 자산

○ 소유 부동산, 점유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 재산

□ 지출

○ 소비지출

-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라.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소득

○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수급액, 사회보장 수급액을 제외한 이전소득, 기타소득, 근로장려세제

□ 자산

○ 부동산, 임대수입, 금융자산, 부채, 자동차, 기타 자산

□ 지출

○ 소비지출

-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 통신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본인이나 배우자 등), 피복비, 헌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중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마.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자산 및 부채

○ 금융자산

-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신,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빌려준 돈

○ 부동산 및 기타 자산

- 거주주택, 거주 외 주택, 주택 이외의 보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농기계, 가축, 선박, 건설 중장비, 귀금속

○ 부채

-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전세금, 임대보증금

□ 지출

○ 주거비(주택관리비, 수도 및 가스 요금 등), 식료품 및 외식비, 주류비, 담배 구입비, 교통비(공공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인터넷, 유선전화, 휴대폰 등), 문화·체육비, 가전제품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악기·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비, 의료·잡화 및 장신구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여행 관련 지출비, 보육·교육비, 보건의료비, 혼인·장례·이사비, 기부금, 가사 도우미 서비스비, 민간보험료, 건강보험료

□ 기타

○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 경조사비 지출 및 소득, 가구내 가구원간 이전지출 및 소득, 타가구 이전 지출, 타가구 이전 소득, 이혼한 전배우자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상속, 증여

○ 복지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자녀양육지원금, 기타 현물 지원

○ 근로장려금 수령 현황

○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수령현황

○ 유가보조금 수령현황

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연구원)

□ 소득 및 저축

○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저축

□ 자산 및 부채

○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 지출

○ 소비지출

- 식비, 담배 및 주류,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통 및 통신, 문화생활비, 숙박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기 및 가사서비스, 교육비, 보육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비소비지출

- 대출 이자상환, 생활보조금,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 벌과금 등

□ 기타

○ 공적연금 관련: 월평균 보험료, 일시금 수급 시점 및 수급액, 연금 수급기간 및 수급액

○ 개인연금 관련: 개인연금 계좌수, 수급주기, 수급액

사.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수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 공적급여), 기타

□ 자산 및 부채

○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 지출

○ 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아. 차상위빈곤실태조사(복지욕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

○ 연간 급여 총액(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기타 정부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환급금

□ 자산

○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주신·채권·적립식펀드, 곗돈),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 부채 및 이자

○ 부채금액(금융기관대출, 서민금융,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곗돈), 금융채무 불이행, 부채용도 비율, 이자

□ 지출

○ 소비지출

-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보육료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가구/가사용품비, 기타지출,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민간보장성보험, 총생활비, 저축

자. 국민생활실태조사(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

○ 연간 급여 총액(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

□ 재산

○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채권·적립식펀드, 곗돈),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 부채 및 이자

○ 부채금액(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곗돈), 금융채무 불이행, 이자

□ 지출

○ 소비지출

-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부록2. OECD의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1. 개요

□ 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22)]

○ Adam Smith(1776)은 린넨셔츠가 없이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린넨셔츠가 없는 것을 빈곤 상태라고 정의

○ 또한 World Bank(1998)에서는 빈곤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정의

□ 빈곤은 주로 소득을 중심으로 측정

○ 소비지출이 생활수준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소득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의미

○ 소득은 소비지출에 비해 개인의 선호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복지의 대리변수로서 가장 많이 활용

○ 또한 소비지출과 자산(wealth)은 개념 규정 및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수반

□ 소득은 시간적인 요소와 인구학적인 요소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음

○ 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기간은 길수록 좋음

- 주나 월단위로 측정할 경우 일시적 소득요소(보너스, 급여지체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계절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직업(건설업 일용근무자 등)의 경우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소득측정이 단기간 측정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남(Goodman, 1997)

○ 소득 측정의 인구학적 단위는 주로 가족이나 가구를 활용

-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실증적 연구에 반해,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 등의

22) http://ko.wikipedia.org/(2016.8.31.)

규범적 연구는 가족 혹은 가구를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가족을 혈연관계에 있으면서 동일한 소비 단위를 향유하고 있는 단위로 규정한다면, 가구는 보다 광범위하게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비 단위를 향유하는 단위로 규정할 수 있음(김태성, 손병돈, 2002)

2. OECD 빈곤데이터 현황

가.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수집 개요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는 회원국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생산하여 국제비교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통계 항목을 정의하고 통계 생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OECD 통계활동의 주요 목표는 기존의 통계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가 필요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여, OECD 통계 사용자 확대와 국제적 통계네트워크에서 OECD의 역할을 증진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회원국 의무 중 하나인 통계 제출을 이행하고 있음

□ OECD 통계는 분산형 모델로 수행되므로 국가 간 일관성이 통계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OECD, 2003)

○ 일관성은 자료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동일한 용어나 자료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일관성에는 자료세트 내부 일관성, 자료세트 간 일관성, 시간 간 일관성, 국가 간 일관성이 있음

○ OECD 통계는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협의체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가깝게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논의하며, 주석(source and method) 처리를 하여 이용자가 통계 이용시 유의할 수 있도록 도움

□ 빈곤 및 불평등 관련 OECD 통계는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통해 매크로데이터를 구득(http://stats.oecd.org/) 가능함

○ IDD를 통해 1974년부터 2014년까지 37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 비회원국 2개국) 통계를 구득 가능함

○ 빈곤 관련 통계는 소득별(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중위소득별(50%, 60%), 성별(남, 여), 연령대별(노인의 경우 66~75세, 76세 이상)로 구성되며, 소득정의(until 2011, since 2012)별 통계를 제공함

- Poverty rate before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 Poverty rate before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60%
-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60%
- All age group: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 Age group 0~17: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 Age group 18~25: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 Age group 26~40: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 Age group 41~50: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 Age group 51~65: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 Age group 66~75: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 Age group 76+: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 현재 OECD는 IDD 수집을 위해 2015년 10월 가이드라인(OECD, 2015.10.)을 제시하여 2015/2016년 통계 수집 활동을 진행 중에 있음

○ 가구 소득은 Canberra(2011)을 기준으로 정의함

- 측정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구(household)이며, 가구에 속한 가구원수로 가중치(0.5승수)를 주어 개인 단위의 통계를 생산함

○ 소득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

○ Top and bottom coding을 통해 소득의 이상치는 제거하도록 권고

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통계 메타데이터

□ OECD 국가의 IDD 제출기관은 대부분 각 국가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음(〈부표 2-1〉 참조)

○ 칠레,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일본은 경제 또는 복지 관련 정부기관에서 통계 작성

□ 유럽 국가들은 소득, 사회적 소외 및 생활수준에 대한 통계를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를 활용하여 작성

○ EU-SILC는 2003년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urvey)의 후속으로, 2004년부터 조사를 시작

-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및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 소득, 빈곤, 사회적 소외, 주택, 노동, 교육, 보건 영역은 매년 조사를 하고, 생활수준과 관련해서는 매년 특정한 주제(2013년의 경우 well-being)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

○ 주택, 소득 및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에 대한 조사는 가구단위로, 소득, 교육, 보건, 노동 영역은 개인단위로 조사

○ 매년 횡단면 자료와 종단면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며, 종단면을 위한 표본의 조사기간은 4년임

○ 유럽통계청(eurostat)은 각 국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참여국가 전체의 소득분배 및 불평등 관련 통계를 작성·발표

□ 소득 측정의 시간적 단위는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이 1년이며, 많은 국가에서 1년 미만의 시간적 단위로 소득을 측정하고 있음(〈부표 2- 2〉 참조)

□ 통계작성 유형은 대체로 횡단면 조사임(〈부표 2-3〉 참조)

○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의 경우 패널조사로 통계를 작성했으며,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의 경우 소득 요소에 따라 횡단면과 패널 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많은 국가(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에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 실시하거나 조사 결과와의 대조를 통해 데이터를 보정하고 있음

□ 개인(individuals)과 가구(households) 모두의 소득을 산출 가능하도록 대부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부표 2-4〉 참조)

○ 덴마크의 경우 개인 단위로만 소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미국의 경우 가구 단위로만 소득을 작성하고 있음

○ 일부 국가(캐나다, 칠레,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에서는 추가적으로 가족(families)의 소득까지 작성하고 있음

□ 가구(household)의 정의는 21개국이 ToR(동일 주택 거주)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부표 2-5〉 참조)

○ 오스트리아, 칠레,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의 경우 생계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 같은 가구로 정의하여 통계 작성

□ 많은 국가에서 조사된 소득 총액을 외부 자료와 비교·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비교의 결과로 소득액을 조정하였음(〈부표 2-6〉 참조)

□ 소득이 음수인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0으로 처리하여 통계를 작성함

○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음수 그대로 처리

○ 터키의 경우 TRPOT를 제외하고는 모두 0으로 처리

□ Top coding과 Bottom coding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지 않음

○ Top coding을 실시한 국가는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으로 6개국임

○ Bottom coding을 실시한 국가는 헝가리, 네덜란드, 포르투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지 않음

〈부표 2-1〉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출처

국가	통계명	작성기관	기준년도 (소득)
호주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Statistics Australia	2013/14
오스트리아	EU-SILC	Statistics Austria	2013
벨기에	EU-SILC	Statistics Belgium	2013
캐나다	Canada income survey	Statistics Canada	2013
칠레	National socio-ecoNomic survey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3
체코	EU-SILC	Statistics Czech	2013
덴마크	The Danish Law Model System	Ministry of Taxation	2013
에스토니아	EU-SILC	Statistics Estonia	2012
핀란드	EU-SILC	Statistics Finland	2014
프랑스	EU-SILC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2013
독일	German socio ecoNomic Panel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13
그리스	EU-SILC	-	2012
헝가리	Household monitor survey	Tárki Social Research Institute	2014
아이슬란드	EU-SILC	Statistics Iceland	2011
아일랜드	EU-SILC	-	2012
이스라엘	Households expenditure survey	Statistics Israel	2014
이탈리아	EU-SILC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1
일본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12
한국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 Farm-Household ecoNomy survey	Statistics Korea	2014
라트비아	-	-	-
룩셈부르크	EU-SILC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 Luxembourg institute of socio-ecoNomic research	2013
멕시코	National survey of incom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2014
네덜란드	Income panel survey	Statistics Netherlands	2013/14
뉴질랜드	Household ecoNomic survey	Statistics New-Zealand	2013.6.30
노르웨이	Income and Wealth Statistics for households	Statistics Norway	2013
폴란드	EU-SILC	Statistics Poland	2012
포르투갈	EU-SILC	Statistics Portugal	2012
슬로바키아	EU-SILC	-	2011
슬로베니아	EU-SILC	Statistics Slovenia	2013
스페인	EU-SILC	National Statistics Institute	2012
스웨덴	Income distribution survey	Statistics Sweden	2013
스위스	EU-SILC	Statistics Swiss	2013
터키	EU-SILC	Statistics Turkey	2013
영국	Family Resources Survey	Statistics UK	2013/14
미국	Current population survey &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US Census Bureau	2014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2〉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주요 메타데이터

국가	작성주기	데이터 수집 기간	표본 가구원 수	표본 가구 수	응답률
호주	2년	연중	34,283	14,162	78.0
오스트리아	1년	2월~7월	13,250	5,977	76.8
벨기에	1년	4월~12월	14,623	6,159	63.1
캐나다	1년	1월~5월	57,717	24,181	73.4
칠레	2년 또는 3년	11월~익년1월	218,491	66,725	83.8
체코	1년	2월~5월	18,210	8,053	84.0
덴마크	1년	1년	1,852,940	878,327	98.6
에스토니아	1년	2월~5월	12,348	5,775	83.7
핀란드	1년	1월~5월	26,433	10,726	64.4
프랑스	1년	10월~12월	114,316	50,080	74.6
독일	1년	-	27,952	16,037	30~50
그리스	1년	3월~6월, 12월	18,030	7,439	84.9
헝가리	2년	-	4,420	2,011	40.0
아이슬란드	1년	2월~5월	-	3,091	76.9
아일랜드	1년	1년	-	4,922	52.0
이스라엘	1년	1년	-	8,465	71.4
이탈리아	1년	5월~12월	-	19,579	79.4
일본	1년	7월	-	26,387	78.5
한국	1년	1년	32,443	12,377	75~80
라트비아	-	-	-	-	-
룩셈부르크	1년	1월~11월	9,994	3,770	50.8
멕시코	2년	8월~11월	21,427	21,786	89.4
네덜란드	1년	1년	277.000	95.000	100.0
뉴질랜드	-	1년	-	3,003	67.3
노르웨이	1년	1년	5,046,000	2,349,000	
폴란드	1년	5월~7월	36,438	12,899	78.9
포르투갈	1년	4월~6월	-	6,491	92.9
슬로바키아	1년	4월	5,291	15,463	97.6
슬로베니아	1년	1월~6월	32,162	12,139	77.4
스페인	1년	3월~6월	-	12,139	76.4
스웨덴	1년	1년	39,000	17,000	약 60.0
스위스	1년	2월~6월	15,651	6,792	68.6
터키	1년	4월~6월		-	92.6
영국	1년	1년	46,000	20,000	60.0
미국	1년	2월~4월	68,000	-	약 80.0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3〉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통계유형

국가	조사 데이터			행정 데이터 활용 여부
	횡단면 데이터	패널 데이터	횡단면 + 패널 데이터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
칠레	√			
체코	√			
덴마크			√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
프랑스	√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
일본	√			
한국	√			
라트비아	-	-	-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
스페인	√			√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	√
영국	√			
미국			√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4〉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통계수집 단위

국가	개인(Individuals)	가구(Households)	가족(Families)	기타
호주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캐나다	√	√	√	
칠레	√	√	√	
체코	√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프랑스	-	-	-	-
독일	√	√		
그리스	√	√		
헝가리	√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일본		√		
한국		√		
라트비아	-	-	-	-
룩셈부르크	√	√		
멕시코	√	√		
네덜란드	√	√	√	Fiscal units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	√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		
스페인	√	√		
스웨덴	√	√	√	
스위스	√	√		
터키	√	√		
영국	√	√	√	
미국		√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5〉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가구(household)의 정의

국가	동일 주택에 거주[1)]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2)]	동일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3)]	기타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칠레			√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일본			√	
한국	√			
라트비아	-	-	-	-
룩셈부르크			√	
멕시코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을 포함한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생활단위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스웨덴	√	√	√	
스위스	√			
터키			√	
영국	√			
미국	√			

주1: As specified by the ToR: People usually living in the same dwellings
주2: People having a common budget for essential items
주3: People living in the same dwelling and having a common budget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6〉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소득 조정 여부

국가	Has the coherence of aggregate amounts with external sources been assessed?	Have income data been adjusted to establish coherence?
호주	Yes	No
오스트리아	Yes	No
벨기에	Yes	Yes
캐나다	Yes	No
칠레	No	No
체코	Yes	Yes
덴마크	No	No
에스토니아	Yes	No
핀란드	Yes	Yes
프랑스	Yes	Yes
독일	Yes	No
그리스	Yes	No
헝가리	No	No
아이슬란드	No	No
아일랜드	-	-
이스라엘	No	No
이탈리아	Yes	Yes
일본	No	No
한국	No	No
룩셈부르크	No	No
멕시코	No	No
네덜란드	No	No
뉴질랜드	No	No
노르웨이	Yes	No
폴란드	Yes	No
포르투갈	Yes	No
슬로바키아	Yes	Yes
슬로베니아	Yes	Yes
스페인	Yes	No
스웨덴	Yes	No
스위스	Yes	No
터키	Yes	No
영국	Yes	No
미국	Yes	No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7〉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음수 소득 처리 현황

국가	As in the ToR: set to zero	Retained	Other
호주	Yes	No	
오스트리아	No	Yes	
벨기에	-	-	
캐나다	Yes	No	
칠레	-	-	
체코	Yes	No	
덴마크	Yes	No	
에스토니아	-	-	
핀란드	Yes	No	
프랑스	Yes	No	
독일	Yes	No	
그리스	-	-	
헝가리	Yes	No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Yes	No	
이탈리아	-	-	
일본	Yes	No	
한국	Yes	No	
룩셈부르크	No	Yes	
멕시코	Yes (마이크로데이터에 결측치나 음수 없음)	No	
네덜란드	Yes	No	
뉴질랜드	Yes	No	
노르웨이	Yes	No	
폴란드	-	-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Yes	No	
스페인	-	-	
스웨덴	Yes	No	
스위스	Yes	No	
터키	Yes (EH, ES, EO, KI, SEI, TRRSS, TRRER, TRROT)	Yes (TRPOT)	
영국	Yes	No	
미국	Yes	No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8〉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Top and bottom coding 여부

국가	Top coding 여부	Bottom coding 여부
호주	No	No
오스트리아	No	No
벨기에	-	-
캐나다	No	No
칠레	No	No
체코	No	No
덴마크	No	No
에스토니아	-	-
핀란드	No	No
프랑스	No	No
독일	No	No
그리스	-	-
헝가리	No	Yes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No	No
이탈리아	-	-
일본	No	Yes (standard error of Gini coefficient 계산시만 활용)
한국	Yes	No
룩셈부르크	No	No
멕시코	No	No
네덜란드	Yes	Yes
뉴질랜드	No	No
노르웨이	No	No
폴란드	-	-
포르투갈	Yes	Yes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Yes	No
스페인	-	-
스웨덴	No	No
스위스	No	No
터키	Yes	No
영국	No	No
미국	Yes	No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다.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소득 구성요소

□ OECD IDD의 기준이 되는 Canberra(2011)에 의해 정의된 소득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E): employee income, including wages and salaries, cash bonuses and gratuities, commissions and tips, directors' fees, profit sharing bonuses and other forms of profit-related pay, shares offered as part of employee remuneration, free and subsidised goods and services from an employer, severance and termination pay. 1 Sick pay paid by social security should also be included.

- 가구주 근로소득(EH): the wage and salary income of the household head, excluding employers'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but including sick pay paid by social security.
- 배우자 근로소득(ES): the wage and salary income of the household head spouse or partner, excluding employers'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but including sick pay paid by social security.
-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EO): the wage and salary income from other household members, excluding employers'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but including sick pay paid by social security.

○ 재산소득(KI): capital and property income, including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net of expenses), income from Non-financial assets (net of expenses) and royalties. Regular receipts from voluntary individual private pension plans and life insurance schem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is income component.

○ 사업 및 부업소득(SEI): income from self-employment, including profits and losses from unincorporated enterprises, as well as goods produced for own consumption (net of the costs of inputs).

- Profits and losses from unincorporated enterprises

- income from goods produced for own consumption

○ 이전소득(TRR): current transfers received, including transfers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accident and disability benefits, old-age cash benefits, unemployment benefits, maternity allowances, child and/or family allowances, all income-tested and means-tested benefits that are part of social assistance, including quasi-cash transfers given for a specific purpose (e.g food stamps)), transfers from employment related social insurance, as well as cash transfers from both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households

- 사회보장급여(TRRSS): current transfers received from public social security.
- 고용 관련 사회보험금(TRRER): current transfers received from employment-related social insurance schemes (e.g. occupational pensions), where such schemes mee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 participation is obligatory; ii) the scheme is collective; and ii) the employer makes a contribution on behalf of an employee.
- 사적이전소득(TRROT): current transfers received from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private households, e.g. alimonies.

○ 소득세·사회보장부담금·비영리단체 및 가구 간 이전 지출(TRP): current transfers paid, including direct taxes on income and wealth,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households, contributions to employment-related social insurance, current transfers paid to both other households and Non-profit institutions.

- 소득세(TA): direct taxes on income and wealth paid by households (net of refunds), as well as contributions paid by households to public social security schemes.

- 사회보장부담금(TRPER): contributions paid by households to employment-related social insurance schemes (as defined above).
- 비영리단체 및 가구 간 이전지출(TRPOT): current transfers paid by households to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households, e.g. alimonies.

〔부도 2-1〕 OECD 소득 구분

구분		가처분소득 (disposable)	시장소득 (market)	본원소득 (primary)	총소득 (gross)
근로소득 (E)					
재산소득 (KI)					
사업 및 부업소득 (SEI)					
이전소득 (TRR)	사회보장급여 (TRRSS)	소득세(TA) + 사회보장부담금 (TRPER)			사회보장부담금 (TRPER)
	사회보험금(고용 관련) (TRRER)				
	사적이전소득 (TRROT)	지출(비영리단체 및 가구 간 이전) (TRPOT)			

자료: OECD(2015.10.).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terms of reference OECD project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s.의 수식을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

〈부표 2-9〉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근로소득 구성 현황

국가	Wage and salaries	Related bonuses and commissions	Goods provided by employers	Severance and termination pay	Sick paid day paid by the government	Other
호주	Yes	Yes	Yes	Yes	No	
오스트리아	Yes	Yes	Yes	Yes	Yes	Yes
벨기에	Yes	Yes	Yes	Yes	Yes	Yes
캐나다	Yes	Yes	No	Yes	Yes	
칠레	Yes	Yes	Yes	Yes	Yes	Yes
체코	Yes	Yes	Yes	Yes	Yes	
덴마크	Yes	Yes	Yes	Yes	Yes	
에스토니아	Yes	Yes	Yes	Yes	Yes	Yes
핀란드	Yes	Yes	Yes	Yes	No	
프랑스	Yes	Yes	Yes	Yes	Yes	
독일	Yes	Yes	No	Yes	No	Yes
그리스	Yes	Yes	Yes	Yes	Yes	Yes
헝가리	Yes	Yes	Yes	Yes	Yes	
아이슬란드	Yes	Yes	Yes	Yes	Yes	Yes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Yes	Yes	Yes	Yes	No	
이탈리아	Yes	Yes	Yes	Yes	No	Yes
일본	Yes	Yes	Yes	No	No	
한국	Yes	Yes	Yes	No	Yes	
라트비아	-	-	-	-	-	-
룩셈부르크	Yes	Yes	Yes	Yes	Yes	Yes
멕시코	Yes	Yes	Yes	Yes	No	
네덜란드	Yes	Yes	Yes	Yes	Yes	
뉴질랜드	Yes	Yes	No	Yes	Yes	
노르웨이	Yes	Yes	Yes	Yes	Yes	
폴란드	Yes	Yes	Yes	Yes	No	Yes
포르투갈	Yes	Yes	Yes	Yes	Yes	Yes
슬로바키아	Yes	Yes	Yes	Yes	Yes	Yes
슬로베니아	Yes	Yes	Yes	Yes	Yes	Yes
스페인	Yes	Yes	Yes	Yes	Yes	Yes
스웨덴	Yes	Yes	No	Yes	Yes	
스위스	Yes	Yes	Yes	No	Yes	
터키	Yes	Yes	Yes	Yes	Yes	Yes
영국	Yes	Yes	No	No	No	
미국	Yes	Yes	No	Yes	No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10〉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사업 및 부업소득 구성 현황

국가	Profit/looses from unincorporated enterprise	Net values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for final consumption	Other
호주	Yes	No	
오스트리아	Yes	No	
벨기에	Yes	Yes	
캐나다	Yes	No	
칠레	Yes	Yes	
체코	Yes	Yes	
덴마크	Yes	No	
에스토니아	Yes	Yes	
핀란드	Yes	No	
프랑스	Yes	No	
독일	Yes	No	
그리스	Yes	Yes	
헝가리	Yes	Yes	
아이슬란드	Yes	No	
아일랜드	-	-	
이스라엘	Yes	No	
이탈리아	Yes	Yes	
일본	Yes	Yes	
한국	Yes	Yes	
라트비아	-	-	
룩셈부르크	Yes	Yes	
멕시코	Yes	Yes	
네덜란드	Yes	No	
뉴질랜드	Yes	No	
노르웨이	Yes	Yes	
폴란드	Yes	Yes	
포르투갈	Yes	Yes	
슬로바키아	Yes	Yes	
슬로베니아	Yes	Yes	
스페인	Yes	Yes	
스웨덴	Yes	No	
스위스	Yes	No	
터키	Yes	Yes	
영국	Yes	No	
미국	Yes	No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11〉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재산소득 구성 현황

국가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net of expenses	Income from Non-financial assets, net of expenses	Royalties	Pensions from individual private plans	Other
호주	Yes	Yes	Yes	No	
오스트리아	Yes	Yes	Yes	Yes	
벨기에	Yes	Yes	Yes	Yes	
캐나다	Yes	Yes	Yes	Yes	
칠레	Yes	Yes	No	Yes	
체코	Yes	Yes	Yes	Yes	
덴마크	Yes	No	Yes	Yes	
에스토니아	Yes	Yes	Yes	Yes	
핀란드	Yes	Yes	Yes	Yes	
프랑스	Yes	Yes	No	No	
독일	Yes	Yes	No	Yes	
그리스	Yes	Yes	Yes	Yes	
헝가리	Yes	Yes	No	No	
아이슬란드	Yes	Yes	Yes	Yes	
아일랜드	-	-	-	-	-
이스라엘	Yes	Yes	Yes	No	
이탈리아	Yes	Yes	Yes	Yes	
일본	Yes	Yes	Yes	Yes	Pensions from occupational private plans are included
한국	Yes	Yes	Yes	Yes	
라트비아	-	-	-	-	-
룩셈부르크	Yes	Yes	Yes	Yes	
멕시코	Yes	Yes	Yes	Yes	
네덜란드	Yes	Yes	Yes	Yes	
뉴질랜드	Yes	Yes	Yes	Yes	Regular receipts from life insurance, income protection insurance, annuities and other miscelleaneous sources of income
노르웨이	Yes	Yes	Yes	Yes	
폴란드	Yes	Yes	Yes	Yes	
포르투갈	Yes	Yes	Yes	Yes	
슬로바키아	Yes	Yes	Yes	Yes	
슬로베니아	Yes	Yes	Yes	Yes	
스페인	Yes	Yes	Yes	Yes	
스웨덴	Yes	Yes	Yes	Yes	
스위스	Yes	Yes	Yes	Yes	
터키	Yes	Yes	No	No	
영국	Yes	No	Yes	Yes	
미국	Yes	Yes	Yes	Yes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12〉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사회보장급여 소득 구성 현황

국가	Accident and disability benefits	Old-age cash benefits	Unemployment benefits	Maternity allowance	Child or family allowance	Housing benefits	Other Income benefits	Other
호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오스트리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벨기에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캐나다	Yes	Yes	Yes	Yes	Yes	No	Yes	
칠레	Yes	Yes	Yes	Yes	Yes	No	Yes	
체코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덴마크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에스토니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핀란드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프랑스	Yes	Yes	Yes	No	Yes	Yes	Yes	
독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그리스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헝가리	Yes	Yes	Yes	Yes	Yes		Yes	
아이슬란드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이탈리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일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한국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라트비아	-	-	-	-	-	-	-	-
룩셈부르크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멕시코	Yes	Yes	Yes	No	No	No	No	
네덜란드	No	Yes	No	No	Yes	Yes	Yes	Yes
뉴질랜드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노르웨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폴란드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포르투갈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슬로바키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슬로베니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스페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스웨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스위스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터키	Yes	Yes	Yes	Yes	Yes	Yes		-[1)]
영국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미국	Yes	Yes	Yes	No	No	No	Yes	

주: Other social transfers to poors (Family/children related allowances, housing allowances and social exclusion Not elsewhere classified – food, clothes, medicine and fuel-). In addition, pensions from individual private plans are included in the TRRSS and survivor benefits are added to TRRSS.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13〉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이전소득(사회보장급여 제외) 구성 현황

국가	Current transfers received from compulsory employment-related social insurance (TRRER)		Current transfers received from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private households (TRROT)	
	Pensions from occupational private plans	Other	Regular transfers received from other households	Other private transfers
호주	Yes	No	Yes	No
오스트리아	No	No	Yes	No
벨기에	No	No	Yes	No
캐나다	Yes	No	Yes	No
칠레	-	-	Yes	No
체코	No	No	Yes	No
덴마크	Yes	-	Yes	No
에스토니아	No	No	Yes	No
핀란드	-	Yes	Yes	Yes
프랑스	No	-	-	-
독일	Yes	-	Yes	No
그리스	No	No	Yes	No
헝가리	No	-	Yes	No
아이슬란드	No	No	Yes	No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Yes	No	Yes	No
이탈리아	No	No	Yes	No
일본	No	No	Yes	No
한국	Yes	No	Yes	No
룩셈부르크	Yes	No	Yes	No
멕시코	No	Yes	Yes	No
네덜란드	No	Yes	Yes	No
뉴질랜드	No	No	Yes	No
노르웨이	Yes	No	Yes	No
폴란드	No	No	Yes	No
포르투갈	No	No	Yes	No
슬로바키아	No	No	Yes	No
슬로베니아	No	No	Yes	No
스페인	No	No	Yes	No
스웨덴	Yes	No	Yes	No
스위스	Yes	No	Yes	No
터키	Yes	Lump-sum after retirement	Yes	No
영국	Yes	No	Yes	No
미국	Yes	No	Yes	No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14〉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소득세 구성 현황

국가	Income taxes	Taxes on wealth	Employee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Other
호주	Yes	No	No	No
오스트리아	Yes	No	Yes	No
벨기에	Yes	No	Yes	No
캐나다	Yes	No	Yes	No
칠레	Yes	Yes	No	No
체코	Yes	Yes	Yes	No
덴마크	Yes	No	No	No
에스토니아	Yes	Yes	Yes	No
핀란드	Yes	No	Yes	No
프랑스	Yes	No	Yes	No
독일	Yes	No	Yes	No
그리스	Yes	Yes	Yes	No
헝가리	No	No	No	No
아이슬란드	Yes	Yes	Yes	No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Yes	Yes	Yes	No
이탈리아	Yes	Yes	Yes	No
일본	Yes	Yes	Yes	No
한국	Yes	Yes	Yes	No
라트비아	-	-	-	-
룩셈부르크	Yes	No	Yes	No
멕시코	No	No	No	No
네덜란드	Yes	No	No	Yes
뉴질랜드	Yes	No	Yes	No
노르웨이	Yes	Yes	Yes	No
폴란드	Yes	Yes	Yes	No
포르투갈	Yes	Yes	Yes	No
슬로바키아	Yes	Yes	Yes	No
슬로베니아	Yes	Yes	Yes	No
스페인	Yes	Yes	Yes	No
스웨덴	Yes	No	No	No
스위스	Yes	Yes	Yes	Yes
터키	No	No	No	Yes
영국	Yes	Yes	Yes	No
미국	Yes	No	Yes	Yes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표 2-15〉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국가별 사회보장부담금 및 가구 간 이전지출 구성현황

국가	Contributions paid by households to compulsory employment-related schemes (TRPER)		Current transfers paid by households to Non-profit institutions and other households (TRPOT)	
	Contributions to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Other	Regular transfers paid to other households	Other
호주	No	No	Yes	No
오스트리아	No	No	Yes	No
벨기에	No	No	Yes	No
캐나다	Yes	No	Yes	No
칠레	No	No	No	No
체코	No	No	Yes	No
덴마크	Yes	No	Yes	No
에스토니아	No	No	Yes	No
핀란드	Yes	Yes	Yes	No
프랑스	No	No	Yes	No
독일	No	No	Yes	No
그리스	No	No	Yes	No
헝가리	No	No	Yes	No
아이슬란드	No	No	Yes	No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Yes	No	Yes	No
이탈리아	No	No	Yes	No
일본	No	No	No	No
한국	No	No	Yes	No
라트비아	-	-	-	-
룩셈부르크	Yes	No	Yes	No
멕시코	No	No	Yes	No
네덜란드	Yes	Yes	Yes	No
뉴질랜드	No	No	No	No
노르웨이	Yes	No	Yes	No
폴란드	No	No	Yes	No
포르투갈	No	No	Yes	No
슬로바키아	No	No	Yes	No
슬로베니아	No	No	Yes	No
스페인	No	No	Yes	No
스웨덴	No	No	Yes	No
스위스	Yes	No	Yes	No
터키	No	No	Yes	No
영국	No	No	Yes	No
미국	No	No	Yes	No

자료: OECD, IDD 2016: Country specific detailed metadata information에서 재정리

부록3.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LWS(Luxembourg Wealth Study) Database

□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IS)는 사회·경제적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만드는 제도들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해 조직된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 1983년 설립되어 각 국 통계청, 연구기관 및 OECD 회원국의 참여 및 연회비로 운영

□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소득, 지출 및 자산 관련 마이크로데이터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공 및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이를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관련 지표들을 작성하여 제공하며,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부도 3-1〕 LIS 소득 구분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가처분소득
(disposable)</th><th>시장소득
(market)</th><th>요소소득
(factor)</th><th>총소득
(gross)</th></tr>
<tr><td colspan="2">근로소득
(cash wage and salary income)</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재산소득
(cash property income)</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사업 및 부업소득
(self-employment income)</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개인 및 직업 연금
(private occupational and other pensions + public sector occupational pensions)</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이전소득
(social transfers)</td><td>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trance transfers)</td><td rowspan="2">세금
(mandatory payroll taxes + income taxes)</td><td></td><td></td><td></td></tr>
<tr><td>정부보조금
(social assistance transfers)</td><td></td><td></td><td></td></tr>
<tr><td>사적이전소득
(private transfers)</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기타 소득
(other cash income)</td></tr>
</table>

자료: LIS 홈페이지 Summary income variables(2016.8.31.)의 개념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부표 3-1〉 LIS 데이터베이스 소득 기준년도

국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호주	1981	1985	1989	1995	2001	2003	2008	2010	2014
오스트리아		1987		1994 1995 1997	2000	2004	2007	2010	2013
벨기에		1985	1988 1992	1995 1997	2000				
브라질							2006	2009 2011	2013
캐나다	1981	1987	1991	1994 1997	1998 2000	2004	2007	2010	
칠레							2006	2011	2013
중국					2002		2007		
콜롬비아						2004	2007	2010	2013
체코			1992	1996	2002	2004	2007	2010	
덴마크		1987	1992	1995	2000	2004	2007	2010	2013
도미니카공화국							2007		
이집트									2012
에스토니아					2000	2004	2007	2010	2013
핀란드		1987	1991	1995	2000	2004	2007	2010	2013
프랑스	1978	1984	1989	1994	2000	2005		2010	
독일	1978 1981	1983 1984	1989	1994	2000	2004	2007	2010	2013
그루지아								2010	2013
그리스				1995	2000	2004	2007	2010	2013
과테말라						2006		2011	2014
헝가리			1991	1994	1999	2005	2007	2009	2012
아이슬란드						2004	2007	2010	
인도						2004		2011	
아일랜드		1987		1994 1995 1996	2000	2004	2007	2010	
이스라엘	1979	1986	1992	1997	2001	2005	2007	2010	2012
이탈리아		1986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0	2004	2008	2010	2014
일본							2008		
룩셈부르크		1985	1991	1994 1997	2000	2004	2007	2010	2013
멕시코		1984	1989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8	2010	2012

국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네덜란드		1983 1987	1990	1993	1999	2004	2007	2010	2013
노르웨이	1979	1986	1991	1995	2000	2004	2007	2010	2013
파나마							2007	2010	2013
파라과이								2010	2013
페루						2004	2007	2010	2013
폴란드		1986	1992	1995	1999	2004	2007	2010	2013
루마니아				1995 1997					
러시아					2000	2004	2007	2010	2013
세르비아							2006	2010	2013
슬로바키아			1992	1996		2004	2007	2010	2013
슬로베니아				1997	1999	2004	2007	2010	2012
남아프리카공화국							2008	2010	2012
한국						2006	2008	2010	2012
스페인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7	2010	2013
스웨덴	1981	1987	1992	1995	2000	2005			
스위스	1982		1992		2000 2002	2004	2007	2010	2013
대만	1981	1986	1991	1995 1997	2000	2005	2007	2010	2013
영국	1979	1986	1991	1994 1995	1999	2004	2007	2010	2013
미국	1979	1986	1991	1994 1997	2000	2004	2007	2010	2013
우루과이						2004	2007	2010	2013

자료: LIS홈페이지(http://lisdatacenter.org/)에서 재정리 (2016.8.31.)

□ LWS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자산 및 관련 데이터의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서비스 시작

○ 자산 관련 변수는 물론이고, LIS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소득변수와 소득변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소득 변수를 포함

- 소득변수들의 정의방법에 있어서도 LIS의 주요 소득변수 정의방식을 준용하여 LWS 데이터베이스와 LIS 데이터베이스 간의 비교 연구가 가능

〈부표 3-2〉 LWS 가구 재정상태(Household Balance Sheet) 구성 현황

요소명		가구단위	개인단위
자산 (Assets)	total assets	√	
	non-financial assets	√	
	real estate	√	
	principal residence	√	
	other real estate	√	
	non-housing assets	√	
	business equity	√	
	consumer goods	√	
	vehicles	√	
	other durables and valuables	√	
	other non-financial assets	√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	
	deposit accounts and cash	√	
	financial investments	√	
	bonds and other debt securities	√	
	stocks and other equity	√	
	investment funds and alternative investments	√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	√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	√
	life insurance accounts	√	√
	individual voluntary pension accounts	√	√
	occupational pensions	√	√
	occupational pensions (DB schemes)	√	√
	occupational pensions (DC schemes)	√	√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	√
	social security (DB schemes)	√	√
	social security (DC schemes)	√	√
부채 (Liabilities)	total liabilities	√	
	real estate liabilities	√	
	principal residence loans	√	
	other real estate loans	√	
	non-housing liabilities	√	
	investment loans	√	
	consumer goods loans	√	
	vehicle loans	√	
	other loans for goods and consumption	√	
	education loans	√	
	other non-housing liabilities	√	

자료: LIS홈페이지(http://lisdatacenter.org/)에서 재정리 (2016.11.15.)

〈부표 3-3〉 LWS 유량 변수(Flow Variables) 구성 현황

요소명		가구단위	개인단위
경상소득 (Current Income)	total income	√	√
	labour income	√	√
	paid employment income	√	√
	self-employment income	√	√
	farm self-employment income	√	√
	non-farm self-employment income	√	√
	capital income	√	√
	interest and dividends	√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	√
	rental income	√	
	royalties	√	√
	transfer income	√	√
	social security transfers	√	√
	work-related insurance transfers	√	√
	universal benefits	√	√
	assistance benefits	√	√
	private transfers	√	√
	merit-based education transfers	√	√
	transfers from non-profit institutions	√	
	inter-household transfers	√	
초과 소득 (Windfall Income)	windfall labour income	√	√
	windfall capital income	√	√
	capital gains	√	√
	insurance compensations	√	√
	windfall transfer income	√	√
	inheritances	√	√
	lottery winnings	√	√
	lump-sum retirement compensations	√	√
비소비지출 (Non-Consumption Expenditure)	incom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
	income taxes	√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
	other taxes	√	
	property taxes	√	
	other direct taxes	√	
	voluntary contributions	√	√
	inter-household transfers	√	
	donations to charity	√	
	interest paid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paid	√	
소비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	total consumption	√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	
	alcohol and tobacco	√	
	clothing and footwear	√	
	housing and utilities	√	
	actual rent	√	

요소명		가구단위	개인단위
	imputed rent	√	
	housing equipment	√	
	health	√	
	transport	√	
	communication	√	
	recreation and culture	√	
	education	√	
	restaurants and hotels	√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	
자산/부채 거래 (Assets/ Liabilities Transactions)	proceeds from sales	√	√
	sales of real estate	√	√
	sales of financial products	√	√
	sales of other non-consumption durables	√	√
	inflows from loans	√	√
	mortgage	√	√
	other loans	√	√
	repayments from borrowings	√	√
	purchases	√	√
	purchase of real estate	√	√
	purchase of financial products	√	√
	purchase of other non-consumption durables	√	√
	outflows from loans	√	√
	mortgage repayments	√	√
	other loans repayments	√	√
	borrowings	√	√

자료: LIS홈페이지(http://lisdatacenter.org/)에서 재정리 (2016.11.15.)

부록4. 노인의 소득·자산 항목별 상대적 영향도 및 소득·자산 분포 비교 분석

1. 분석목적 및 방법

□ 분석목적

○ 전체 가구, 세대별, 노인가구 유형별 하위 집단의 소득·자산 분포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특수성을 살펴봄

○ 최신 통계방법론 활용을 통해 소득자산항목별 상대적 영향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분석내용

○ 소득분포와 자산분포를 고려한 집단 비교 분석

- 분포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 Violin plot(Density plot)을 활용하여 전체 가구, 세대별, 노인가구 유형별 하위집단의 소득·자산항목별 분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특수성을 파악함

○ 전체 가구, 세대별, 노인가구 유형별 하위 집단별 소득 구성항목과 자산 구성항목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함

- 중요도는 통계모델에서 특정 변수가 반응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관성의 크기를 나타냄
  - 설명변수(예, 소득 구성항목, 자산 구성항목)로부터 반응변수(예, 총 소득, 총 자산)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통계학의 주요 이슈임

□ 분석데이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 분석방법은 두 가지로, Violin plot(Density plot)과 Boosting 방법의 상대적 영향도(Relative Influence)를 분석하였음

□ Violin plot(Density plot)을 활용하여 소득·자산항목별 분포를 시각화함

○ Violin plot은 density plot 과 boxplot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항목값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와 극단값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Density Plot : Probability density function(확률밀도함수)란 연속확률 변수가 주어진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확률밀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이며, 확률밀도함수는 0보다 같거나 크며, 전체 면적이 1임. 확률밀도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Density Plot 이며, 전체 면적을 1로 하여 항목값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Boxplot을 이용하여 중위값의 위치로 분포의 중심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소·최댓값으로 분포 상의 꼬리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IQR(Interquartile Range, Q3-Q1으로 계산) 중심으로 Upper fence와 Lower fence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점검할 수 있음
- 최대(Maximum), 최소(Minimum), 평균(Mean, +표시)
- 4분위로 구분하여, 1분위(Q1, 하위 25%, Lower quartile), 2분위(Q2, 하위 50%, 중위, Median), 3분위(Q3, 하위 75%, Upper quartile) 경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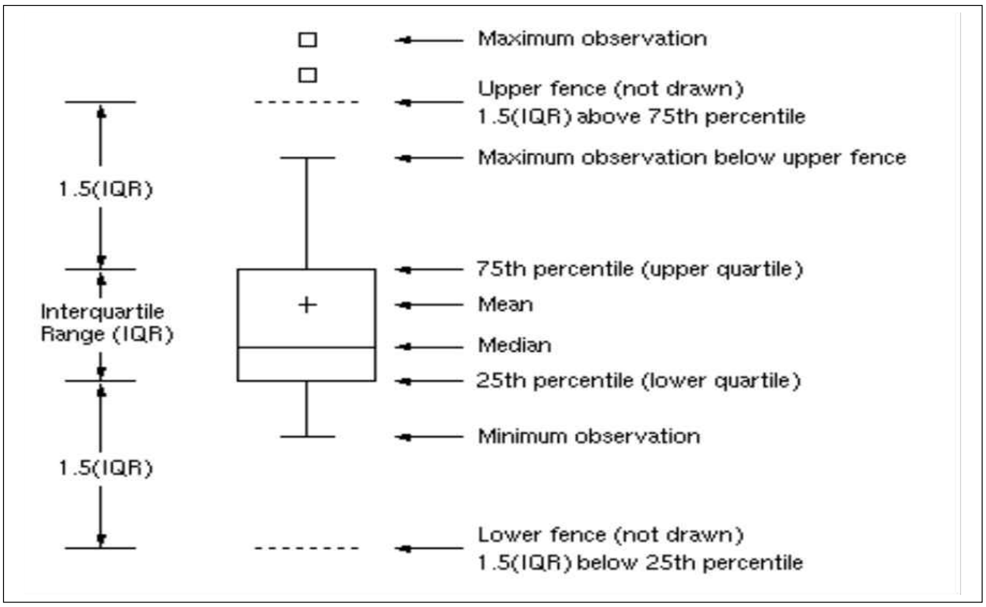

□ 기계학습이론(machine-learning)의 분류 기법 중 하나인 Boosting 방법으로 변수의 중요도(Importance)를 계산하여 변수별 상대적 영향도(Relative Influence)를 분석함

○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 보유 특수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최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소득·자산을 구성한 소득·자산항목별 반영 비중을 분석함

- 최신 통계방법론 벤치마킹 및 활용을 통해 소득·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자산항목별 비중 및 중요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특성 파악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최신통계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 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이며, 방대한 정보로부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분야가 발전하였음

○ 데이터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신용평가, 품질개선, 부정행위의 적발, 이미지분석, 위험관리망 관리(Network Management), 수요 및 판매 예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됨

□ 설명변수(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로부터 반응변수(예를 들어, 경상소득)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통계학의 주요 이슈임

○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모형을 적합하고 새로운 관측값에 대해 경상소득 값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통계 분야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론을 접목시킴으로 해서 보다 향상된 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반응변수의 형태에 따라 크게 기계학습 분야는 회귀(Regression) 문제와 분류(Classification)로 나눌 수 있는데, 회귀문제에서는 반응변수가 경상소득과 같이 실수의 형태이고 분류의 문제에서는 반응변수가 노인 빈곤 여부와 같이 범주의 형태임

□ 기계학습이론의 분류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방법으로 변수의 중요도(Importance)를 계산하여 각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 랜덤 포레스트는 Breiman(2001)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하나의 가장 좋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많은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여 이들을 합하는 앙상블(ensemble) 기법임

○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 정확도가 우수하고 이상치에 둔감하며,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랜덤 포레스트의 중요도(Importance)를 계산하여 각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영향도는 통계모델에서 특정 변수가 반응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관성 크기를 나타냄

- [부도 4-1]과 같이 두 변수 A, B 의 값들로 이루어진 4개의 단노드(terminal node)가 있을 때, 단노드의 과반수(majority)에 의해 0그룹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지를 판정하게 됨
- 변수 A에 의해 샘플의 상당수가 0그룹과 1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변수 A 가 두 그룹 판별하는 데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만약 변수 A의 값을 무작위로 바꿔서 각 샘플에 할당하게 되면 변수 A는 두 그룹을 판별하는 데 연관성이 없게 됨
- 변수 A값이 무작위로 할당된 샘플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했을 때 단노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의 비율과 원래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했을 때 단노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 차이가 변수 A의 중요도임
- 변수 A가 0그룹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 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면 무작위로 할당된 경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과 원래 데이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차이가 크게 날 것임. 반면에, 변수 A 가 0그룹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 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면 무작위로 할당된 경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과 원래 데이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에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랜덤 포레스트의 중요도 그림(Importance plot)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부도 4-1] 랜덤 포레스트에서 의사결정나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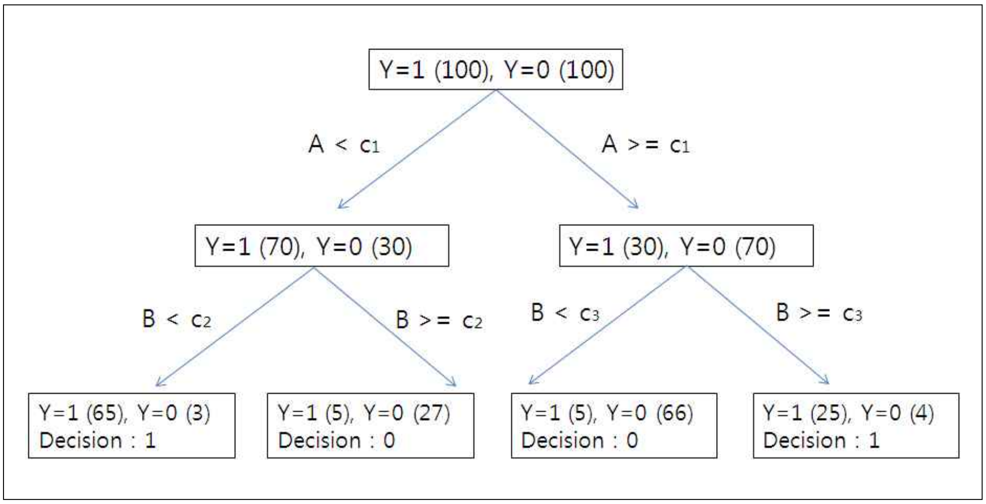

□ 또 다른 방법론으로, 부스팅(Boosting) 알고리즘은 Freund와 Schapire(1997)에 의해 처음으로 분류(Classification)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며, 회귀문제와 분류문제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해석도 용이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음

○ 부스팅 알고리즘에서 basis function 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Stump임

- Stump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로 root node에서 한번만 분기하는 즉 단노드(teminal node)가 두 개인 것을 말함
- 의사결정나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T(x;\Theta)=\sum_{j=1}^{J}\gamma_j I(x \in R_j)$$

• 여기서 R_j은 단노드(teminal node)에서의 서로 배반인 설명변수 영역, $\Theta=\{R_j,\gamma_j\}$ 은 추정해야할 모수를 나타냄

□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부스팅 알고리즘은 위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부스팅 트리이며, 알고리즘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Initialize $f_0(x) = \underset{\gamma}{\operatorname{argmin}} \sum_{i=1}^{N} L(y_i, \gamma)$

2. For m = 1 to M:

   (a) For $i = 1, 2, \cdots, N$ Compute

   $$\gamma_{im} = -\left[\frac{\partial L(y_i, f(x_i))}{\partial f(x_i)}\right]_{f=f_{m-1}}$$

   (b) Fit a regression tree to the targets γ_{im} giving terminal resions

   $R_{im}, i = 1,2,\cdots,J_m$

   (c) $\gamma_{jm} = \underset{\gamma}{\operatorname{argmin}} \sum_{x_i \in R_{jm}} L(y_i, f_{m-1}(x_i) + \gamma)$

   (d) Update $f_m(x) = f_{m-1}(x) + \sum_{j=1}^{J_m} \gamma_{jm} I(x \in R_{jm})$

3. Output $\hat{f}(x) = f_M(x)$

   - 모형을 구축한 후에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되며, 구축된 여러 모형들 중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한 후에 선택된 모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

□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소득·자산을 구성한 소득·자산항목별 반영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여 Relative Influence Plot으로 제시하였음

○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준에 따라서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 노인가구 유형
- 가구주 연령

2. Violin plot(Density plot)을 이용한 소득자산항목별 분포 비교

□ 노인가구 여부별 근로사업소득, 요소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부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나, 부동산, 총자산, 순자산 분포는 거의 유사함

□ 노인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와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의 소득·자산항목별 분포가 거의 유사하고, 노인단독가구는 항목값이 0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부부, 자녀동거노인가구주 유형 순으로 분포가 높은 값으로 shift 하는 경향을 보임

□ 노인가구주 여부별 분포는 노인가구 여부별 각 소득·자산항목별 분포와 유사하나 항목값은 노인가구가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다소 높음

□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소득항목은 40대에서, 자산항목은 5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음

○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과 자산항목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인가구주 가구에 비해 소득은 다소 높지만, 자산은 현저히 낮음

□ 소득·자산항목별 분포 비교 ☞ Violin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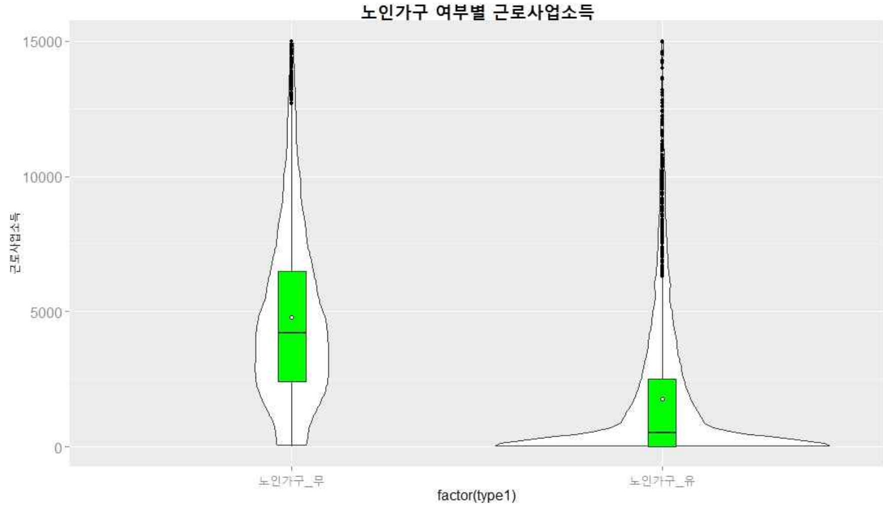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0	2500	4320	5174	6800	105000
노인가구_유	0	0	500	1892	2600	6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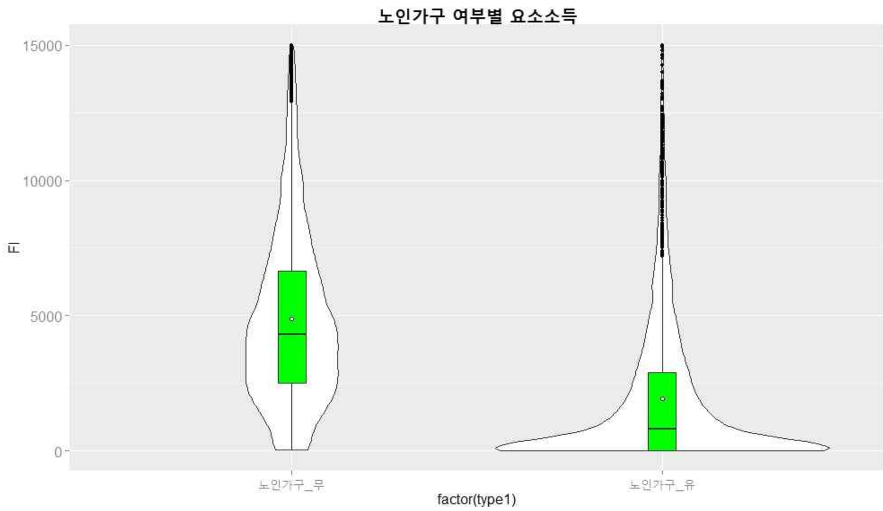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0	2520	4440	5344	7000	105000
노인가구_유	0	0	808	2145	2992	7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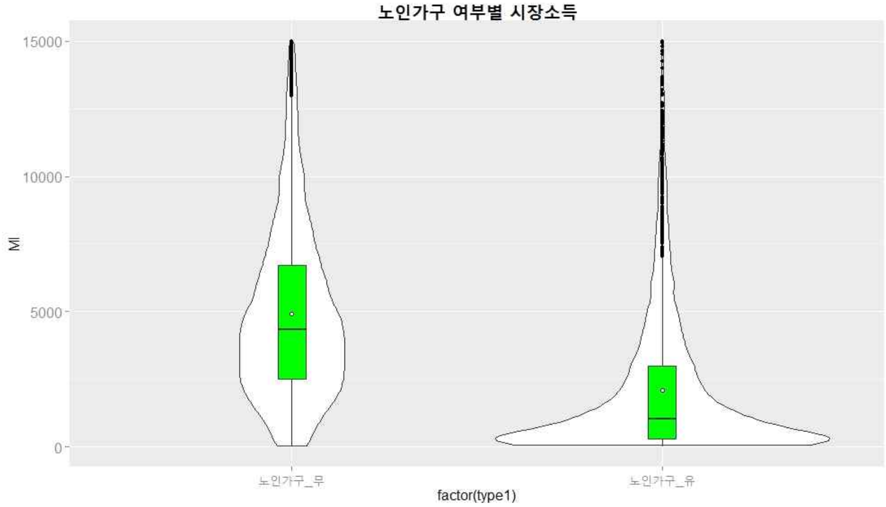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0	2600	4480	5382	7000	105000
노인가구_유	0	300	1056	2299	3000	7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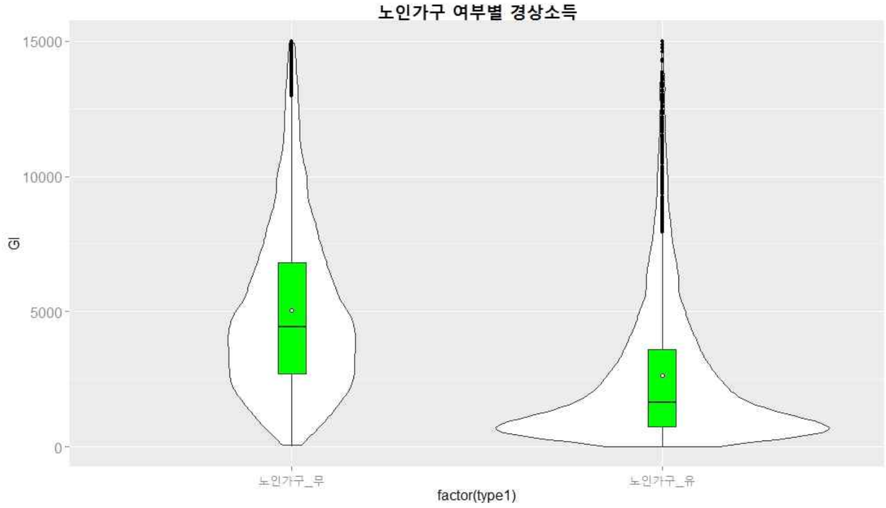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0	2750	4521	5506	7000	105000
노인가구_유	0	741.5	1660	2859	3710	7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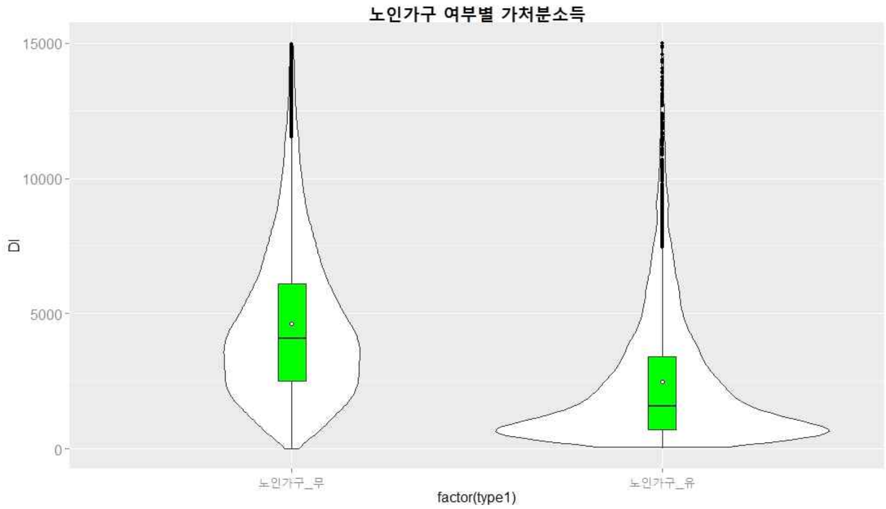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841	2523	4117	4912	6270	99870
노인가구_유	-411	717	1584	2636	3464	6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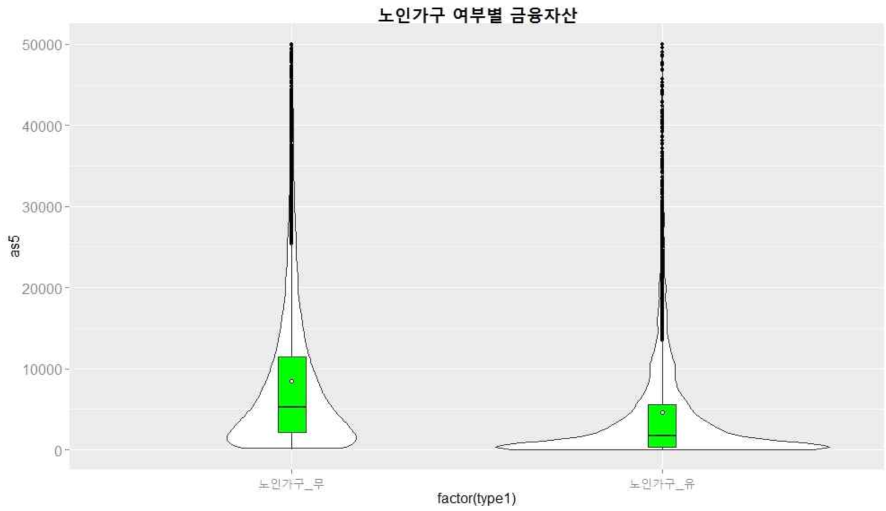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0	2145	5486	10170	12150	410600
노인가구_유	0	300	1849	5794	5923	4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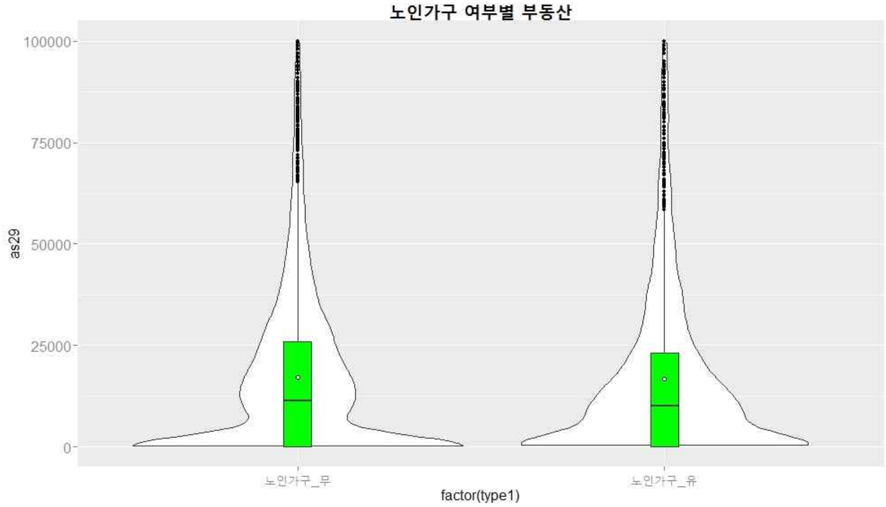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0	0	12000	21980	28000	940000
노인가구_유	0	0	10000	24780	26890	1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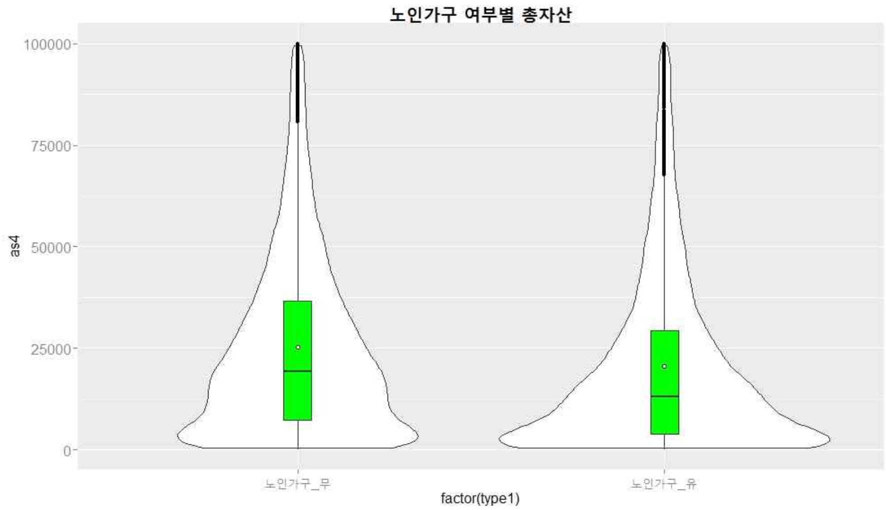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1	8068	21030	34340	41670	1014000
노인가구_유	1	4288	14570	31860	34790	18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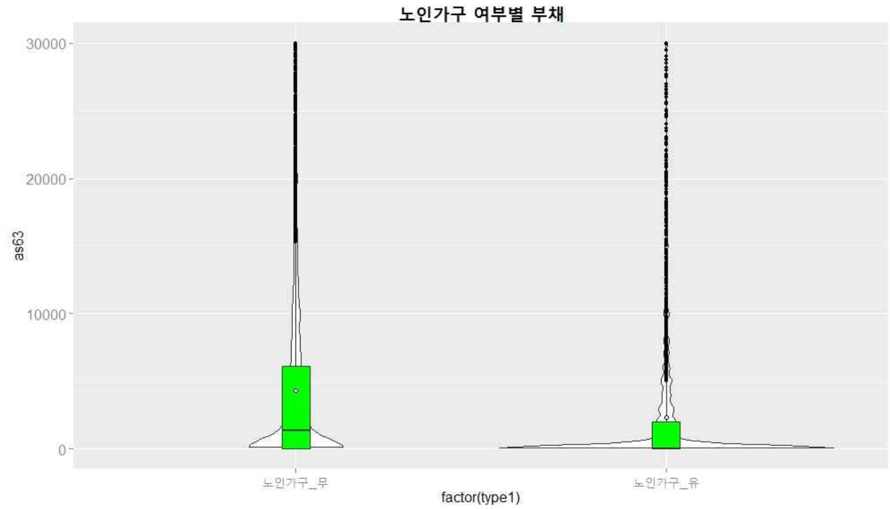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0	0	1600	6573	7300	539000
노인가구_유	0	0	0	4129	2425	2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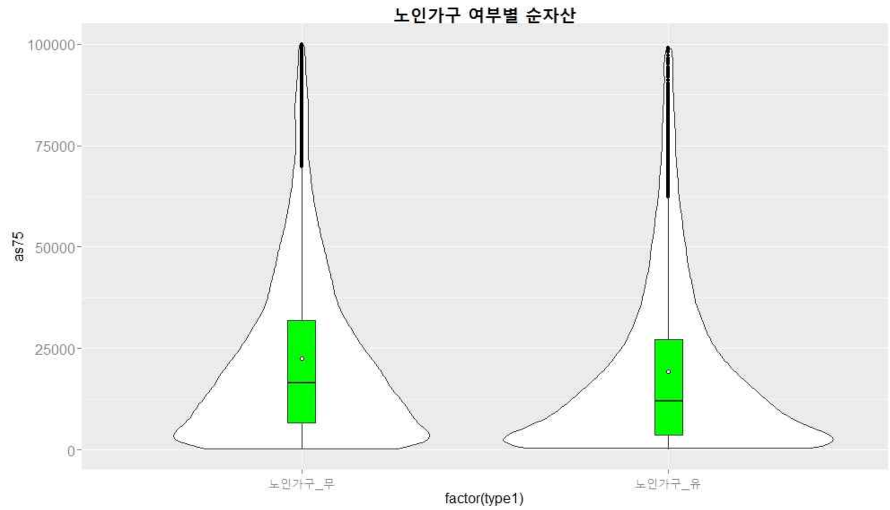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_무	-137200	5966	16690	27760	34350	920500
노인가구_유	-127000	3676	12630	27740	30580	17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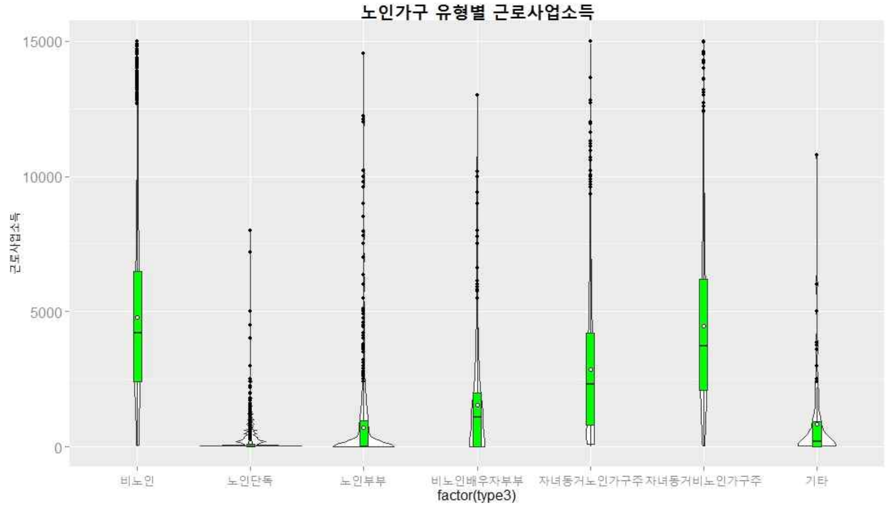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0	2500	4320	5174	6800	105000
노인단독	0	0	0	188.2	100	20000
노인부부	0	0	0	758	960	50000
비노인배우자부부	0	0	1080	1603	2000	2500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0	800	2400	3015	4200	276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0	2160	3800	4839	6480	63600
기타	0	0	200	822.6	945	1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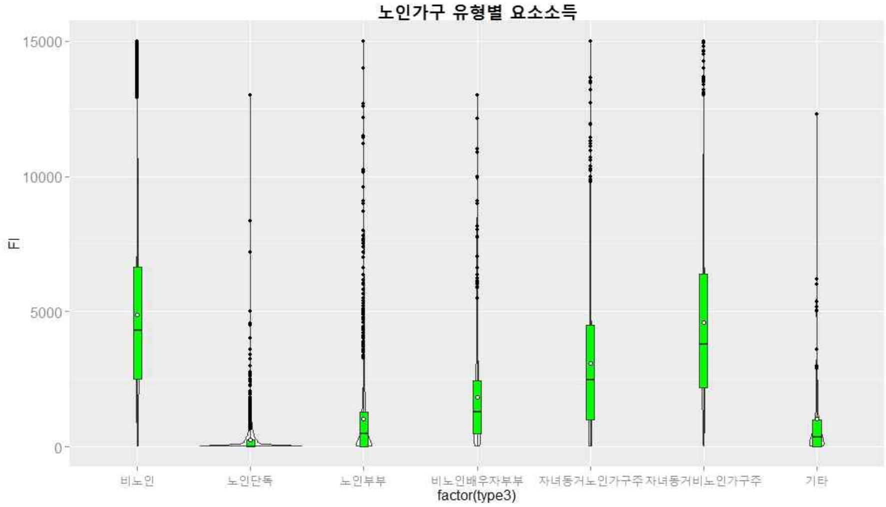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0	2520	4440	5344	7000	105000
노인단독	0	0	0	280.7	251.8	36000
노인부부	0	0	480	1129	1300	50120
비노인배우자부부	0	480	1320	1947	2492	5680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0	1000	2500	3404	4600	635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0	2250	3960	5045	6615	71980
기타	0	0	360	1035	1003	1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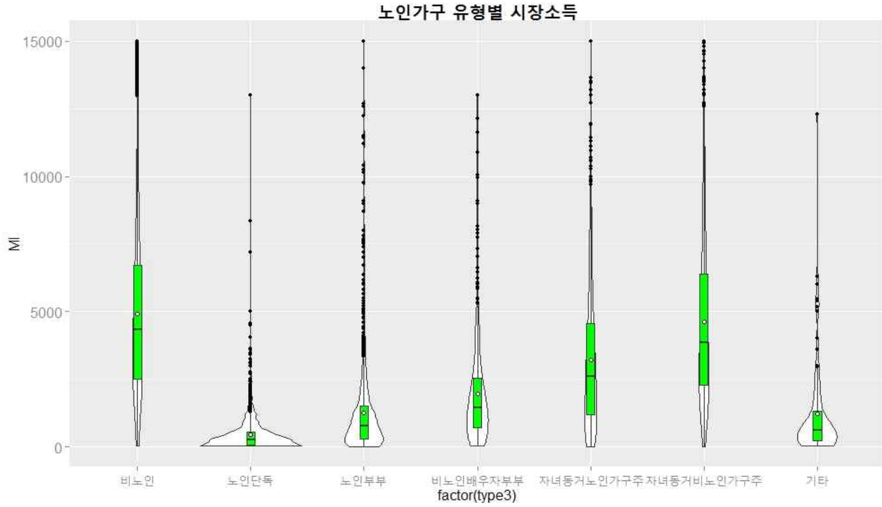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0	2600	4480	5382	7000	105000
노인단독	0	73.75	262	473.1	561	36000
노인부부	0	300	780	1350	1500	50120
비노인배우자부부	0	720	1440	2079	2596	5680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0	1200	2640	3535	4700	635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0	2340	4000	5097	6700	71980
기타	0	240	600	1231	1320	1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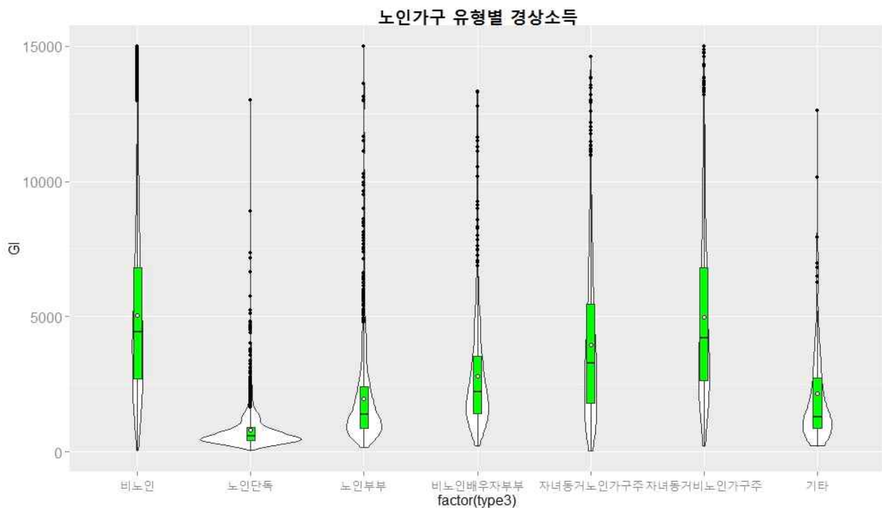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0	2750	4521	5506	7000	105000
노인단독	0	418	586	832	899	36400
노인부부	168	861.2	1390	2055	2422	50900
비노인배우자부부	170	1422	2240	2928	3548	5864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0	1831	3359	4295	5600	6479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169	2646	4379	5477	7079	71980
기타	178	866	1285	2145	2720	12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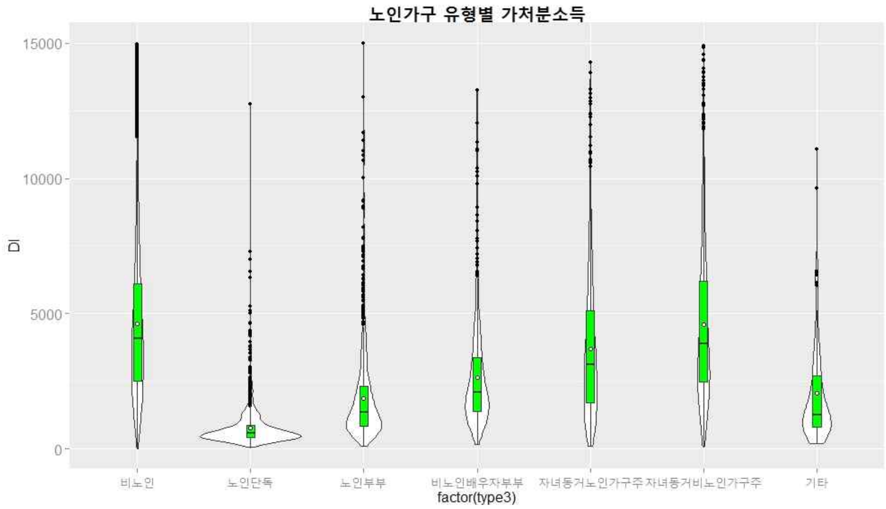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841	2523	4117	4912	6270	99870
노인단독	-411	409	577.5	800.2	876.2	26230
노인부부	72	826	1347	1921	2353	44770
비노인배우자부부	-357	1365	2088	2745	3372	5286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120	1743	3129	3959	5245	5788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25	2474	3963	4951	6381	60730
기타	177	808	1263	2050	2704	11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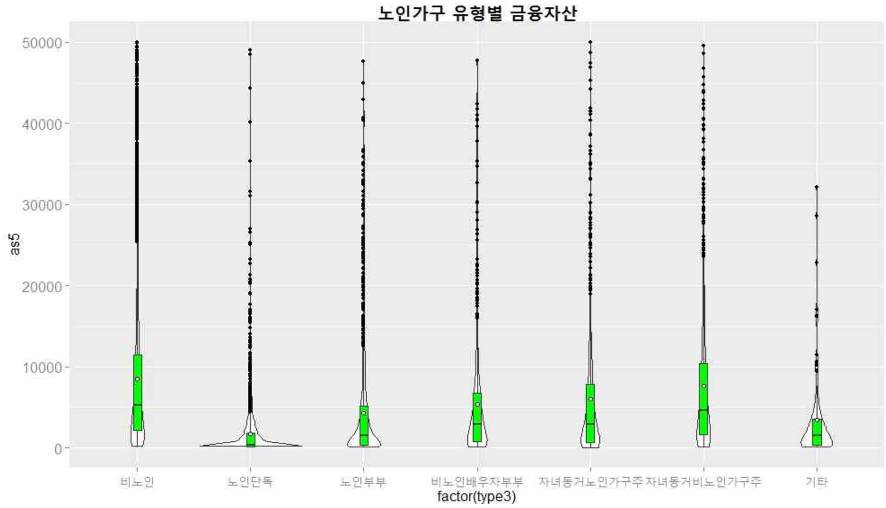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0	2145	5486	10170	12150	410600
노인단독	0	75	343	1771	1800	59000
노인부부	1	300	1585	5578	5500	202600
비노인배우자부부	5	790.5	2924	7061	7069	34940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0	715	3062	8697	8420	4431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6	1720	4840	9002	10960	145800
기타	20	340	1500	3463	3496	32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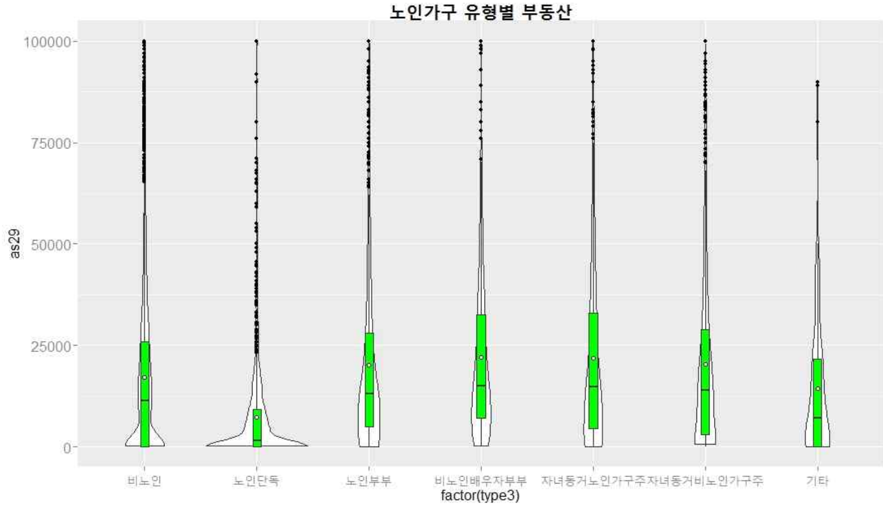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0	0	12000	21980	28000	940000
노인단독	0	0	1650	9556	9925	1100000
노인부부	0	5815	14500	31670	32420	820000
비노인배우자부부	0	7000	16400	32630	36000	112000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0	5000	15000	36410	39000	10230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0	3600	15000	26280	32000	412000
기타	0	0	7800	20170	22000	4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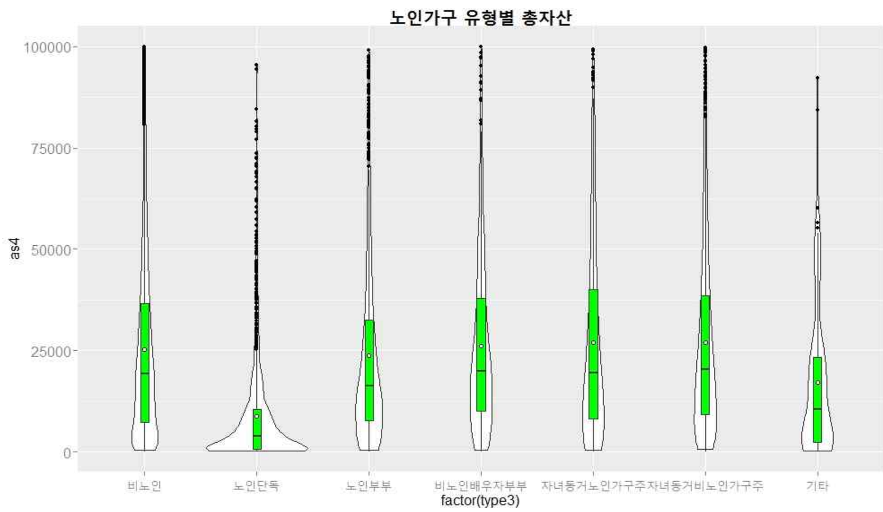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1	8068	21030	34340	41670	1014000
노인단독	1	643.5	4018	11750	11010	1316000
노인부부	2	8221	17750	38080	40270	925100
비노인배우자부부	6	11040	22680	41800	45920	182000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5	9171	22680	46930	51820	11530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30	10050	22820	37540	46670	536700
기타	20	2450	12570	24270	24090	52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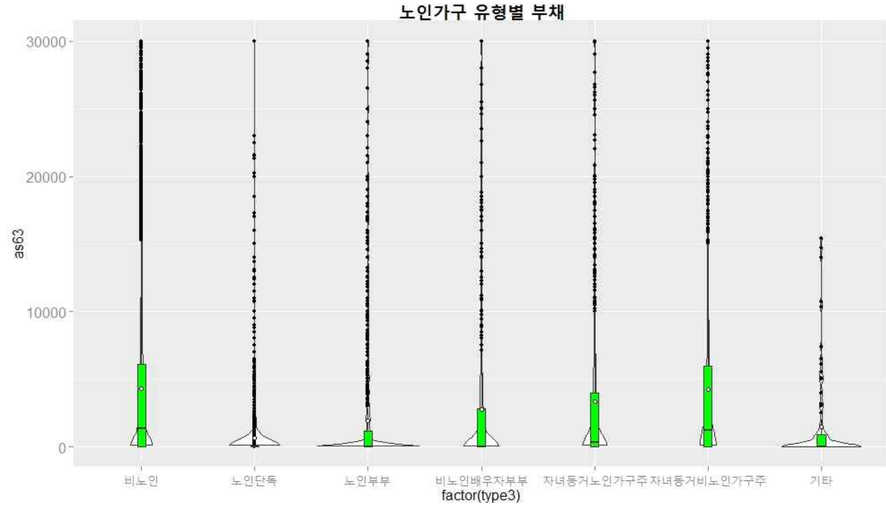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0	0	1600	6573	7300	539000
노인단독	0	0	0	1011	0	290000
노인부부	0	0	0	3445	1675	218000
비노인배우자부부	0	0	50	5495	3020	17500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0	0	500	6387	5000	2295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0	0	1500	7061	7502	248200
기타	0	0	0	1825	900	3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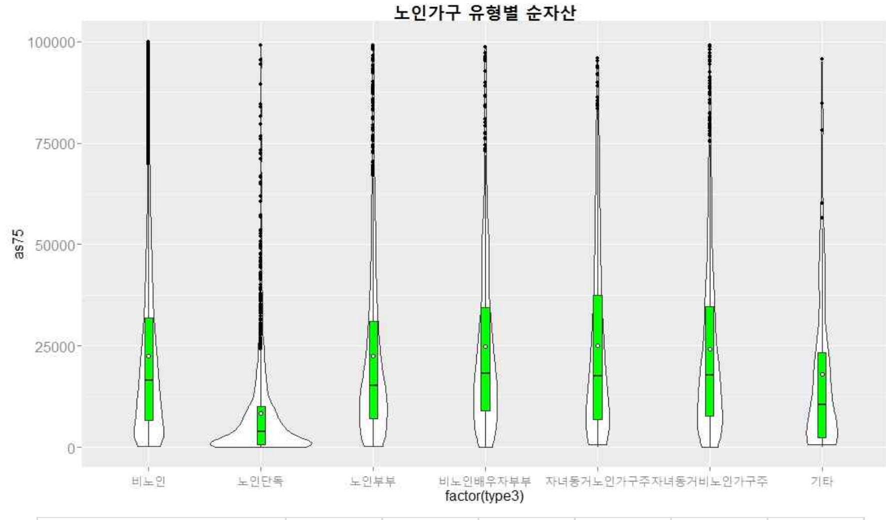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비노인	-137200	5966	16690	27760	34350	920500
노인단독	-2790	562.2	3800	10740	10100	1149000
노인부부	-14870	7402	16370	34640	36360	815100
비노인배우자부부	-3775	9431	19800	36310	42060	1715000
자녀동거노인가구주	-127000	7030	19300	40550	45220	1071000
자녀동거비노인가구주	-21050	7524	18430	30480	38070	406400
기타	-670	2000	10530	22440	23310	508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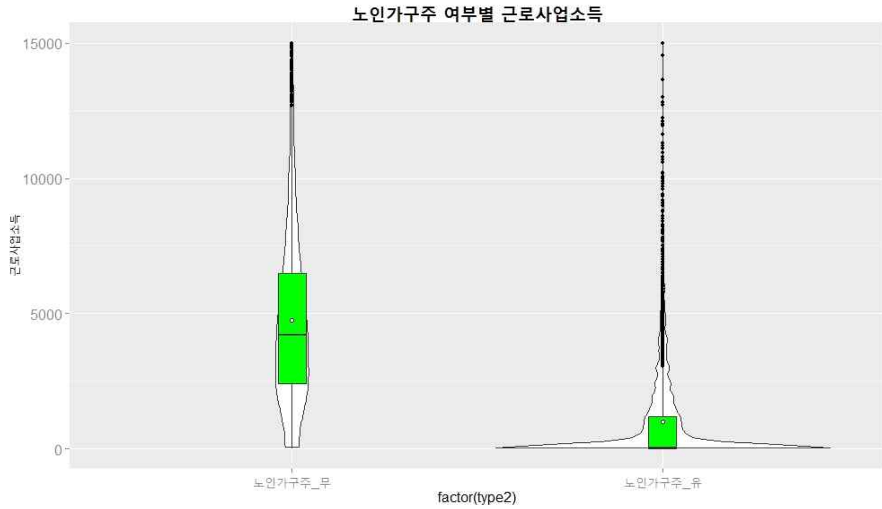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0	2400	4240	5123	6740	105000
노인가구주_유	0	0	50	1063	1200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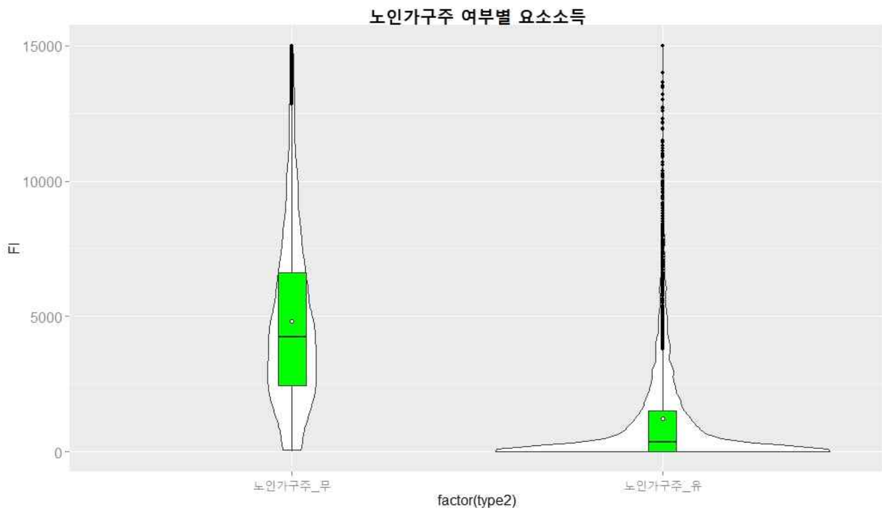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0	2500	4380	5296	6944	105000
노인가구주_유	0	0	360	1332	1560	63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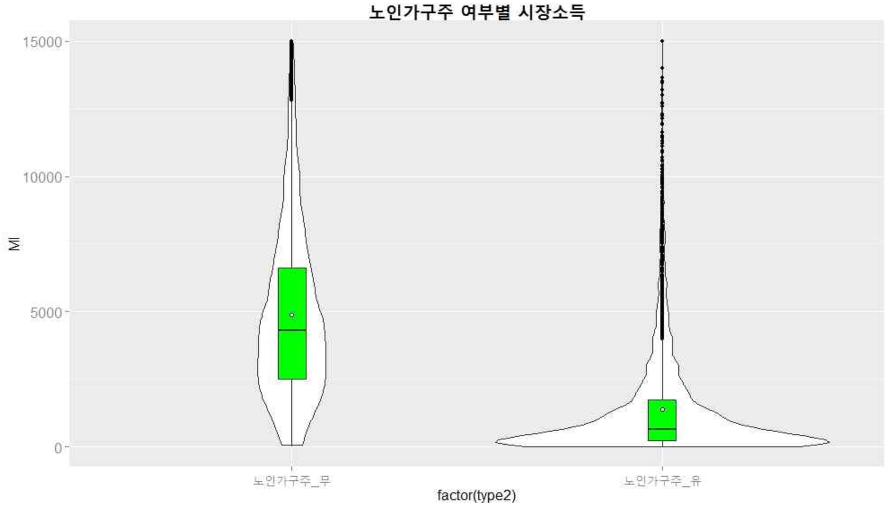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0	2520	4400	5335	7000	105000
노인가구주_유	0	234.5	640	1515	1782	63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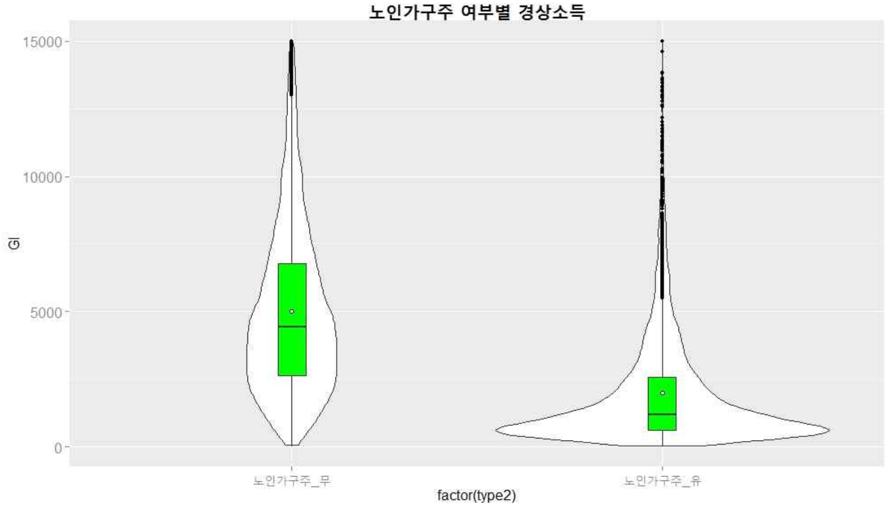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0	2700	4500	5487	7000	105000
노인가구주_유	0	623.5	1200	2125	2599	64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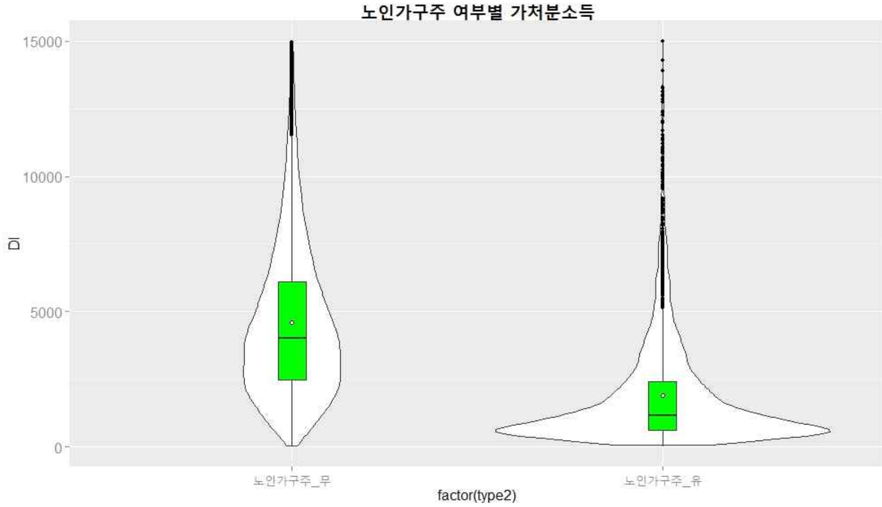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841	2490	4087	4901	6259	99870
노인가구주_유	-411	599.5	1165	1986	2438	57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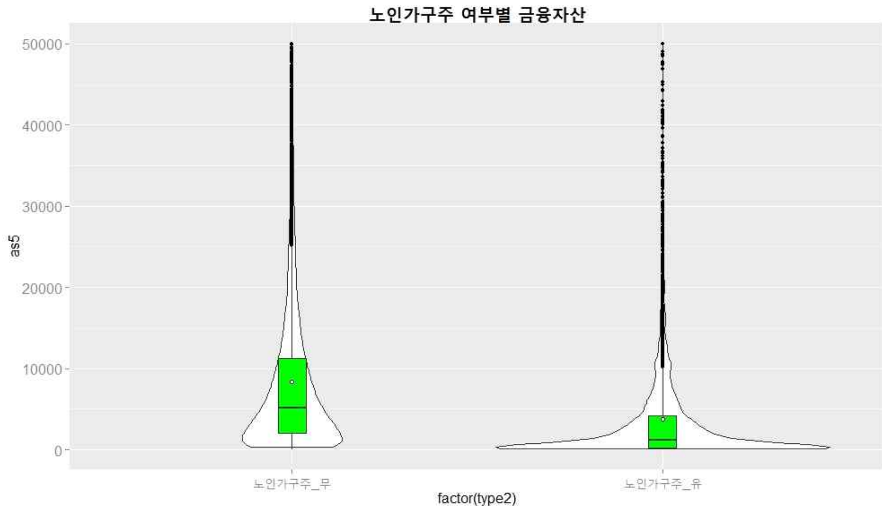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0	2100	5394	10030	11970	410600
노인가구주_유	0	200	1232	4912	4383	4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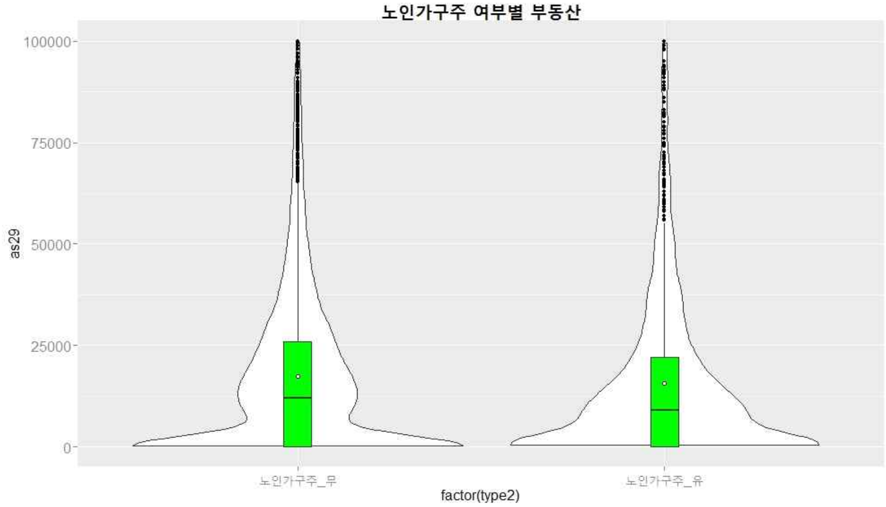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0	0	12280	22420	28000	940000
노인가구주_유	0	0	10000	24330	25000	1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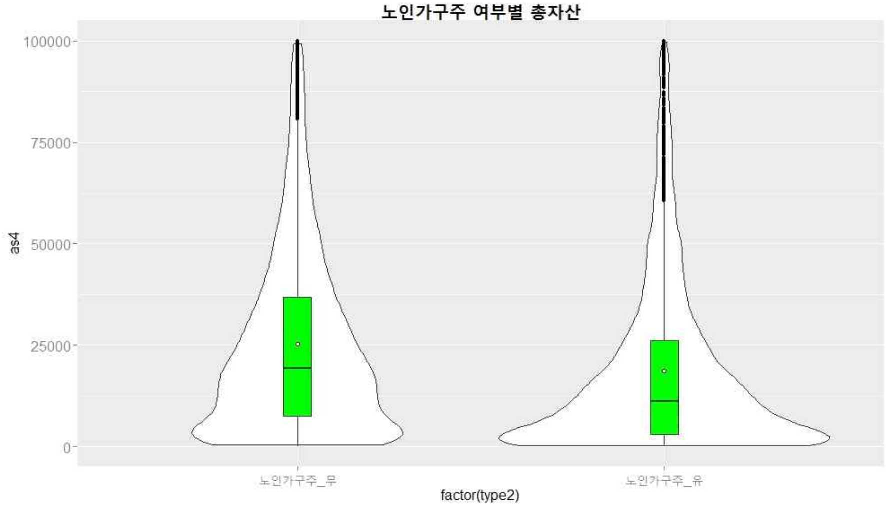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1	8245	21130	34630	42080	1014000
노인가구주_유	1	3198	12400	30250	30550	18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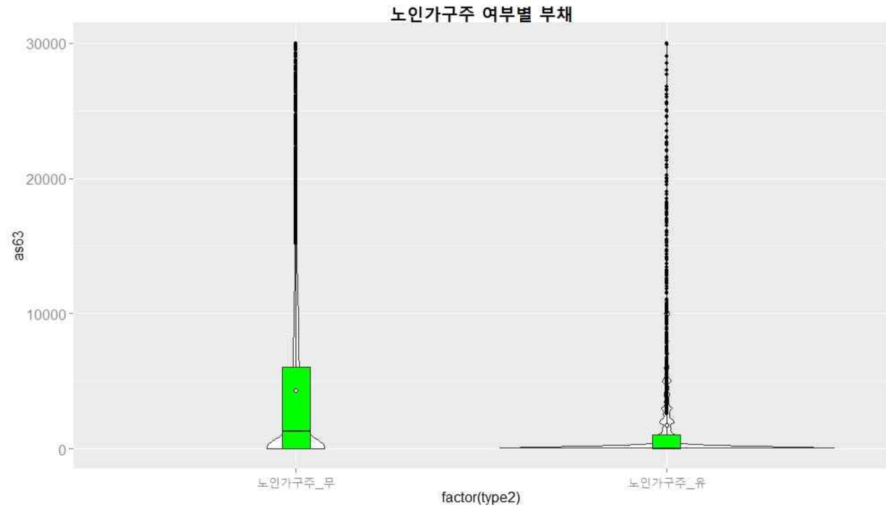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0	0	1600	6617	7300	539000
노인가구주_유	0	0	0	3269	1200	2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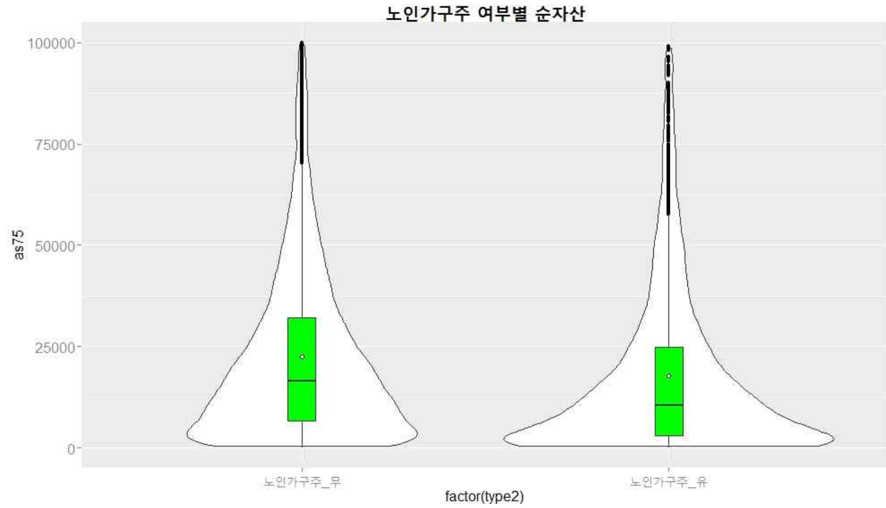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노인가구주_무	-137200	6100	16870	28020	34790	920500
노인가구주_유	-127000	3002	11070	26980	28130	17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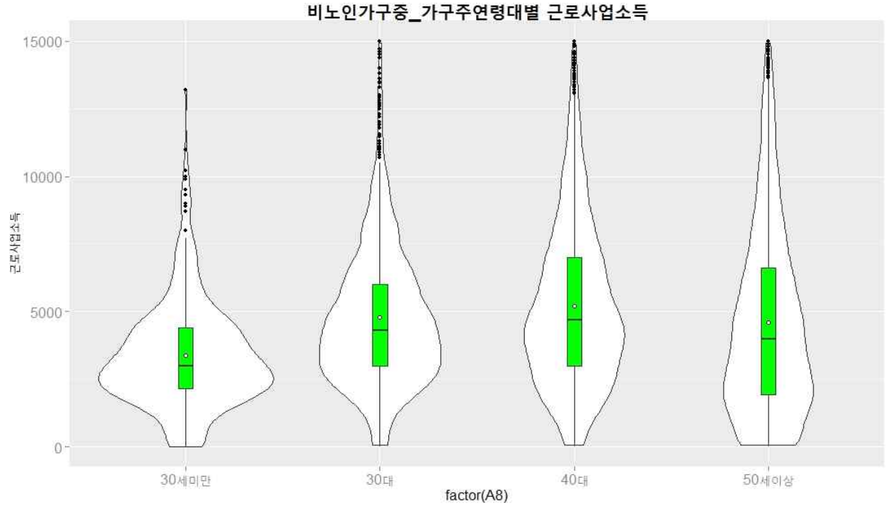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0	2160	3000	3388	4400	13200
가구주30대	0	3000	4380	4940	6200	40000
가구주40대	0	3000	4800	5629	7145	105000
가구주50세이상	0	2000	4000	5108	7000	6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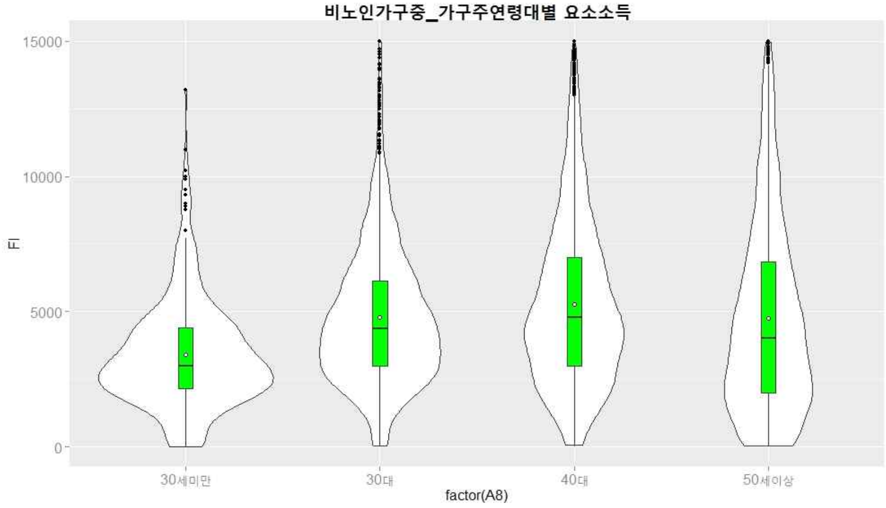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0	2160	3000	3399	4400	13200
가구주30대	0	3000	4410	4994	6285	40000
가구주40대	0	3000	4851	5753	7292	105000
가구주50세이상	0	2018	4200	5381	7200	7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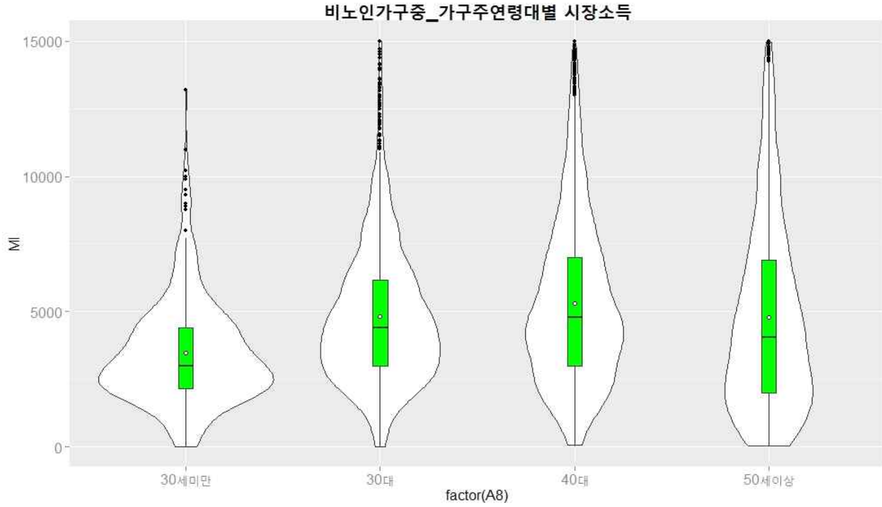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0	2160	3000	3466	4400	13200
가구주30대	0	3000	4440	5022	6300	40000
가구주40대	0	3000	4900	5787	7300	105000
가구주50세이상	0	2068	4200	5424	7203	7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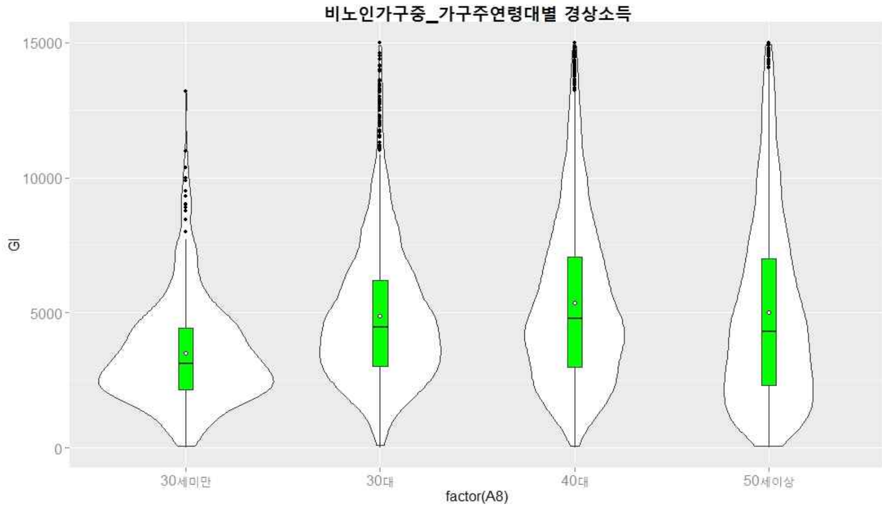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0	2160	3120	3513	4443	13200
가구주30대	0	3040	4500	5087	6356	40000
가구주40대	0	3080	4916	5831	7344	105000
가구주50세이상	0	2400	4460	5640	7448	7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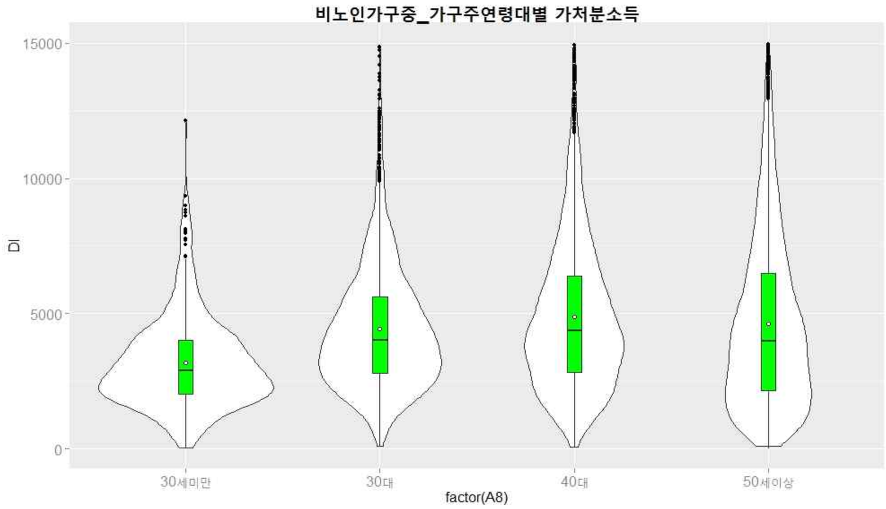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21	2000	2881	3181	4021	12140
가구주30대	-325	2786	4024	4542	5647	29630
가구주40대	-841	2859	4420	5178	6555	99870
가구주50세이상	-482	2176	4072	5043	6680	6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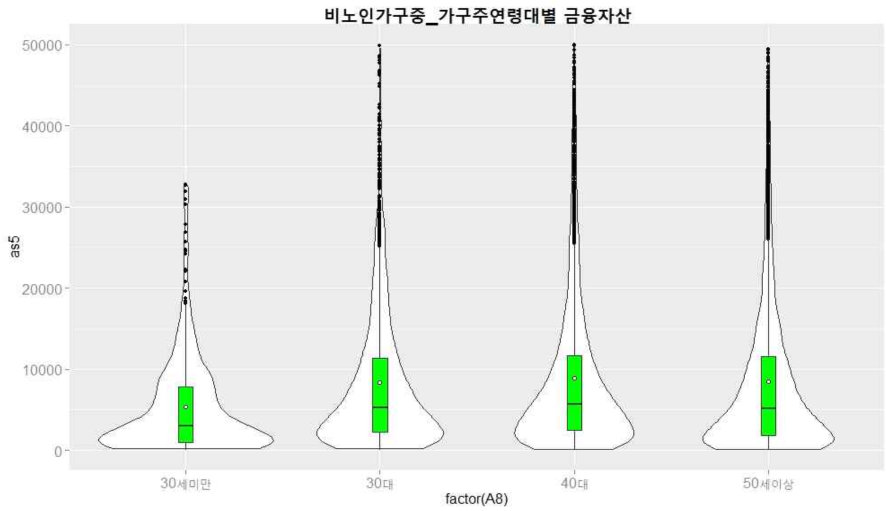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3	1000	3000	5487	7838	52220
가구주30대	0	2290	5370	8991	11800	153900
가구주40대	0	2534	5842	10400	12550	276400
가구주50세이상	0	1988	5406	10980	12510	41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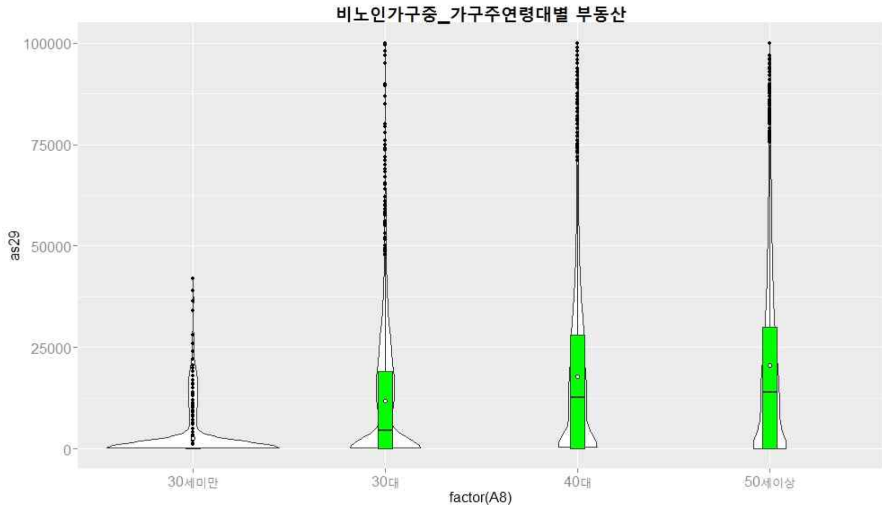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0	0	0	2564	0	42000
가구주30대	0	0	5000	12640	20000	234000
가구주40대	0	0	13000	20600	29000	433000
가구주50세이상	0	0	15280	29180	35000	9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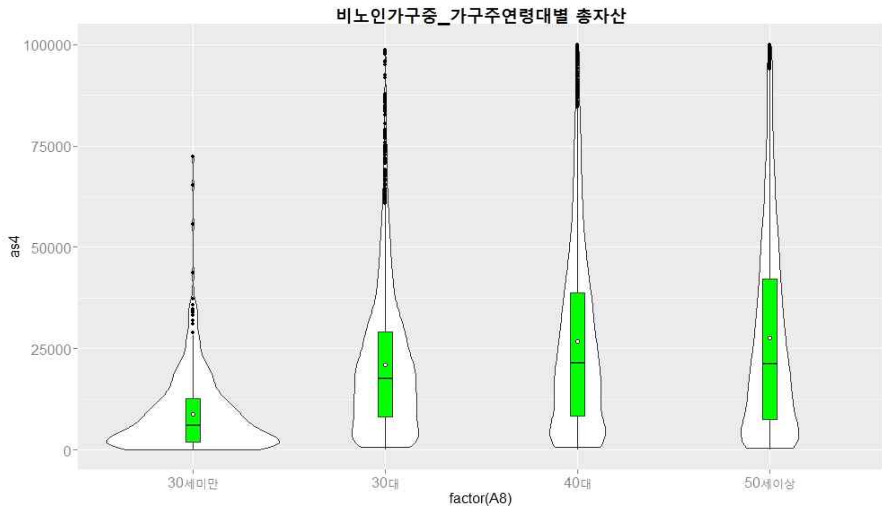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8	1968	6110	8852	12540	72420
가구주30대	1	8286	17850	23420	29830	424400
가구주40대	5	9182	23220	33140	42460	451500
가구주50세이상	1	8761	24540	42680	51610	101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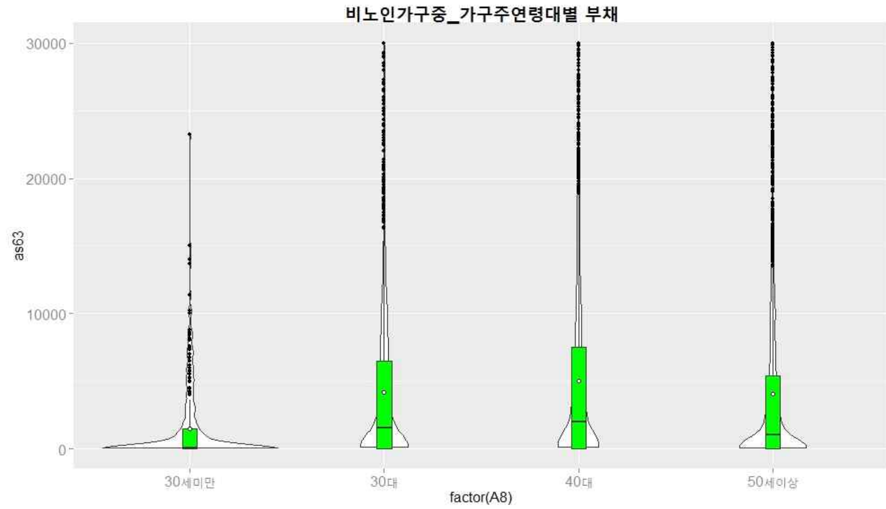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0	0	40	1576	1540	35000
가구주30대	0	0	1754	5104	7000	150000
가구주40대	0	0	2500	7008	8608	345000
가구주50세이상	0	0	1300	7392	7076	53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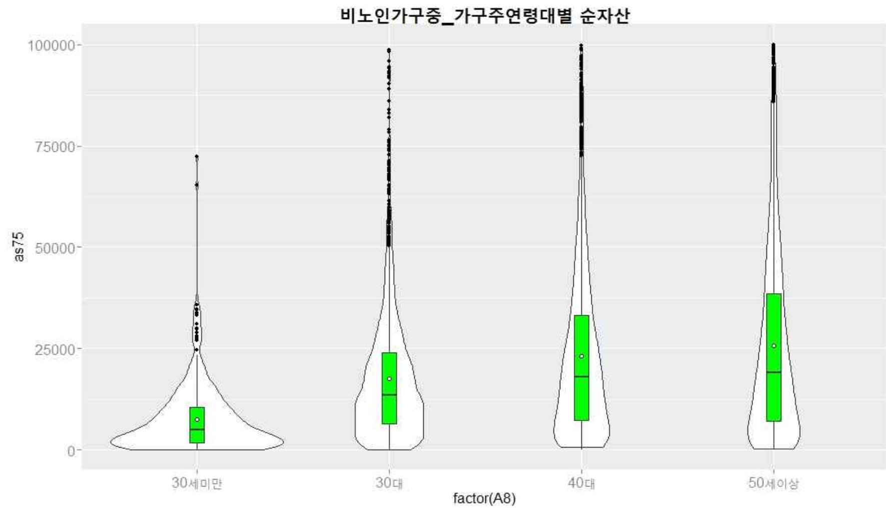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가구주30세미만	-2382	1514	4550	7277	10480	72420
가구주30대	-18240	5824	13310	18320	23980	284200
가구주40대	-137200	6394	17870	26140	34510	434500
가구주50세이상	-62190	6842	20160	35290	43640	920500

3. 소득자산항목별 상대적 영향도 ☞ Relative Influence Plot

□ 경상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항목들의 상대적 영향도는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함

○ 노인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노인단독가구에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사적이전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과 기초연금이 중요한 항목임

○ 그러나, 근로소득의 영향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으며, 현재 기초연금의 영향이 노인단독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사적이전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경상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노인부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의 영향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의 영향도가 순차적으로 높아짐

□ 가처분소득은 전반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금, 사회보험료, 재산소득의 영향도가 높음

○ 노인단독과 노인부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공적연금의 영향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총자산의 경우 거주주택이외건물의 영향도가 가장 높으며 공통적으로 저축, 거주주택의 순서로 영향도가 크게 나타남

○ 노인부부, 자녀동거가구에서는 거주주택의 영향이 저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거주주택이외건물의 상대적 영향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또는 구성 비중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물이 총자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함

○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경우 저축, 거주주택, 현거주지보증금, 자동차의 영향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주택이외의 자산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 30~40대의 경우, 거주주택과 저축의 영향도가 높으며, 5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거주주택의 순서로 영향도가 높게 나타남

□ 순자산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는 총자산과 유사하며, 부채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경상소득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

〈노인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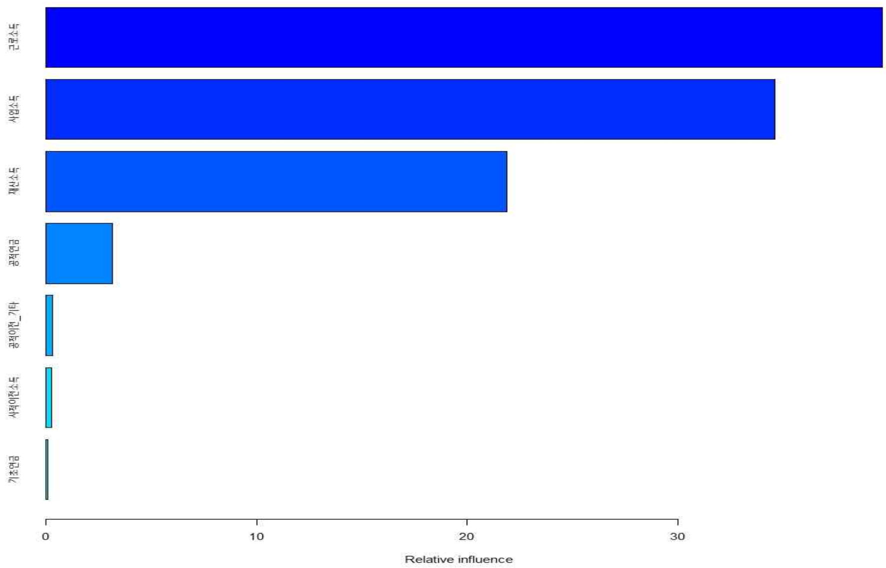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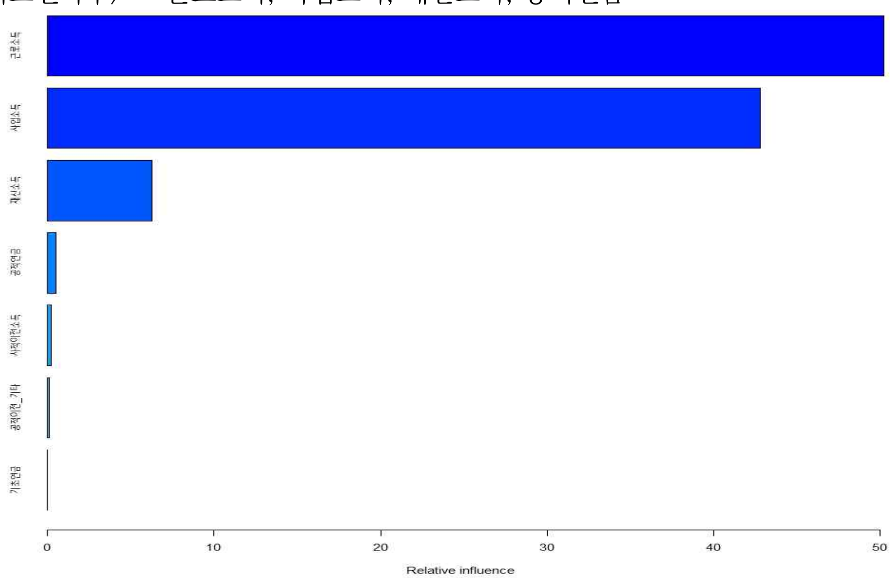

〈노인단독〉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사적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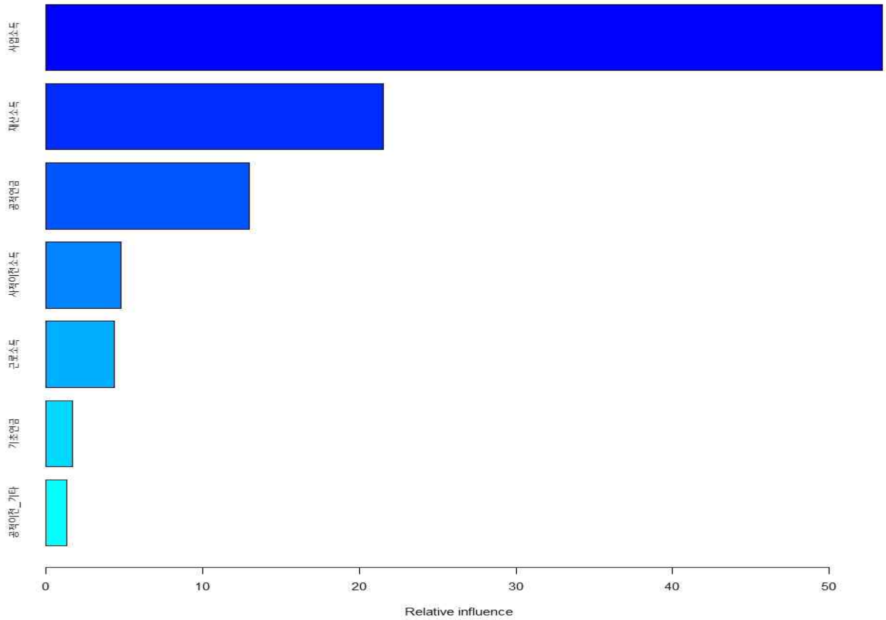

〈노인부부〉 ☞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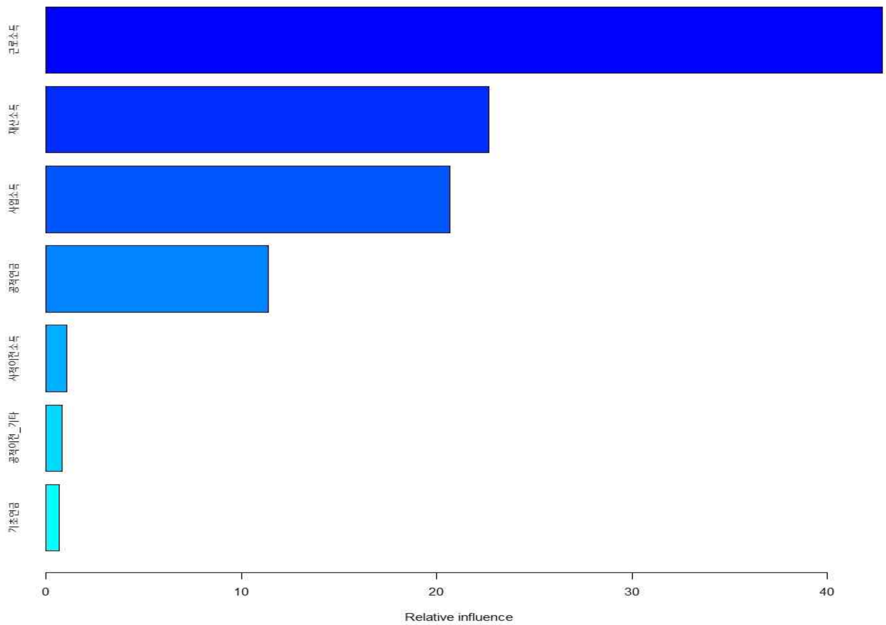

〈비노인배우자부부〉 ☞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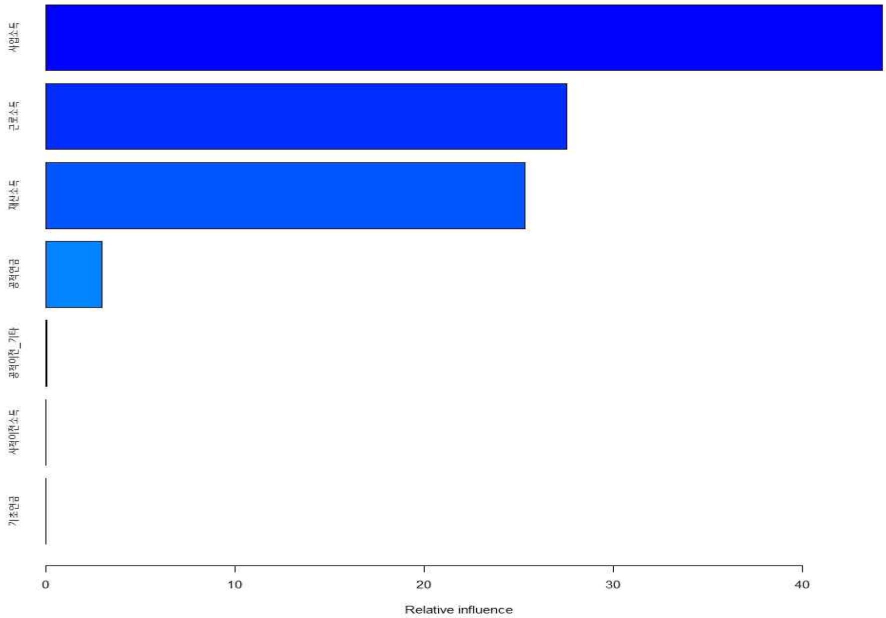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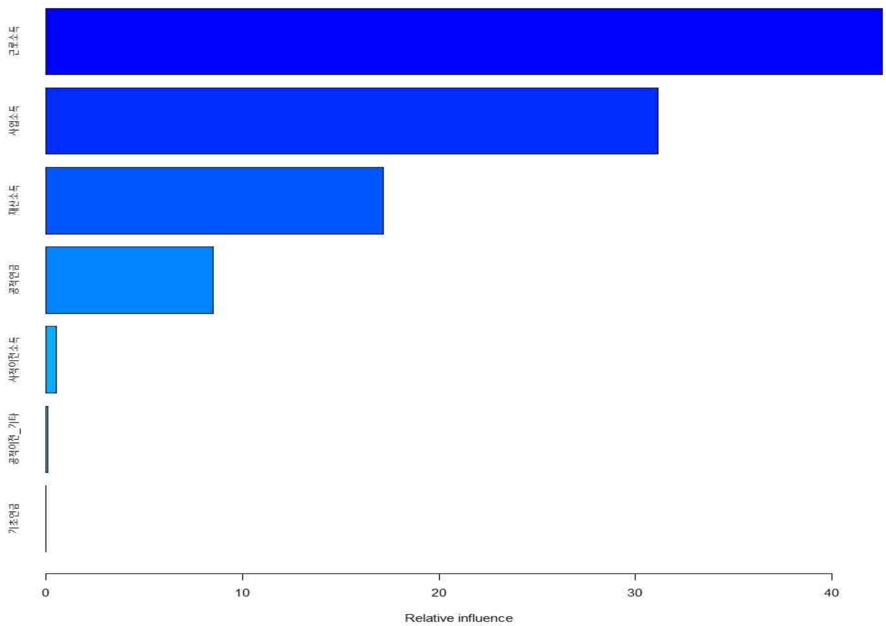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초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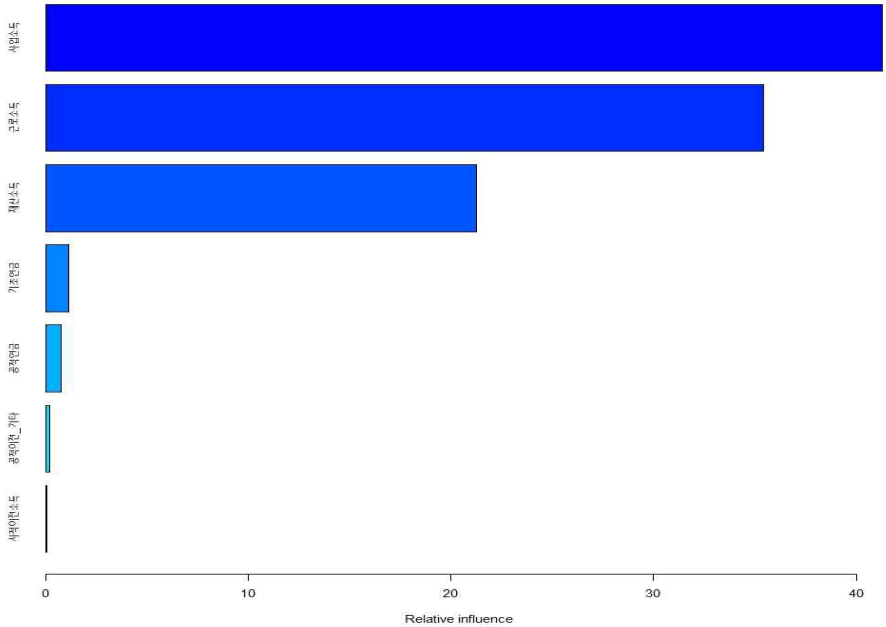

〈노인가구주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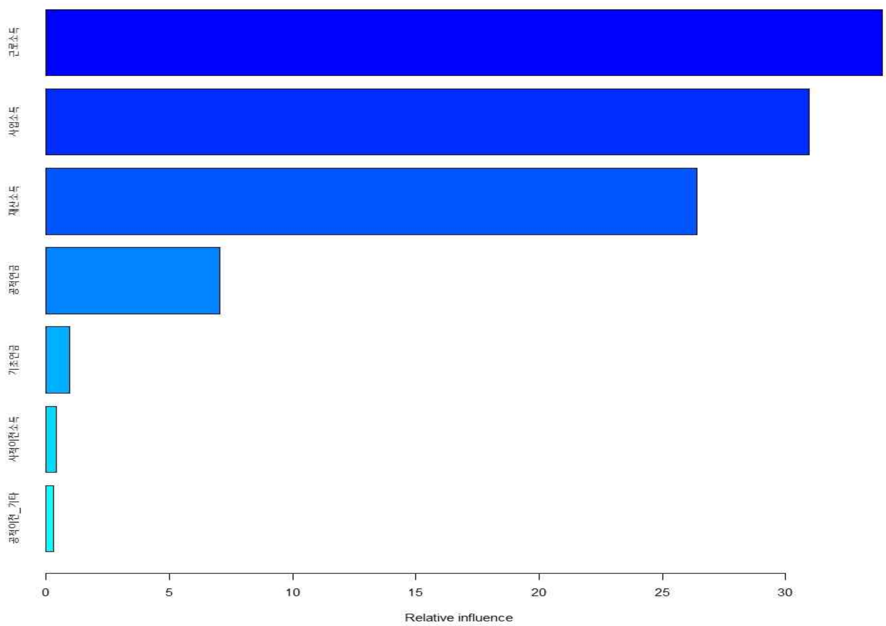

〈비노인가구주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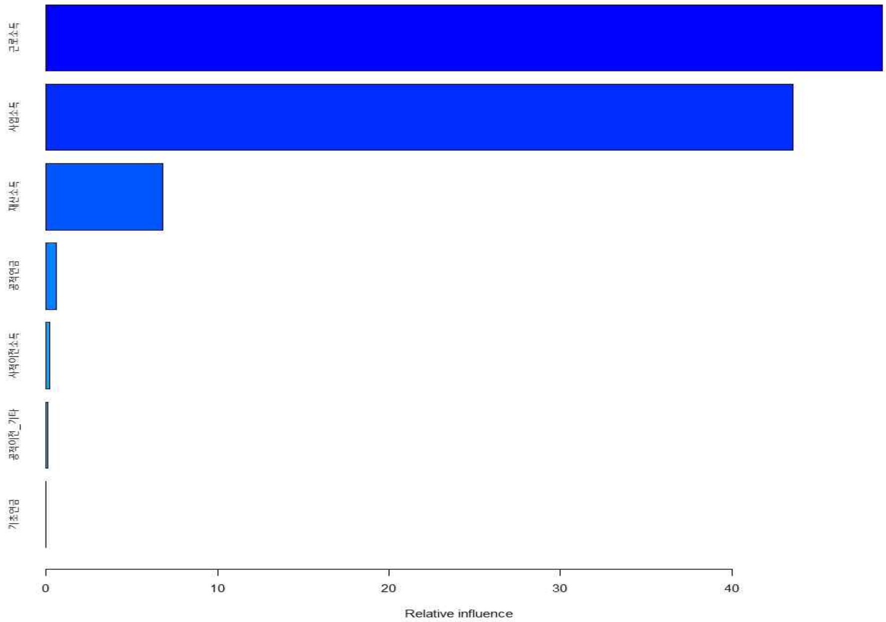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30세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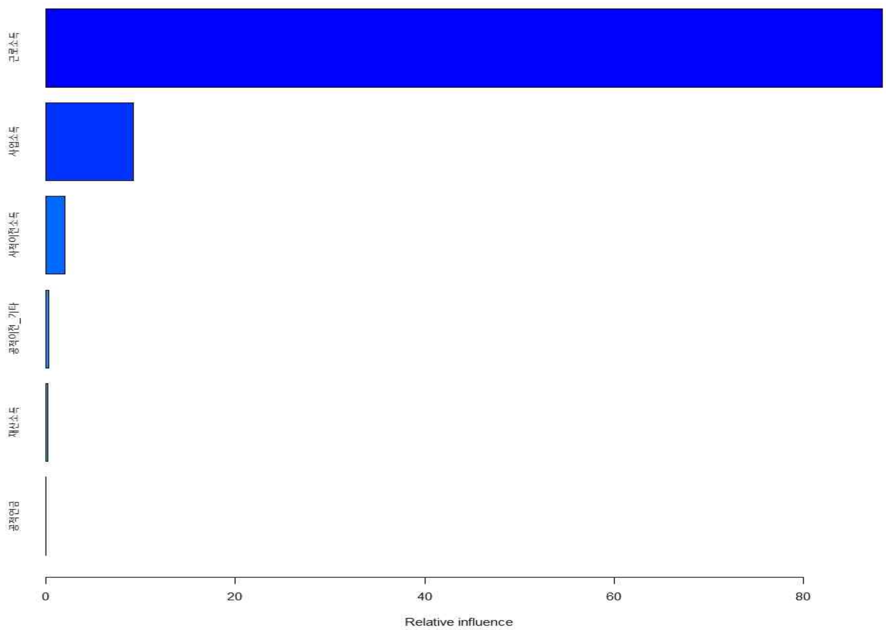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30~39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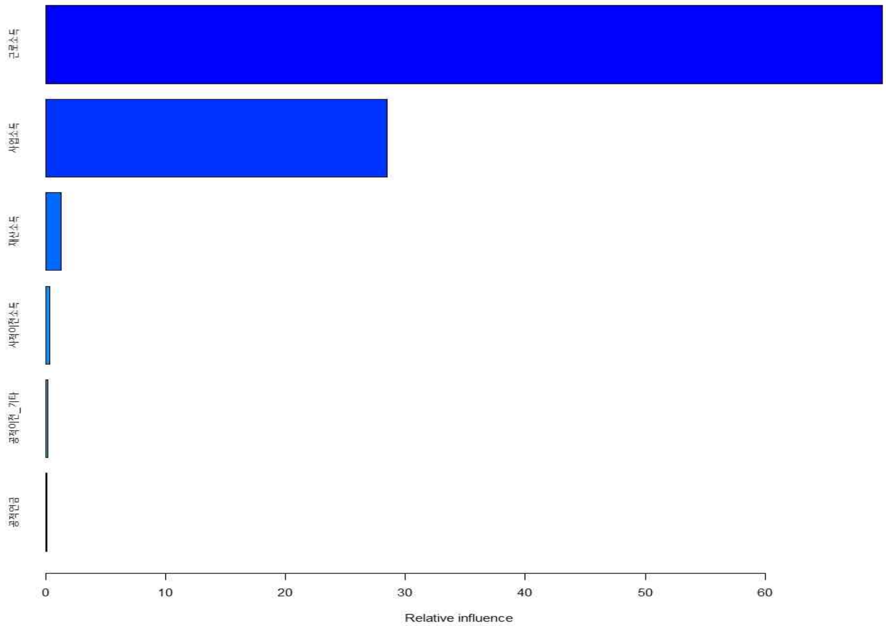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40~49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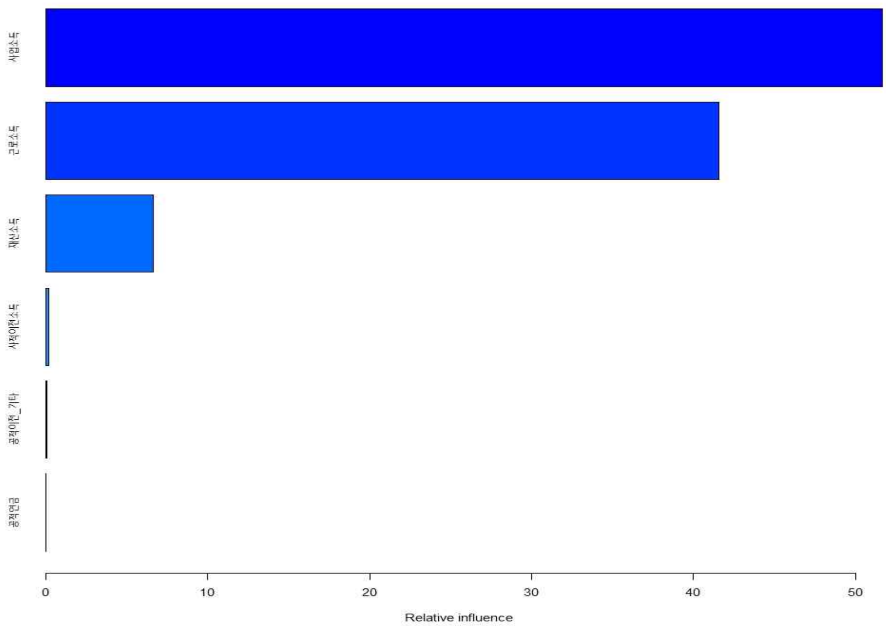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50세 이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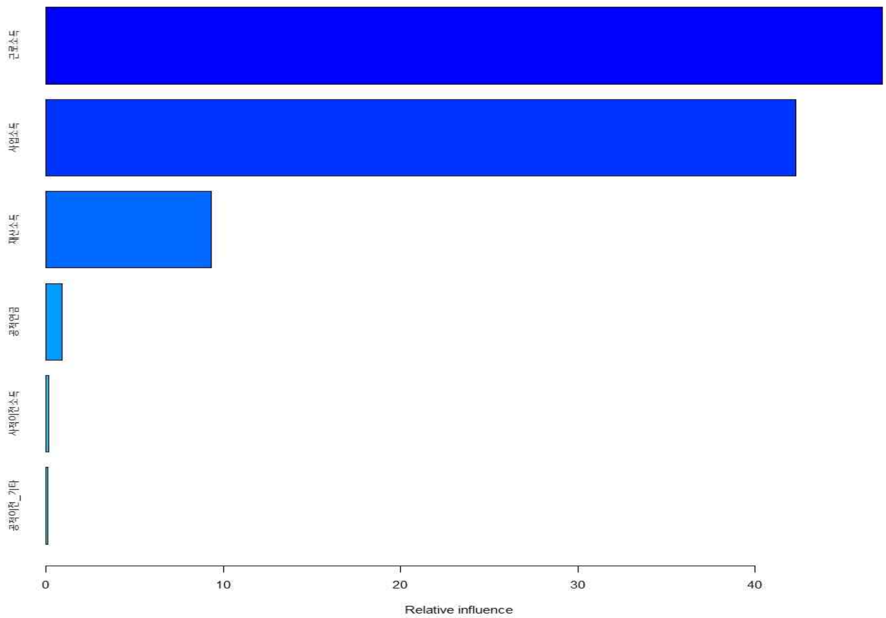

□ 가처분소득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

〈노인가구〉 ☞ 사업소득, 세금, 근로소득, 사회보험료, 재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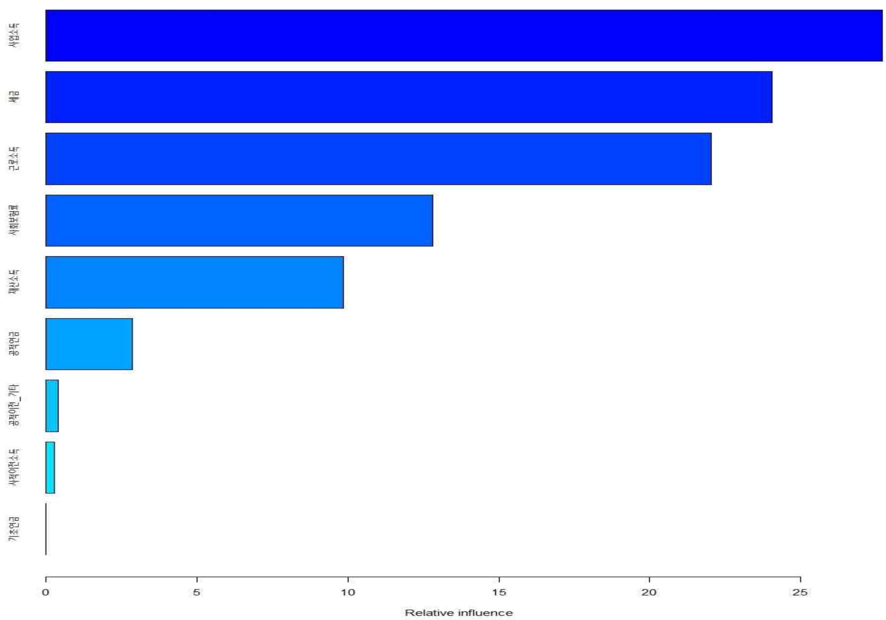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금,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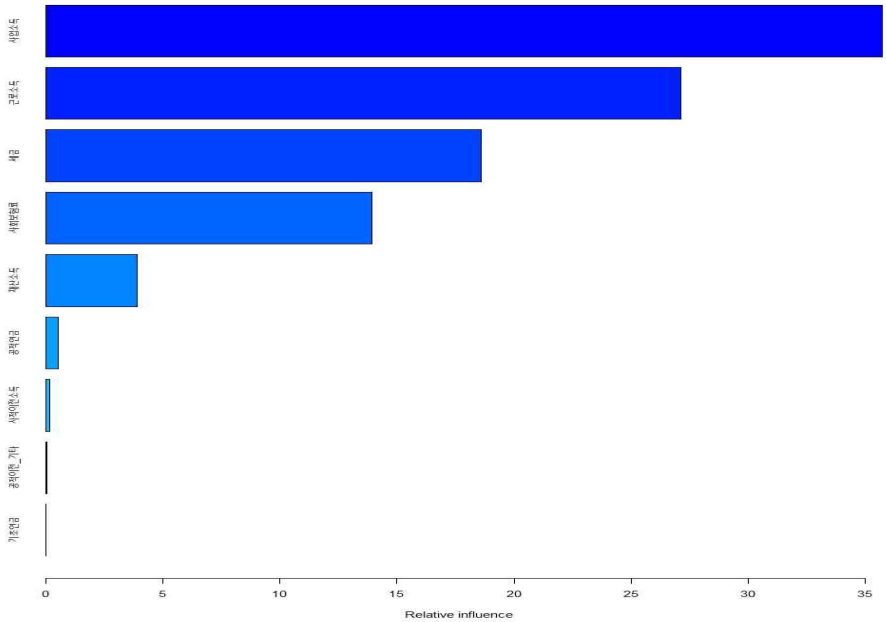

〈노인단독〉 ☞ 사업소득, 세금, 공적연금, 재산소득,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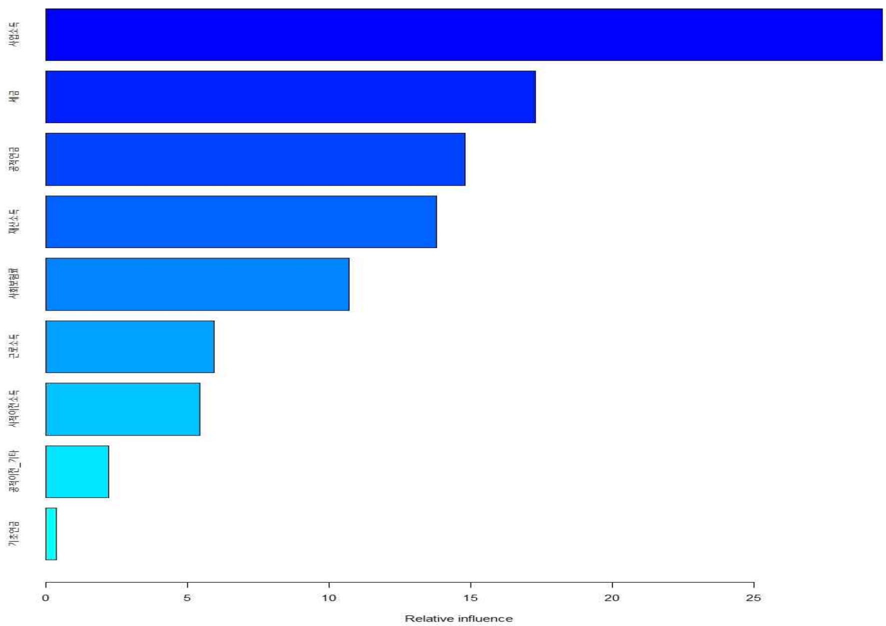

〈노인부부〉 ☞ 세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재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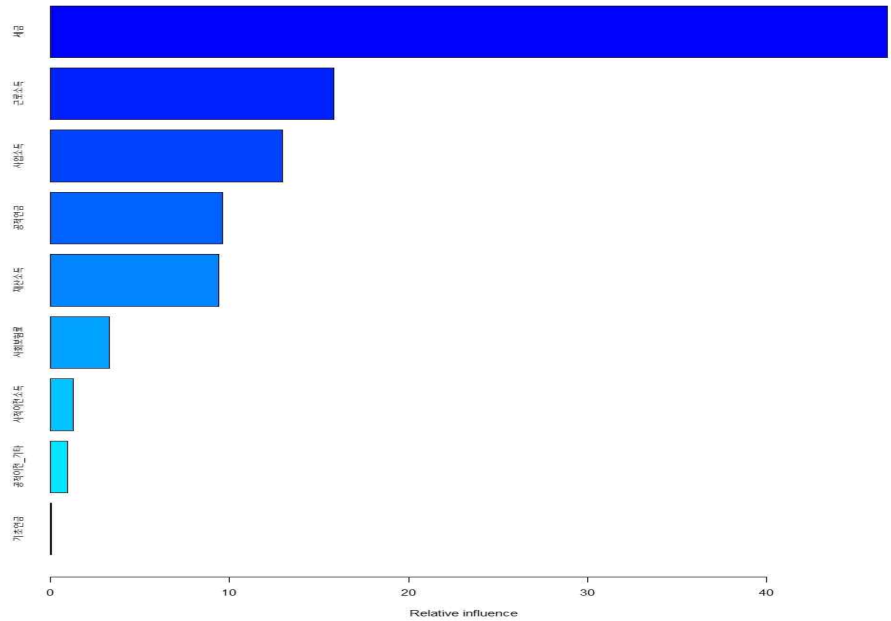

〈비노인배우자부부〉 ☞ 사업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세금,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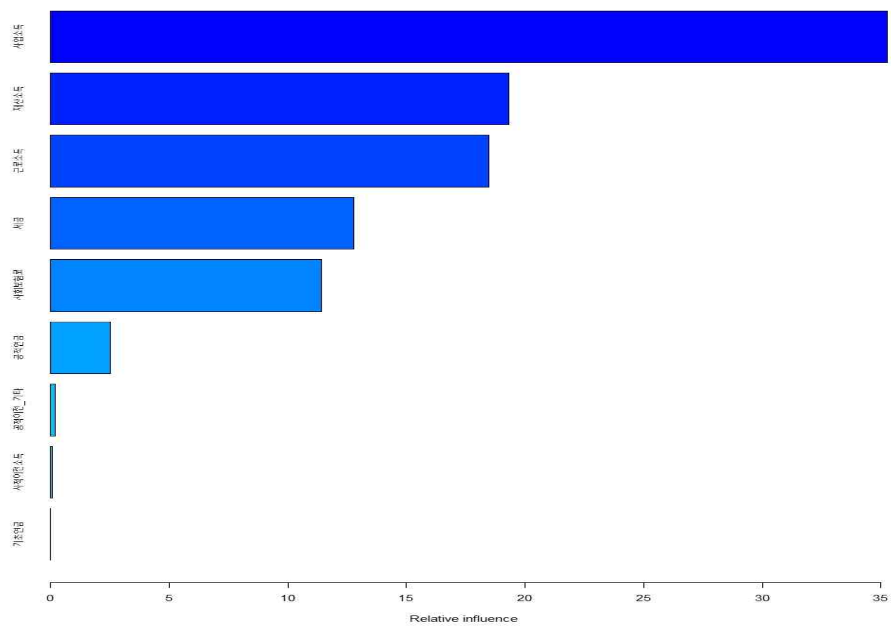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 세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회보험료, 재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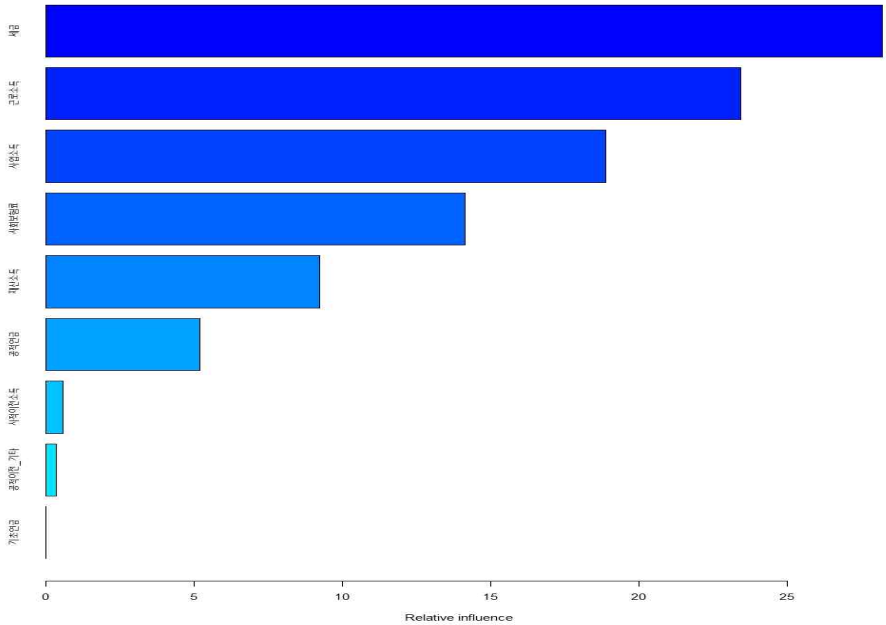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 사업소득, 세금, 근로소득, 사회보험료, 재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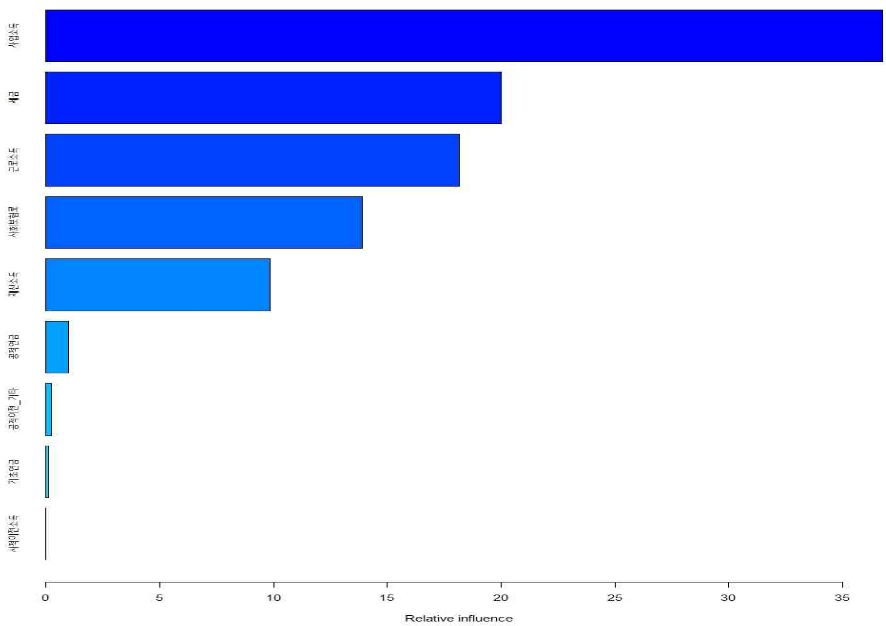

〈노인가구주가구〉 ☞ 세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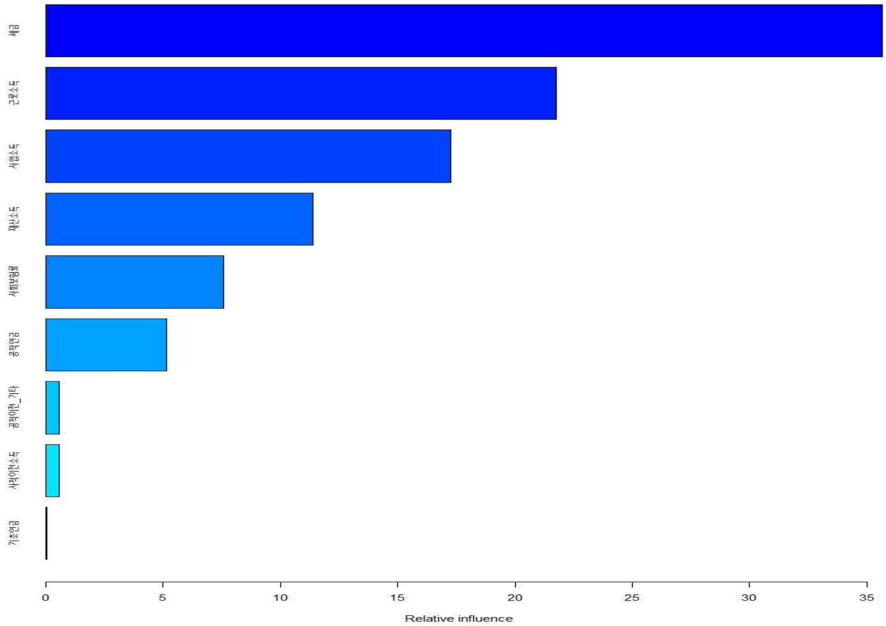

〈비노인가구주가구〉 ☞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금,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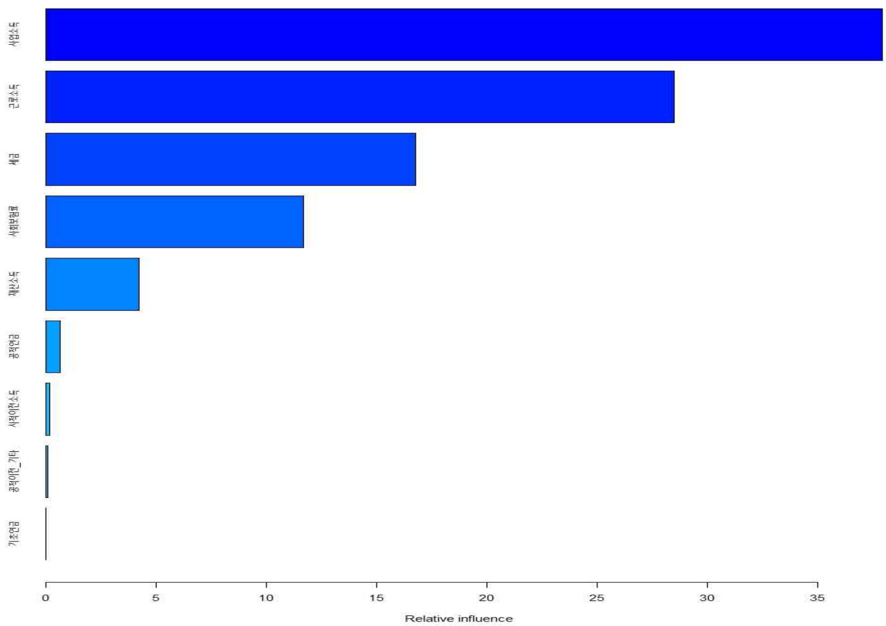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30세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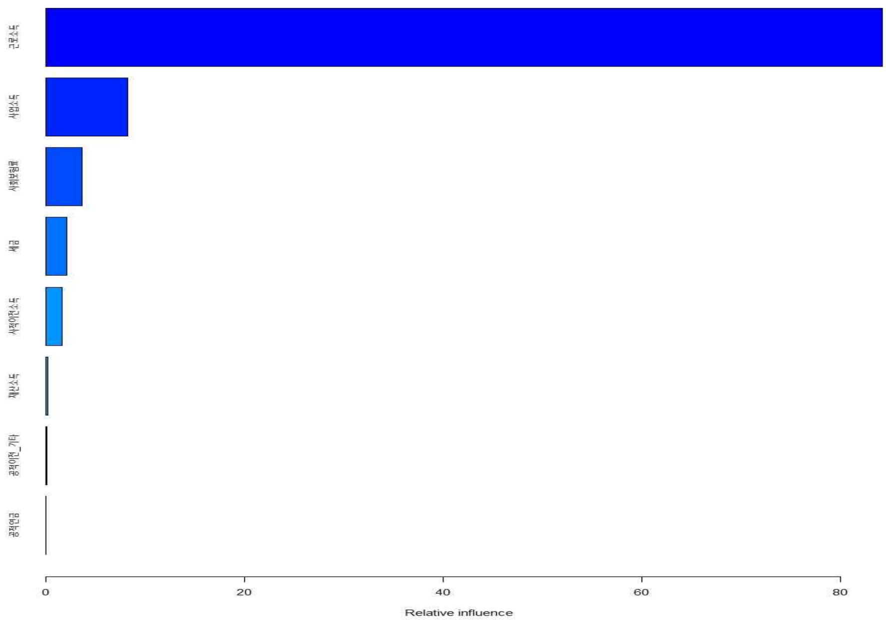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30~39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회보험료,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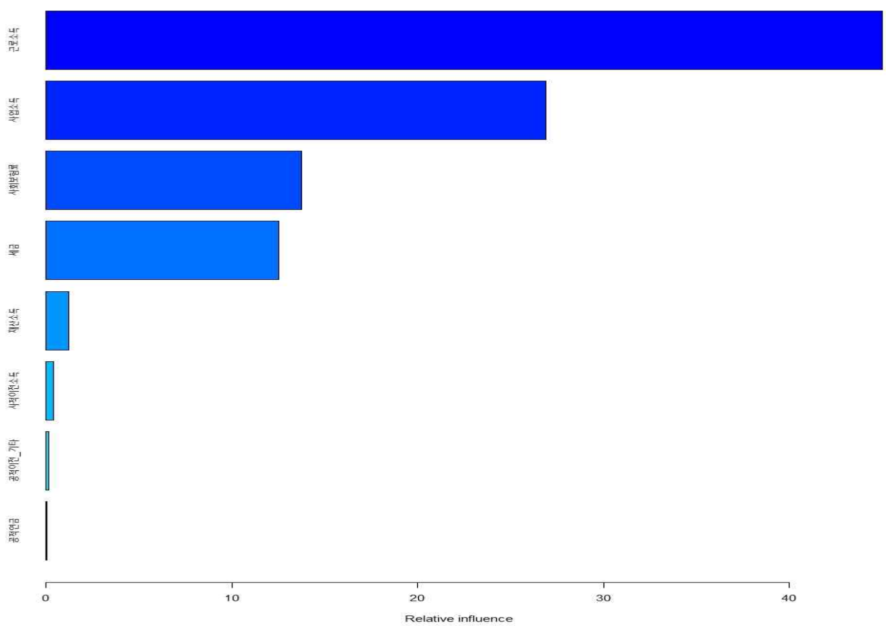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40~49세〉 ☞ 사업소득, 세금, 근로소득,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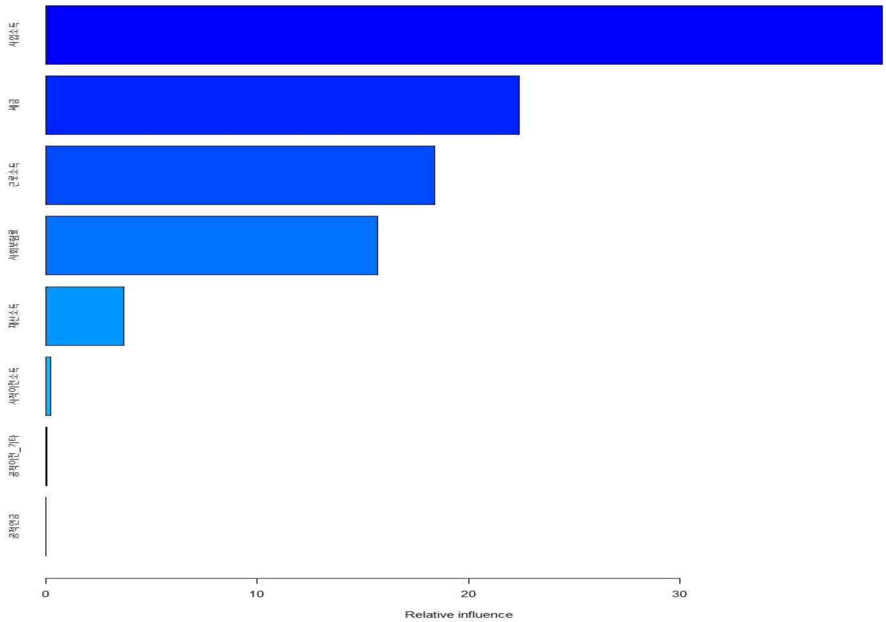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50세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금,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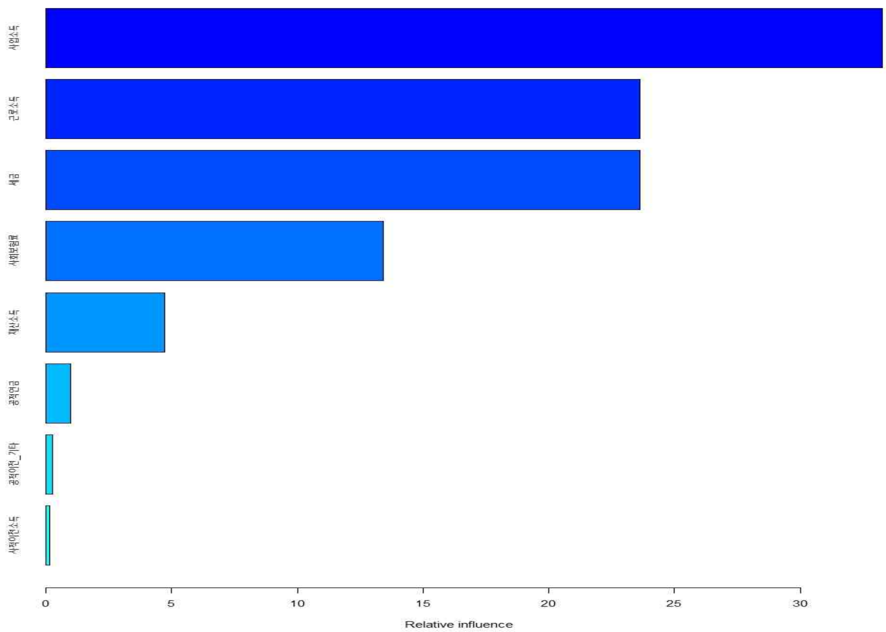

□ 총자산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

〈노인가구〉 ☞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거주주책,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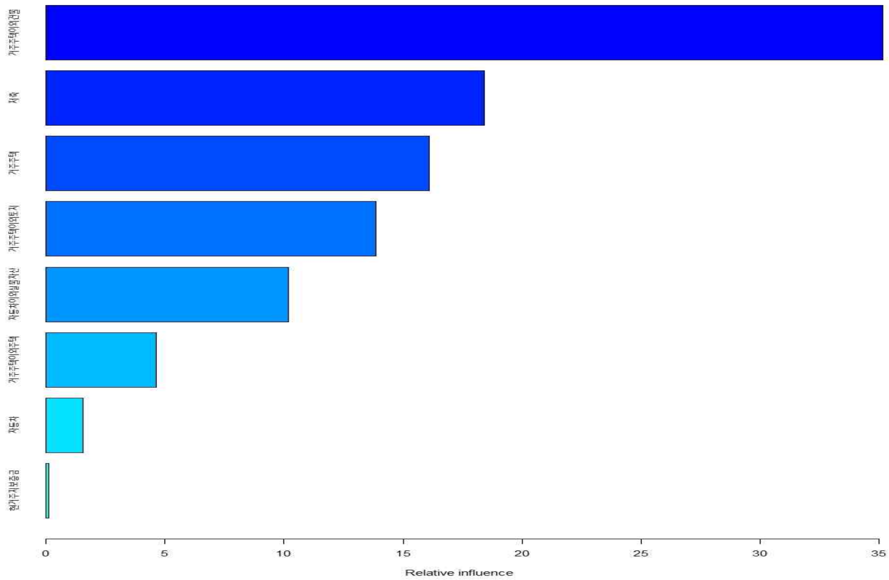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주택,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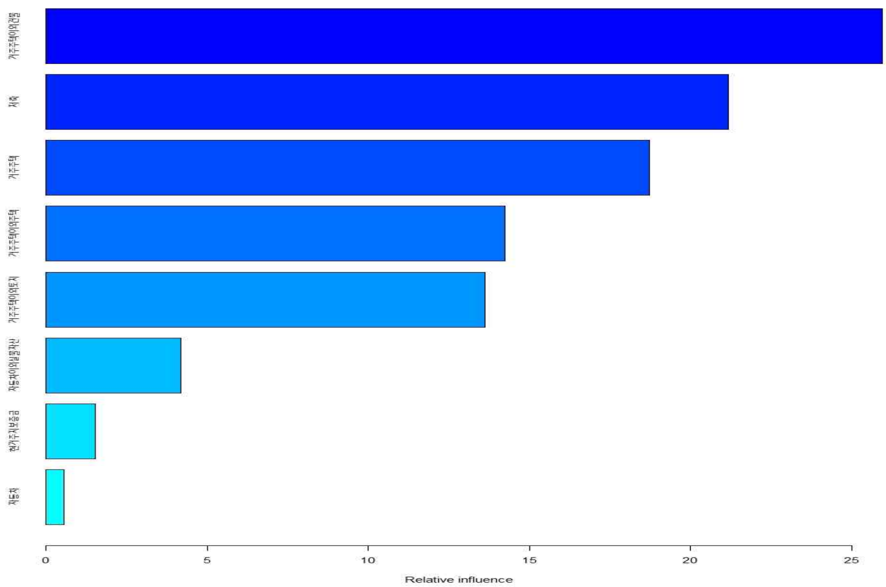

〈노인단독〉 ☞ 거주주택이외건물, 자동차, 저축, 자동차이외실물자산, 거주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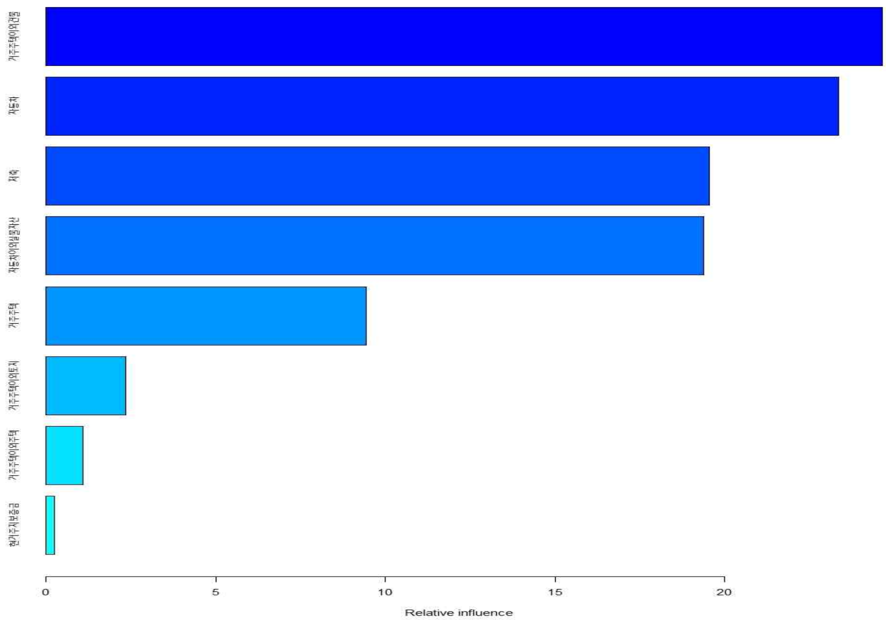

〈노인부부〉 ☞ 거주주택이외건물, 거주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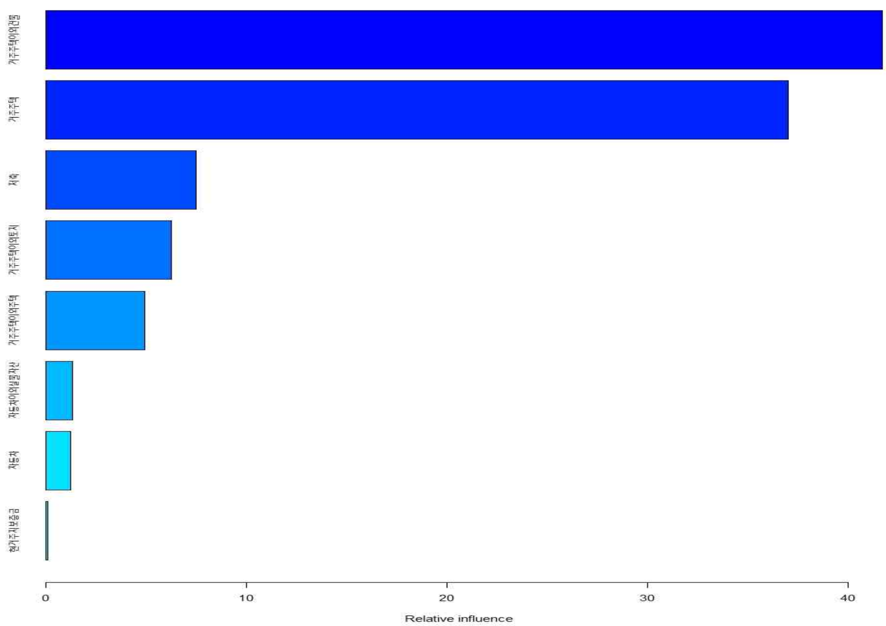

〈비노인배우자부부〉 ☞ 거주주택이외토지,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자동차이외실물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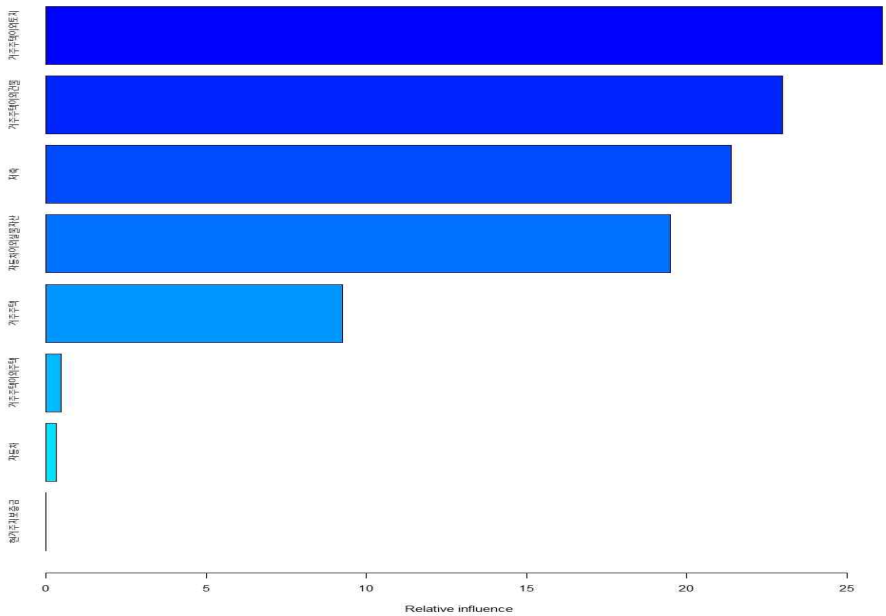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 거주주택, 저축, 거주주택이외건물,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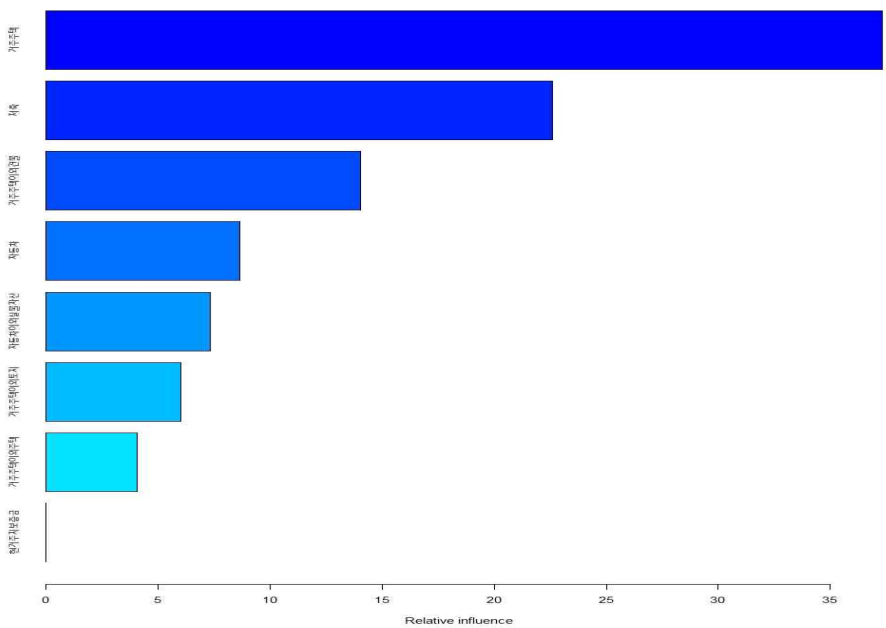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 거주주택이외토지, 거주주택이외주택, 거주주택,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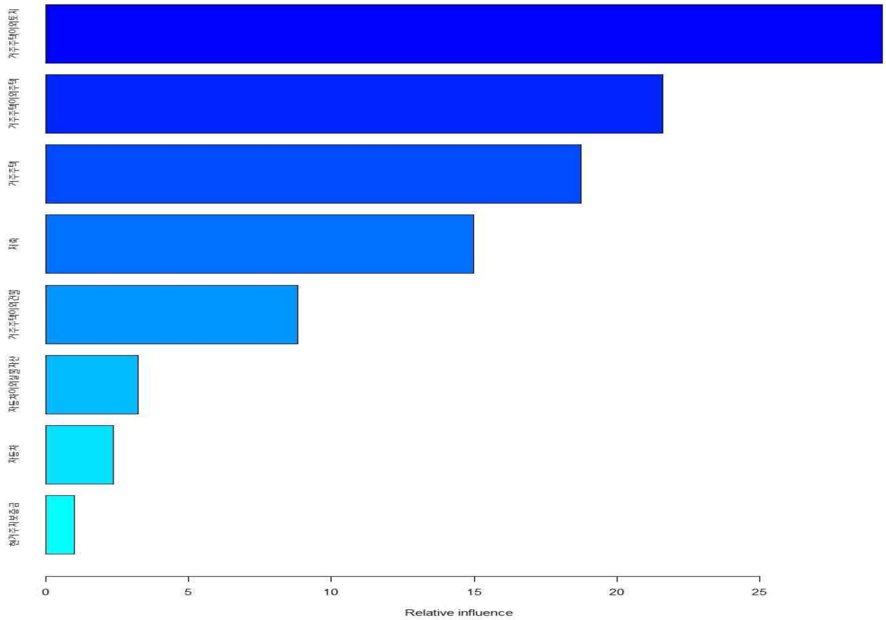

〈노인가구주가구〉 ☞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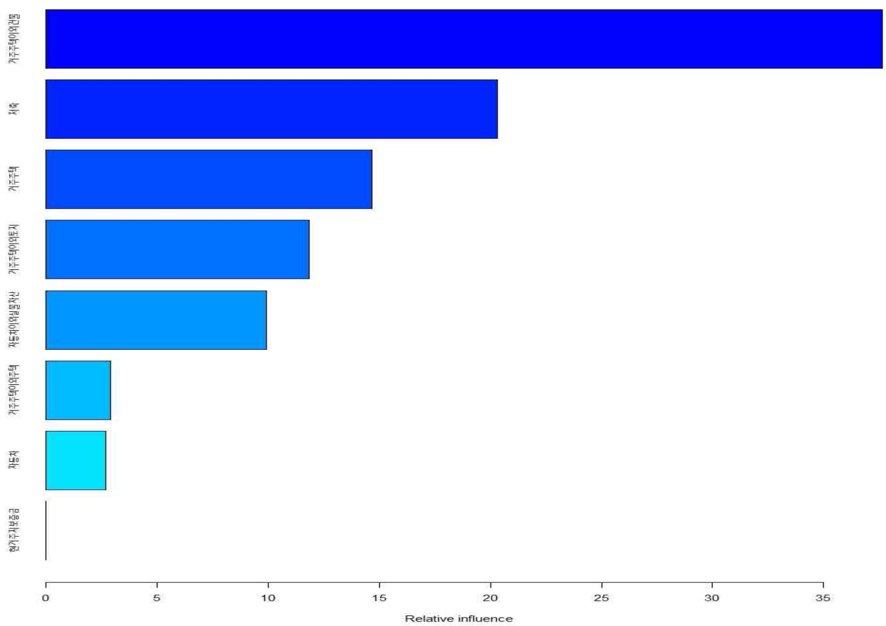

〈비노인가구주가구〉 ☞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주택,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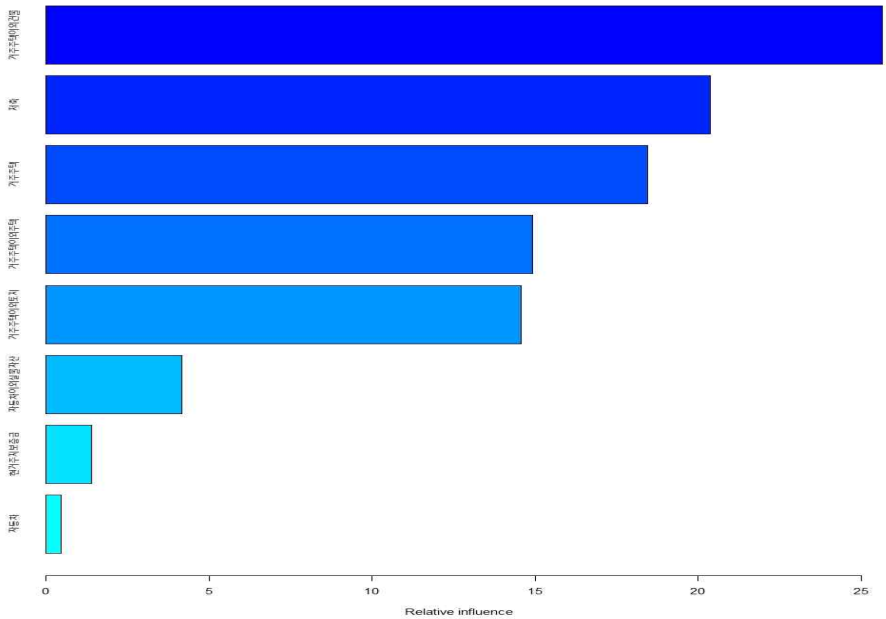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30세 미만〉 ☞ 저축, 거주주택, 현거주지보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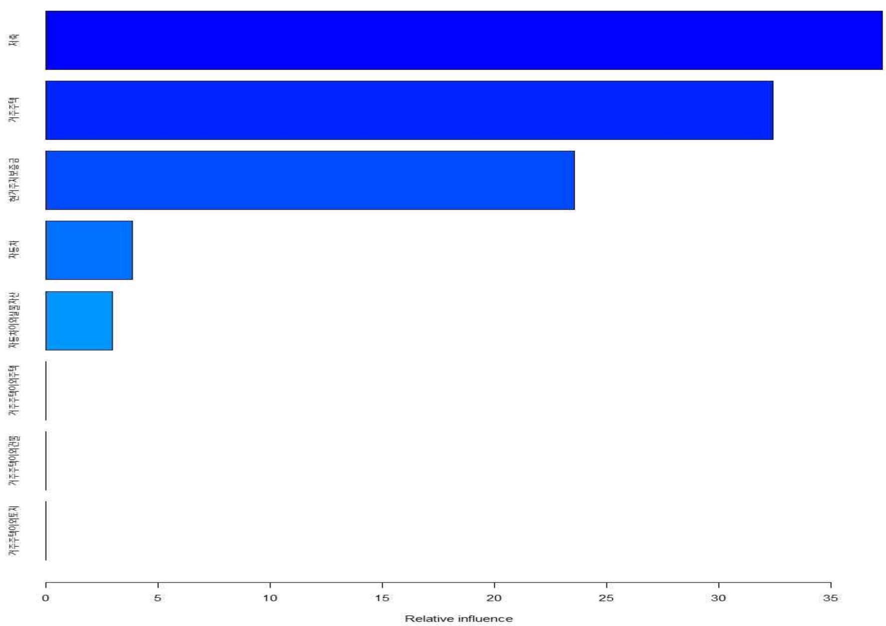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30~39세〉 ☞ 거주주택, 저축, 거주주택이외주택,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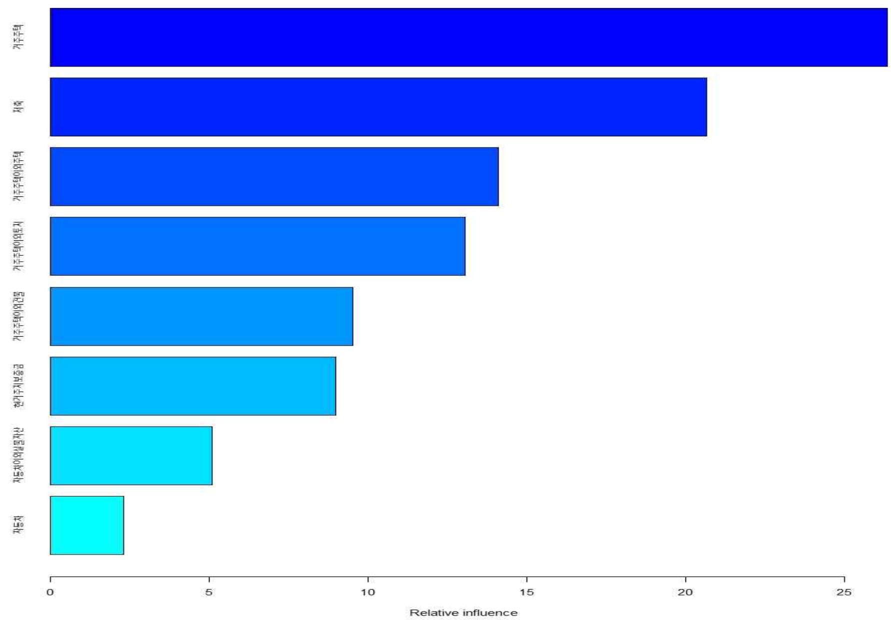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40~49세〉 ☞ 거주주택, 저축, 거주주택이외주택, 거주주택이외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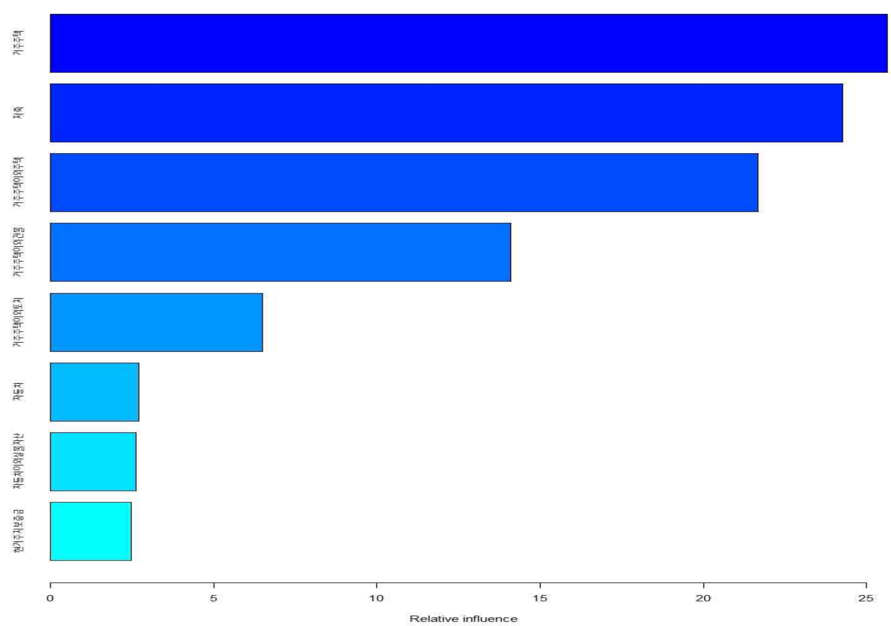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50세 이상〉 ☞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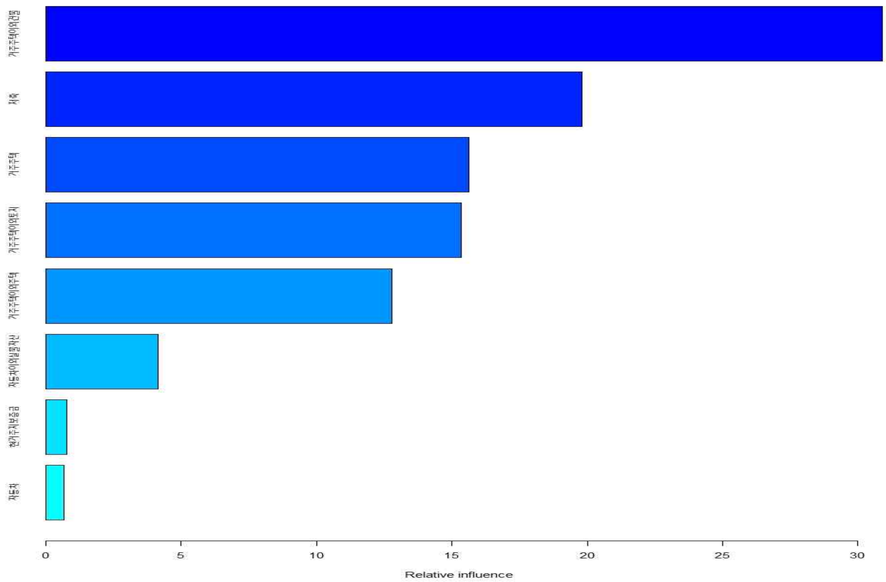

□ 순자산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

〈노인가구〉 ☞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거주주택이외토지, 거주주택, 자동차이외실물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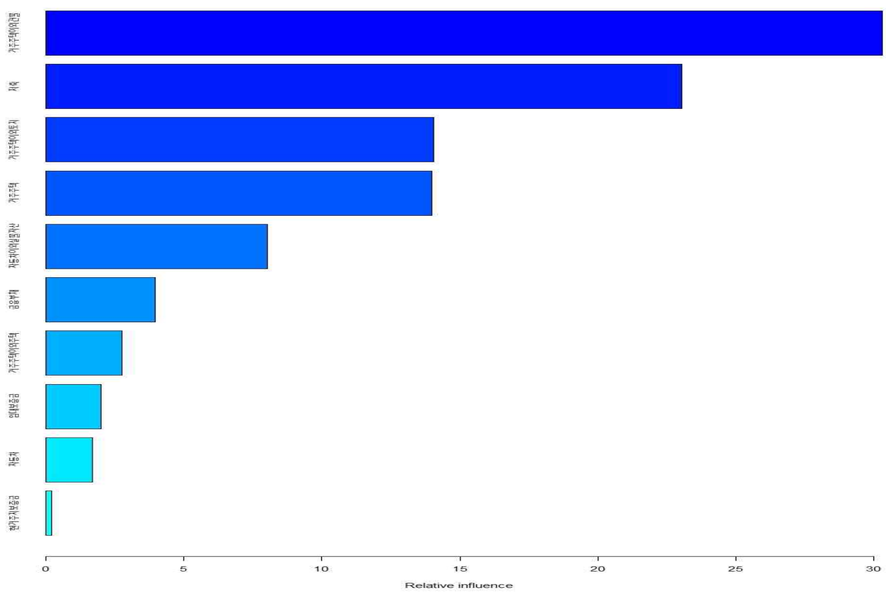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 저축, 거주주택이외건물,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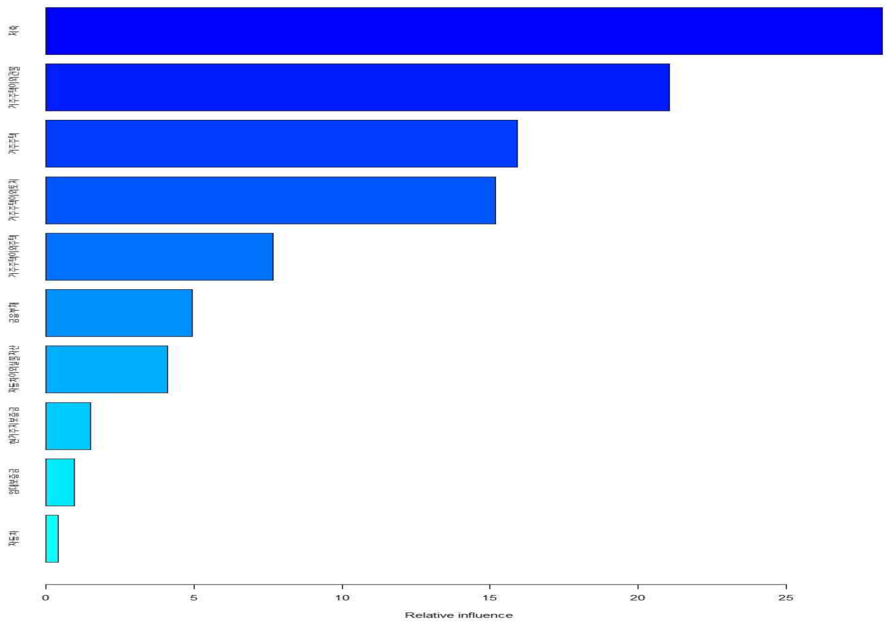

〈노인단독〉 ☞ 저축, 거주주택이외건물, 자동차이외실물자산, 자동차, 거주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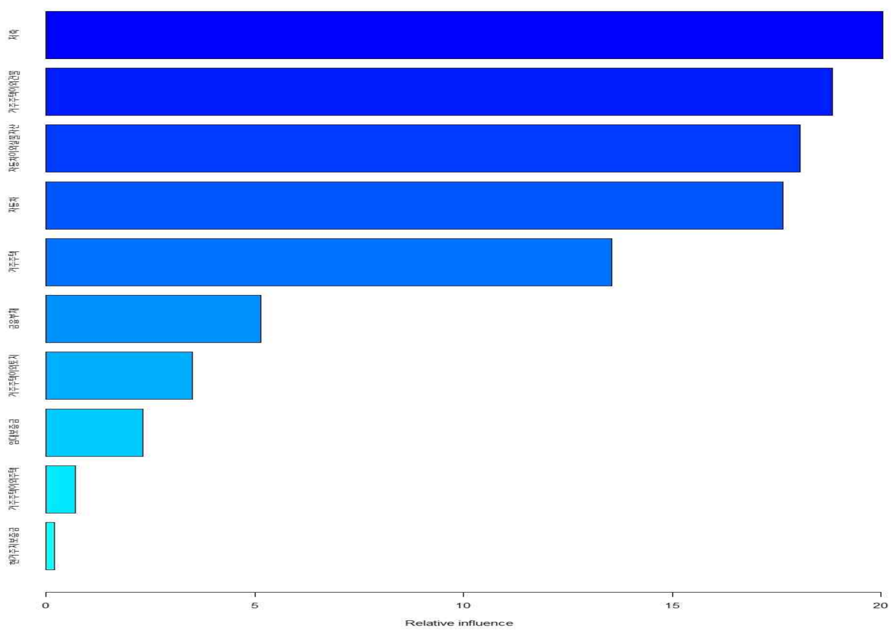

〈노인부부〉 ☞ 거주주택이외건물, 거주주택, 저축,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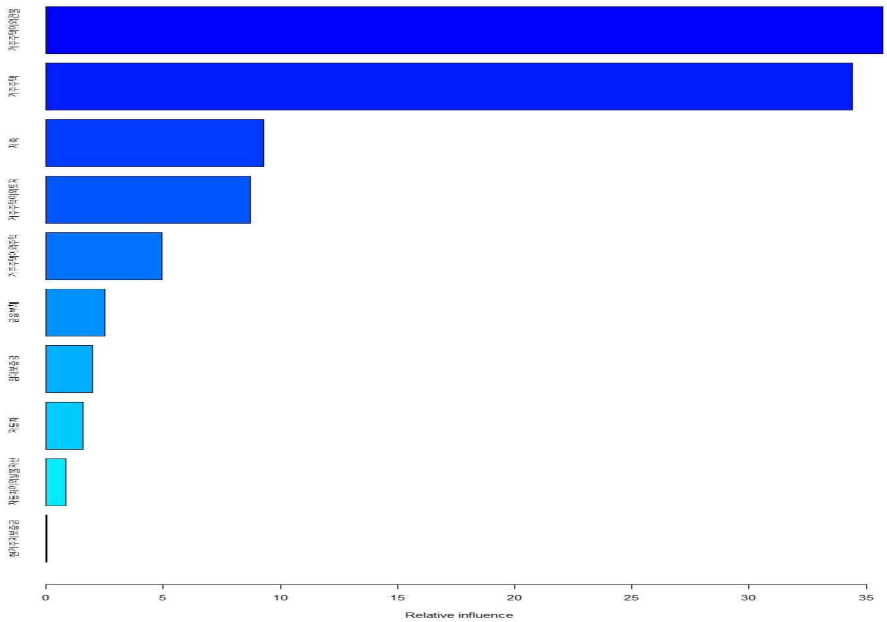

〈비노인배우자부부〉 ☞ 자동차이외실물자산, 저축, 거주주택이외토지, 거주주택이외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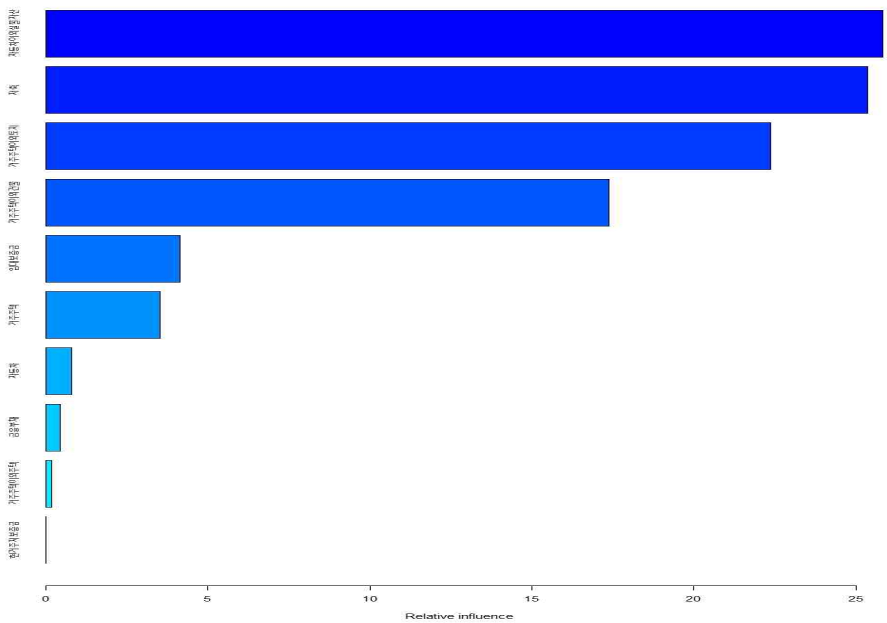

〈자녀동거_노인가구주〉 ☞ 거주주택, 저축, 금융부채, 자동차이외실물자산, 임대보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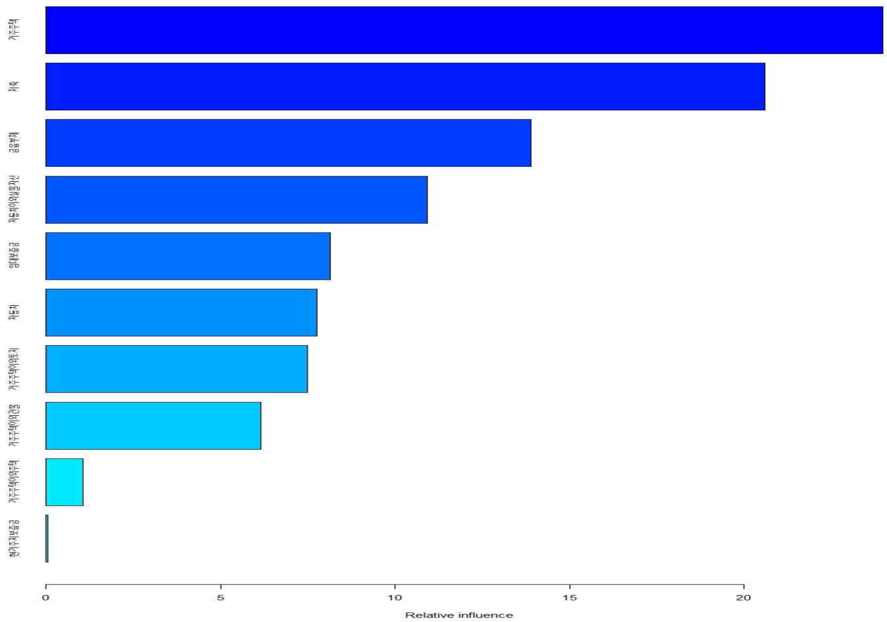

〈자녀동거_비노인가구주〉 ☞ 거주주택이외토지, 저축,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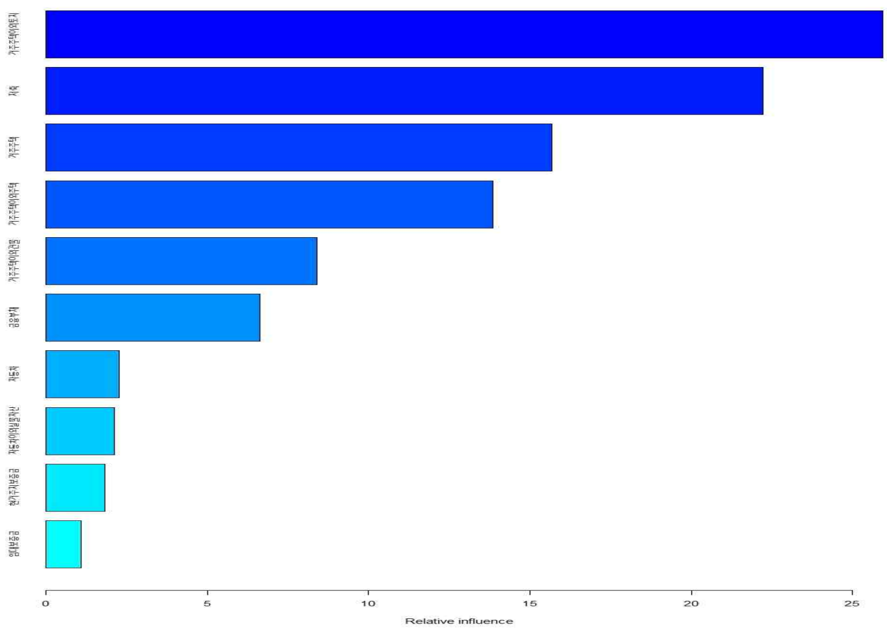

〈노인가구주가구〉 ☞ 거주주택이외건물, 저축,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토지, 자동차이외실물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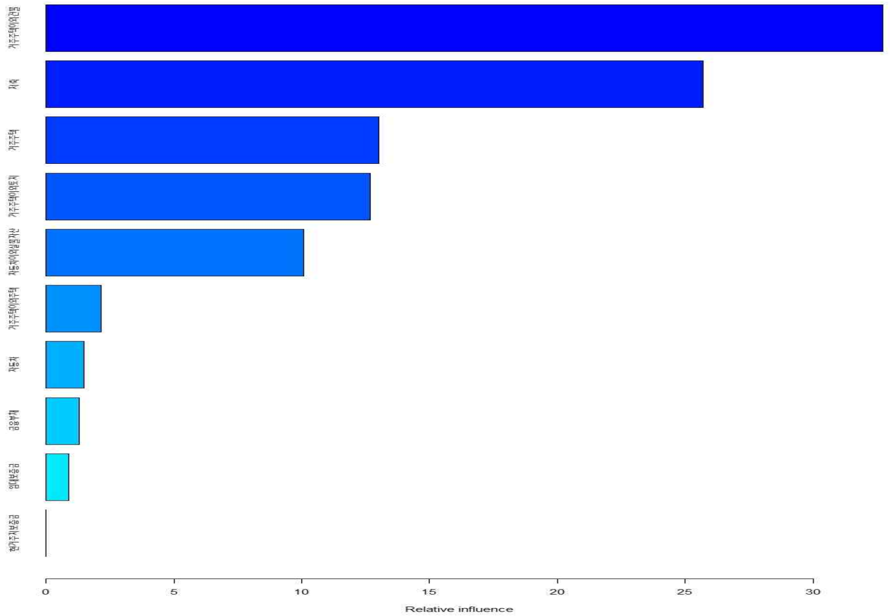

〈비노인가구주가구〉 ☞ 저축, 거주주택이외건물,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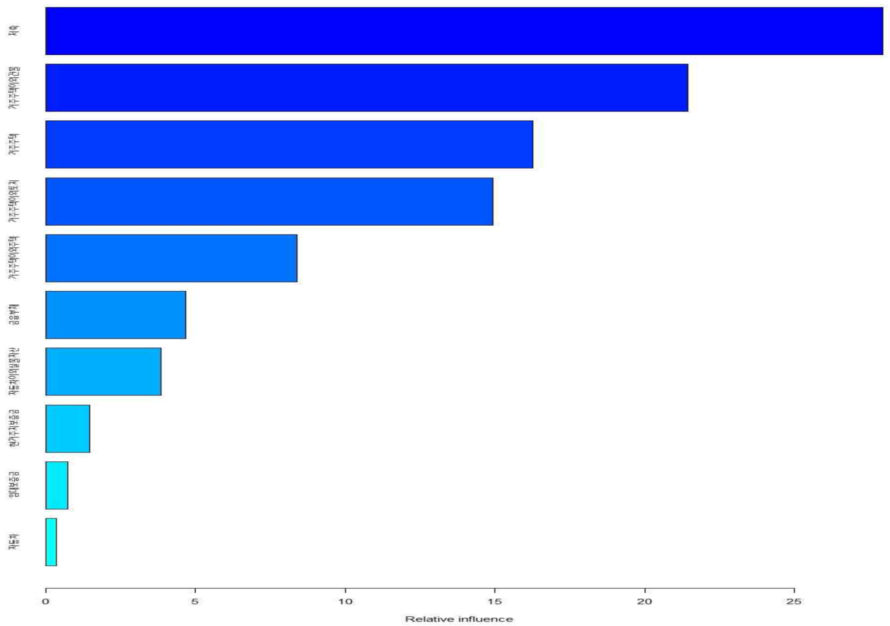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30세 미만〉 ☞ 저축, 거주주택, 현거주보증금, 금융부채,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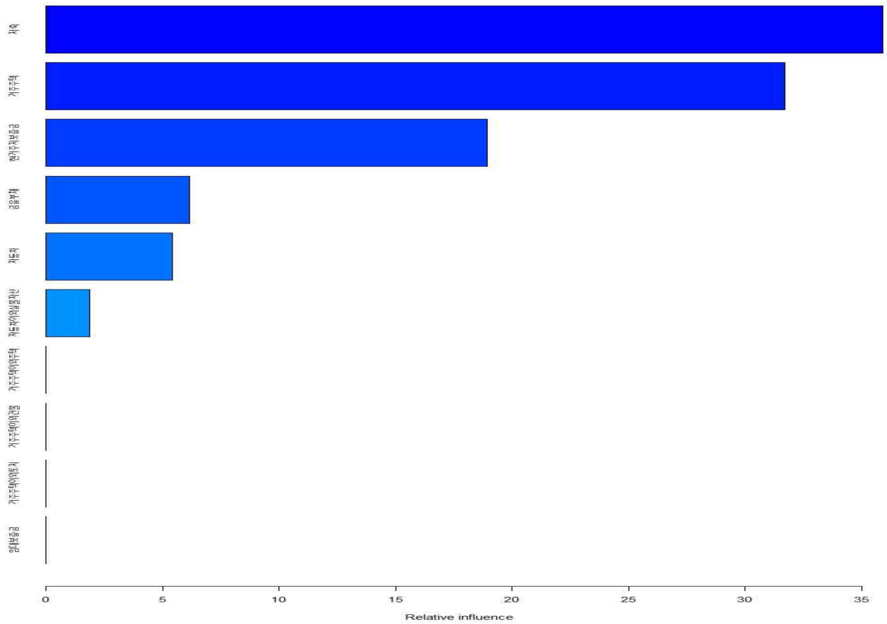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30~39세〉 ☞ 저축, 거주주택, 현거주지보증금, 거주주택이외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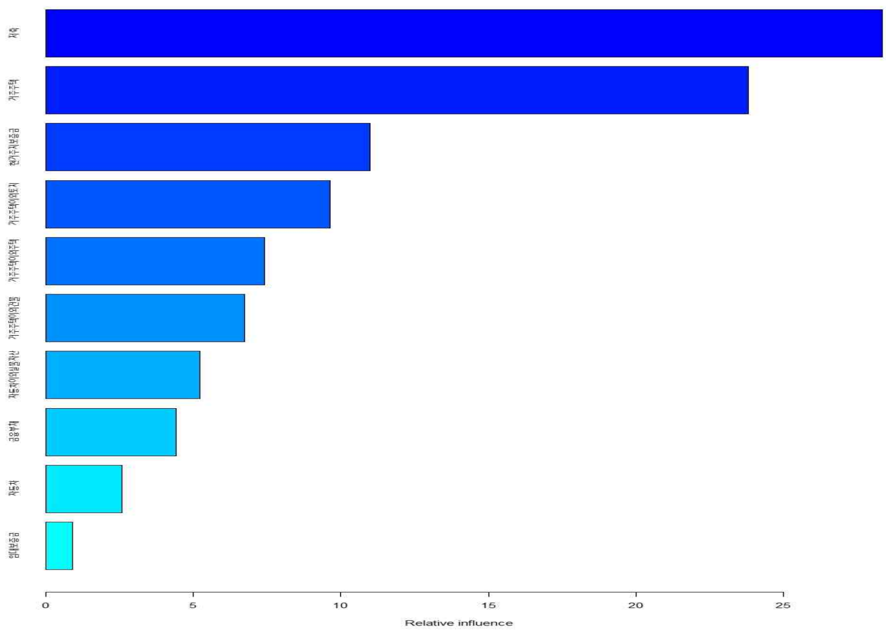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40~49세〉 ☞ 저축,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건물, 거주주택이외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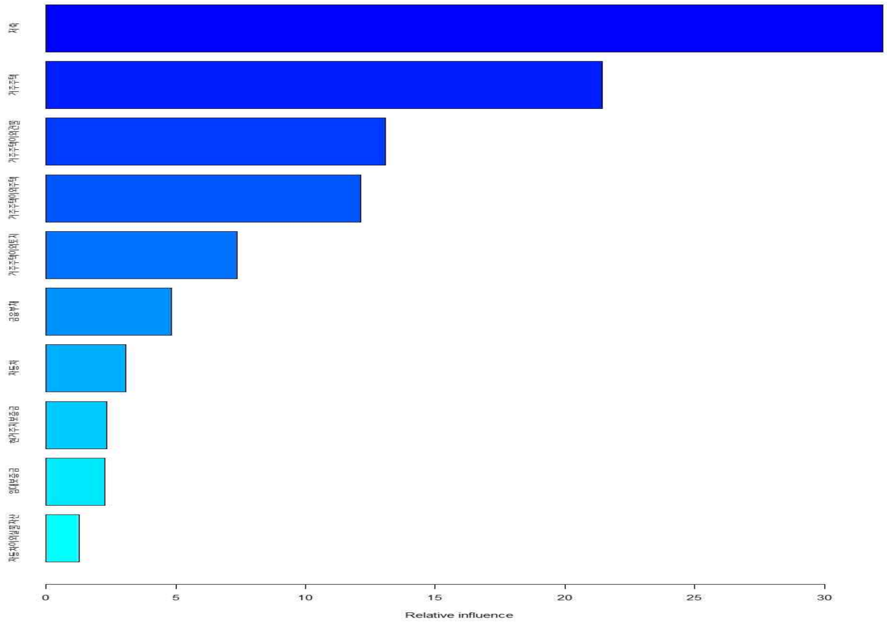

〈비노인가구 중 가구주 50세 이상〉 ☞ 저축, 거주주택이외건물, 거주주택이외토지, 거주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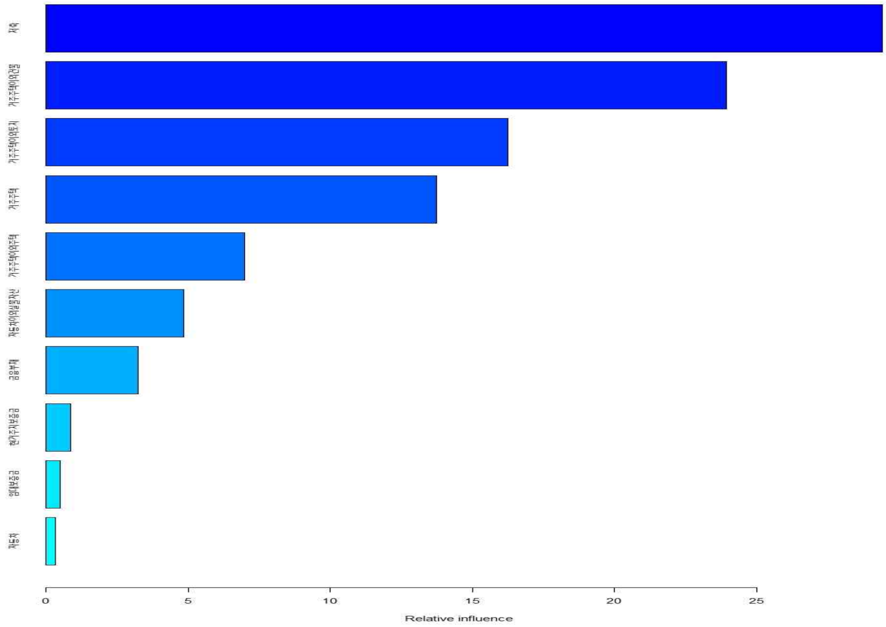

부록5.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구성 및 지출 수준과 노인빈곤 비교 분석

1.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 OECD의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째, OECD의 "Income distribution" 데이터베이스(이하 IDD)는 각국의 소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소득구성), 불평등 지표, 빈곤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IDD는 OECD의 각국의 가구소득 분배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음

○ 둘째, 모든 지표는 전체 집단(Total population), 근로연령대 집단(Working age population: 18~65), 은퇴세대 집단(Retirement age population: above 65)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소득구성 자료는 또한 소득원천 및 상세분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어, 연령집단 구분을 적용한 노인집단의 소득 구성을 살펴볼 수 있음

○ 셋째, 소득원천의 세부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공적사회보장, 고용연계사회보험제도 등의 이전소득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음

- 이전소득의 원천은 다시 1) 공적사회보장, 2) 고용연계사회보험제도, 3) 비영리기구 및 다른 가구로 구분하고 있음

- 이전지출은 1) 가구가 직접 지불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2) 고용연계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가구의 지출, 3) 비영리기구 및 다른 가구에 대한 지출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다음 〈부표 5-1〉과 같이 소득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이전소득의 원천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부표 5-1〉 OECD IDD의 소득자료 구성 내용

방법론적 차이	구성내용
2011년 이전 소득정의 기준	평균가처분소득=Total Earnings + Income from self-employment + Capital and private transfers + Public transfers -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paid directly by households
2012년 이후 소득정의 기준	평균가처분소득=Total Earnings + Capital Income + Income from self-employment and from goods produced for own consumption + Current transfers received - Current transfers paid

2. 연령집단별 평균 가처분소득 비교

□ OECD의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근로연령대 집단의 평균가처분 소득 대비 근로연령대 집단의 평균가처분 소득은 약 83% 수준으로 나타났음

○ 한국은 OECD 소득분배 자료에서 은퇴연령대 집단의 소득을 별도 보고하고 있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함

○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에서는 이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음

○ 반대로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덴마크, 체코, 벨기에, 라트비아, 호주, 에스토니아는 이 비율이 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표 5-2〉 연령집단별 평균가처분 소득 비교

(단위: 각국 화폐(연간), %)

국가	전체 평균 소득	근로연령대 평균 소득	은퇴연령대 평균 소득	근로연령대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 소득비율
호주	57,438	62,420	40,577	65.0
오스트리아	28,693	30,353	26,456	87.2
벨기에	26,216	28,017	20,583	73.5
캐나다	44,101	46,059	41,252	89.6
칠레	5,401,177	5,788,083	5,143,628	88.9
체코	254,392	270,589	201,321	74.4
덴마크	252,210	266,149	199,040	74.8
에스토니아	10,052	10,805	6,491	60.1
핀란드	28,387	29,795	23,997	80.5
프랑스	25,210	25,890	26,210	101.2

국가	전체 평균 소득	근로연령대 평균 소득	은퇴연령대 평균 소득	근로연령대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 소득비율
독일	24,335	25,956	21,207	81.7
그리스	9,953	10,240	9,234	90.2
헝가리	1,914,607	1,989,744	1,611,093	81.0
아이슬란드	4,543,086	4,815,392	3,975,933	82.6
아일랜드	25,712	26,971	22,738	84.3
이스라엘	95,834	102,978	92,386	89.7
이탈리아	20,114	20,939	19,594	93.6
일본	2,783,000	2,992,000	2,498,000	83.5
한국	24,612,774	26,762,091	.	.
라트비아	7,230	7,781	5,400	69.4
룩셈부르크	43,008	44,241	44,996	101.7
멕시코	69,195	76,703	61,627	80.3
네덜란드	27,000	28,200	23,500	83.3
뉴질랜드	45,460	49,311	37,886	76.8
노르웨이	386,823	401,062	347,273	86.6
폴란드	30,016	31,131	27,244	87.5
포르투갈	11,203	11,720	10,561	90.1
슬로바키아	8,891	9,498	7,435	78.3
슬로베니아	14,581	15,017	13,187	87.8
스페인	17,262	17,896	16,988	94.9
스웨덴	276,728	292,236	238,183	81.5
스위스	59,718	63,898	48,223	75.5
터키	15,802	17,234	13,986	81.2
영국	20,870	22,352	16,992	76.0
미국	38,700	40,928	37,113	90.7

주: 2014년 또는 근접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OECD (2016),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3. 은퇴연령 집단의 소득구성

□ OECD의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은퇴세대 집단의 평균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1.6% 가량으로 나타남

○ 이외에 근로소득은 20.4%, 자산소득은 10.9%, 자영소득은 5.4%로 나타나며, 이전지출은 18.3%였음

- 자산소득에는 자발적인 개인연금, 생명보험 등을 통한 연금소득이 포함됨

○ 이전소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이들 국가는 이전소득이 가처분소득의 100%를 상회함
- 그러나 네덜란드, 핀란드의 경우에는 공적이전보다는 직역연금 등 고용연계소득보장제도를 통한 이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 반대로 근로소득이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국가는 멕시코, 일본, 라트비아, 미국, 칠레, 아이슬란드의 순서로 나타났음

- 이들 국가는 근로소득이 가처분소득의 30%를 상회함

〈부표 5-3〉 은퇴연령 집단의 소득구성

(단위: %)

국가	근로소득	자산소득	자영소득	이전소득	이전소득(세분)			이전지출
					공적사회보장이전	고용연계소득보장이전	기타이전	
호주	26.1	19.8	2.8	61.7	42.1	19.3	0.3	-10.4
오스트리아	11.4	7.1	5.4	101.9	101.5	-	0.3	-25.7
벨기에	9.2	7.4	2.1	98.3	98.1	-	0.2	-17.0
캐나다	23.4	45.5	3.1	42.4	42.2	-	0.2	-14.5
칠레	35.8	2.9	13.5	55.8	22.7	31.2	1.9	-8.0
체코	15.3	1.4	5.7	82.4	82.2	-	0.3	-4.8
덴마크	18.7	29.1	4.9	92.0	70.8	21.3	0.0	-44.7
에스토니아	29.0	1.1	4.1	74.2	74.0	-	0.2	-8.3
핀란드	8.4	11.5	3.5	103.1	10.6	92.5	0.0	-26.4
프랑스	4.9	21.7	1.8	89.0	88.8	-	0.2	-17.3
독일	11.9	12.2	5.6	86.6	80.8	5.5	0.2	-16.3
그리스	10.6	4.6	8.9	98.4	97.7	-	0.7	-22.6
헝가리	7.3	1.8	1.4	90.3	89.5	-	0.8	-0.8
아이슬란드	35.2	11.7	2.3	83.3	83.2	-	0.1	-32.5
아일랜드	8.4	8.1	5.9	87.1	87.0	-	0.1	-9.6
이스라엘	27.8	8.7	8.6	75.9	37.3	37.4	1.2	-21.1
이탈리아	12.7	8.8	11.1	94.1	93.9	-	0.2	-26.8
일본	40.4	11.0	5.4	61.4	60.6	-	0.8	-18.2
한국	-	-	-	-	-	-	-	-
라트비아	38.9	0.6	4.6	68.8	67.6	-	1.2	-12.9
룩셈부르크	10.0	10.2	1.9	102.1	101.8	-	0.3	-24.2
멕시코	41.8	4.0	16.0	40.0	7.9	24.1	8.0	-1.8

국가	근로 소득	자산 소득	자영 소득	이전 소득	이전소득(세분)			이전지출
					공적사회 보장이전	고용연계소득 보장이전	기타이전	
네덜란드	10.6	7.7	3.0	110.2	58.3	51.9	0.0	-31.5
뉴질랜드	29.4	24.1	6.3	58.7	54.0	-	4.8	-18.6
노르웨이	-	10.6	3.1	91.3	74.1	17.2	0.2	-25.1
폴란드	28.2	0.6	6.7	86.3	85.8	-	0.5	-21.9
포르투갈	15.0	6.5	4.6	94.4	93.9	-	0.5	-20.5
슬로바키아	24.8	0.3	4.4	75.6	75.3	-	0.3	-5.1
슬로베니아	17.0	5.3	4.6	81.2	80.9	-	0.2	-8.1
스페인	16.7	12.5	4.5	79.4	78.9	-	0.5	-13.0
스웨덴	16.4	13.6	2.9	97.9	74.2	23.7	0.0	-30.8
스위스	-	16.4	5.1	95.1	58.1	36.4	-	-34.9
터키	19.4	12.2	12.3	60.2	16.1	37.5	6.7	-4.0
영국	13.0	14.8	4.2	93.4	55.7	36.8	0.9	-25.3
미국	36.3	17.9	4.4	62.1	51.7	10.2	0.2	-20.7

주: 2014년 또는 근접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OECD (2016),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4. 노후소득보장 구성과 소득분배지표

□ OECD 국가에서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총소득 중 시장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시장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소수가 시장소득을 가질 경우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남

〈부표 5-4〉 은퇴연령 집단의 주요 소득구성득구성과 소득분배 지표

(단위: %, 지수)

	소득비율			빈곤율		소득불평등도		
	시장소득	이전소득	이전지출	가처분	이전전	가처분	시장소득	총소득
호주	16.2	61.7	-10.4	0.257	0.672	0.327	0.707	0.370
오스트리아	8.0	101.9	-25.7	0.097	0.842	0.275	0.874	0.313
벨기에	6.2	98.3	-17.0	0.091	0.890	0.228	0.913	0.261
캐나다	24.0	42.4	-14.5	0.062	0.498	0.276	0.537	0.321
칠레	17.4	55.8	-8.0	0.150	0.308	0.428	0.512	0.430
체코	7.5	82.4	-4.8	0.030	0.855	0.190	0.863	0.212
덴마크	17.6	92.0	-44.7	0.038	0.618	0.225	0.64	0.266

	소득비율			빈곤율		소득불평등도		
	시장소득	이전소득	이전지출	가처분	이전전	가처분	시장소득	총소득
에스토니아	11.4	74.2	-8.3	0.235	0.832	0.269	0.829	0.305
핀란드	7.8	103.1	-26.4	0.066	0.877	0.244	0.847	0.293
프랑스	9.4	89.0	-17.3	0.035	0.837	0.297	0.801	0.338
독일	9.9	86.6	-16.3	0.084	0.806	0.260	0.752	0.288
그리스	8.1	98.4	-22.6	0.086	0.822	0.271	0.890	0.296
헝가리	3.5	90.3	-0.8	0.086	0.778	0.228	0.746	
아이슬란드	16.4	83.3	-32.5	0.030	0.714	0.227	0.712	0.274
아일랜드	7.5	87.1	-9.6	0.070	0.851	0.282	0.852	0.321
이스라엘	15.0	75.9	-21.1	0.226	0.45	0.394	0.617	0.413
이탈리아	10.9	94.1	-26.8	0.093	0.785	0.297	0.813	0.346
일본	18.9	61.4	-18.2	0.190	0.643	0.341	0.669	0.364
한국				0.488	0.625	0.397	0.521	
라트비아	14.7	68.8	-12.9	0.196	0.741	0.308	0.773	0.352
룩셈부르크	7.4	102.1	-24.2	0.036	0.814	0.253	0.876	0.281
멕시코	20.6	40.0	-1.8	0.256	0.346	0.480	0.533	
네덜란드	7.1	110.2	-31.5	0.022	0.600	0.235	0.546	0.289
뉴질랜드	20.0	58.7	-18.6	0.082	0.588	0.315	0.647	0.336
노르웨이	6.9	91.3	-25.1	0.043	0.701	0.218	0.591	0.272
폴란드	11.9	86.3	-21.9	0.074	0.728	0.253	0.789	0.266
포르투갈	8.7	94.4	-20.5	0.102	0.825	0.323	0.866	0.389
슬로바키아	9.8	75.6	-5.1	0.037	0.759	0.197	0.771	0.220
슬로베니아	9.0	81.2	-8.1	0.122	0.824	0.258	0.809	0.284
스페인	11.2	79.4	-13.0	0.055	0.765	0.290	0.756	0.327
스웨덴	11.0	97.9	-30.8	0.076	0.685	0.271	0.620	0.298
스위스	10.8	95.1	-34.9	0.197	0.519	0.309	0.553	0.300
터키	14.6	60.2	-4.0	0.189	0.311	0.384	0.486	
영국	10.6	93.4	-25.3	0.135	0.602	0.322	0.630	0.339
미국	19.5	62.1	-20.7	0.210	0.570	0.404	0.674	0.439

주: 2014년 또는 근접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OECD (2016),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 결과적으로 노인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는 시장소득의 비율이 낮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장소득 외에 공적이전소득이 기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소득의 비율이 높지만 소득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캐나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자산소득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가능한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연금 등이 기능한 결과로 해석 가능함

[부도 5-1] 시장소득 비율과 노인소득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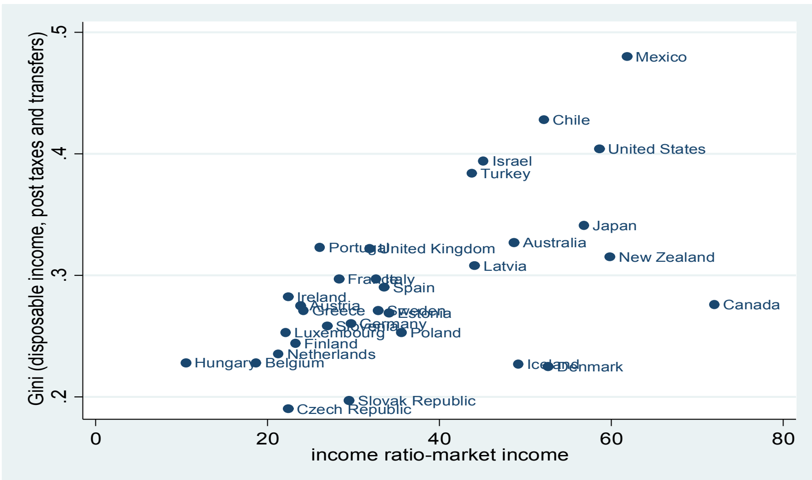

주: 2014년 또는 근접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OECD (2016),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부도 5-2] 노인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율과 소득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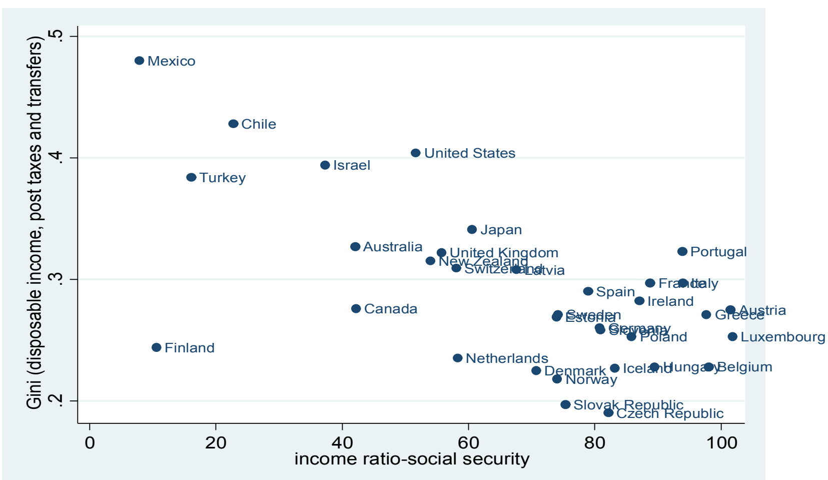

주: 2014년 또는 근접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OECD (2016),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5. 노인빈곤율의 시계열적 변화

□ LIS의 소득자료는 비교적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함

○ OECD의 IDD의 경우에도 시계열적 분석은 가능하나, EU 국가들의 SILC 자료가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음

〔부도 5-3〕 노인빈곤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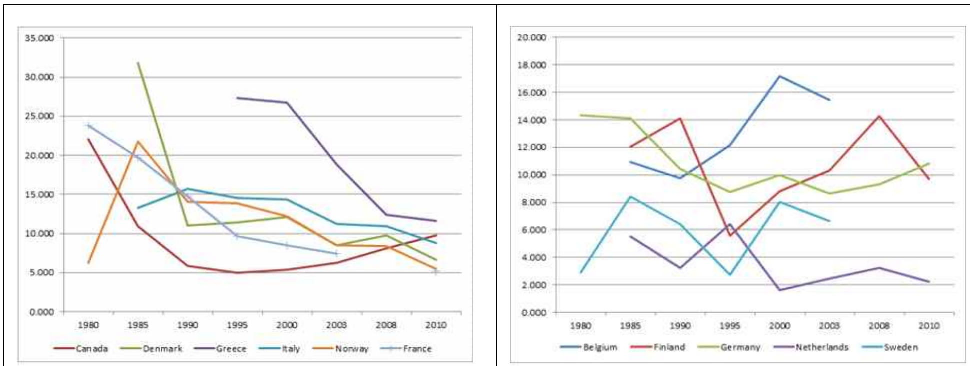

구분		빈곤율	아동 빈곤율	노인 빈곤율	구분		빈곤율	아동 빈곤율	노인 빈곤율
캐나다	Wave I	12.4	14.8	22.0	벨기에	Wave II	4.5	3.5	10.9
캐나다	Wave VIII	12.5	14.4	9.8	벨기에	Wave VI	8.1	7.2	15.4
덴마크	Wave II	10.1	5.2	31.8	핀란드	Wave II	5.1	3.2	12.1
덴마크	Wave VIII	6.3	4.5	6.6	핀란드	Wave VIII	7.2	3.7	9.7
프랑스	Wave II	11.6	9.8	19.7	독일	Wave I	5.3	2.8	14.4
프랑스	Wave VIII	9.1	11.4	5.2	독일	Wave VIII	9.3	9.5	10.8
그리스	Wave IV	15.4	13.4	27.3	네덜란드	Wave II	6.3	4.2	5.5
그리스	Wave VIII	13.5	17.3	11.6	네덜란드	Wave VIII	5.2	6.3	2.2
이탈리아	Wave II	10.5	11.1	13.3	스웨덴	Wave II	6.7	3.1	8.4
이탈리아	Wave VIII	12.5	18.9	8.8	스웨덴	Wave VI	5.6	4.7	6.6
노르웨이	Wave II	7.2	4.5	21.8					
노르웨이	Wave VIII	7.4	5.0	5.5					

주: 각 웨이브별로 근접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자료: LIS, Key Figures(www.lisdatacenter.org)

6. 노인보유 자산의 국제 비교

□ OECD는 2013년 LIS의 Luxembroug Wealth Study와 유사한 목적으로 가구의 자산에 대한 미시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 현재 19개 국가가 OECD LWS에 참가하고 있음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노인가구의 비금융자산의 활용방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 비교 차원에서 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함

□ 우리나라 65-74세 가구주 가구의 비금융자산은 2억 77백만원으로, 전체 집단의 2억 67백만원의 116% 수준으로 나타났음

○ 평균 순자산은 2억 89백만원 가량으로, 전체 집단의 2억 67백만원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비교 가능한 18개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평균 118%)

□ 반대로 이들 집단의 금융자산은 52백만원으로 전체집단의 87백만원의 약 60% 수준에 그쳤음

○ 금융자산의 비율은 18개 국가 중 17위에 해당함

○ 해당 집단의 부채는 각각 40백만원, 58백만원 수준이었음

□ 평균 대비 중위 자산의 값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한 노인자산의 분포는 OECD 국가 중 11위에 해당하였음

○ OECD LWS는 현재까지 연령집단별 자산의 분포는 제시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음

○ 평균자산 대비 중위자산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그리스, 핀란드, 영국, 호주의 순서로 나타났음.

〈부표 5-5〉 노인자산의 국제 비교

(단위: 각국 화폐, %)

국가	전체	65-74세 가구주 가구					65-74세 가구주 가구 자산의 상대 비율(전체 대비)	
	가구당 평균순자산 (현가)	가구당 평균순자산 (현가)	중위 순자산 (현가)	평균 자산대비 중위자산 비율	가구당 비금융자산 (현가)	가구당 금융자산 (현가)	비금융 자산	금융 자산
호주	595,820	806,212	531,393	65.9	677,870	161,612	116	116
오스트리아	260,903	246,542	114,127	46.3	178,200	74,220	107	64
벨기에	320,712	500,494	287,300	57.4	335,089	168,961	136	137
캐나다	467,400	640,200	357,000	55.8	370,900	291,600	108	145
칠레	27,311,206	31,918,426	15,846,706	49.6	31,710,572	2,355,534	108	109
핀란드	158,733	224,828	158,038	70.3	189,164	42,756	117	118
프랑스	213,900	324,618	195,509	60.2	241,097	88,865	129	124
독일	182,532	248,484	100,100	40.3	199,405	65,642	136	86
그리스	146,907	151,706	110,546	72.9	138,755	17,430	98	93
이탈리아	272,689	324,161	207,000	63.9	267,753	59,142	114	113
한국	267,384,900	289,384,600	147,250,000	50.9	277,124,900	52,201,300	116	60
룩셈부르크	693,246	1,245,771	623,564	50.1	1,139,429	121,174	168	108
네덜란드	166,000	269,500	133,500	49.5				
노르웨이	1,883,600	3,302,500			2,613,700	1,223,200	121	155
포르투갈	150,710	164,864	79,708	48.3	125,538	41,308	97	100
슬로바키아	78,882	71,517	56,469	79.0	66,326	5,377	92	50
스페인	286,293	330,827	201,113	60.8	289,601	50,834	111	81
영국	263,600	349,500	233,500	66.8	262,200	94,800	113	159
미국	452,900	821,000	195,900	23.9	388,800	513,400	144	178

주1: 2014년 또는 근접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주2: 75세 이상은 제외함. 한국의 75세 이상 집단의 평균 순자산은 184,197,900원, 비금융자산은 170,207,200원, 금융자산은 3,006,7300으로 나타났음

자료: OECD (2016), "Wealth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참고문헌

강성호, 최옥금. (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17(2), pp.43-71.

강성호, 최옥금. (2011).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 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24(1), pp.95-117.

고제이, 권혁진. (201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지출 부담분석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박인화, 최영준 외. (20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권혁진, 신우진 외. (2016).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평가 모형 개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구인회, 김창오. (2016). 1990년대 이후 노인빈곤 변화추이와 악화원인 분석. 2016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

김경혜, 윤민석. (2013).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 서울연구원.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pp.113-149.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남상호, 권순현.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18(2). pp.3-32.

남상호. (2009).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2010).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분석. 보건 Issue & Focus, 36, pp.1-8.

백화종, 강성호. (2011). 연금제도 성숙시점에서의 노인빈곤율 추정과 국민연금의 빈곤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28. pp.199-232.

손병돈. (1998).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부모와 기혼자녀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9, pp.157-179.

신화연 외. (2013).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희숙, 권형준. (2013). 가구유형과 공적연금 수급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KDI정책포럼, 254호.

여유진. (2013).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0, pp.185-2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여유진, 김미곤, 구인회, 김수정, 윤자영, 허순임, 최준영. (2015a).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김명중, 정재훈, 이주미. (2015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은, 이은혜, 정찬미. (2011). 한국에서 자산빈곤의 변화추이와 요인분해. 보건사회연구, 31(3), pp. 3-37.

이소정 외. (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 김태완. (2014).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 (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병인. (2012). 자산빈곤율 추정의 쟁점과 자산빈곤율 시산. 보건복지포럼, pp.27-32.

임병인. (2011). 자산빈곤. 김문길 외 편.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노대명. (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이주미. (2014). 2014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2015).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년 8월호.

임완섭. (2016).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236, pp.82-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2016).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 보건복지포럼 2016년 6월호.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2). 201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은희, 이주미. (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지운, 김주현. (2014). 소득-순가치(Income-Net Worth) 개념을 활용한 노인빈곤의 재고찰. 한국노년학, 34(3).pp. 595-611.

최현수,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홍경준. (200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pp.61-85.

황남희. (2015).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실태와 시사점. 연금포럼, 60, 국민연금연구원.

황남희, 김정현, 정지운. (2015).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에 대한 종단연구: 차원별 빈곤여부

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비교. 제8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2015. 9. 18. pp.255-275.

국민연금연구원. (2015). 노인의 빈곤지표 변화분석: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분석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6 경제·재정수첩.
보건복지부.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통계청. (2015). 2015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Brandolini, A., Magri, S. and Smeeding,T. M.(2010). Asset base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267-284
Doling, John and Marja Elsinga. (2013). D*emographic Change and Houing Wealth: Homeowners, Pensions and Asset-based Welfare in Europe.* Springer.
EU Housing Ministers. (1999). *11th Informal Meeting of EU Housing Ministers, Final Communication*. EU
Eva, L.. Wu, J. (1998). *The Measure of Poverty, Research and Library Services Division, Provional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HongKong.
Goodman, A. (1997). *Inequality in the UK.* Oxford University Press. USA.
Haveman, R. and Wolff, E. (2001).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2-1998*. IRP Discussion Paper no. 1227-01. Madision, WI: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Holzman, R., & Hinz, R.(eds.). (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 and Reform*.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Hooyman, N. R., and Kiyak, H. A. (200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Pearson Education.
Ng, S. H., Cheung, C. K., Chong, A. M. L., Woo, J., Kwan, A. Y. H., and Lai, S.. 2011. *Aging Well Socially Through Engagement with Life; Adapting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to Chinese Cultural Contex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3(4). 313-330.
Smith, A. (1937). *The wealth of nations*[1776]. na.
Sen, A. K.. (2009). *The idea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United nations(2011).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2rd edition). Geneva.

Walker, A.. (2006). *Active ageing in employment; Its meaning and potential.* Asia-Pacific Review. 13(1). pp.78-93.

Weisbrod, B. A. and Hansen, W. I. (1968). *An income-net worth approach to measuring economic welfa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315-1329

OECD(2003). *Quality Framework and Guidelines for OECD Statistical Actives.* Paris. 2003.

OECD. (2015). *Pension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2015). *Government at a Glance-2015 edition*

OECD(2015.10.).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terms of reference OECD project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s.

OECD. (2016).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166-en (Accessed on 12 November 2016)

OECD.(2016),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7d7b803c-en (Accessed on 12 November 2016)

OECD.(2016), *"Wealth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7d7b803c-en (Accessed on 12 November 2016)